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SEPTEMBER 1982. No. 162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1982.9

라도

류가 발명해 낸 유
로, 플로트 공법으

는, 품위있는 건물
製 유리, 그것이
새로이 생산 공급

thers Co.)가 개발하
급한 이 플로트 공
(Tin)을 녹여 그 위
드는 製造方法을

아주 고르며, 大型
콤퓨터로 조정하
장됩니다.
여개 국가만이 생
니다.

대규격

이 × 폭 (m/m)	길이 × 폭
2438 × 1220	96×
3048 × 2134	120×
3048 × 2438	120×
8380 × 3300	330×
8380 × 3300	330×

세품은 주문생산입니다.

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스치로폴입니다.

스치로폴은 독일의 BASF가 발명한 발포성 폴리스티렌의 상표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백색 난연성 건축용 단열재로서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건축용으로 백색 스치로폴제품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저희 효성 바스프도 건축용 스치로폴 원료로서 異物質인 色素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백색 스치로폴을 공급하고 있읍니다.

一般 住宅의 斷熱前後 熱損失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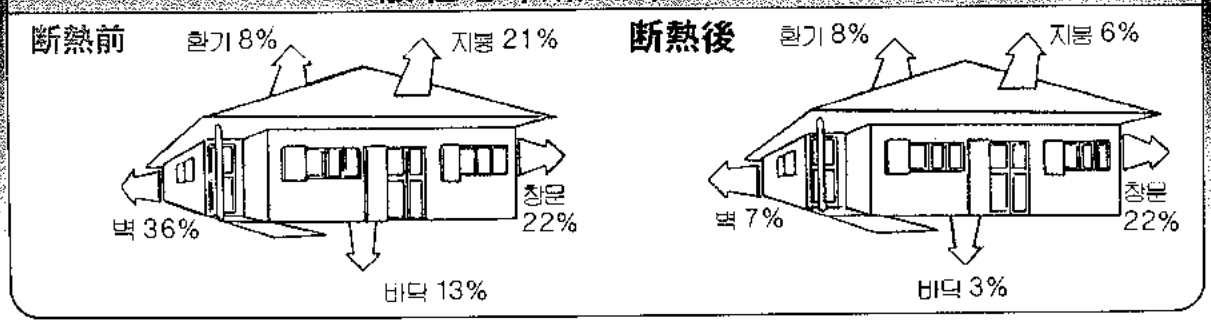

원료제조원

曉星바스프(株) BASF
HYOSUNG-BASF CO., LTD.

본사 • 서울중구서소문동21-1(효성제2빌딩)☎771-13
공장 • 경남울산시상개동472-1(석유화학공업단지)☎73-9873~5
영업사무소 • 부산☎67-4111~2, 대구☎252-4131~5

月刊 建築士
September 1982. No. 162
U. D. C. 69/72(054-2) : 0612(519)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目次

1982.9

論 壇 獨立記念館 建立에 建築士의 적극적 참여를 朴商浩 2

프리즘 獨立記念館 建立을 앞두고

"훌륭한 作品위해 滿建築人의 參與 바람직" 崔昌奎 6

"民族意志의 結晶体인 建築物로 세워야" 姜哲求 8

住居環境 이대로 좋은가? 朱鍾元 9

住宅設計에 있어서의 合理와 情緖의 調和 朴暾緖 14

아파트와 맨션—무엇이 문제인가? 金鍾仁 17

獨立住宅地域의 장차 開發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柳榮進 22

特輯 會員建築設計作品 / 住宅 33

- 한남동L씨주택 –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 金重業
- 杏仙堂 – 건축연구소場 · 吳澤吉
- L씨댁 – 공일곤건축연구소 · 公日坤
- 쌍문동L씨댁 – 주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 俞景哲
- 서교동윤씨댁 – 아름건축연구소 · 金琪碩
- 서초동심씨댁 – 남부합동건축설계공사 · 尹秦壽
- Y씨주택 – 강서합동건축설계사무소 · 金明善
- 이씨댁 – 주 · 왼종합건축 · 李庚植
- 방배동B씨주택 – 한국환경설계연구소 · 金武永
- 논현동C씨댁 – 남경건축설계사무소 · 李鍾世
- 서교동박씨집 – 건축설계사무소아키반 · 金錫徹
- 신림동J씨주택 – 아진종합건축 · 林東爲
- S씨주택 – 김영수건축연구소 · 金榮洙
- 삼성동L씨댁 – 삼예종합건축 · 鄭求殷
- 역삼동A씨댁 – 주 · 정림건축 · 金正澈
- 홍씨주택 – 종합환경연구소일건 · 黃一仁
- 구기동K씨주택 – 동남아종합기술공사 · 朴遠泰
- 동빙고동H씨댁 – 부림종합설계 · 金 浩
- 사당동서씨주택 – 주 · 정일엔지니어링 · 宋基鎬
- 동선동이씨댁 – 범양종합건축연구소 · 劉圭成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關한 考察〔完〕: 遺載 朴彦坤 · 金東旭 73

設備講座 建築과 空氣調和의 計劃 (설비연구분과위원회) 〔I〕孫章烈 · 〔II〕朴容漢 104

改正 消防法 解說 李承九 109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 자료 : 田中 淸著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에서 77

建築分野 · 國家技術資格檢定에 關한 考察 金聖培 94

海外建設事情 LIBYA GARIUNIS의과대학 신축공사 주 · 대우해외건축기술부 91

"慧眼의 旗手" 박영호 28

□ 협회소식 3 □ 건축계뉴스 83

□ 질의응답 86 □ 법개정내용 118

□ 회원동정 125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62 호
구입년월일	. .
대한건축사협회	도지부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 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樂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표지설명 / 주택특집

独立記念館 建立에 建築士의 적극적 참여를—

朴 商 浩—石林建築代表/本誌 編纂委員長

일제하의 36년과 똑같은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민족박물관 운운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주로 50代 이상인 사람들은 日帝下의 暗黑時代와 軍政, 六.二五 등등 파란곡절에 시달려 오다보니 자연히 自身과 祖国·民族·国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88년 올림픽과 관련이 있건 없건간에 중앙청을 박물관으로한다, 또는 고친다, 새로 짓는다, 철거한다 등등의 의견을 신문지상을 통해 보고 건축인의 한사람으로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생각되는 의견을 적어볼까 한다.

더우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독립기념관 건립이 논의되고 결국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서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모금운동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생각케 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민족박물관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국제박물관회의(ICOM)의 정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社会와 그 発展에 奉仕하기 위한 人類와 그 환경에 관하여 物的 증거를 연구, 교육 혹은 慰樂을 目的으로 하여 수집하고 보관하고 연구하고 伝達하고 展示하며 営利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恒久機関」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社会와 그 発展에 奉仕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의 과거의 怨과 恨에 맺힌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그러한 物的 증거와 자료를 수집·보관·연구하는 장소가 필요하며 그러한 장소에 역사적 精神史를 심어 보이고 전달해야 겠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에게도 과거의 文化的인 유산이 있었고 이것이 어떤 곡절로 변천되어 가서 일제하의 암흑시대에는 어떠하였고 생활·문화, 각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 가를 제시하고 해방후 오늘의 현실 그리고 내일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슬기로운 韓国민족으로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自覚할줄 아는 動機부여가 되도록 각종 산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박물관은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위스에는 時計박물관이 있고 덴마크에는 軍事박물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民族史를 보존하는 박물관 혹은 怨과 恨을 승화시킨 独立記念館, 아니면 光復館, 6.25館 등등 적절한 기념관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람은 가고 그 行跡만 남는다. 시대는 가도 그 시대의 歴史만은 남는 법이다. 그러나 人間은 忘却의 동물로서 一定한 分量以外에는 특히 기억할만한 사연이 없이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잊게되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도 많다.

잊어서 좋은 일이 있고, 잊어 버리지 말아야할 일이 있고, 반드시 남겨야만 되는 사실도 있다. 나 한사람이 오늘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요 同時代 같은 핏줄의 집단이 계속 흔적을 남기고 살아온 것이기에 그래도 옳은 길, 바른 行跡이 이런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남기며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人間의 精神史에 영원히 길이 남을 역사와, 民族의 울분, 독립의 희열, 同族間의 相爭인 6.25의 참상, 월남파병의 意志, 그후의 민족중흥의 기치 등등 이 모두 우리 民族의 혼이며 行跡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熱砂의 中東에서 적도상의 아프리카에서 까지 民族의 忍耐性과 근면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후손에게 남기어 보여야 할, 후손들이 와서 先祖의 기억을 되살릴 場所·広場·記念館·図書館·연구·토의·자료실을 우리의 건축인의 손으로 계획하고 완성하여 오랜동안 우리 후손에게 民族 精神史의 支柱가 되게 하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場所가 되게 하고, 누가 잘못했으며 누가 잘한 것인가, 또는 어느 時代에서 우리의 先祖가 부끄러운 일들로만 날을 보낸 것인가? 그러면 오늘의 나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場所, 覚性의 場이 되도록 해야겠다.

최근에 와서 民間박물관도 몇군데 개관되었으나 모두 한결같이 韓国建築様式만을 모방한 木造가 아닌 木造形의 건축물이다.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고 現代의 文化的 世流나 과학기술에 따른 건축재료, 工法 등이 발전·개발되고 있고 또한 이곳이 한국이란 땅이기에 풍토에 맞는 재료의 특성과 生態的 특징이 있다고 믿는다.

소나무가 많은 산, 바위가 많이 보이는 언덕등등 이러한 모든 우리의 풍토, 나무와 풀과 꽃, 그리고 흙과 돌의 특성 등이 조화된 造形意志가 전문가의 손과 두뇌로 계획·造形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앞으로 建立될 기념관의 위치 또한 중요한 것이며, 場所的인 脈絡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치와 장소는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의 기억이 되살려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간 5.16 이후 현충사와 같이 일부 정신적인 민족혼을 일깨워주는 일들이 완성된 예는 없지 않았으나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좋은 국가적인 사업에는 전국민이 합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記念건물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훌륭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예는 中央庁과 南大門을 軸으로 하고 있는 世宗路네거리 혹은 일부 都心地의 文化財건물이 있는 주변의 각종 현대 건축물들에서 느끼게 된다.

개개의 건축물은 훌륭하다해도 그 위치에 모여 어울릴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우리의 한국적 자연은 어느 다른 나라 首都에 보기 드물게 서울의 경우는 都心 가까이 風致 좋은 산이 근접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환경의 배경조건도 생각해야 겠다. 이번에 建立할 記念館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로는 바로 来年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 벌써 設計가 끝났다는 말인가? 좀더 깊이 있고 여유있게 처리돼야 하고 각계 전문가 특히 건축계의 人士가 발기인에 한명도 없다는 점은 유감스런 일이나 지금도 늦지않으니 立案, 計劃의 측근에서 主導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建築界에도 실제 실무를 담당할 建築士協会会員들과 建築学会, 建築家協会 등이 健在하고 있어 적어도 건축 각계의 종합적으로 압축된 의견과 案에 의해서 成案이 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며 위치선정이나 계획이 잘못되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放置되고 있거나 잊혀져가고 있는 歴史의 場이 있으면 작으면 작은데로 잘 昇華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적정신의 道場이 되도록 해야겠다. (*)

定期理事會개최

제8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8일 오후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玧會회장 주재로 지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지침마련과 설계도서신고 사무취급규정개정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주요업무보고로는 지난 8월28일에 개최된 지부장회의 결과와 대구건축사회관 준공, 역대회장 간담회, 건축3단체조찬회, 직원인사이동 사항 등이 보고 되었다.

제4회 支部長 會議

제4회 지부장회의가 지난달 28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시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具玧會회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보고된 주요업무로는 82년도 건축사시험합격자에 발표 내용과 분석결과, 회비미납자에 대한 처리, 분소장취임승인, 전기통신공사설계용역입찰거부, 사정회의 참석, 건축관계법령집 발간준비, 정기감사계획, 전시회 종료, 세무감사수감, 지부장회의 협의사항처리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협의사항으로는 8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안에 대한 협의와 설계도서 심의위원회 설치안, 건축정보자료실운영, 강정업무전담 및 연구실운영, 83년도 회원작품전, 체육대회 부활, 제반정관개정안 등이 차례로 논의되었다.

協會 人事이동 실시

本部 · 支部 직원 8명

본회 본부 및 일부 지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지난달 19일 실시되었다.

이날 시행된 인사이동은 본부 출판사업부장을 비롯 공석 중이던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발령과 일부 직원에 대한 보직 변경 및 승진 등으로 대상인원은 모두 8명에 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본회 회장실에서 있었던 사령장 수여식에서 具玧會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회원설계사무소의 운영이 날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본협회가 진정한 회원을 위한 협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자세 확립과 보다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종래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일소하고 이번 인사를 계기로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회원이 마음놓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전직임)

□金東國=본부출판사업부장 (서울지부 기술부장) □尹容震=경기지부 사무국장(서울지부 총무부장) □辛平基=서울지부 기술부장(서울지부 기술과장) □李正男=서울지부 총무부장(본부경리과장) □金雄謙=서울지부 기술역(본부 기술과장) □ 權重浩=승급(경기지부 총무과장) □權五成=본부경리과장(본부기획과장) □金聖培=본부기술과장(본부지도과장)

歷代會長團 초청 간담회

본회 역대회장초청간담회가 지난 8월17일 본회 회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오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6명의 전임회장과 具玧會회장, 그리고 金基壽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는 협회현황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의견교환에 이어 업무량 감소에 따른 회원설계사무소의 운영난 대책강구 등이 논의되었으며, 그밖에 비위회원 처리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아울러 건축행정전반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개진이 있었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이밖에도 협회의 전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

三團体 조찬회 가져

건축3단체 정기 조찬회가 지난달 25일 시내 호텔롯데에서 오전 8시에 있었다.

건축학회 주관으로 본회 具玧會회장 및 金根德건축학회회장, 李丞雨건축가협회 회장과 각 단체 소속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건축계 전반에 걸친 공동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등이 있었으며 주로 대학 졸업자에 대한 건축사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건축사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도서 10년 보관문제, 학회회관건립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그밖에 건축전문국설치, 학회 및 가협회 행사문제 등에 대한 의견교환과 건축 3단체 공동간담회 추진 등이 합의사항으로 논의되었다.

編纂委員會

회지의 종합 합평과 편집계획 수립을 위한 편찬위원회(위원장 朴商浩)가 지난 월초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9회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호에 대한 합평에 이어 9월편집계획수립에 들어 갔다.

특히 이번 9월호는 경기 특집호로 주택을 위주로 한 칼라판 제작계획에 따라 많은 회원작품과 곁들인 주택관계 논문 등이 수록케 된다.

약15~20여개의 회원작품과 3~4편의 주택관계논문 등을 비롯해서 해외작품, 자료 등이 폭넓게 게재되는 이번 9월특집호는 약120여면으로 증가되서 발간할 계획이다.

設計圖書分科委

제3회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李丞雨)가 지난 8월30일 본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1차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에 이어 이를 토대로 한 설계도서 기준설정을 위해 방향설정 등

을 논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에 적용할 도면검토 요점의 정리와 작도기준설정(도면작도표현방법의 요령)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한 후 해외입수자료 등을 참고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작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設備分科委

제 4 회 설비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尹鳳源)가 지난달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검토한데 이어 83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실적인 4편의 논문(건축과 공기조화의 계획Ⅰ·Ⅱ, 건축과 방재, 건축반송설비표준 시방서)을 회지를 통해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건축사보수교육과 병행해서 설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연구실적논문을 회지를 통해 4회에 걸쳐 발표키로 했다.

□설비분과위원회

동 분과위원회의 차기 모임은 오는 10월중순에 열기로 했다.

大邱建築士會館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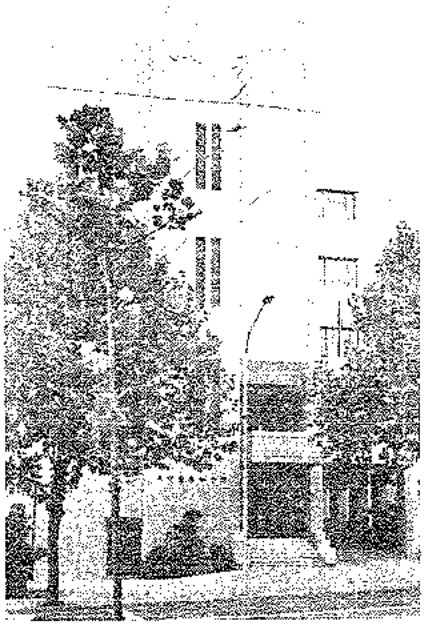

대구지부(지부장 金在佑) 회원들의 요람이 될 건축사회관이 착공 10여개월만에 완공, 지난달 28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시내 수송구 범어동 3가 1－8에 자리잡은 신축회관에서 있었던 개관식에는 具玧會회장을 비롯한 본협회임원, 金在佑지부장 및 소속회원, 그리고 대구직할시 도시환경국장 등 3백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테이프를 끊었다.

소속회원인 金武權(현대 건축연구소) 회원이 설계한 신축회관은 8백32㎡의 대지위에 건축면적 3백66㎡, 연건평 약 2천㎡의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날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개관식에 이어 베풀어진 기념연에는 참석인사 등이 모두 모여 환담을 나누며 신축회관을 둘러 보기도 했다. 신축회관 4층에는 지부 사무실이 자리잡게 되며 5층은 회의실, 그리고 기타 층은 임대할 예정이다.

'88人類祭典 위해 建築藝術 가다듬자

"훌륭한 作品 위해 汎建築人의 參與 바람직"

崔 昌 奎—신진건축 대표

□건축전문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計劃·推進을 主導해야

한 國家나 한 民族이 자주독립을 하여 國家를 형성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더우기 國號·領土·主權·國民의 네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을 때만이 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다만 이때 國號나 主權은 가변성을 지니며 領土와 國民은 거의 불변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민족이나 국가가 역사적으로 쇠퇴하거나 융성하거나 또는 멸망이나 독립하는 것은 국가의 4대요소 중의 가변성 있는 2개의 요소에 의한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建國이 아닌 한 나라의 獨立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獨立이란 어떤 한 국가가 他國家나 他民族에 의해 침범·식민화·속국·멸망을 했다가 다시 완전한 국가로서 회복하여 建國한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벗어나 國號와 主權을 확립한 것은 확실히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고구려·백제가 합쳐서 통일 신라가 되어 하나의 국가적 면모를 갖춘 것은 독립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것이지만 명나라나 淸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났던 에에한 시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만 할까. 이렇듯 독립이라는 語義는 매우 抽象的이어서 마치 愛國이나 愛族의 동의어로 변질된 느낌마저 든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獨立의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리핀이 포르투갈이나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리살이 가비데灣에서 봉화를 올리는 등, 오랜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에 의해 획득한 독립,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비교적 적은 파란을 겪고 얻은 독립, 터키의 케말 파샤가 주도하여 페르샤나 소련으로부터 벗어난 자주적 독립, 마야나 잉카帝國이 멸망한 후 3백년이 지나서야 그들에게서 되찾아 낸 멕시코와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들의 獨立史, 금세기에 들어와 결실을 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독립 등등 다양한 성격의 투쟁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모두가 民族主義를 내세워 독립을 쟁취하였다는 공통점에서 볼 때 국가형성 요소 중의 人的要素인 국민의 단결된 力量이 그들에게 강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국가의 4대요소 가운데 불변의 요소가 비중있게 작용하여 결국 독립을 쟁취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 후, 가변요소인 國號와 主權의 변동이 왜 심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나를 생각해 볼 때 각 요소간에 매우 아리송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民族史를 밝혀 未來를 제시하는 道場으로서의 機能 다해야

어떤 이는 독립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광복이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國號가 다르니까 건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궁극적인 뜻은 동일하지만 그 표현이 다른 것은 독립한 과정의 양상과 방법, 수단과 시대적인 감각의 차이라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몇가지의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 독립이냐 광복이냐. 둘째, 기념관인가 박물관인가. 세째, 쟁취대상을 일본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 淸國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네째, 과연 우리의 자주적인 力量과 행동으로 독립을 쟁취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他力, 즉 국제적 상황이 우리에게 독립을 안겨 주었는가. 다섯째, 독립된 지 40년이 가까워 오는데 왜 지금까지 독립기념관 건립은 생각치도 못했었는가. 여섯째, 따라서 이상의 5개 항목의 질문을 종합하여 보면 꼭 독립이란 이름으로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첨가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명석한 해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구차한 변명과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 명료한 答은 역사적·정치적인 면에서 보다 오히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獨立記念館 보다는 民族 博物館 건립이 바람직 해

국민 각자의 입장과 분야에 따라 이에 대한 답은 각양각색일 줄로 안다. 나는 내 자신의 설문에 나의 입장과 분야에 입각해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볼까 한다. 나의 답변은 객관적·이론적 체계가 정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一個 無名의 建築人으로서의 견해일 뿐이다.

첫째, 독립이냐 광복이냐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은 아니고 광복도 아닌 解放이라는 답을 내리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립은 장기간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투쟁이 국내외에서 행해지긴 했어도 결정적인 단계에 와서는 세계 강대국들의 의사에 의해 운좋게 얻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민족적인 투쟁과 운동이 작용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으나 결국 강대국들의 국제적·외교적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왠지 떳떳하게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외칠 수만은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두번째, 기념관이냐 박물관이냐에 대해서는 마땅히 박물관이라고 해야 좋을 것 같다. 이유는 建築的인 측면에서 볼 때 기념관만이 기념성이 있고 박

물관은 기념성이 적다는 그러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며, 독립에 대한 기록·유물·史料·사진 등과 기타 이에 관한 것들을 진열·전시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참관하고 기억·회상·분발·연구·자각·결의같은 어떤 계몽과 교육적인 뜻을 가져야 한다면 박물관이어야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한 개인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기념성이나 관광성, 역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건축에서 흔히 말하는 바이므로 꼭 기념관이라고 해야 기념성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세째, 독립대상을 일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建國以來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시기의 유물과 고증, 史料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좋을 것 같다.

네째, 우리가 말하는 독립 당시의 국제적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만약 요즈음 휘몰아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물풍이 없었다 해도 독립기념관 건립의 문제가 대두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나의 소견에 의해 볼 때 독립기념관이라기 보다는 建國以來의 大歷史博物館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된다.

이상에서 나는 요즈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즈음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建築이라는 분야에서 볼 때 사회적 大勢에 의해 건립될 건물이 독립기념관이든 역사박물관이든 간에 그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意見 또한 없을 수 없다. 즉 대지·위치·규모·조형 또는 건립하는 방법과 수단·시기·관리 등등의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신문에서 盤地문제에 대해 보았다. 남산의 옛 朝鮮神宮 자리와 사직공원·파고다공원 등의 견해가 분분한 모양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왜 반드시 서울에다만 건립해야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首都임에 틀림없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본래의 의의를 다소 외면한 것이다. 오히려 태백산 정상 檀君出誕地에 넓게 자리잡고 유스호스텔이나 훈련교장으로 병행해서 전국민, 특히 어린 학생 등의 수학여행이나 교육장으로 이용토록 하는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밖에 단체나 공무원들이 합숙훈련교육을 받거나 보이 스카웃 또는 걸 스카웃의 국내외행사 등도 치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

□ 位置, 場所… 서울 중심 피하고 全國民이 이용할 수련도장기능 갖춰야

규모면에서도 이왕 하는 바에는 대담하게 거대한 국민의 大敎育場으로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생각해 보면 전국에 수많은 골프장은 부지나 자연을 얼마나 해쳤으며 엄청난 자금이 출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88년 올림픽에 사용될 대지규모나 투자금액을 생각할 때 과연 이번 독립기념관이든 민족박물관이든 간에 규모나 투자범위의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획해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관광지인 경주의 보문단지, 제주의 중문단지, 혹은 골프장이나 올림픽의 규모, 투자범위 등과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투자한계 등에 대한 간접적인 제시는 가능되리라 믿는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건축적인 면에서도 해야려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조형적으로는 어떤 양식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아마도 李朝 건축양식이 될 것이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의 뽕피두기념관 및 터키·인도·페루·이스라엘의 같은 종류의 기념관 건물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그 나라의 전통건축양식을 따서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따져 보면 이조의 건축양식이 우리의 上古代부터의 양식도 아니며 또 이조 5백년이 우리 전통의 전부도 아닐텐데 우리는 전통건축이라면 이조시대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 같으며, 특히 정확도도 없는 불충분한 연구로서 전통을 운위함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한 예로서 강화의 고적을 보수한 것을 보면 이조말기(아주 가까운 과거)에 그런 단청을 했었는가? 특정인의 기호나 취미가 곧 고증이 되어버린 이 실정에서 전통양식 따위는 아무리 독립의 시간성에 비추어 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기념관의 조형이나 양식은 마땅히 전문가인 건축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선호로서 결정지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건물의 기본계획에서부터 모든 건축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개현상에 부쳐져야 할 것이고 知名度나 권위주의적인 특정건축가에게만 맡길 일이 못된다. 어디까지나 현상설계를 통한 선의의 경쟁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 선정도 우리의 기념관 건립에 외국인의 심사가 무슨 소용이냐는 식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반수 이상의 외국인 건축가의 심사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그들의 국내설계경기에 외국인 심사위원을 동원하는 것도 그들에게 체통이나 大家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 현상공모 통한 記念碑的인 훌륭한 建築物 마련 기대

이러한 제안은 그 건물이 영원히 우리 민족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진정 귀중한 건물이 되게 하려면 졸속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그 과정과 수단에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리하여 우리가 아끼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는 개성이 없는 모양만의 건물을 많이 보아왔다. 때문에 명실공히 공평한 공개설계경기를 통해 이 나라의 뜻있는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훌륭한 작품을 선택해 내야만 기념관의 건립정신이나 목적에도 부합될 줄 안다. 덧붙인다면 구차하고 까다로운 응모규정 따위로 제한을 주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최근 우리 주변에서 요원의 불처럼 일어난 독립기념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두서없이 나열

했으나 과연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풍토가 지금까지 그런 국가적 또는 민족적 大事에는 다소 피동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말이다.

우리는 독립이라는 문제를 격앙된 감정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순수하고 진정한 독립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만 같다.

바라건데 민족이나 역사의 양심으로, 기념관을 건립하여야 하며 또 국민 전체 의지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부디 앞으로 세워질 기념관이 우리 민족의 얼을 담는 훌륭한 그릇으로서 건립되기를 바라며 이상의 글은 필자 개인의 소견임을 밝힌다.

"民族 意志의 結晶体인 建築物로 세워야"

姜 哲 求 —同宇建築設計事務所代表 / 本誌編纂委員

□ 시행착오 없도록 충분한 연구 · 검토 후에 착수해야

이번 汎国民的으로 추진되는 独立記念館을 건립함에 있어 비록 그것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 歪曲事件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방법에 따라 건축계에서 관심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론된 지 오래도록 참여의 움직임이 없으니 정말로 건축사들은 〈명단〉에도 못끼는 무엇무엇이란 말인가. 쉽게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 건축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 무슨무슨 위원회에 끼거나 말거나 떨어지는 감은 저절로 입속에 들어오니(?) 크게 신경쓸 일은 못된다 하더라도 순간의 씁쓸함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나 같은 時代에서 민족적인 대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엉뚱한 방법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두는 조치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사회에 건축문화가 진흥될 수 있는 몇가지의 커다란 사업이 있었으나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것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보다는 예방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건립되어지는 독립기념관은 그 기능이나 형식, 표현되는 像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 다시 되풀이되는 과거의 전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체화되기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서 장소선택과 시간설정(기획에서 완공까지)이 중요하다. 장소라 함은 기념관의 여러 기능중 가장 으뜸으로서 기념관의 성격으로 보아 종로 네거리의 번화한 상업지역으로 정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일반대중이 이용하기 불편한 거리에 동떨어지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도시란 항상 변화하며 움직이는 것이므로 지금의 時点에서 좋은 자리가 몇십년 후에도 좋다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하므로 그 선정장소는 전문가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건축사의 독립기념관 건립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속된 말로 미리 된장 다 풀어놓고 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소는 아무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은, 바로 건축사는 건물에만 간여해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립도서관으로 남산 어린이회관을 보수하여 쓰고 있는데 우선 건물자체의 건축적인 특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장소선택의 무모함에 실망이 컸었고 그 移転地도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는 說이 있어 이번 독립기념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 民族의 얼을 담는 殿堂으로 藝術的 · 記念碑的 價値지닌 作品期待

그 다음의 문제로 時間이다. 고대 역사 속의 기념관처럼 몇십년 몇백년을 두고 이어져 내려오며 세우기에는 사회여건이나 時代性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못하겠으나 금방 달구어진 것은 바로 식어지는 법이므로 되도록 무리없는 일정으로 해야 될 것이다. 흔히 몇개월 동안 설계하고 몇년 동안 공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만족할 만한 것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하였다〉 뿐이지 〈민족적인 지혜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살아 있는 無言의 교육장소〉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과업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당대에는 훌륭한 건물이라도 그 時代가 지나고 보면 보이지 않던 恥部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다듬어 질수록 그 건물의 質은 좋아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時間을 초월하는 건물로서 오래도록 남겨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능률만을 내세워 재빨리 해치우는 것으로 시간계획이 세워진다면 벽돌 한장한장을 모아 세우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 건축관계 실무자에게도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미래에 대한 眼目을 미처 정리할 시간도 없이 과업이 맡겨 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이미 있었던 우리사회의 건축분야를 더욱 새로운 건축분야로 창조해 갈 수 있다면 독립기념관의 건립은 그 자체의 민족적인 意義와 더불어 우리 건축분야에서도 새로운 하나의 章으로서 기록될 것이다.

지나간 때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또 다시 있게되지 않을 독립기념관 건립은 그 설립이유나 목적으로 보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하나의 사업으로만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의 검토 아래 세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住居環境 이대로 좋은가?

朱 鍾 元—서울大學校 工科大學 敎授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LIVING ENVIRONMENT

Chu, Chong Won—Professor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1. 序 論

住宅은 은신처·프라이버시·立地·환경의 쾌적성 및 투자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은신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住宅은 비·바람과 적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게 된다. 原始社會에서는 큰지붕 밑에 男子만이 거처했고 또한 큰지붕 밑에는 女子만이 거처했다. 軍人의 거처를 위하여 큰 바라크가 마련되고 수해나 지진·화재의 피해를 입은 자는 학교교실이나 강당에 수용된다. 2차대전 때에는 지하철이 방공호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곧 인간의 은신처가 된 셈이다.

住宅은 은신처 이상의 복잡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분리된 은신처를 갖고 싶어 한다. 家族單位로 마련된 은신처를 住宅이라고 볼 수 있고 個人單位로 마련된 은신처를 房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物理的인 개념보다는 사회적인 개념이 있다. 원시시대에는 여러사람이 한 지붕밑에 살았지만 그 안은 다시 구분되었고 大家族制度에서 單位家族制度로 바뀌어졌다.

프라이버시는 立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프라이버시를 얻기 위하여는 분산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立地의 質이 또한 문제인데 교통관계가 그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住宅은 환경의 쾌적성, 즉 주위환경·통학거리·학교의 質, 위신(Prestige), 경찰과 소방시설·공원·놀이터·병원, 그 마을의 경관·草木·展望 및 기후가 住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끝으로 住宅은 투자하고 사는 곳이다. 住宅의 규모가 家族構成員에 알맞으면 心理的으로나 財政的으로 안정감을 준다. 住宅價格은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住宅을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처분하여 事業資金으로 이용하려는 意圖가 주택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住宅建築을 설계할 때에는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6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都市에서 일어나고 있는 住宅設計 및 建築을 앞에서 설명한 6가지 觀點 중에서 環境의 쾌적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소 음

自動車가 大量으로 보급하게 됨에 따라 도로에서 생기는 자동차 소음이 住居環境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소음의 發生原因은 엔진·흡배기·경음기·走行소음 등인데 이것은 차량의 종류·통과량·속도 등에 따라 그 强度가 달라진다.

소음의 强度 혹은 크기를 나타내는 單位로 데시벨(Decibel=dB)이 사용되는데 人間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0~130dB이며 45~85dB에서 가장 민감하다. 교통소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파수 가중치를 더하여 국제적으로 dB(A)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대략 평균하여 보면 조용한 정원 30dB, 조용한 주택 42dB, 조용한 주거지역 48dB, 대화시 62dB, 시내교통로 70dB, 러시아워시 교통로 90dB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住居地域의 소음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치를 권장하고 있다.

外部騷音標準値 (dB)

등급	A			B			C		
	昼	朝夕	夜	昼	朝夕	夜	昼	朝夕	夜
외부소음	65	65	60	65	60	55	60	55	50

(자료 : 建設部, 住居團地의 設計 및 開發基準에 관한 硏究 1981.)

그런데 반포 住公아파트 2~3團地 소음측정 결과(반포 2~3지구 아파트團地 조경설계 報告書, 1977·大韓住宅公社)에 의하면 도로변의 소음이 평균 77dB, 단지 중앙부가 45dB, 도로모서리가 81dB로 되어 있었고(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강변 主要街路網 주변의 고층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75dB로 나타났다.

소음에 대한 人間의 반응을 보면

55dB 이하—소음을 느끼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55~60dB—가끔 불평을 토로한다.

60~65dB—불평이 많이 일어나고 소수인이 강한 반응을 일으킨다.

70~75dB—소음방지를 위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80~85dB—소음방지를 강하게 사회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소음공해에 의한 人間의 피해는 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시끄러움과 불쾌감, 대화의 방해, 전화통화 방해, 라디오 및 텔리비젼 등의 청취 방해, 독서·휴식·수면등의 방해 ② 정신적 심리적인 영향으로—정서적 불안정, 공격적인 성격의 형성, 피로의 유발, 불면증 및 이상의 결과로 오는 질환 ③ 生理的인 영향으로는—혈압상승·맥박증가·말초혈관수축·호흡회수 증가·혈압순환 저해·위수축운동 감퇴·혈당량 증가 ④ 신체적인 영향으로— 75~120dB의 소음이면

소음성 난청유발, 일시적 청력손실 등으로 마루어 볼 때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建築하고 있는 住宅, 특히 아파트를 보면 소음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 많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도 소음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와같은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많은 시민이 소음공해로 인하여 건강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住居環境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는 ① 音源의 소음 레벨을 감소시키는 방안 ② 音源으로부터 團地를 차단하는 방안 ③ 住戶棟에 防音 設備를 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둘째와 셋째 방안은 대개 團地設計 및 建物配置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주거환경에서의 소음은 屋外騷音이 屋內騷音 이상으로 불평의 요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둘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참고) 소음의 감소방안

1. 音源의 소음 Level을 감소시키는 방안
   ① 계획지구의 주거 및 도로의 재배치
   ② 交通流를 집중시킴－교통량의 넓은 지역에의 확산을 막고 한곳으로 집중시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
   ③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차량의 정지 및 재출발의 빈도를 줄여 소음의 발생을 줄임
   ④ 대형차량의 통과 규제
   ⑤ 차량 속도의 규제

2. 音源으로부터 단지를 차단하는 방안
   ① 공간적 분리 (Spatial Sepa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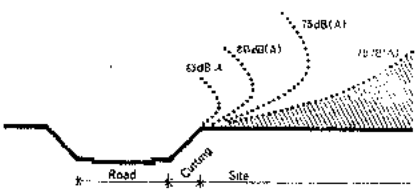

㉠ 커팅 (Cutting)에 의한 방법
(빗금친 부분은 택지로서 합당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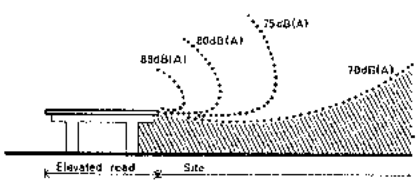

㉡ 고가도로의 설치에 의한 방법 (빗금 친 부분은 택지로서 합당한 지역)

이 방법으로는 도로 자체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저층 주택개발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보통 고가도로 자체가 도로의 윗 부분에 건설됨으로 인해 지층도로의 소음을 고가도로가 반사시켜 소음레벨을 오히려 높힐 우려가 있다.
- 고가도로의 북쪽지역의 경우 일조 및 일사량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 사람들은 보통 타인이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머리 위에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므로 주거로부터 고가도로가 잘 보이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주거의 질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다.

② 방음벽 (Barrier)의 설치－방음벽의 설치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 방음벽의 설치－저층 주택지의 경우 2 m～3 m의 방음벽으로서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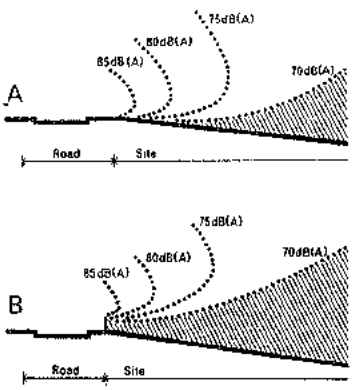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B)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A)의 소음 분포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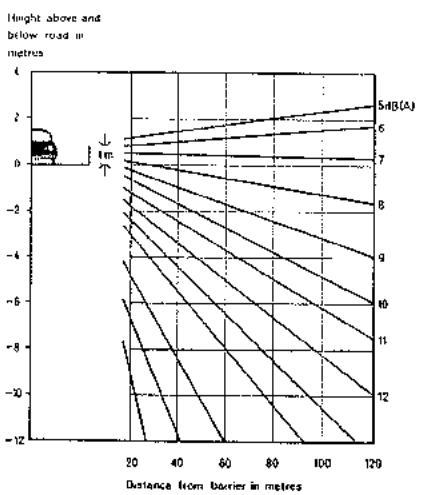

1 m 높이의 방음벽에 의한 소음의 감소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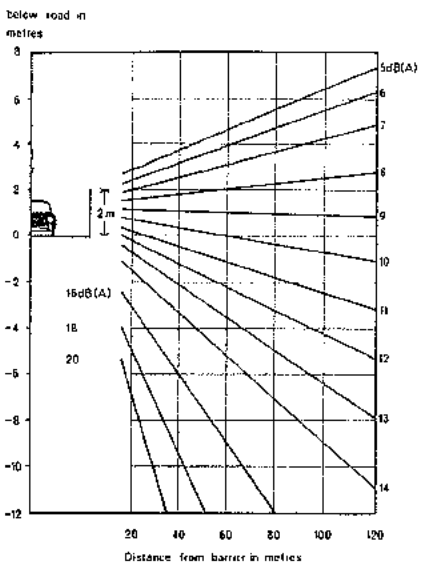

2 m 높이의 방음벽에 의한 소음의 감소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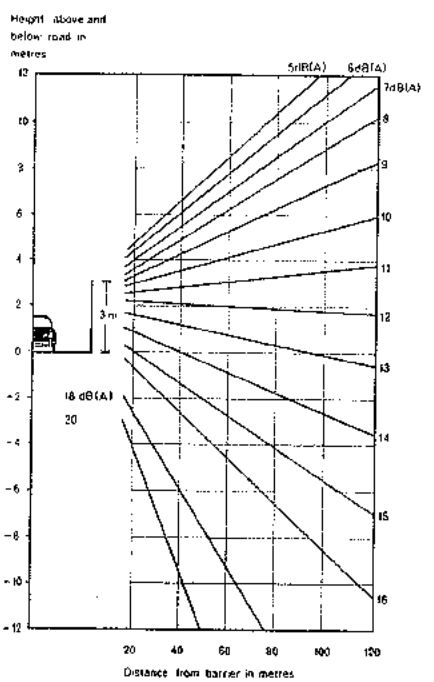

3 m 높이의 방음벽에 의한 소음의 감소정도

㉡ 방음 블럭 (Barrier Block)의 설치－주거단지가 중층 이상인 경우 방음벽으로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한쪽 방향으로만 창문이 있는

住棟이나다층(Multi Story)의 창고 건물로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블럭(Barrier Block)을 형성하게 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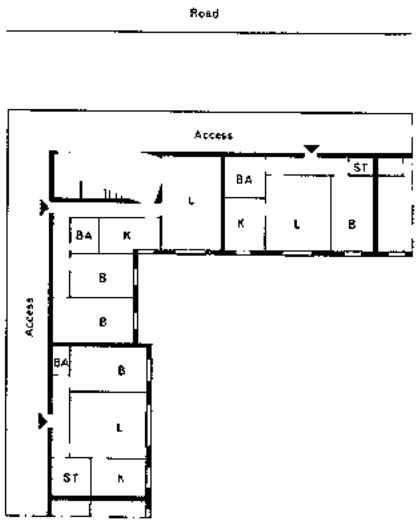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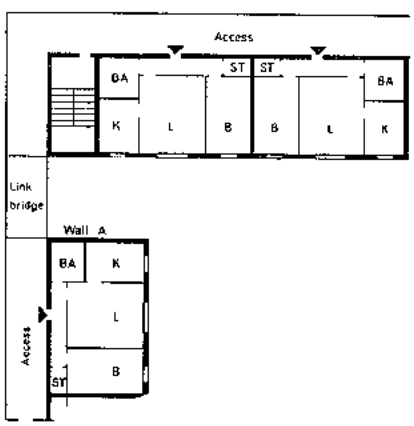

방음블럭의 예

그러나 방음블럭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외부 인접택지에 소음을 반사하여 인접지의 소음레벨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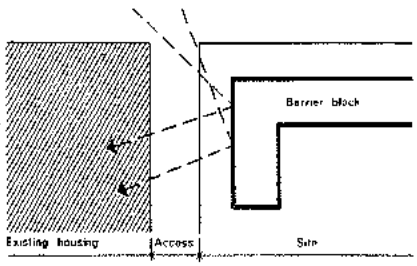

그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음블럭을 설치하고 소음에 노출되는 부분에 주차시설이나 높이터 등 소음에 영향을 적게 받는 시설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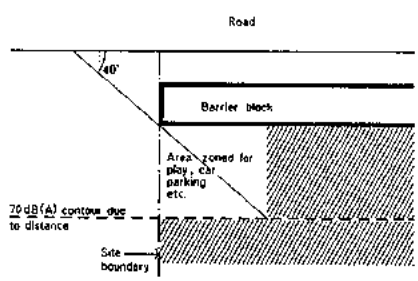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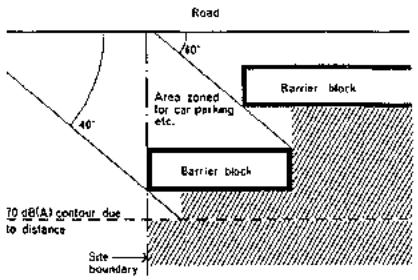

3. 住戸棟에 방음설비를 하는 방안

1·2항에서 설명한 외부에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과 더불어 주거자체에서 방음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효과가 없을 경우 이 방법이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외부 소음이 70dB(A) 정도일 경우 주택자체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20dB 정도의 차음, 바람직하게는 25－30 dB(A) 정도의 소음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외부의 소음레벨이 높아질수록 방음의 정도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각종 자재의 방음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Window type	Approximate sound insulation in dB(A)
Wide-open window	About 5
Slightly-open single window	10 - 15
Closed 'openable' single window	18 - 20
Sealed single window with powered extractor fan in window:	
3mm glass	23*
4mm glass	25*
6mm glass	27*
10mm glass	30*
Double window with staggered opening lights giving 5% 'indirect' ventilation (any weight of glass, with an air-space of 200mm and absorbent-lined reveals):	
When opening lights used for ventilation	20
When opening lights not required for ventilation	33
Double window with an air-space of 200mm and absorbent-lined reveals, outer light fixed, inner light openable but well fitted:	
4mm glass	40
6mm glass	42

* The figures given are for when the fan is shut off. When the fan is operating and the fan hood or shutters are open there is approximately a 5dB(A) reduction in sound insulation.

3. 暖 房

暖房은 그 施設의 耐久年限이 구조의 그것보다 짧기 때문에 構造物의 耐久年限이 다할때까지 3～4번 代替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施設이 各住戸를 골고루 暖房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함이 있다. 즉 1층과 最上層의 住戸의 暖房은 그 中間層에 있는 住戸보다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層이나 最上層 그리고 側面에 있는 住戸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것은 그 位置에 따른 조건이 같지 않은데 暖房器具(라디에타나 콘벡터)를 균일하게 설치한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暖房施設의 耐久年限을 고려하여 그것을 代替할 수 있는 基金의 積立이 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많은 아파트가 老朽化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暖房뿐만 아니라, 給排水設備 및 엘리베이터設備에도 같이 代替하는 것을 고려하여야겠다.

그리고 暖房은 各住戸의 1外氣에 면한 조건에 의한 暖房負荷를 생각하여 난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골고루 모든 住戸가 쾌적하게 되어야겠다. 이는 특히 暖房技術者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4. 진개처리

單獨住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특히 아파트에서는 진개처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 1층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진개로 인한 악취와 파리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진개 중의 많은 부분이 유기질이기 때문에 그

것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특히 수거시에는 문제가 대단히 크다.

이것은 다스트슈트의 設置方法의 개선 및 各住民이 진개를 버리는 방법의 개선(부패하는 것은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버린다면가) 등이 요구된다.

5. 建物의 形態와 住居環境

建物의 형태와 주위환경이 인간의 심리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힘들어도 좋은 建物形態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본항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의 환경을 사진으로 보며 환경의 문제점 및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環境은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도 잘 가꾸면 좋은 環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住宅들을 둘러싼 自然에 비하여 人工的으로 만들어 놓은 環境은 너무도 너저분하다.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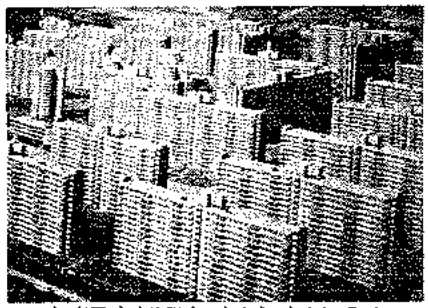

이 高層아파트群은 냉정한 인상을 주며 非人間的이다. 그러나 우리는 土地가 制限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것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도리는 없을까?

이 韓屋은 인정미가 흐르고 구수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향취를 풍기고 있다. 이와같은 모양으로 할 수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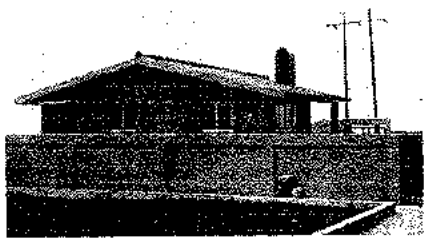

단순하게 처리한 지붕과 울담은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지붕구조의 처리. 이와같은 住宅은 1970년대에 많이 지어졌는데 지붕이 그 本來의 기능 외에 또다른 무엇을 추구하려 한 것 같다.

단순하게 처리된 지붕이며 난간의 처리는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住宅은 1960년대에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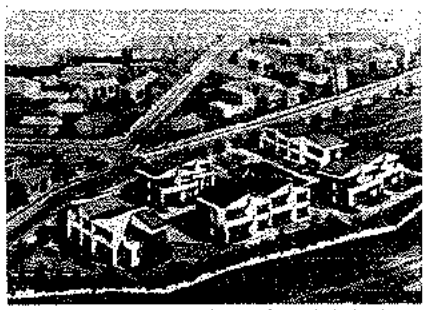

이해하기 힘든 지붕구조의 처리방법. 이들 집의 形態가 住居環境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까?

單純하면서도 人間的인 집의 形態가 住居環境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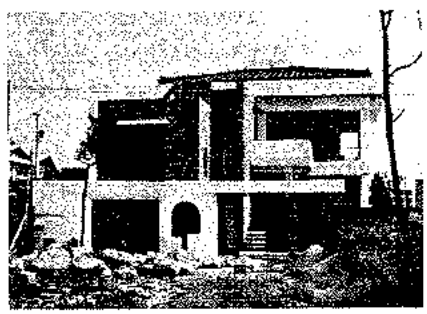

面處理가 복잡하여 費用을 들인만큼 좋은 環境을 조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많치 않은 종류로 단순하게 처리하여 밝은 인상을 주며 그 주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에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設計가 잘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같은 建物이 반복됨으로써 주는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말쑥하게 단장한 연립주택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두개씩 비스듬히 내려온 間壁이다.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왜 이와같은 大門처리를 하였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마도 위엄(Prestige)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住宅 自体나 주위환경에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韓屋의 아름다움은 벽의 모양 처리에서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어디에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왜 이와같은 아름다움이 전승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상하게 만들어진 지붕구조와 울담 및 大門은 그리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을 통하여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평가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평가는 어디까지나 筆者의 主觀에 의한 것이고 讀者가 공감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讀者 나름대로 평가하기 바란다.

이상 그림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좋은 環境과 좋지않은 環境이 共存하고 있는 都市에서 가능한한 그 진폭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겠는데 그것은 官民이 협동하여야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즉 官에서는 下部施設을 위하여 투자하고 住民은 建物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이다.

그리고 住居形式의 多樣化와 中庭住宅(韓屋을 發展시킨)의 開發로 우리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住居形態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住宅의 지붕형태이다. 지붕에서 프랑스식이니 혹은 스페인식이니 하며 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붕으로의 기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환경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 것보다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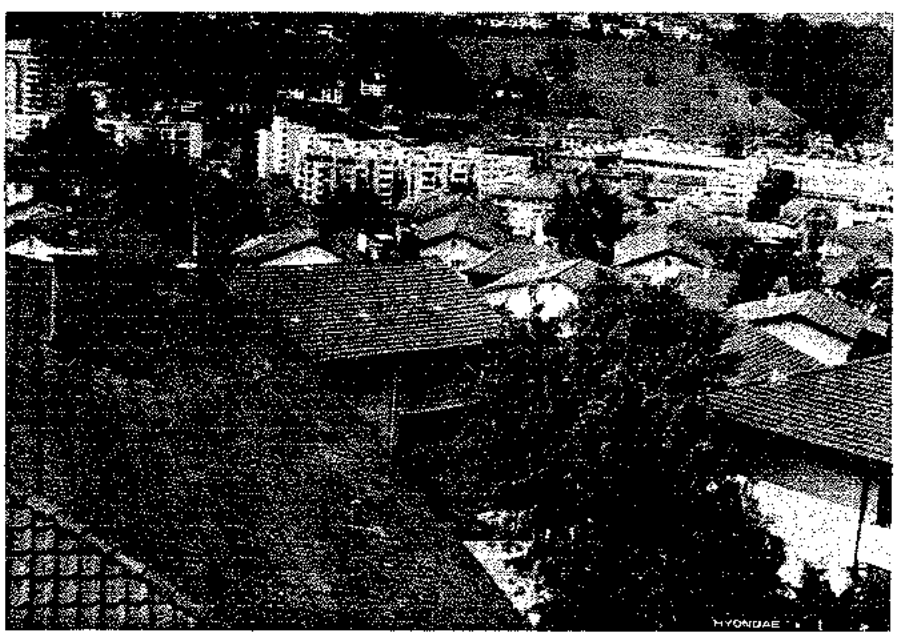

스위스 쥬리히의 住宅 지붕形態

筆者가 여행 중에 스위스의 쥬리히에서 찍은 위에서 보는 사진에서도 지붕모양은 단순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를 다녀보아도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유행했던 것과 같은 지붕형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하루속히 바로잡고 內部에서 신속을 찾을 수 있는 住宅을 발전시켜야 하리라 생각된다.

住宅設計에 있어서의 合理와 情緒의 調和

朴 暾 緖 — 亞洲大學校 敎授

THE HARMONY OF RATIONALITY WITH EMOTION IN HOUSE DESIGN

Park, Don Seo—Professor / AJOU University

住宅特輯의 한 부분으로 単独住宅에 관한 原稿請託을 받고 평소 필자가 느낀 문제들을 일정한 체계없이 적어 볼까 한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문제들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면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바가 될 것이고, 異見이 있다면 그런 見解도 있을 수 있다는 多様性에 대한 肯定으로 받아 들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讀者諸賢의 指摘과 叱正을 부탁한다.

1. 住宅設計의 어려움

住宅은 인간이 空間을 창조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해 온 가장 源初的인 建築이고 建築의 基本이라는 점에서는 현대에도 변함이 없다. 住宅은 人間生活의 거의 모든 機能이 포함되어 있는, 人間生活의 縮図를 담는 人間의 製作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住宅設計는 建築設計의 알파요 오메가라 하기도 한다.

建築科 학생(大学이건 工高이건)이면 맨 먼저 받는 設計課題가 住宅이며, 반면에 建築의 大家도 明快하고 完璧한 해결을 못얻기가 일쑤인 것이 住宅이기도 하다. 이렇듯 주택설계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우며 가장 간단하고 가장 복잡하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平面이나 대략적 立面까지도 스케치할 수 있는 것이 住宅인 反面에 建築物 가운데 가장 심오한 哲学을 담아야 할 만큼 建築家의 経綸을 요구하는 것도 住宅이다.

이런 住宅의 특성 때문에 非建築家와 建築家가 다같이 많은 오류를 흔히 범하고 있다. 非專門家는 많은 종류의 建築物 가운데 가장 자기와 친밀한 것이 住宅이니 만큼 많은 경험을 실제 가지고 있다. 살아 본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構想도 해보고 計劃도 해보고 施工도 시켜 보았는가 하면 또 남의 집을 수없이 많이 보아 온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一家見이 형성되고 住宅建築쯤이야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자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人間生活의 거의 모든 機能, 즉 노동·휴식·식사·위락·공부·수면·접객·배설·의식·육아 등 다양한 기능을 빠짐없이 収容하여야 하는 것이 住宅이고, 人間生活의 物理的·精神的 핵이 住宅이며 거기에는 空間의 構成, 形態와 색채의 構成, 材料의 構成, 빛·소리·空気·물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 돈의 문제, 주위의 自然環境 및 人工環境과의 関係, 法律的 문제 등 数学的으로 말하면 수천만개의 답이 나오는 組合이 되는 것이 住宅이고 보면 「안다」고 속단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서 建築家없는 住宅이 생기고 建築士는 許可나 받아 주는 業者로 생각케 되며 집구경 온 사람들한테 집주인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장담하게 된다.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는 집은 대개가 建築主와 木手와 美匠工의 合作이며 그것은 視覚公害의 원인으로서 住宅街 내지는 하나의 都市를 품위없게 만드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다.

또 建築家 편에서도 住宅은 가장 간단한 設計감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하는 자세를 갖는 경향이 있음도 부인 못할 것이다.(이것은 住宅設計監理를 건축가의 양심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노력과 시간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人間住生活의 기본인 住宅이 다른 機能의 建物에 비해 현재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建築家가 住宅設計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여 전심전력을 다 했을 때 지나치게 자기 집착에 빠져 의뢰자의 의견이나 희망을 경시하거나 묵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建築家의 판단이 더 옳고 建築家의 선택이 더 정확하며 建築家의 감각이 더 예민한 것이 보통이므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非專門家의 관찰이나 경험이 더 예리하고 더 풍부하여 경청할만한 예도 많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建築物은 建築家의 作品이고 또 個人住宅이라 하더라도 公共性을 띄고 있으므로 建築主의 嗜好나 希望에 무제한 따를 수는 없으나, 거기에 살 사람은 建築主이고 돈을 내는 것도 建築主임을 생각할 때 구조나 안전과 같은 문제를 빼고는 建築家의 판단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즈음 세계적으로도 住居建築(単独·聯立·아파트 등)은 특히 사용자의 의견이나 嗜好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設計에 참여시키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가령 居室 벽 한 면을 붉은 벽돌 치장쌓기로 設計했는데, 建築主는 外壁도 벽돌치장쌓기인데 실내까지 벽돌로 해서야 너무 단조롭고 싫증이 나니 다른 마무리로 바꾸자고 했다 치자. 建築家는 内外空間의 貫流니, 連續性이니, 居室은 住宅 안의 社会生活圏이라는 특성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효과적이라느니 하며 設計대로 시공하기를 주장했다고 치자. 이런 경우에 建築家는 專門性에 입각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의견일치가 안 되면 建築家쪽이 양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여러가지 경우 어디까지가 양보의 한계인지 一般論으로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렵다. 구체적 경우마다의 결정은 建築家의 개인적 建築観, 센스, 판단력 그리고 성격 등에 달린 것이라고 하겠다.

2. 韓国的인 住宅

우리나라 現代住宅이 西洋建築에서 배워 오거나 모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겨를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西洋式도 아니고 韓国的도 아니라는데 있다.

韓国의 풍토와 韓国의 生活慣習으로 보아 西洋式 그대로는 당연히 맞지 않는 요소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韓国的으로 적응시키고 우리 생활과 우리 감각에 맞게 변화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西洋式의 長点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또한 韓国的으로 더 세련시켜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韓国의 伝統的인 住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伝統住宅이라고 할 때 서민주택은 住宅이라고 부르기에도 미흡한 형편이고 중류 이상의 住宅에서 여러가지 특성들을 논의하는데 다만 서민주택에도 중류 이상의 住宅과 공통적인 점들은 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朝鮮朝時代 住宅에서 우리는 몇가지 특징들을 흔히 지적한다. 우리 伝統住宅은 안채·사랑채·행랑채 등과 같은 채(棟)와 담으로 外部空間을 分化하는데 그 空間들이 묘한 連結性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앙상블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 分化의 목적은 男女別 또는 上下間의 生活空間의 분리, 외부인과 가족과의 분리 등 프라이버시·位階秩序· 男女間의 內外 등과 관련된 것이다.

內部空間과 外部空間과의 貫入과 연속성도 다른 東洋伝統住宅보다 강조되는 特質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조형상의 특색으로는 용마루와 처마의 懸垂曲線의 부드러움, 基壇, 卍字나 亜字의 窓戸 및 난간文様 등의 線的構成 등을 들 수 있고 木材나 石材의 다듬질에서 거칠은 듯 하면서 구수한 맛을 내는 情緒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중후하면서도 담장이나 굴뚝·실내·벽장문 등 작은 면적에서 액센트가 되는 文彩나 그림 등을 등장시켜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디자인効果는 참으로 놀랍다.

이와 같은 伝統的 요소들을 現代住宅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現代住宅의 구조로나 기능으로나 또 意匠的으로도 이러한 建築的 言語들을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窓戸나 欄干 등에 伝統文様을 쓴다든지, 콘크리트 지붕선을 懸垂曲線으로 한다든지 담이나 外壁에 壽福 등 吉祥文字의 文様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방법이고 실제 효과도 의문시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大邸宅이 아닌 住宅建築에서 伝統的 外部空間의 구성과 같은 수법은 쓰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여러 채의 건물을 배치하는 住宅以外의 建築에서는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線的構成의 묘미도 現代住宅의 구조와 재료로서는 表出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室內장식같은 데서는 비교적 성공한 예가 많다.)

伝統住宅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現代住宅에 되살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全体 바탕에 흐르는 정서와 철학이리라. 그것은 한마디로 「自然의 美」와 「自然에의 帰依」라 할 것이다. 韓国美의 특성을 이렇게 요약하는데는 国內外 学者들의 說이 거의 일치하지 않나 보여진다.

住宅뿐 아니라 韓国建築 전체에서 自然에의 순응, 人間的인 尺度를 그 特質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特質은 自然에의 帰依와 順応을 바탕으로 하는 老荘의 無為思想의 영향, 儒教的 禁欲主義, 韓半島의 気候風土 등에서 길러진 우리 民族性의 발로인 것이다. 도자기 하나를 보더라도 中国의 絢爛한 文様과 과장된 윤곽이나 日本의 아기자기한 繊細美와 비교할 때 高麗磁器의 清澄性, 朝鮮白磁의 淡白性과 無技巧性은 바로 억제된 自我와 自然 그대로의 美를 無言中에 雄辯해 주고 있다.

日本의 柳宗悅같은 사람은 韓国美에 심취해서 애정어린 높은 안목의 많은 礼讃文을 쓰고 있거니와 특히 韓国의 木工芸品에 대해서 盤若心経의 不垢不淨, 大無量壽経의 無有好醜의 境地이며 노리고 만든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것」이라고 탄복하고 있다.

韓国美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平凡美, 静謐美, 적요미 등이라고 하고 또 韓国芸術品은 無技巧의 技巧, 非調和의 調和라고 한다. 이런 특성을 建築에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語로 바꾸면 과장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허식과 衒気와 오만이 없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自然에 対立되지 않고 잔 技巧를 부리지 않고……등의 形容語句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金元龍教授는 韓国古美術品의 특징을 요약해서 '겸손·소박·순수하다고 했다. 이말은 建築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근래의 韓国住宅은 어떤가? 이와는 正反対로 가고 있다면 지나칠까? 물론 伝統的 韓国美에 꼭 집착할 필요는 없다. 伝統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를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伝統의 가치를 인정할 때 따라야 할 것이다. 겸손·소박·순수 세가지는 停滯的이고 消極的인 인상이 풍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人間不信·人間疎外·利己主義·物質萬能의 風潮 속에서 얼마나 美德인가?

나는 여기서 道德君子然하고 설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現代住宅에서 우리 고유의 哲学과 思想과 美感覚으로 볼 때 몇가지 고쳐야 할 바를 말하려는 것이다.

우선 자기과시와 자연에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住宅의 높이를 크게 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近来 아파트의 普及으로 単独住宅의 천장높이도 2.3~2.4미터로 많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建築主가 더 높은 天障高를 바라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천장높이에 관계없이 집전체를 높게 보이려고 욕심을 부린다. 집全体를 높히는 방법은 1층 FL을 높이는 방법, 建物자체의 높이를 크게 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래 많이 줄어 들기는 하였으나 建築用語에도 없는 미니2層이라는 괴상한 空間構成은 주로 집을 들어 올려 높게 보이려고 한 수법이다. 물론 建築家가 이렇게 선도한 것은 아닐 것이고 또한 地形이나 기타 다른 여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空間構成上 합리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주로 집을 높일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썼다면 잘못이다. 또한 建物자체의 높이寸数를 불필요하게 키운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5년 전에 J동 平地住宅街에 친척집을 設計해서 신축한 일이 있는데 FL을 GL에서 250 높이고 처마

높이가 GL에서 2,650인 単層 모임지붕으로 하였더니 팔려고 내놓은지 2年半이 넘도록 밖에서만 보고는 집이 낮다고 타박하고는 가버려서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다. 자연에의 순응과 겸손·검소 등과는 거리가 먼 얘기이다.

더 문제인 것은 지방의 취락구조 개선과 農家改良事業의 실태이다. 農村住宅으로서의 機能이나 에너지節約, 資材浪費를 가져오는 空間構成 등의 문제는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거의가 方位를 무시한 채 国道나 고속도로를 향해 威容(?)을 자랑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주위의 自然環境과의 조화를 도외시한 천박한 原色의 지붕이라든지, 전혀 合理性도 없고 視覚的으로도 아름다울 수 없는 急한 물매의 지붕形態, 材料見様展示 같은 벽마감재의 사용, 稚拙한 베란다·欄干의 디자인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美的感覚을 탓하기 전에 展示効果와 自己顯示, 虛飾·誇張·自然에의 逆行 등 伝統的 우리 先祖들의 意識과는 너무나 対照가 되는 意識이 문제이다.

이러한 意識은 建築的인 면보다도 여러가지 社会的·経済的 원인에서 길러진 것이 많을 것이고 또 建築家보다는 住民들의 嗜好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되나 建築士나 担当公務員이나 施工業者를 막론하고 모든 建築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합리적이며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문제해결에 임하고 주민들을 계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같은 脈絡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都市住宅의 大門構成이다. 都市住宅의 90% 이상은 아마도 지붕을 가진 大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붕이 있다는 점만으로 볼 때 우리 伝統住宅의 大門에서 따왔다고 할지 모르나 우리 在来式 住宅의 大門은 그것과 連接된 담이나 집의 형태와 構造上 자연스럽게 지붕이 필요했던 것이며 現代住宅에서는 거의 다 大門에 지붕을 덮은 것은 그 当為性이 박약하다. 물론 大門을 보호한다든가, 비를 피한다든가, 우편함에 비가 안 맞게 한다든가 하는 機能上의 意味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大門에 지붕이 있다는 것은 역시 大門을 우람하고 확실하게 부각시킴으로써 自己를 과시하자는 욕구의 표시라고 본다.

다음으로 伝統的思想으로 보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자기를 主張하지 않는, 人工이 덜 가해진 自然材料 내지는 準自然材料가 住宅마감재로 더 많이 쓰여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韓国的인 美를 곧바로 느끼게 한다기 보다 그런 精神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이다. 예를 들어 外壁을 벽돌치장쌓기로 하는 등은 근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이는 나쁘지 않은 경향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나는 콘크리트 블록이 치장쌓기로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면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非専門家들은 콘크리트 블록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마도 과거 30여년간 低品質의 블록이 범람하여 이미지를 나쁘게 굳힌데서 온 결과라고 보여진다. 原産地에서는 聯立住宅을 아파트보다 高級住居로 보통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聯立住宅을 低質住宅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기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나 할까.

나는 어쩌다가 콘크리트 블록 치장쌓기로 된 住宅을 보면 그 주인이 建築家거나 아니면 상당히 안목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되는 버릇이 생겼다. 나도 현재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집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때는 外壁을 블록 치장쌓기로 하는 것은 물론 内壁까지도 어떤 면은 블록마감으로 해볼 생각이다. 나는 콘크리트 블록造가 工期도 단축되고 工事費도 절약되며 熱絶縁効果도 우수할 뿐 아니라 가장 소박한, 그리하여 가장 韓国的인 마감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벽돌도 붉은 벽돌뿐 아니라 시멘트벽돌이나 기타 다른 質感과 色을 갖는 벽돌을 개발하여 콘크리트 블록과 더불어 치장쌓기로 활용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래 성행하는 造園에 대해서도 韓国的인 정서를 얘기하자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10여년까지 남았다가 헐린 毓祥宮(七宮이라고도 함) 후원은 북악산 기슭의 조그만 空間을 長台石 같은 화강석을 군데군데 놓아 境界로 삼은, 庭園이랄 것도 없는 것인데 그 韻致는 실로 빼어났었다고 한다. 中国庭園의 규모와 호사스러움이나 日本庭園의 技巧와 格式같은 것은 없어도 自然 그대로이면서 無造作의 造作이 주는 감흥은 韓国庭園만이 갖는 성격이라 한다. 剪枝를 하여 人工的으로 변형시킨 상록수를 주로 많이 심고 自然石을 무더기로 쌓아 올리는 등의 근래의 造園方式은 국적도 없고 그렇다고 創意性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영향을 받았다면 日本庭園에서 받은 것이라고나 할 것이다. 마당에 잔디를 입히는 것은 西洋住宅에서 따온 하나의 무난한 造園処理이겠으나 나무는 상록수보다는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樹種을 심는 것이 自然을 숭상하는 우리네 방식이며 自然石도 쌓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는 것이 제격인 것이다.

3. 住宅의 流行에 대하여

現代建築은 특정한 様式이 없는 것이 様式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住宅建築에서 様式아닌 様式이랄까 또는 유행같은 것이 몇해씩 風靡하곤 한다. 平지붕이 소위 文化住宅의 大宗을 이뤘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入」字形의 지붕形態가 불란서식이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휩쓸더니 요즈음은 RC슬래브 위에 스페인 기와로 이는 것이 또 유행인 것 같다. 外壁에 花崗石 붙이는 것이 20평짜리 住宅에서도 盛行하던 때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미니 2층도 그런 현상의 하나였다. 轆轤로 깎은 계단의 난간왕자기둥, 쇠사슬로 만든 선홈통, 제물치장콘크리트의 사용, 居室을 2층 천장까지 개방하는 構成 등도 유행을 탔던 수법들이다.

최근에는 開口部의 아치, 外壁밖으로의 돌출창고 등이 눈에 많이 띈다.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것들이 하나의 建築디자인 어휘로서 그것대로의 의미가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행에 휩쓸려서 語法이나 語感에 어긋나는 単語를 남용한다면 매우 저속하고 그릇된 文章이 되듯이 住宅에서도 必然性없는 유행을 따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住宅은 옷과 달라서 유행에 뒤졌다고 훌훌 벗어 던질 수는 없는 것이다. 住宅 하나하나로 볼 때에는 유행이 지나면 곧 싫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人間의 심리이며 또한 都市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로 볼 때에도 유행을 따르면 劃一的이어서 没個性과 단조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파트와 맨션—무엇이 문제인가

金 鍾 仁— 啓明大学校 副教授

SOME REFLECTIONS ON APARTMENTS AND "MANSIONS"

Kim, Zong In —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1. 아파트人口 200만명

우리나라에 政府機関에 의한 아파트의 本格的인 등장은 1962년 大韓住宅公社가 마포에 세운 642세대 규모의 "마포아파트"가 그 효시이다(사진 참조).

물론 그 이전에도 중앙산업에 의한 "鍾岩아파트"가 152세대 규모로 1958년에 세워진 적은 있으나 이는 民間에 의한 보급이라는 점에서 이와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아파트人口에 관해 보는 한, 1945년 해방될 때까지도 전국적으로 198가구가 寮 등의 이름으로 보급되어 있어 왔다.

그러던 것이 '79년말 현재 30만가구를 돌파하여 오늘날 아파트人口는 전국적으로 200만명을 추산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놀라운 증가세요 신장세다.

그리하여 오늘날 아파트라면 매스컴을 위시하여 일반시민 누구나가 쉽게 열을 내거나 일가견을 가질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당국대로 아파트보급에, 市民이나 專門家·아파트 建設業者·不動産業者·"福夫人"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視覚으로 아파트를 이해하고 얘기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관한 한, 어떤 건전한 이미지나 인식상의 컨센서스(Consensus)를 찾아 보기 힘들어 오늘날 진정한 "아파트文化"가 社会的인 맥락에서 꽃필 길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도 아파트人口는 무서운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서기 2천년대에 가면 도시인구의 50%가 아파트거주인구로 될 전망이다. 자연을 잠식하고 도시의 하늘을 뒤덮으면서, 더러는 低質의 좁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시민아파트의 이름으로, 더러는 호화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맨션"의 이름으로 주변의 지역사정과는 무관하게 확대일로에 있다.

2. 아파트의 생명은 균형관계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아파트는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는 아파트라고 하여 다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 되지 못하는 문제, 아파트를 보는 일반사회의 눈 내지 인식상의 문제 및 당해 지역사회와의 관련면에서 보는 사회적 의미의 문제로 크게 세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를 아파트가 지니는 均衡関係(Balance)의 속성에서 살펴보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과 현격한 차이면에서 아파트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로 먹고, 자고…… 등 일련의 住生活에 아무런 불편이 없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생활의 質(Quality of Life)이 품위있게(Decent)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일반 주거로서의 공통된 속성과 함께, 対주변 지역사회와의 관련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균형관계 유지의 문제이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周辺地에 日照를 위시한 通風·TV시청장애 같은 물리적 영향을 주게 될뿐 아니라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때의 균형관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어중간한 성질의 것이어서는 안되며, 力動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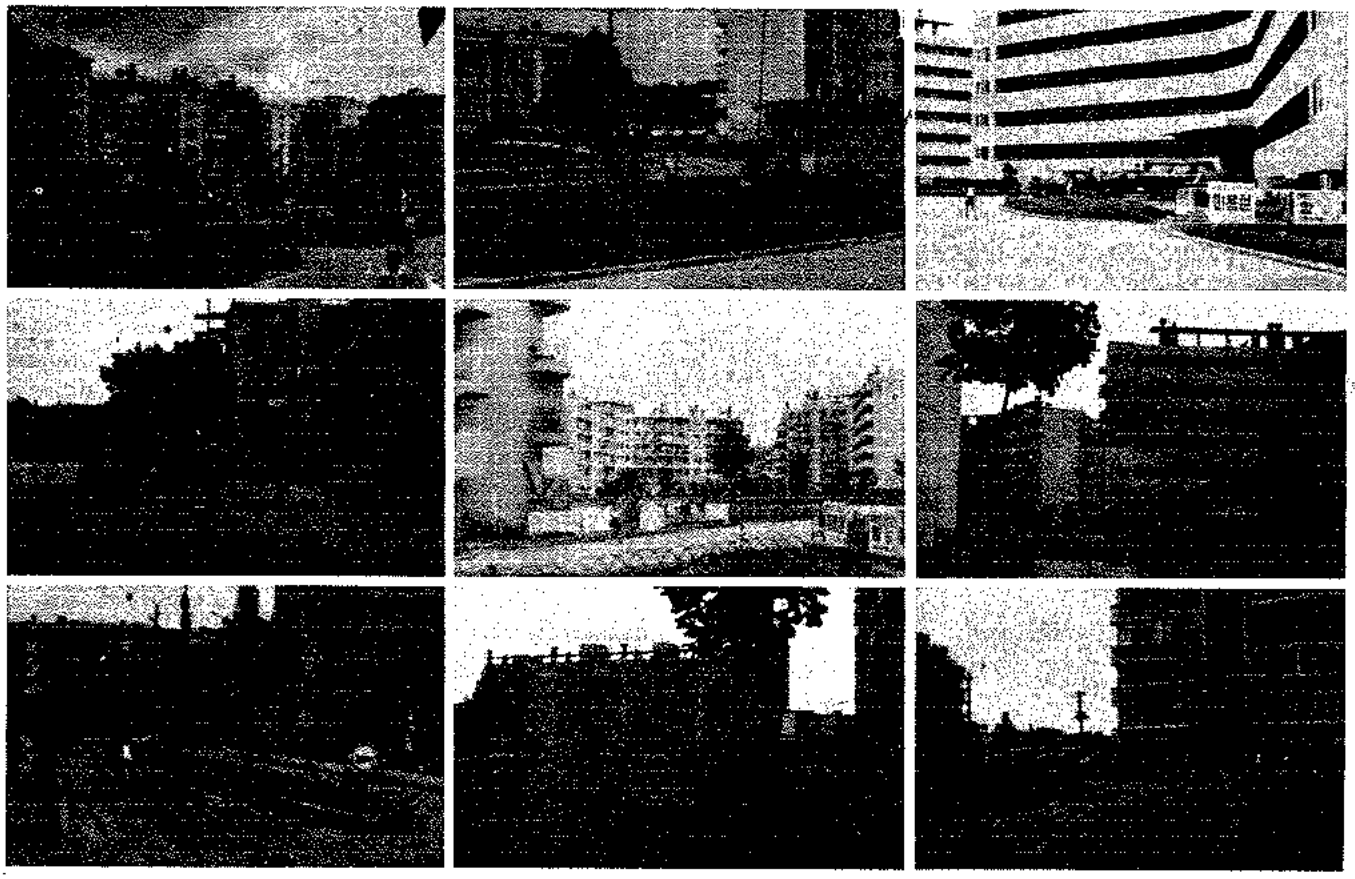

우리나라 공공아파트의 효시가 되는 서울의 마포아파트 단지 전경 —필자에 의함. 1971년 8 월—

이고 고무적이면서 想像과 創意를 항상 現実社会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균형관계이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데, 임대료나 분양가가 입주자의 질적·양적 요구수준에 적절히 부응하여야 함은 물론 機能을 위시한 材料·시공·건설비·아름다움·편의시설 등의 면에서도 균형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民間에 의한 건설이라면 적정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정부나 융자기관의 財政的 支援策이 건실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며, 政府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급인 경우에는 일련의 財政프로그램이나 需要創出이 보다 確固한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아파트는 物品이 아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에 대한 供給側의 인식에 관해 약간 살펴 보자.

예컨데, 「우리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건설업체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 수요수준에도 맞는 아파트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다른 시공업체들과의 受注경쟁에서 상대를 쉽게 눌러 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다. 아파트란 옷이나 가구와 마찬가지로 物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옷이나 家具와 같은 物品과 혼동하여 적어도 그안에서 사람들이 정서적 경험을 쌓으면서 사회생활상의 각종 긴장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보금자리(Haven)라는 생각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 뿐인가.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의 질을, 이러한 공급자에 의해 건설되는 아파트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일단 지어 놓기만 하면 아파트란 언제든 팔린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파트 生産에 임한다면 무지에서 빚는 횡포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 하겠다.

입주자가 아파트의 아름다움에 대한 조건을 요청해 오는 일이란 어떤 경우에 거의 없다는 아파트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建築主나 供給主体가 이들의 잠재적 요구성향을 무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특히 아름다움과의 관련면에서 월터 그로피우스가 1963년에 윌리암스 大学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금세기는 科学의 세기이다. 오늘날 예술가는 한갓된 사회적 사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오늘의 물질만능 시대에 예술은 점차로 그 존재의의를 잃어가고 있으며 과학만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

— 월터 그로피우스 —

4. 対 地域社会와의 関係

어떤 곳에 아파트나 아파트단지가 들어 선다는 것은 당해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인가?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종의 놀라움과 함께 거부반응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곳은 지금까지 그들의 자녀들이 정붙여 놀던 놀이터공간으로 대표되는 빈터일 수도 있을 것이고 自然의 녹지일 수도 또는 숲림가일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서 이들에겐 익숙한 景観이자 생활의 터전인 것이다.

日照나 通風上의 장애뿐 아니라 局地風이나 온도차 같은 微気候(Micro Climate)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임에 따른 시선상의 프라이버시·TV 시청장애같은 비근한 문제 외에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利害対立·기존의 지역서비스 시설에 대한 압박, 過密로 인한 전반적 서비스수준의 저하, 공공시설의 개발비용부담문제, 地価의 변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아파트棟이나 아파트団地의 규모에 또는 過密의 정도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先住者 개념을 도입한다든지 北側 가옥을 배치·설계할 때 北側斜線을 적용하고, 複合日影이 생길 경우에는 제한 대상棟의 결정,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같은 문제들을 포함한 일종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아파트開発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발생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같은 個体로서의 아파트棟이나 단지의 출현은 그 이전에 이미 全体라는 주변 지역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아파트의 등장은 지금까지 당해 지역사회가 유지해 오던 일종의 균형관계에 변화를 강요하게 되므로 해서 이같은 個体나 部分의 창출은 全体의 질서나 전체에의 조화를 무시하고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때 部分으로서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団地가 지닌 全体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임팩트(Impact)가 플러스 방향(Merits)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部分에 대한 인식은 보다 객관적이어야 하며, 부분이 지닌 限界性은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거에서 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5. 소리·密度·子女養育·이웃

아파트生活과의 관련면에서 볼 때 소음이나 밀도·자녀양육·이웃関係·일조·통풍·전망·보안·정서 등은 매우 심각한 설계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요인들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社会的·心理的·行態的 측면에서 수행될 필요가 큰 바 있다.

여기서는 이중 지면관계상 몇가지만을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 소리(Sound) 및 소음(Noise) *

소리의 전달은 공기를 타는 경우(Airborne)와 구조체를 타는 경우(Impact)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室間에는 구조체에 빈틈(Cracks)이 있거나 뚜자리(Openings)가 생길 경우 주로 문제가 되므로 벽체(Wall System)를 気密(Airtight)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바깥으로부터의 소리인 경우는 창의 개폐형식·실천장의 마감 등을 유의해야 하며 창이나 문틈도 상당한 효과를 미친다. 후자의 경우는 바닥이나 벽 천장면에 직접 물체가 부딪치거나 굴러가거나 울릴 때(Vibrating) 생기는 소리로서 기계설비, 하이힐 소리, 물건을 떨어트리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구조적 기술의 발달로 특수한 부위를 소리 차단효과가 높은 내력벽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벽 두께나 바닥판 두께는 극도로 엷어지게 되고, 거기다 건축비절감을 노려 이중천장을 하는 일도 거의 없어 이들 옆집간·아래윗집간의 소리, 각실간의 소리 전달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소리(Acoustics Comfort)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파트설계상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꼽히게끔되어 있으며 거개의 대도시에서 이들 소리문제(Acoustics Treatment)에 대한 법적 규제나 권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중앙난방쪽보다 소리문제에 더 많은 경비(Economic Priority)를 들이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각종 기계설비를 비롯한 전기·위생·냉난방·급배수설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TV와 스테레오 등의 家具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므로해서 샤프트·슈트(C-hute)·덕트 거기다 벽면 아웃레트(Outlets)까지도 훌륭한 소리 내지 소음의 전달통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엌과 욕실을 外気에 면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을 개정한 이후, 거실이나 침실이 외기에 면할 기회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안쪽에 오는 부엌·욕실에는 기계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쪽으로 연결된 슈트·파이프샤프트·덕트는 그대로 아래·위층간의 소리·소음의 전달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피아노의 보급이 보다 대중화하는 경우 이러한 소리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

(註)* : 아파트와의 관계면에서 소음의 종류를 보면, 부근의 街路交通 소음(그림 1 참조), 공장소음, 건설공사장 소음 같은 부지밖 소음과 에코같은 건물밖 부지 안의 소음 및 각종 설비·가전제품·악기·사람소리·발자국소리같은 건물 안 소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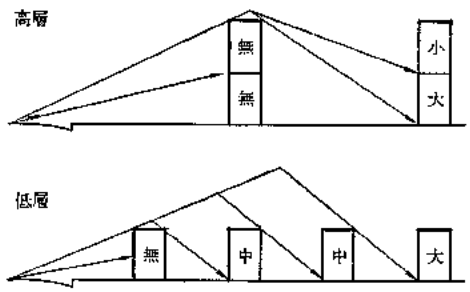

〈그림 1〉
인동건물에 따른 도로교통 소음의 차폐효과 —安岡正人에 의함—

■ 밀도(Density)

인간이 건강한 육체적·정신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密度維持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볼때 高密(High Density)이라고 곧 過密(Over-Croading)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高密이라고 해서 居住條件이 크게 悪化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원래가 땅에 밀착된 생활을 누려오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는 역시 땅에 붙은 接地住宅(또는 "땅집"이라 이름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될 것이므로 한정된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低層을 유지하면서 高密化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오픈 스페이스는 줄어 들게 되고 住戸까리도 密集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거주환경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만일 이때 高層化를 도모한다면 그만큼 日照관계면에서 隣棟간격을 띄울 필요가 생겨 오픈 스페이스는 늘게 되고 日照와 通風條件도 양호하여 屋外生活 환경은 그만큼 풍요로울 수가

있으며, 자연히 이때의 옥외공간 이용에도 활발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림 2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급적 인동간격을 좁혀가면서(法이 정하는 최소규정을 적용) 밀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수가 많아 인구밀도는 12층 내지 15층의 경우 핵타르당 1천3백명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단위 住戶의 입장에서 과밀은 주로 절대적인 住戶의 크기 내지는 室의 크기에서 비롯되는데(표 1 참조), 이들 과밀화에 따른 병리적 현상으로는 死亡率 외에도 자살율·유아사망율·결핵환자발생율·성병감염율·정신이상으로 인한 입원율, 사생아출생율·청소년범죄율·교도소입소율 등이 美国에서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잠재적 사회병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면에서도 밀도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표 1 住居室数와 死亡率

—1800년대초의 英国—

1室住居	2室住居	3室住居	4室住居
20.14‰	16.83‰	12.63‰	10.32‰

■ 자녀양육(Child- raising)

흔히들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는 편리한 점도, 불편한 점도 많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것은 꼭 패집단들을 쉬 만나고 어울려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연령층의 아이들이 한데 섞여 노는데 따른 사회적인 효과 등을 기하기 쉽고 무엇보다 이들이 마음놓고 저녁 늦게까지 뛰어 놀거나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내지 놀이 공간이 아파트 안에는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열쇠아이"로 불리울 만큼 목에는 열쇠줄을 드리우고, 아래층의 놀이터로 한번 놀러 나서면 찾기도 힘들며 15층이 넘어서면 지상의자기자식을 분간할 수도 없어져 일체의 컨트롤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이방 저방 뛰어다니면서 쿵쾅거리는 장난을 금지하다 보면 일종의 심리적 自制감 등을 심어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지상의 단독주택에서 자란 아이보다 独立心이 크게 결여되고 있다는 사례를 美国에서 볼 수도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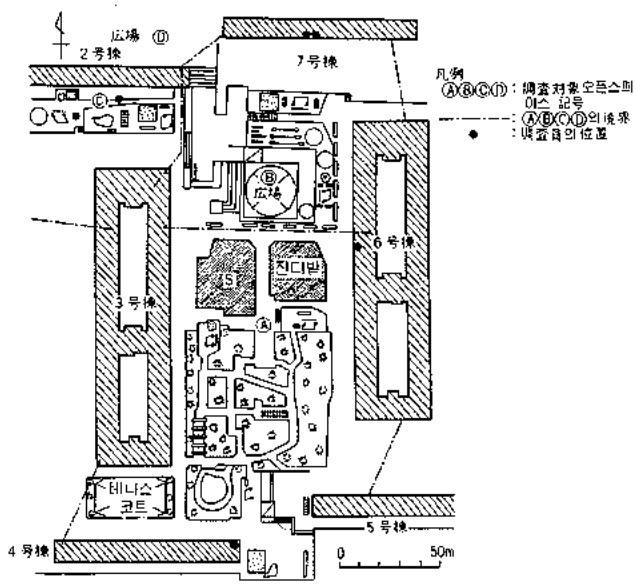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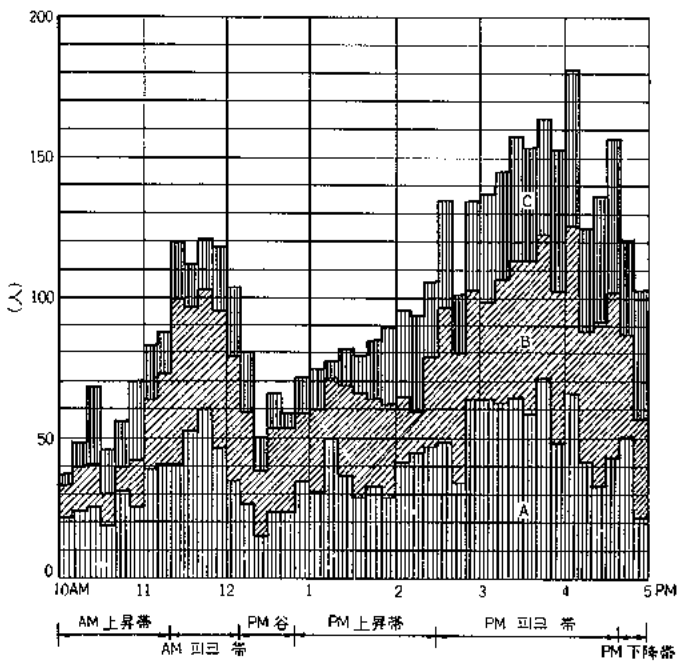

〈그림 2〉 시가지 고층주택단지 오픈 스페이스의 이용상황 예

—필자에 의함. 1970(東京)—

말하자면 地上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는 크게 다른 양육패턴하에서 고층의 어린이들은 자라고 있는 것이다.

고층화에 비례해서 地上으로의 접근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어른의 경우를 막론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한가지 이유는 수직거리의 증대에 따른 에너지소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계단으로 오르는 行動能의 비교

쉬지않고 오를 때	높이(m)	심박수변화 (전) (후)	최고혈압변화 (전) (후)	원상태로 돌아가는시간(분) (심박수)	(혈압)
1층에서 5층까지	12	70 → 105 (1.5배)	123 → 155 (1.26배)	5	20
1층에서 14층까지	40	68 → 135 (2.0배)	118 → 172 (1.46배)	15	35

*資料 : 建築雜誌 '74/2 p.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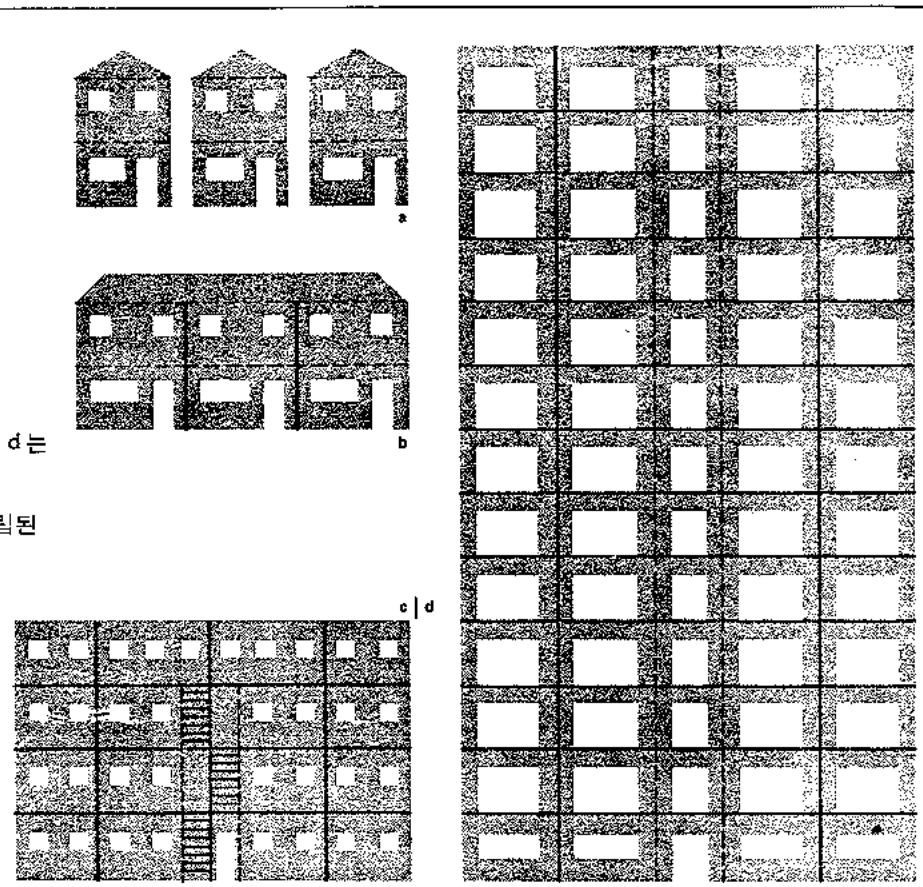

〈그림 3〉
겉보기에는 아무런 내부의 구획이나 벽면을 느낄 수 없는 각종 주택도 매 주호는 실선표시된 바와 같은 영역단위로 나뉘어 진다.
a는 단독주택, b는 연립주택, c 및 d는 아파트의 경우이다.
b의 경우만 하더라도 각 주호는 독립된 출입구(현관)를 갖추고 있으나, c, d는 출입구·계단·승강기·복도를 공용하는 형식이 된다.
—W. Michelson에 의함—

적당한 지상의 놀이터에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그들은 때로 승강기를 놀이대상으로 삼아 승강기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하고 각층의 복도나 계단실을 소리치고 뛰어다니다가 관리인의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이방 저방 아단스럽게 뛰어다닐 필요가 없이 즐길 레져의대상으로 "TV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 이웃関係(Neighboring)와 領域(Territory)의 형성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 또는 주로 오가는 길목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변의 공간적 상황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영역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이웃関係는 이 영역의식을 보다 밀도깊게 유지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또 영역의 형성에는 공간 스케일면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긴 것은 오히려 효과가 적어 평면상으로나 입체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공간으로 끊거나(Articulate) 파워(Break Down) 놓을 필요가 있다.

50미터 이상되는 복도나 건물높이에서 사람들은 이웃간의 共同体 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보다 分子化하는 非人間的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놀이터에는 놀이에 따라나서는 보호자들을 위한 휴게·만남의 시설을, 계단실이나 복도에도 사람들이 만남의 場(이를 "結節点"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을, 집앞 현관이나 1층의 출입현관에도 사람들이 쉽게 만나 선채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그림 3 참조).

이웃関係라는 것도 1차적으로는 서로 物理的으로 가까이 있을 것(Proximity)이 전제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이와 함께 상호간에 同質性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상부상조(Mutual Aid)의 필요성을 느낄 때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人間에 의해서 만들어진 空間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에는 반대로 人間의 제반의식·활동을 규제하게 된다는 점에 설계자나 건축주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경이 戰時 중에 파괴된 下院建物을 再建하여 開院하는 석상에서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겠다.

"We Shape Our Buildings, and Afterwards Our Buildings Shape us."

참 고 문 헌

(1) S. Paul, Apartments, Reinhold, New York, 1967
(2) W. Michelson, Man and His Urban Environment, Addison-Wesley, London, 1970
(3) K. Lynch, Growing up in Cities, MIT Press, 1977
(4) N. W. Heimstra, Environmental Psychology, Brooks / Cole, California, 1978
(5) 建築雜誌, 1974. 2월, 1980년 4월, 6월호
(6) 金鍾仁, 住宅·住宅地·学校, 大光書林, 서울, 1978

獨立住宅地域의 장차 開發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柳 榮 進— 서울市立大學 敎授

WHAT HAVE HAPPEN THE FUTURE DEVELOPMENTS ON ONE FAMILY HOUSING RESIDENTIAL AREA?

Ryu, Young Jin— Professor / The City University of Seoul

1. 序 論

우리의 都市住居 지역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독립주택으로 가득 메꾸어져 버렸다. 따라서 本稿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도시의 土地利用을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의 住宅內容이 제대로 마련되었던가, 우리들 동내의 주거환경은 만족할만 한가, 집이 없는 家口는 어떤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사되었던가, 우리들은 宅地의 부족으로 얼마나 민원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가, 우리 국가의 經濟運用이 어떠한데—. 시민정신은 알맞는 주택을 원하였던가, 또한 알맞는 수요공급이 처리되었던가 등을 생각하면서 장차의 개발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모델을 계획하여 미래 전망을 바라보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經濟運用計劃과 市民精神

정부는 1982년에서 1986년까지 5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의 經濟運用計劃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에 치중할 것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우선 5차 5개년기간 중에 복지증진 위주의 經濟運用 방식을 택할 경우 정부는 전체 투자의 35%를 주택·보건·의료·교육·상하수도 등 사회복지와 밀접한 부문에 배분하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72%를 배정하는 단력성 있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위한 經濟運用에 있어 복지냐 성장이냐에 관한 특별한 발표가 그 이후엔 없었지만 지금 우리들의 經濟運用의 관심은 복지도 성장도 하고 싶은 상태라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간 경기대책 발표를 꾸준히 해 오면서 금리인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내용 중 組合住宅·영구 임대주택·25평 이하의 서민주택건설과 건축경기 부문의 활성화 대안을 위한 〈1家口 2住宅〉의 양도세 면제 검토 등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아닌 정당에서까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능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이름으로 소위 無許建物整理 特措法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관한 조처는 1972년도 무허건물양성화조치와 1980년도에 준공마필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합하면 세번째이다)

이와같이 국가의 경제운용 계획과 주택사업 그리고 주거사회의 관심은 국가 스스로 관심도를 높히며 이를 국가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책은 날로 개발하고 있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실로 이와같은 목표가 뚜렷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러한 병폐는 어디에 기인된 것인가가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돌이켜 보면이것은 住宅論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史的편견(a Historic Bias)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는 이것을 Life Cycle과 연관된 가족에 있어서의 변화나 풍요를 증가시켜야 할 사회의 변화 등을 무시하는 무능력을 가르키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동안에 경제운용의 목표와 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목표인 중산층 위주의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아는바와 같이 우리의 목표와는 다른 시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는 병폐를 안고 또 다른 은폐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에 있어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비단 일제시대까지 가지 않고 해방 이후부터 6.25 이후까지 혼란기는 두고라도 최근 1970년대부터 우리가 짚어보면 도시에 있어서 문제시되고 있는 주택부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공급에서 공동주택의 대형화된 주택, 그리고 독립주택의 증가라든가 개개발계획과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특례 등이 뚜렷한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채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정부의 경제운용계획과는 맞지않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투기를 방지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시민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정신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가령 가족(Family)이라는 개념에는 住宅論에서 가족 개개인의 밀착된 相互反応組織(Interacting Reaction System)이라든가 家族形成 (Family Formation), 家族機能(Family Function), 家族의 統合(Family Integration), 家族規範(Family Norms) 그리고 家族構造(Family structure) 등의 분석에 의하면 가령 우리는 소형주택일지라도 그 관리가 만족스럽게 될 수 있고 독립주택이 도시생활에 맞지 않을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개념을 분석할 능력이 없는 시민을 두고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유도가 잘못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은 어떤한 유도책이 없는한 주택에 있어서는 큰 주택과 넓은 정원이 있는 독립주택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의 커다란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동주택도 넓은 주택과 환경을 원하지만) 그리고 토지이용 면에서도 도시면적에 대하여 주거지역이 30~40%를 점유하는데 이 주거지역의

택지 중 60~70%가 독립주택지로 개발되어 메꾸어져 버렸는데 비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 2/3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때문에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운용계획은 항상 빗나가고 마는 우려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제운용과 시민정신의 상관성은 비단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생산에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가족개념에서 보면 다른 생산들도 경제운용계획에 맞게 생산되고 소비되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생산에 있어 많은 반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5차경제사회개발 기간동안은 경제운용과 시민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투자는 그 효율이 복지에 기여 되리라 예측한다.

3. 住宅의 識別力 (Housing Discrimination)

주택의 식별력이란 인간의 시각과 관계가 깊은 개념이다.

우리가 건설한 독립주택과 공동주택을 보면 계획에서 식별력을 단순히 생각한 것 같다.

독립주택과 공동주택은 얼른 보아도 그 식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에 있어 같은 종류를 두고 식별하는 방법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의 주택발달을 보면 독립주택의 경우 1960년대에서는 담장이 없이 건축선이 대지경계선이 되어 꼭같은 모양을 생산했고 또는 소위 불란서 집이라 해서 지붕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 집의 균형이 없는 형태로 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미니 집이라 해서 지하실을 높혀 맨 끝 택지를 개발하는 가구는 높이가 실로 3층높이의 집을 지어 비용만 많이 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축외부재료는 화강석이 아니면 집값도 크게 떨어졌으며 매매대상에서 땅값으로만 받기 일쑤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독립주택 형태는 지붕을 콘크리트로 덮고 다시 기와를 잇는 형태에다 창문은 이상한 아치를 하거나 또는 일사면적을 잃은 올록볼록한 창으로 짓고 있는 실정이며 평면내용은 저택이나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의 주택 등을 나눌 것 없이 침실, 부엌, 마루가 기본이 되어 있고 부부침실은 다른 방과 같으며 화장실, 목욕탕 1개소로 온식구가 사용하는 내용이다.

아파트먼트를 보면 꼭같은 높이로 꼭같은 평면내용을 가지고 있어 소득격차가 무시되고 또 평면형식도 무시돼 계단홀 형식으로 통일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식별력을 무시한 것이며 하나의 유행병 개발이라고 이름지을 수 있다.

주거의 식별력개념은 주택개발뿐만 아니라 주거사회 성장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이론이다.

회고하면 단독주택이란 그 평면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알맞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겸비된 것이 독립주택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主空間分化와 환경계획 분화가 유기적 구실을 할 때 그러한 것이다. 가령 침실부분에 있어야 할 정원과 Patio(Queit Patio) 거실과 Patio와 정원(Living Patio), 식당과 어린이 쉼터(Play Patio) 등의 상관관계라든가 정원의 분리(內庭과 外庭), 부부침실의 기능분화 그리고,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어프로우치 순간순간들이(Gate→Flag Ston Way Path Way→Garden→Stoop→Porch→Entrance→Entrance Hall→Floor) 제대로 되었던가를 점검하면 과연 독립주택 구실을 한 주택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와 같은 독립주택 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거사회에는 분쟁만 일어나기 일쑤다. 때문에 식별력은 평면과 공간에서부터 지켜져야 하는것이고 또 주거사회성장에서도 지켜야하는 필요불가한 이론이라할 수 있다.

최근 독립주택 지역에서는 색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공급 촉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주택공급이 부진 한데다 가구는 늘고 있어 주택보다 방이 부족한 현상이다. 따라서 차고·장독대·지하실을 위법 개조하여 전세를 놓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 보건이 장차 문제시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다.

또다른 문제는 도시교통이 불편함

〈그림-1〉 재개발이전 주거환경

에 따라 마이카가 늘어나 있으나 차고의 부족으로 주택가의 8, 6, 4m도로는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돼 이웃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계획에서 부터 식별력을 잃은 관계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도시의 성격을 파악해서 주택가를 면밀히 파악, 재개발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택건설도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허가돼야 하고 따라서 도시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혀나가야 한다고 여긴다.

가능하다면 독립주택의 개발을 중지하고 이것을 전환하여 공동주거 사회로 개발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自力開発의 展望

자력개발은 불량택지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택지와 건설비 일부를 부담하고 정부는 이를 승인하여 주택자금에서 모자라는 것과 도시재개발에 필요한 시설(전기·상하수도)을 보완해 주는 재개발사업의 일환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업승인을 강려하여 주거환경으로부터 주민의 정신함양과 아울러 주민보건 및 생활의 토대로 이제까지 지켜온 주거지역을 스스로 보호토록 유도하고 있다.

일예로 월계동 21번지의 경우를 보면 도봉구 관할지역으로 개발 이전은 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었으나, 이 지역이 지난 81년에 월계 2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아파트신축공사가 준공돼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바뀌었다. 가구는 1백36가구로 1백여동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성공한 예가 있다. 이들 주민은 총공사비 12억 4천여만원을 들여 4층아파트 6동을 건립했다.

가구당 공사비는 6백11만 9천원, 그리고 3백만원의 융자금을 마련 1년거치 19년분할상환(연리18%)의 정부혜택과 상하수도 및 전기공급을 받았다. 단지 규모는 2천 4백93평으로 녹지 3백평, 주차장 2백 8평, 어린이놀이터 1백15평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하겠다.

다음은 성동구 자양지구 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대지 1천 5백13평, 무허가 건물 37평, 세대수 1백27가구, 인구 7백56명을 대상으로 한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그림 2 - 1〉 변경전 택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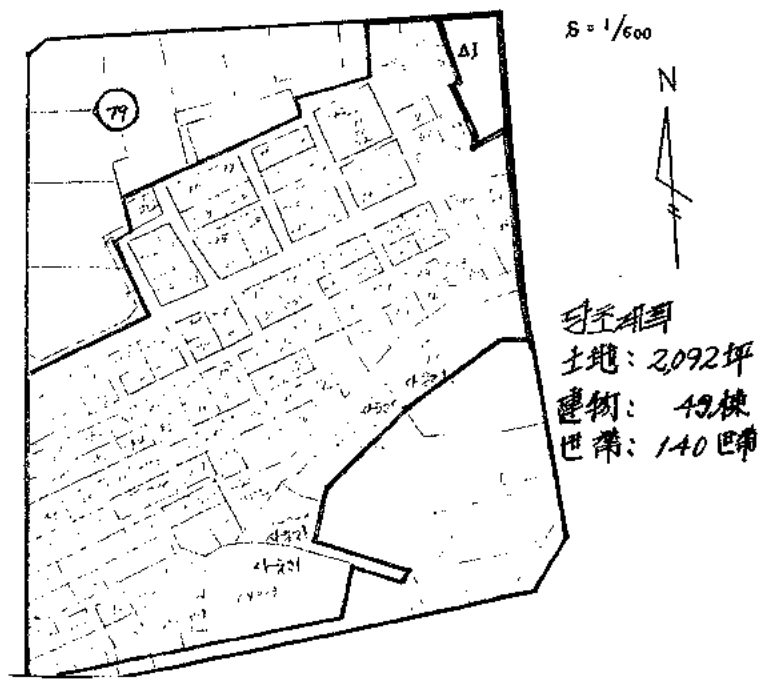

〈표 - 1〉 건축계획

區 分	內 容	計 劃
垈 地 面 積		5,000M² (1,513坪)
棟 數 및 層 數	APT	5層 5棟
建築面積및世帶數	APT (商街包含)	15坪型 75世帶 1,125坪 17 〃 45 〃 765 〃 地下 85 〃 計 1,975 〃 (6,529M²)
建蔽率 및 用積率	建 蔽 率 用 積 率	24.9% 150%以下
附 帶 施 設	어린이놀이터 老 人 亭 駐 車 場 造 景 計	2個所 358M² 1 〃 56 〃 53台 795 〃 682 〃 1,891M²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토지 이용면에서 보면 택지 3백77평, 공공시설 3백58평, 도로 및 오픈 스페이스 7백78평이 마련 되었으며 건축계획에서는 1백29평(5층)을 마련하여 주거수준(Housing Level)을 15평 77가구, 17평 52가구로 배분했다. 공사비는 총13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비 10억원, 대지매입비 및 정비에 3억 9천만원을 들여 1980년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을 공사 끝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림－1〉을 보면 재개발 이전 무허가 집합군이 된 지구환경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주거환경을 주민 스스로〈그림 2－1〉에서 〈그림 2－2〉와 같이 건물배치를 하여 〈그림 3－1〉 〈그림 3－2〉와 같이 단위평면도로도 계획했다. 그리고 〈그림－4〉는 공사당시 조경공사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Model에서 우리는 재개발에 있어 특히 이러한 자력개발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은 도시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택공급촉진에 그 효과가 탄력이 있어 보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림 2 － 2〉 변경후 건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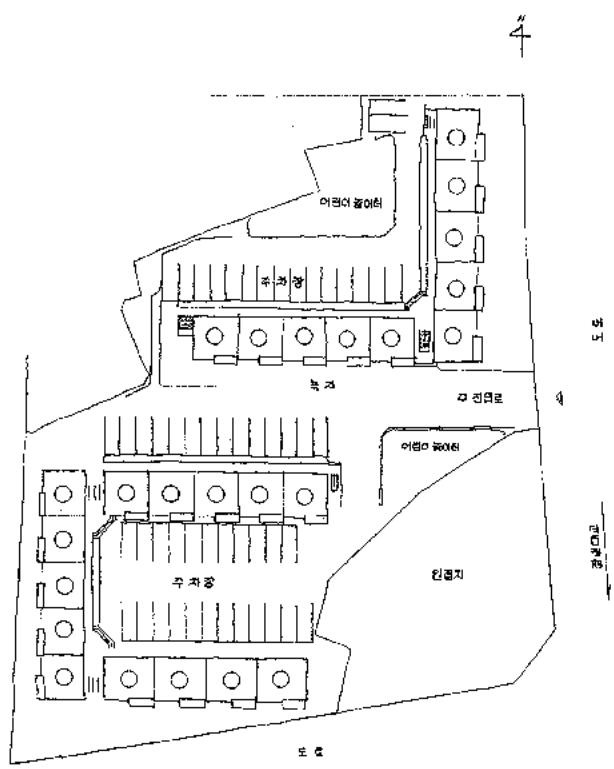

〈그림 3 － 1〉 단위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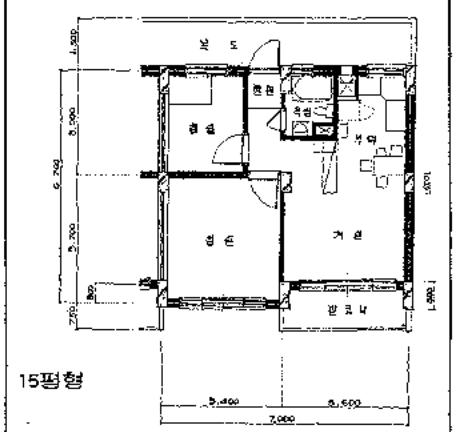

〈그림 3 － 2〉 단위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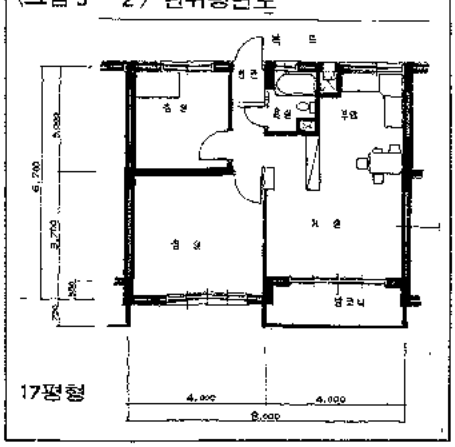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자력개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문제점 / 가. 주민의 영세성으로 인한 부담금 에치능력 결여

나. 업자임의선정— 추진위원회 자체 시공업자 기선정, 따라서 아파트 도급 순위(351위), 도급한도액, 설비업자 등의 문제점

다. 사전공사시공에 관한 현장사무실, 가옥철거 및 정지작업, 지반일부 굴착에 대한 애로성

라. 허가조건불이행—추진위원회의 일방적 추진강요.

마. 주택은행 자체 융자불가—택지조합 조성문제. 사전주택부금납부(6개월이내) 공유환지로 저당권설정 미비에서 오는 분쟁을 말한다.

바. 주민의 단합 미흡 및 추진위원 회기피현상. 위원사퇴시 재선정곤란

이상과 같은 문제점 발생으로 공사기간동안 행정관서의 배려가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게 된다.

성동구청이 이에 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해결방안 / 가. 자력개발로 추진토록 추진위원회를 위임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 추진위원대표와 시공업자간 공사계약체결

• 시공업자의 보증각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담당했다.

나. 시공회사의 연대보증 ; 서울시 주택건설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지역개발에 힘썼다. 2개의 보증회사 선정

다. 가구당 융자지원 ; 3백만원 (총 3억 7천 8백만원)

융자방법 / 토지근저당설정 ; 공사공정에 따라 물건확보 후 융자 · 건물후취 / 공사완료 후 건물근저당설정

라. 공사감리 ; 추진위원회 / 건축감리사배치(기계 · 토목 · 전기 등 감리) 구청 / 공정별 준공검사

마. 현 추진위원을 활용,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바. 건의사항으로는 자발적으로 한 자력개발로 추진하되 시에서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 물의가 없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로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표본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5. 有機的인 都市開発의 必要性

우리는 도시개발에 있어 특히 주거환경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획과 그 결과에 늘 회의적인

〈表－2〉 再開発地区 해제지역

자료:중앙일보 '82

구청별	위 치	면적 (만평)	건 물 (동)
계		221	51,898
鍾 路	신영166, 숭인12, 창신23, 동숭12, 숭인81, 무악46	4	1,905
中 區	신당321, 346, 432, 산12, 만리171, 황학2082	6	2,404
龍 山	동빙고15, 서빙고146, 용산62, 보광265, 이태원22, 한강로 3 가23, 산천122, 신창 1	18	2,970
城 東	하왕십리616, 마장564, 사근148, 구의130, 자양69, 금호1664, 300, 1475, 옥수955, 행당112	61	11,351
東大門	신설251, 용두74, 제기890, 137, 241, 청량리277, 답십리476, 294, 이문동257, 면목520, 신정200	19	6,522
城 北	동소문278, 삼선184, 돈암 6, 길음923, 성북85, 213, 정능254, 138, 7, 189, 종암78, 하월곡33, 정능44	27	8,196
道 峰	미아791, 1261, 번동458, 341, 170, 쌍문421, 206, 도봉321, 89, 상계73, 81, 중계276, 421, 창동424,	31	3,975
恩 平	수색31, 불광280	4	808
西大門	홍제 1, 현저206, 영천163, 북아현3323, 290, 창천170, 북가좌260, 99, 70, 남가좌152, 132	6	2,074
麻 浦	아현188, 도화388, 공덕216, 노고산13, 창전27, 망원396, 상암62, 대흥230	12	3,066
江 西	신정200	0.06	16
永登浦	신길56, 신도림810	1.6	314
九 老	구로744	7.6	3,833
銅 雀	노량진348, 본동467, 160, 276, 흑석252, 상도79, 256, 301, 사당95	7.5	1,762
冠 岳	봉천7, 901, 16, 196, 신림산92, 328, 신림406, 308, 183	7.2	2,496
江 東	마천129, 175, 278, 천호 4, 가락산53	3.7	206

〈그림－4〉 조경계획에 따른 조성도

추가해제 예정지역

구청별	위 치	면적 (萬坪)	건 물 (동)
계		89	42,740
鍾 路	무악46, 송월 2, 명륜 1, 숭인68	3.2	5,698
中 區	신당62	2.5	3,229
龍 山	후암297, 이태원260, 도원12, 한남571, 보광 3	9.3	3,402
城 東	사근307	4.8	3,076
東大門	신설91	0.5	593
城 北	돈암13, 돈암 6, 길음503	4	2,443
道 峰	미아1268, 미아791, 미아645, 상계142, 중계399, 중계433	12	6,968
恩 平	녹번21, 응암178, 응암397, 신사237, 수색122	9.5	3,082
西大門	홍제92, 322, 충정로 3 가 3, 북가좌144, 남가좌104, 연희 6, 홍제277, 135, 158, 21	19	4,976
麻 浦	노고산12, 창전 3, 상암 2	4	4,041
江 西	신월구역, 신정 1 구역, 신정 2	7	2,323
永登浦	신길253, 당산 5 가 1	1.1	682
銅 雀	노량진292, 상도373, 본동457, 286, 상도122	6.3	1,685
冠 岳	봉천1, 10, 16, 23	3.8	496
江 東	거여227	0.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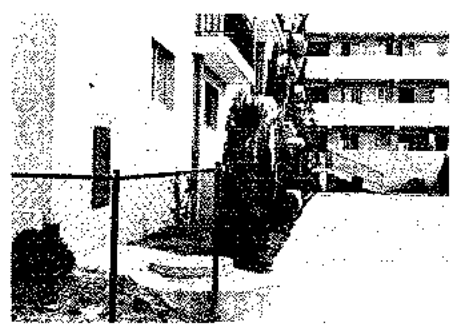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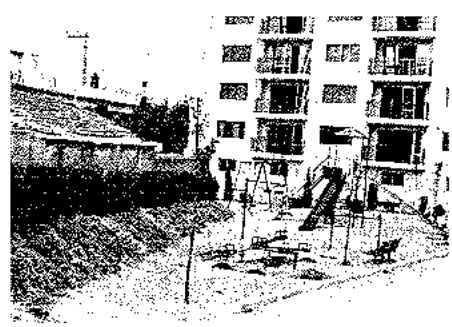

〈그림－5〉 이 안은 연립주택을 조사하여 멋진 동네를 계획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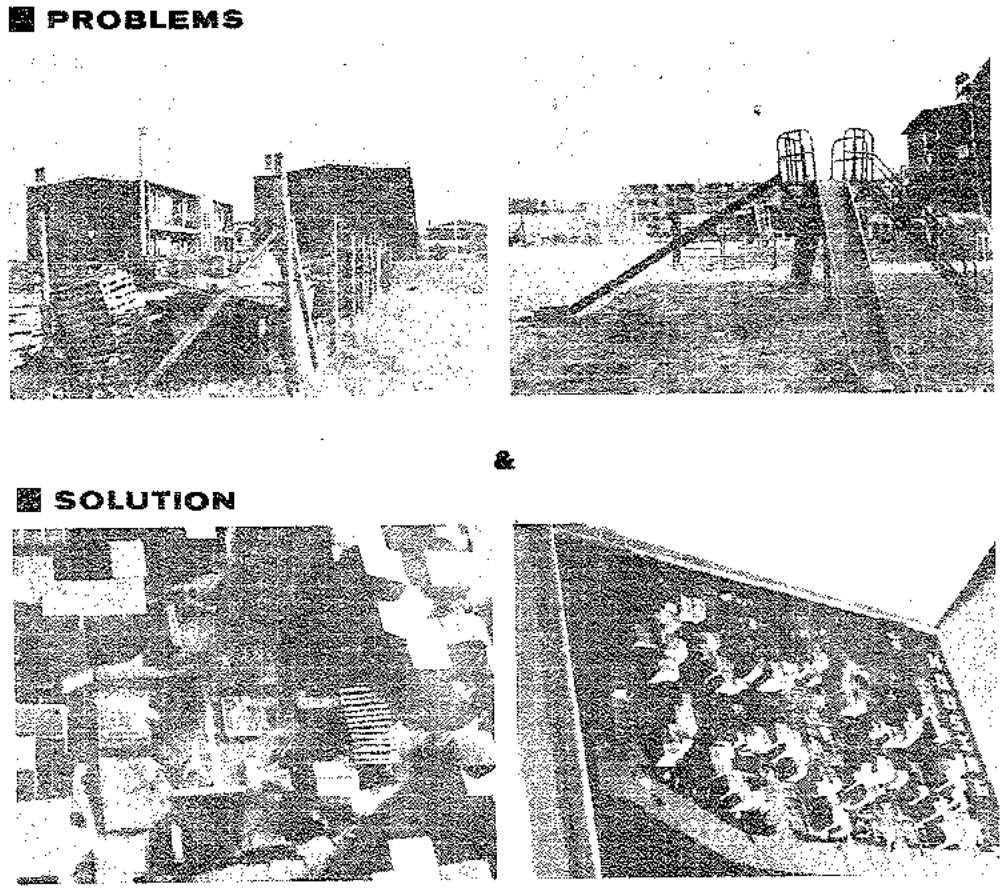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시립대학 졸업작품

발언을 종종 듣는다.

앞의 일예로서 보면 독립주택개발은 계속했으나 그 모습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됐고 자재사용이나 각실의 배치선정도 하나같이 관습을 외면하다시피 했다. (특히 변소의 배치 등에서)

주택내부 공간 활용에 있어서 벽면사용(Wall Space)을 무시하여 정서를 깨뜨리고 있으며 창은 넓어 겨울철을 대비하기에 부적합했다. 단 필요 이상의 스케일분절은 공사비를 낭비했으며 집값만 높힌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모든 결점은 유기적 도시개발을 등한시한 예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서 보면 금년들어 서울시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2백27개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5백97만평 중 52%인 75개지구 3백10만평이 해제돼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시내 227개지구 5백97만평에 들어 있는 건물 16만5천1백77동 중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통제만으로 재개발의 지정지로 묶여 건물의 증개축 등이 억제되어 왔던 2백21만평 5만1천8백95동과 신당동 62일대 2만5천평, 재개발법으로 묶어 고시했던 89만평 건물 4만2천7백40동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심의를 거쳐 해제하겠다고 발표되었다.

바라건데 도시의 유기적개발의식을 상기해서 규제와 해제를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 만족치 말고 보다 효과적인 시행으로 도시주거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5〉는 서울시립대학 4학년 졸업작품 가운데 하나로 연립주택 마을을 개발한 유기적인 안을 마련한 모델이다. 이것은 옛날 우리가 살던 마을을 재조명해서 현대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의 주거환경은 이러한 모습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로 그저 메워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결 론

앞으로 우리의 도시는 택지가 부족하고 가구가 늘고 있어 주택부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택지개발이라는 측면과 주거환경조성이라는 면에서 몇가지 결론을 구하고자 한다.

즉, 국가의 경제운용을 중시하여 규모있는 주택건설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국민정신의 유도가 필요하고, 식별력을 도입하여 주택이론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건설이 효율적인 택지 이용이라고 하겠으며 자력개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방안강구와 유기적인 개발계획수립을 통한 좋은 주거환경조성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 등을 묶어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연차적인 계획으로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慧眼의 旗手"

傳統과 創造에 관한 時代映像

박 영 효— 의전건축연구소 대표

◎…… 60年代에서 70年代에 걸쳐 伝統에 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 ……◎
◎…… 의 관심 속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이 방면의 꾸준 ……◎
◎……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몇몇 모델들은 격렬한 社会的反応 ……◎
◎…… 를 가져 오기도 했던 터라, 이러한 거론은 자칫 진부한 것 ……◎
◎…… 으로 여겨져 새삼스러운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건축계 일 ……◎
◎…… 각의 움직임은 60年, 70年代의 현상을 재현하려는 인상마저 ……◎
◎…… 주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타당한 것처럼 通念化 되지나 않 ……◎
◎…… 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개발도 ……◎
◎…… 상국의 文化的 特性으로만 보아 넘길 것인지, 아니면 달리 ……◎
◎…… 도리가 없는 것인지 ……

1. 모든 것이 변한다.

"요즘 젊은 것들……"하는 나이 든 이의 불평을 듣는다. 世上事가 변화되는 모습이 그가 간직해 온 価値基準에 어긋나 보이는 때문이다. 그 基準이 옳은 것이라면 좋은 충고가 되겠으나, 그저 막연히 간직해 온 観念이거나 因襲에 따른 생각이라면 푸념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그를 제약해 온 規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무적이며 방어적이어서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자칫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萬物은 流転한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世上은 到処 각개 분야에서 変貌·変質되어 가고 있다.

歴史는 바로 政治·社会·経済·思想·宗教 등 生活과 文化의 변천사이며 변한다는 개념없이 역사의 성립은 어렵다. 또한 변화의 개념이 없이는 進歩라는 意味도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의 生活이 얼마만큼 달라 졌느냐 하는 것은 過去와 좀더 먼 과거와 비교한다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形状이나 知識뿐만 아니라 生活方式·思考方式·価値観, 심지어는 民族의 心性마저도 변화하고 만다. 그것은 스스로 모습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작은 변화에 대한 전체 状況, 스스로의 적응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 변화된 時代의 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모습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 人口가 많아지면 耕作地도 늘어나야 하고 또한 경작하는 방법이 달라 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 伝統은 歴史를 지니며 우리에게 教訓을 준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하나 그러한 가운데는 변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生命의 존엄성이나 人類의 平和와 幸福에 대한 소망과 같은 것이다. 설사 時代에 따라서 地域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등한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人間生活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요소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변해서는 안되는 것들의 범위를 넓히고 넓혀 간다면 그것은 沈默과 静寂으로 가득 찬 세계에 이른다. 반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아주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면 그것은 커다란 混沌과 無秩序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도록 매어 둘 수도 없고 일순간에 아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하나의 단순한 가정인 셈이나 실제 세상사는 양자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유의해 볼만한 사항이 이런 경우다. 各者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어느 한 편에 치우쳐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소위 進歩的 改革論者들은 모든 것이 하루 빨리 변화되기를 고대하는 반면, 保守的인 사람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반면 伝統을 논위하는 사람 가운데는 앞서에 비하여서 훨씬 좋은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다. 보수와 진보의 좋은 점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면 伝統의 創造的繼承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무런 의문의 제기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론자와 같은 입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녀야 할 것을 지닐 줄 알고 또한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새로이 창조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수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伝統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사항과 거기에 작용되어야 할 창조행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겠으나, 자칫 전통의 역사적 来源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식이나 실증 자료만을 요구함으로써 전문인에게만 국한된 일로 접어 두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서투른 접근이나 안이한 해석을 회피하려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사항에까지 집착한 나머지 전체 흐름의 체계적인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설사 우리가 伝統의 일 단면에 이르기까지의 소상한 지식이나 고증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흐름의 큰 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을 접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흐름을 조감할 수 있는 위치에 서므로서 흘러가는 과정으로서의 전통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어느 시기의 일 전통을, 그것을 포용하는 시대환경과의 함수관계로 설명할 경우 母社会의 역할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 형태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전통이라는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사회 환경의 능동적 역할도 감지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작용하는 여러 영향 인자에 따라 수없이 많은 방향이 가상되기도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불변의 것, 찰나적인 것 또는 영속적인 것으로 파악하려 하는 전통의 일단면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溪流의 작은 물줄기가 큰 江을 이루어 흘러 가듯, 변한다는 사실로서, 歷史過程으로서의 伝統의 모습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우리가 伝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의 興亡盛衰·死滅의 역사 과정을 지닌다. 예를 들면 韓国文化의 빛나는 전통으로서 한글의 역사와 같은 것이다. 創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에는 탄압·소멸·소생·개신 등 허다한 역사적 우여곡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観点에서 伝統도 変化의 긴 과정을 지닌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으며 興이란 亡에 대한 단절이었고 盛은 衰에 대한, 우승은 패배에 대한 断切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伝統을 변하지 않도록 매어 두려는 일이나 그것의 일시적 형식에 구애 받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는 가를 느끼게 된다.

현시점의 열등한 것에 대한 断切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伝統을 논위하게 된다. 현시점의 生活에서 不合理한 点을 시정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닌 과거의 伝統은 적어도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상황을 만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 그 点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하는 教訓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伝統의 모습을 거울로 대하게 된다.

3. 伝統은 開拓者의 창조물인 동시에 시대의 共有物이다

転換이란 維持와 破壞의 상극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 크기의 차이나 농도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결국은 팽팽한 대립으로부터 유자를 점멸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전환이다.

歷史에는 転換期가 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産業革命 같은 것 또는 自由主義·民族主義의 대두, 思潮上 浪漫主義·事実主義·印象主義 등은 현상 유지에 대한 개혁의 승리인 것이며 이로 인해 이루어 지는 역사적 전환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世上事가 연속되어 변화한다는 표현보다는 계속 파괴되어 조금씩 断切되어 간다는 표현이 수긍하기에는 쉬울 듯하다. 즉 線에 비유하면 点線으로 된 曲線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지닌 伝統도 사실 이러한 破壞者와 그들에 동조하여 開拓의 소지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공헌이라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時代의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같이 하여 공유할 수 있었다면 필시 伝統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요즘의 현대적 헤어 스타일이라는 것도 전래의 머리 스타일인 상투를 자름으로써 가능해 진 것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의 한글도 한자를 사용하던 사회의 인습과 반발을 패퇴시킴으로써 가능해 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통이라는 것도 가실 앞선 전통에 대한 그의 파괴 행각을 감안한다면, 이 전통마저도 새로운 전통에 의해 파괴되리라는 깊은 암시를 보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몇개의 의문을 갖게 된다. 그 하나는 모든 것이 자꾸 파괴되고 단절되어 간다면 결국 伝統도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의 기존 전통이 파괴되어 새로운 전통이 형성될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판별되어 공감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 파괴나 단절이란 말은 당연히 창조를 수반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이름이다. 그러나 항용 創造物 継承이라고 할 경우 원형을 다치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파괴라는 의미와 창조라는 의미를 동시에 부각시키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실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다. 사실 創意力을 앞세운다면 継承이라는 의미는 자연히 감소된 것이며 계승에만 역점을 둔다면 다른 한쪽의 상대적 의미 감소를 가져 온다. 伝統의 흐름 가운데서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 남아 그것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것은 거기에 내포된 創造的 精神과 時代的 合理性일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전하여 진다는 사실이다. 형식과 내용이 바뀌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흘러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伝統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시적 流行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되는 伝統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일 개인의 행위가 그 기본이다. 개인의 올바른 행위에 대한 타인의 긍정이 있어야 하고 좋지않은 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을 경우에 사회의 바른 발전이 예상된다.

일단 사회가 변화를 싫어하는 保守的 경향을 띄거나 진취적 경향을 지니건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긍정이건 부정이건 평가를 내리는 측에 관건이 있다.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회 기반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좋은 伝統을 형성 또는 보존해 가기는 어렵다. 질 좋은 個人과 이들이 만들어 낸 사회의 연대적 共感을 확충하는 일은 확실히 중요한 사항이다.

4. 伝統은 因襲과 구분되어야 한다.

伝統이 무너지거나 새로이 形成되는 데는 대다수인의 힘을 바탕으로 하겠으나 근본 요인은 一個人 또는 불과 몇몇 사람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새로운 것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의 생각은 그것이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다수인의 기호에 편승하여 힘을 얻는다면 文化的 혼돈에 따르는 문제를 낳게된다. 무분별한 外来文化의 受容을 경계함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위치가 판별되지 않으며, 더구나 惰性에 젖어들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훌륭한 伝統이 다수의 좋지 못한 풍조에 의하여 파괴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좋지 못한 풍조가 전통인양 생각되어 보존되는 경우가 생긴다. 역사상의 因襲과 같은 경우다. 그것이 타파되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인습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깊고 깊은 타성의 늪으로 부터는 문화 발전의 추진력으로서의 創意性을 기대할 수 없으며 忍從의 울안에 갇히게 됨으로써 드넓은 문화적 지평을 내다볼 시야를 잃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伝統再考라는 말은 조금도 새삼스럽지 않다. 무분별한 伝

統再演은 또하나의 因襲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朝鮮時代 양반과 常民, 서얼의 차별 대우가 두뇌의 활용을 극소화시킴으로써 나라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음은 익히 아는 바다. 양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겠으나 크나 큰 因襲의 하나로서 역사에 남는다.

伝統은 生成된다고 밝힌 바와같이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伝統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過去의 因襲的인 것을 반복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模寫나 応用에 그치는 것이라면 결국 다른 하나의 因襲을 만들어 내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의 호응을 얻는다면 필시 因襲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유는 応用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그 자체가, 좋은 文化의 성립은 성실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伝統의 교훈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참고서를 보고서도 解答을 놀리게 쓰는 셈이다.

어려운 비유가 되겠으나 우리의 일상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의 내력을 음미해 보자. 그 연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고추의 전래로 김치맛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며 기타 첨가 조미료에 따라 또한 맛이 달라졌을 것이다.

김치의 원형을 찾아 고추나 각종 조미료를 첨가시키지 않음으로써 伝統을 再現하는 행위와 맛을 내기 위해 고추라는 요소를 첨가하여 더욱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었던 행위는 일순간에 비교된다. 개선된 맛이 옛 것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나. 그러나 당사자의 能力과 社会共感에 관한 일로 접어 둔다면, 전자는 踏襲과 모방이며 후자는 創意的 개발이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伝統的인 것에는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韓国的인 멋이나 아름다움 또는 思惟 등을 두고 이름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素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形象化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으며 伝統美의 創造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消極的 입장을 합리화 시키기도 어렵다.

韓国美의 伝統的 특징으로서 古美術에 나타나는 無関心性이나 無計劃性을 들어 디자인 素材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미 計劃에 의한 無計劃性 또는 의도적인 無関心性과는 차이를 늘어 낸다. 그들은 단순히 그 자신의 心性에 따를 뿐이었지 無計劃性이나 無関心性을 염두에 두었을 리 없다. 伝統을 재현하겠다는 意気를 지닌 것도 아니다. 寂照美나 哀傷의 美라는 전해도 세찬 힘의 표현에 역점을 둔 高句麗人을 생각한다면 그저 한동안이었겠다는 인상을 준다. 古来로부터 朝鮮에 이르기까지 왕조마다 시대마다 美의 特質이 있는 것처럼, 美의 形式과 내용도 時代環境에 따라 바뀌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같이 伝統에 대한 一義的 所見만을 가지고서는 伝統의 깊고 넓은 사항들을, 대신 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現代라는 状況下에서 伝統再現만을 고집한다면 필시 새로운 因襲이 대어나고 말다.

5. 文化의 普遍性과 世界性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이나 헤어 스타일은 우리 나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이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世界人의, 現代人의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미국·불란서·일본, 어느 나라도 그들의 고유한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이나 사용하는 건물도 어느 특정 국가의 전용 스타일이 아닌, 現代人의 現代建築일 것이다. 우리가 고유한 韓服을 대중화하지 못하고 상투를 틀지 않았다고 해서 서양문물에 압도되어 있다는 생각은 일방적인 被害意識이다. 어느 나라도 고유한 것을 생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현대적인 것을 통하여 文化的 連帯感을 느끼며, 이러한 普遍性을 통하여 世界 속의 親和力을 지니게 된다.

普遍性보다는 特殊性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까. 文化는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 内容에 있어서 現代的 普遍性을 잃을 경우 文化의 比較가 어려워 진다.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特殊性으로 취급된다. 아랍인들은 특별한 기능을 지닌 고유한 복장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로라면 잠자는 服飾文化다. 옛신도 創意力을 요하는 것으로서 큰 文化의 底辺이기 때문이다. 자기 것만을 고집함으로써 일견 호기심에 찬 눈길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저들과 대항 경쟁하여 比較 優位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現代的 입장, 現代人이 공통되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文化를 만들어 낼 때 民族文化의 卓越性을 인정받는다. 찬란한 古典文化를 가진 이집트·그리스人을 지금도 가장 우수한 文化人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위치에 서려면 지금 상황에서 새로이 문화를 우수하게 暢達해야 한다.

文化는 相互交流됨으로써 普遍性을 지니고 또한 발전한다. 예를 들면 이슬람文化가 西欧의 中世文化에 비해 우수한 점은 사라센人의 독창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 한다. 이슬람世界에 포섭된 인도·페르샤·희랍·유대 등의 기성문화로 형성된 世界文化인 점이 탁월했다는 이야기다. 찬란한 建築的 遺産을 지닌 이탈리아·그리스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의 現代建築에서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神殿을 고집함으로써 祖上의 德이나 보려 한다면, 차라리 憐憫의 情이 앞설 것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 現代状況에 맞지 않는 어휘에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藝術가가 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文化의 普遍性만을 고집함으로써 文化的 特殊性을 배제하려 해서도 안된다. 韓国이라는 地域的 條件으로서 風土와 国民性과 같은 것이 있다. 쉬운 표현을 한다면 열대의 야자수를 서울 지방에 옮겨 심을 수 없는 것처럼 文化交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藝正이 쉬 없어지지 않는 것, 김치·깍뚜기·된장찌개가 있고 따뜻한 온돌이 있는 것은 특수성이 존재하는 例라 하겠다.

6. 마이다스大王의 손

韓国에서 古建築에 대한 모더나이즈가 가해진 몇개의 건축물을 보고서 저것은 中国的이다, 日本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옳은 이야기다. 그러한 모더나이즈는 日本人이나 中国人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 外来에 의존한다면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혹 우리 고건축의 전통적인 특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모델에 더욱 近接함으로써 겨우 祖上이 만들어 낸 遺産으로 명맥을 유지하려는 것도 딱한 일이다.

모더나이즈를 하게되는 이유는 韓国的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韓国的인 느낌은 어떠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형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実相을 대할 때, 한국인의 얼굴·옷매무시, 한국의 自然, 伝統的인 民家, 木工器物, 생활관습 등등, 우리는 무심코 그것이 한국적임을 수긍한다. 그러나 기와집이나 工芸品 등 앞선 사항들을 본떴다는 인상을 받는 모더나이즈된 건물에서는 순수 한국적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원형으로 환원한다면, 中国·日本, 심지어는 르네상스 스타일이나 그리스 神殿까지도 도달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는 平行이 移動하는 現状에 따라 얼마든지 순환적 해석이 가능하다.

느낌을 온전히 전달하는 방법은 원형을 재현하는 길이며 원형에 가까울수록 앞서와 같은 확대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형에서 멀어 질수록 그것은 다른 느낌이 되어 버리고 만다. 韓国的인 느낌을 얻기 위해서 원형의 재현에 충실한다면 創意性을 상실하게 되며 원형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한국적인 느낌을 상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가는 시이소 놀이와 같은 장난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創作性을 희생하면서까지 느낌의 범안에 매어 달릴 이유가 없다. 文化遺産이 소중히 保存되는 한, 한국적인 느낌은 그 実相을 통하여 그 속에 간직되는 것이다. 또한 韓国的인 느낌이 先祖들에 의하여 生成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現代状況에 맞는 새로운 느낌으로써 気概과 理想에 가득찬 韓国的인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現代建築의 모터브로서 古建築에 손을 대었을 때, 마이다스大王의 손에 의한 것처럼 그냥 生命力을 잃고 만다. 古建築이란 지나간 時代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것이지만 現代에 옮겨다 놓을 경우 그 필연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 時代状況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던 真実된 건물이 모더나이즈에 의하여 虛構와 虛飾으로 가득차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防水가 여의치 않을 당시에는 기와를 씌우는 것이 비를 가려주는 훌륭한 방법이었으며 이를 위해 지붕은 경사지어야 한다. 木造기둥은 風雨에 쉬 부패되므로 처마를 길게 뽑아야 수명도 길다. 처마를 길게 뽑을려면 柱心包든 多包든 그 켄틸레버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법이 필수적이다. 어디 하나 거짓이 없다. 여기에 비하여 아스팔트 지붕 防水 위에 기와를 얹고 콘크리트 기둥에 처마를 뽑아 공포형태를 단순하게 하여 흉내를 낸 건물은 眞実性이 배제되어 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의도하는 한국적인 느낌도 결국 구하지 못하고 마는 셈이다.

7. 사실상 우리의 創意力은 한계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온돌과 같은 것은 어떠한 創造的 노력에 의해서도 더 나은 것으로 대치되지 못했다. 그것은 대다수인의 生活慣習이 그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慣習을 고치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그보다 더 나은 것, 대다수인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創意力은 일단 한계를 지닌 셈이 된다.

그것은 어느 時代 어느 状況이건 공통되게 나타난다. 아치나 볼트에 의한 구조법을 하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은 鉄骨이나 철근콘크리트 출현으로 국한된 사고를 버려야 했다.

醫学의 발달로 치유에 대한 미신적 태도를 버리기까지 무당 살풀이는 신통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느 시점에서나 상황은 제한된 것이어서 쉽게 그 이상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오늘날 現代建築의 어휘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 사용되어 지는 경우를 보게된다. 철근콘크리트나 鉄骨構造에 대치되는 대중적 구조는 아직 없다. 高層建物의 수직교통 수단으로서 엘리베이터보다 더 편리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계·설비·재료뿐만 아니라 生活慣習이나 造形的 태도마저 그러한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고 더욱 편리해 져야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限界的 状況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실 파괴되어 없어 지거나 새롭게 대치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伝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한다면 지난날 좋지 못한 풍조에 밀려 없어져 버린 것 가운데서도 오늘날 그 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다시 되살려 낼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生活慣習·思考方式·哲学 등 有形·無形의 것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創意力이 한계에 부딪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지난 날의 훌륭한 生活哲学을 우리의 현대생활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으며, 建築哲学으로 참고할 수도 있는 점이다. 自然에 순응하는 마음이나 非整齊的인 면에 호감을 지닌 造形的 態度는 그 一例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없어져 버린 古語가 그 아름다움과 意味의 함축성이나 새로움으로 말마암아 生活言語化 되거나, 陵에서 발굴된 遺物의 裝飾 무늬가 수천년을 격한 오늘의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점은 창의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韓国的인 느낌을 되찾아 내는 一例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우리가 지닌 더 좋은 것을 놔두고서도 그 보다 못한 것을 찾는데 궁색해 질 수도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인해 더 밝은 내일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안개 속을 간다고나 할까. 도무지 荒雜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른 판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慧眼을 지닌 旗手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시점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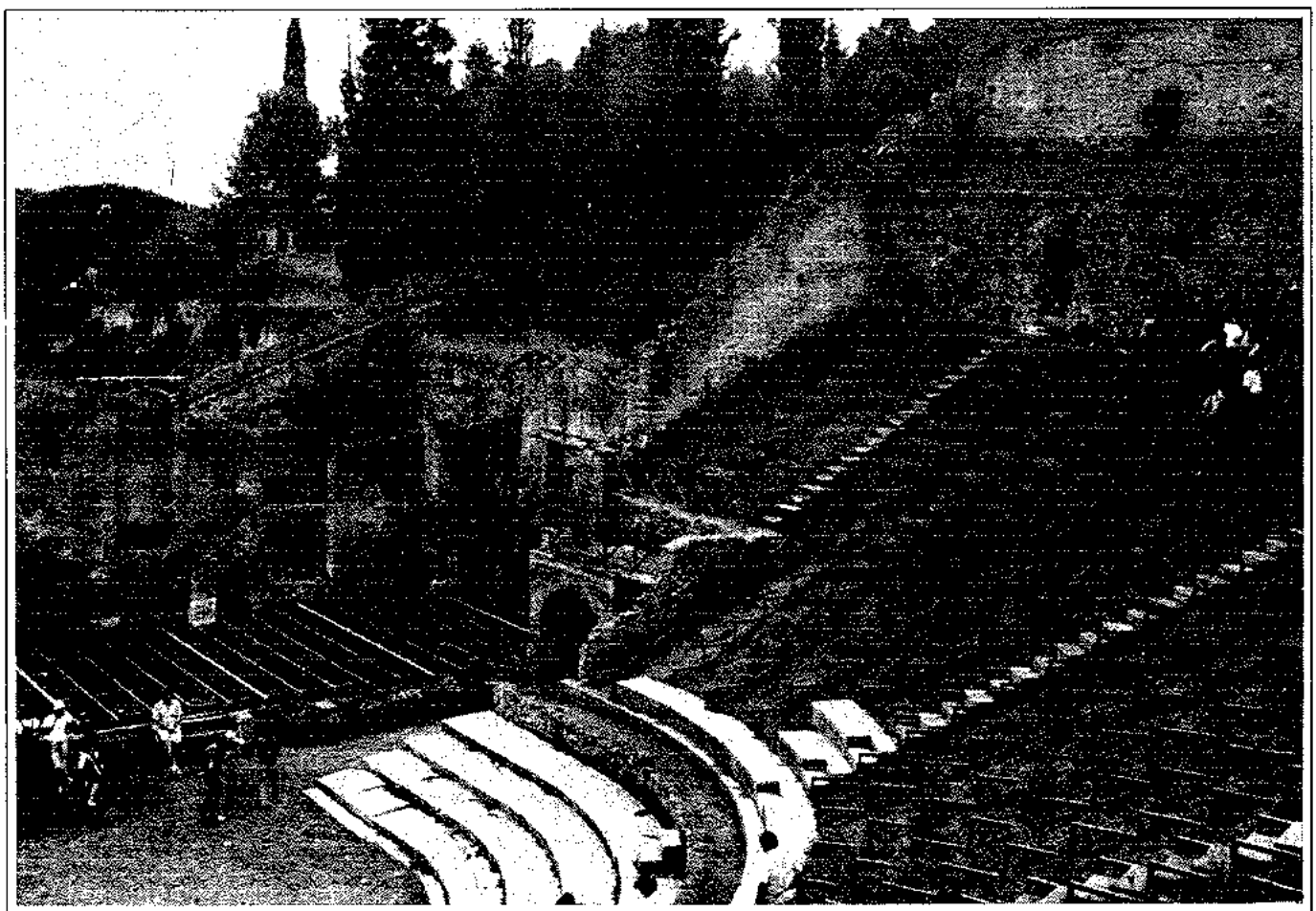

連載〔4〕

잃어버린 古代都市

Ⅳ. 人間의 想像力은 무엇을 만들었을까?

인간의 文化的 상상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은 상상력에 의해서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상상력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물이나 말이나 몸의 움직임을 공통으로 형상화시킨 것이 文化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의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의 문화 발생 지점을 死者를 동반한 葬送儀禮의 흔적에다 두고 있다. 물론 돌을 주어 정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식으로 메운다거나, 단순한 것이기는 하나 어떠한 동물도, 아무리 인류에 가까운 유인원이나 사람科의 네안델타루 등에도 死者를 동반한 흔적은 남겨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死者를 동반한다는 것은 적어도 「死」, 그것도 자신 이외의 同類에 「死」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떤 형태로든 이해하려고 하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죽음은 오늘에 와서는 풀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상상력이나, 呪術이나, 종교 등에 의해 어떻게 하든 인간에게 납득이 가는 것으로서 공동생활 속에 꾸려 왔는데 이것이 곧 葬送儀禮라고 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 산 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인류문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神話분류에 의하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死와 生殖, 식물의 발생, 이러한 것들을 一体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상하여 산출해 낸 것을 신화라고 말하고 있다. 신화는 그것이 오늘에 와서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보다 인간이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풀 수 없는 어떤 관계를 통일한 것으로서 납득하려고 하는 이해와 노력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만 한다면 자신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자신이 사라져 소멸하는 작은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것들과의 관계를 확실히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 둘을 포함한 관계가 실은 「세계」=「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궁극의 의미에서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상력이 만들어 낸 완전한 세계의 이미지에 따라 기도하며, 사랑하고, 모이며, 즐거워하고, 슬퍼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한 여러가지 의식과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이 실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起源인 것이다. 〈*〉

한남동 L씨주택
金重業—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HANNAM-DONG LEE'S RESIDENCE
Kim, Chung Up-Kim Chung Up & Associates International

L씨댁
公日坤—공일곤건축연구소

L'S RESIDENCE
Kong, Il Kon-Kong Il Kon Architects & Engineers

서교동 윤씨댁
金琪碩—아름건축연구소

SEOKYO-DONG YOUN'S HOUSE
Kim, Ki Sok-Aram Architect's Atelier

Y씨주택
金明善—강서합동건축설계사무소

MR. Y'S RESIDENCE
Kim, Myoung Sun-Gangseo Architects & Engineers LTD.

방배동 B씨주택
金武永—한국환경설계연구소

MR. B'S RESIDENCE
Kim, Moo Young-Environmental Professionals Group of Korea

서교동 박씨집
金錫澈—건축설계사무소 아키반

MR. PARK'S RESIDENCE
Kim, Suk Chul-Archiban Group

S씨주택
金榮洙—김영수건축연구소

PRESIDENT SHIN'S RESIDENCE
Kim, Young Soo-K.Y.S & Associates, Architects & Engineers

역삼동 A씨댁
金正澈—주·정림건축

YEOKSAM-DONG A'S RESIDENCE
Kim, Jung Chul-Jung Lim Architects & Engineers

구기동 K씨주택
朴遠泰—동남아종합기술공사

KUKI-DONG K'S RESIDENCE
Park, Won Tai-Dong Nam Ah Architects & Engineering Co.

사당동 서씨주택
宋基德—주·정일엔지니어링

MR. SEO'S RESIDENCE
Song, Ki Duk-Jung Il Engineering CO., LTD.

杏仙堂
吳澤吉—건축연구소 場

HAENG SUN DANG
Oh, Taik Gil-Jang Architects / Planners

쌍문동 L씨댁
俞景哲—주·종합건축설계사무소

SSANGMUN-DONG L'S RESIDENCE
Yoo, Kyung Chul-Chong-Hap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

서초동 심씨댁
尹泰壽—남부합동건축설계공사

MR. SHIM'S RESIDENCE
Yoon, Tae Soo-Nam Boo Engineers & Associates

이씨댁
李康植—주·완종합건축

MR. LEE'S RESIDENCE
Lee, Kang Sik-Wan CO., LTD. Architects & Engineers

논현동 C씨댁
李鍾世—남경건축설계사무소

NONHYUN-DONG C'S RESIDENCE
Lee, Jong Sei-Nam Kyung Architects & Engineers

신림동 J씨주택
林東潤—아진종합건축

SHINLIM-DONG J'S RESIDENCE
Lim, Dong Youn-Architects Group A-JIN

삼성동 L씨댁
鄭求殷—삼예종합건축

SAMSEONG-DONG L'S RESIDENCE
Choung, Koo Uen-3 Architecture & Interior

홍씨주택
黃一仁—종합환경연구소 일건

HONG'S HOUSE
Hwang, Irin-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IL KUN

동빙고동 H씨댁
金 浩—주·부림종합설계

DONGBINGGO-DONG H'S RESIDENCE
Kim, Ho-Boo Lim Architects Planners & Engineers

동선동 이씨댁
劉圭成—범양종합건축연구소

DONGSUN-DONG LEE'S RESIDENCE
Yoo, Kyu Sung-Bum Yang Architects & Engineers

한남동 L씨주택

金 重 業—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 건축사

HANNAM-DONG LEE'S RESIDENCE

Kim, Chung Up—Kim Chung Up & Associates International/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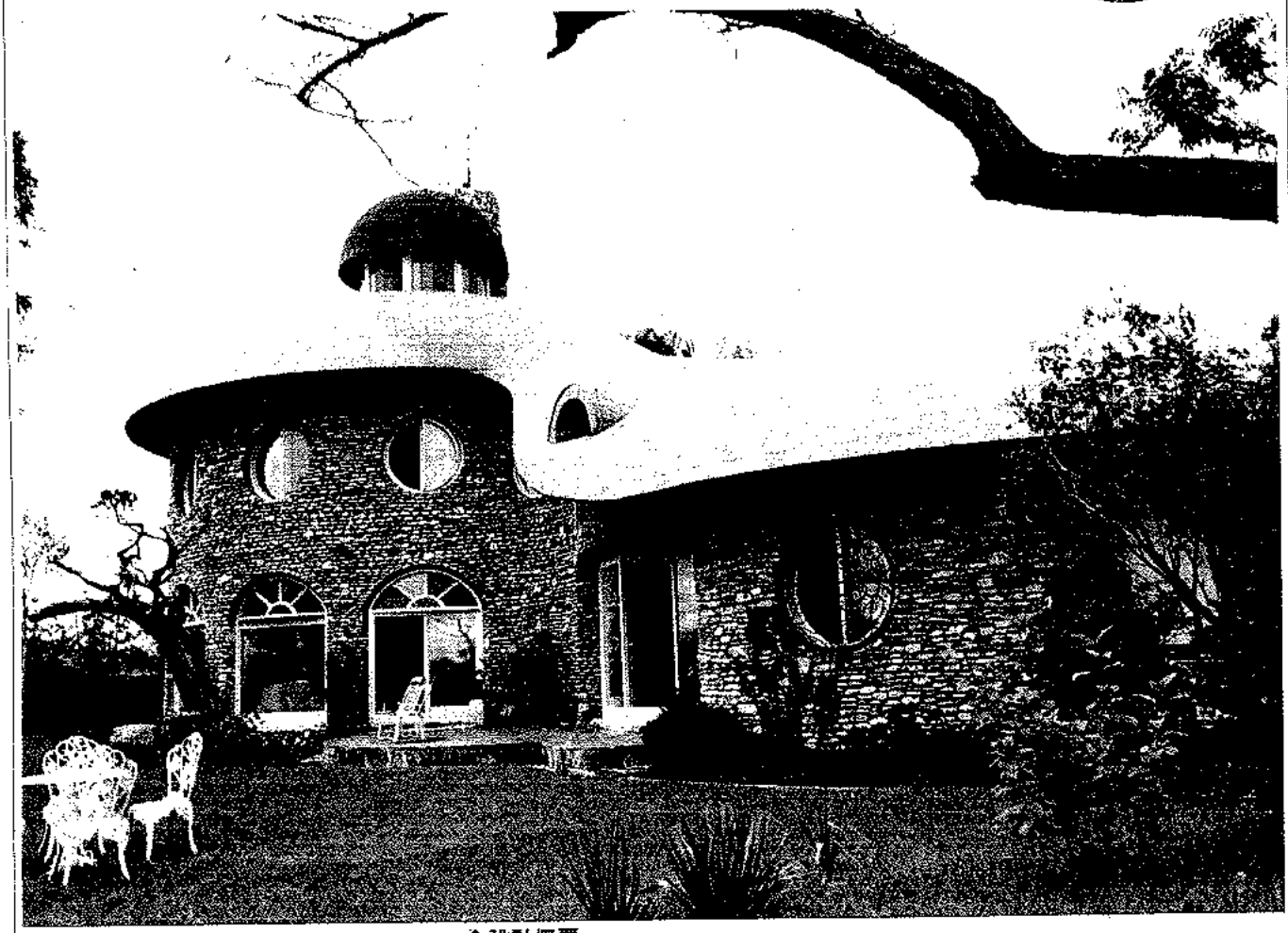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
건축면적 : 182㎡
연 면 적 : 440㎡
구 조 : 조적조

◆設計概要

이 집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이다.

둥근 공간이란 더없이 풍부한 것.

한강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요지에 초가집같은 부드러움을 담았다.

울고 싶을 때 맘껏 흐느낄 수도 있는 아늑한 공간이 있고 손들과 밤새 벽난로의 화사한 불꽃에 어울리어 색유리에서 비친 달빛의 흐름에 취하며 오손도손 정답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에워싼 수없이 많은 꽃들이 향기를 듬뿍 풍기는 우리네만의 공간.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 또하나의 자연을 수놓는 이 작업에 나는 정열을 쏟았다.

● 2층평면도
1 – 주인침실
2 – 계단실
3 – 벽난로
4 – 서재
5 – 화장대
6 – 욕실
7 – 물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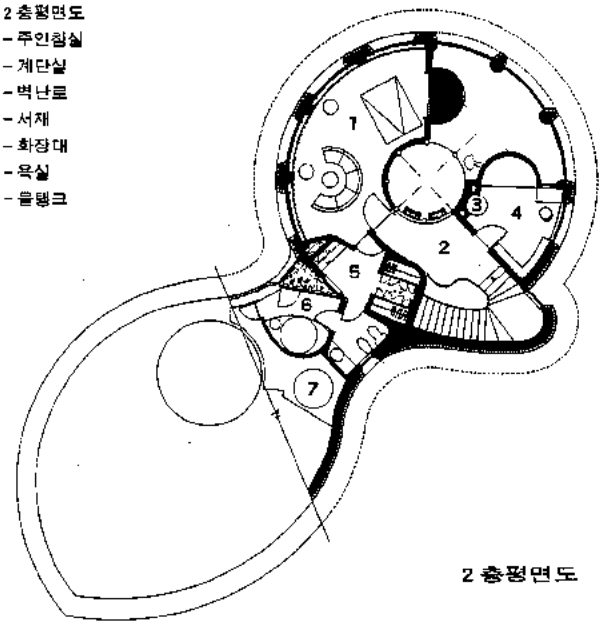

2층평면도

● 1층평면도
1 – 거실
2 – 온실
3 – 홀
4 – 현관
5 – MORNING TABLE
6 – 식당
7 – 침실A
8 – 침실B
9 – 주방
10 – 욕도
11 –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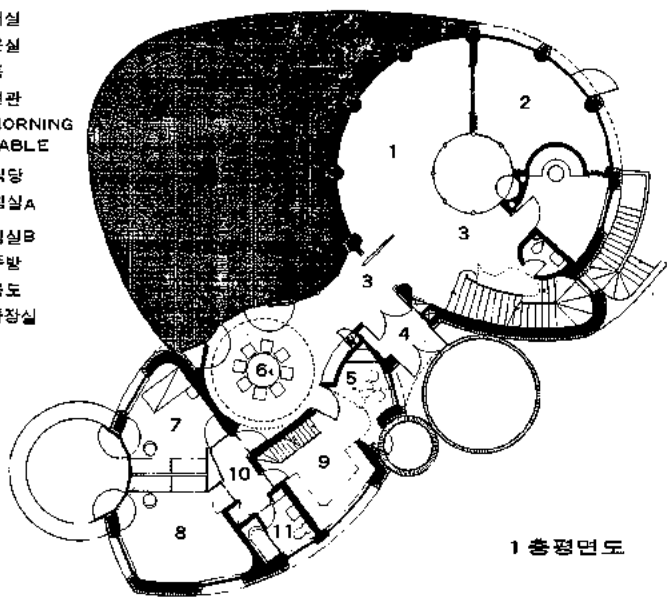

1층평면도

●주단면도
1 – 홀
2 – 온실
3 – 작업및드레스실
4 – 욕실
5 – 식당
6 – 아동방
7 – 작업실
8 –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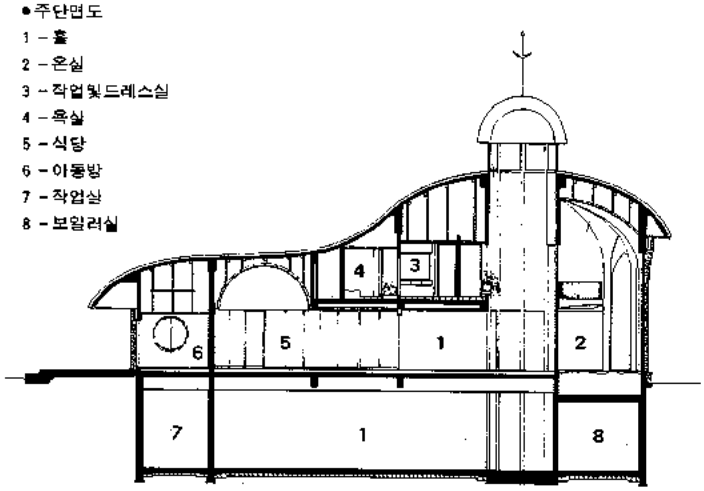

주단면도

L씨댁

公 日 坤 — 공일곤건축연구소 / 건축사

L'S RESIDENCE

Kong, Il Kon — Kong Il Kon Architects & Engineers/Architect

소 재 지 : 부산직할시 사직동
대지면적 : 601. 65㎡
구 조 : 벽돌쌓기 및 기와얹기
마감재료 : 변색벽돌 치장쌓기 및 오지S 기와얹기

◆設計概要

일반적인 (즉 경제적인) 타이트한 기능위주보다는 실내외를 통해 어슬렁거릴 수 있는 (친근감이 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 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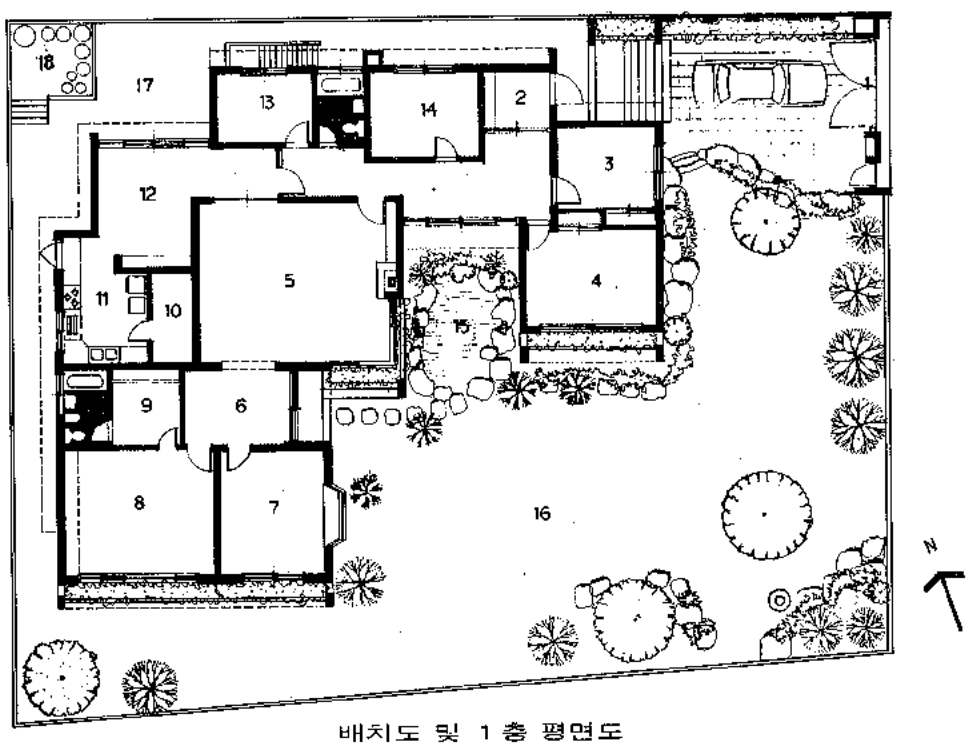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1 – 대문
2 – 현관
3 – 참실
4 – 침실
5 – 거실
6 – 전실
7 – 서재
8 – 주안실
9 – 갱의실
10 – 창고
11 – 부엌
12 – 식당
13 – 다용도실
14 – 침실
15 – 연못
16 – 안마당
17 – 후원
18 – 장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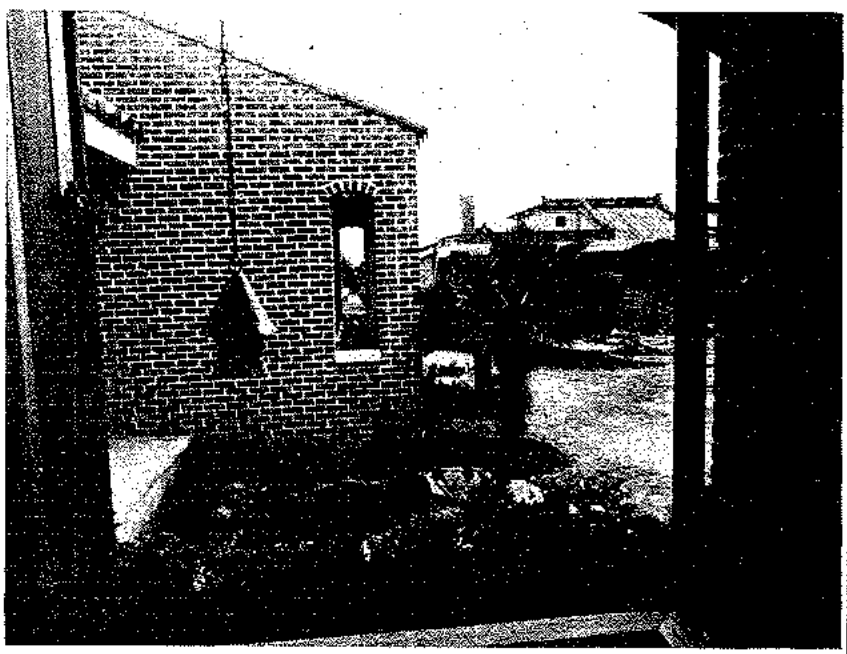

서교동 윤세댁

金 琪 碩 — 아름건축연구소 / 건축사

SEOKYO DONG YOUN'S HOUSE

Kim, Ki SOK — Aram Architect's Atelier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연 면 적 : 주택 A — 275.94㎡
주택 B — 197.28㎡
규 모 :
주택 A — 지하 1층 · 지상 2층
주택 B — 지하 1층 · 지상 1층
창 호 :
암갈색 발색알루미늄 틀 · 춘양목

◆ 設計概要

두개의 주택은 정원을 중심으로 마주 보고 있으며 본채에는 식구가 많은 주인세대가 살고 별채에는 노친네들께서 기거하고 있다.

본채의 공간구성은 2층에는 Master Zone으로, 아래층에는 Family Zone으로 되어 있다.

또한 충분한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중정을 활용하였으며 가족실과 외부공간과의 연결을 위해서 전통적인 툇마루를 사용하였고 깊은 추녀로 그늘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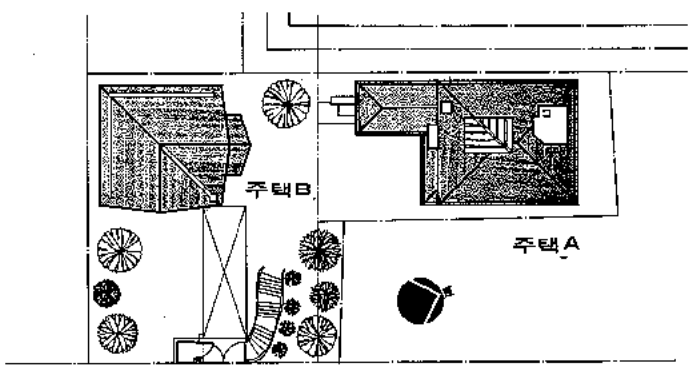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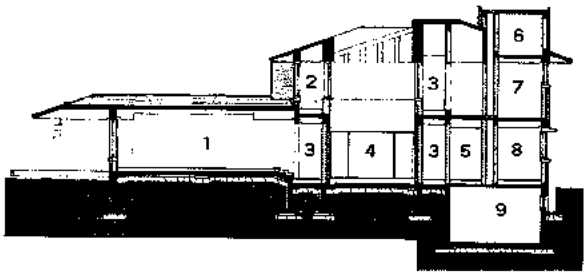

주 단 면 도(주택A)

● 1층평면도(주택A)
1 – 거실
2 – 식당
3 – 주방
4 – 다용도실
5 – 창고
6 – 가정부방
7 – 현관
8 – 아동방
9 – 화장실

● 주단면도(주택A)
1 – 가족실
2 – 주인거실
3 – 복도
4 – 중정
5 – 창고
6 – 뜰뱅크실
7 – 욕실
8 – 가정부방
9 – 보일러실

● 지하층평면도(주택B)
1 – 가족실
2 – 주인거실
3 – 침실
4 – 부엌
5 – 창고
6 – 보일러실
7 – 탈의실

● 1층평면도(주택B)
1 – 현관
2 – 거실
3 – 주인방
4 – 온돌방
5 – 부엌
6 – 가정부방
7 – 욕실
8 –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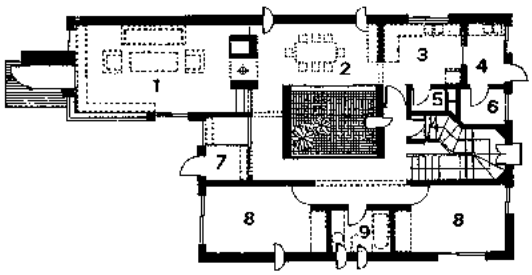

1층 평면도(주택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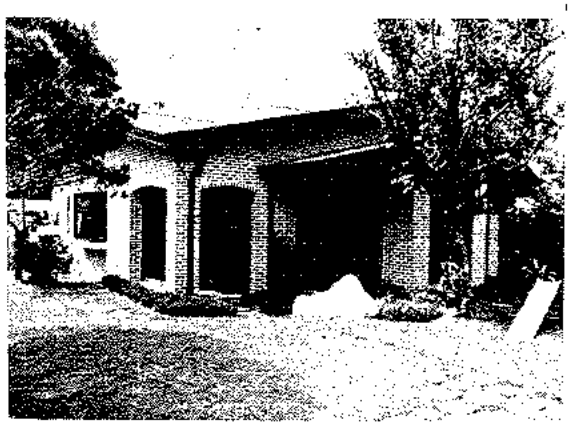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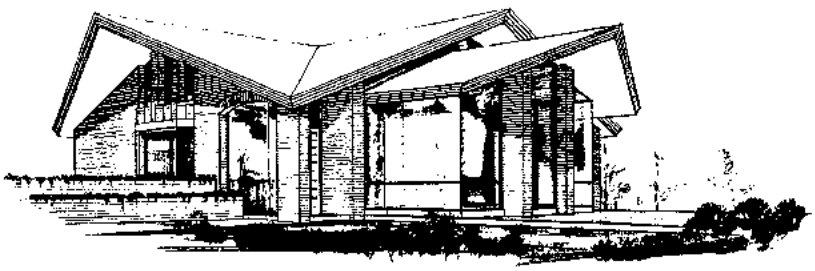

외관투시도(주택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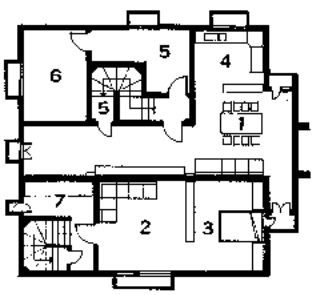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주택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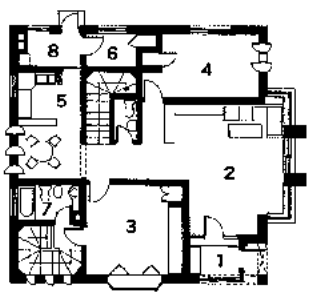

1층 평면도(주택B)

Y씨주택

金 明 善 — 강서합동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MR. Y'S RESIDENCE

Kim, Myoung Sun — Gangseo Architects & Engineers LTD.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목동
대지면적 : 425.43㎡
연 면 적 : 301.50㎡
구 조 : 조적조

◆設計概要

주거지역으로서는 적격지인 대지로서 남쪽 도로가 전면으로 나 있어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정원을 꾸몄다.

내부의 동선은 최대한으로 줄여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구조 안배를 하였으며 거실을 남쪽 정원에 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쾌적한 공간 구성을 꾀하였다.

1 – 현관
2 – 거실
3 – 안방
4 – 식당
5 – 주방
6 – 방
7 – 욕실
8 – 다용도실
9 – 욕실
10 – 침실
11 – 서재실
12 – 응접실
13 – 학생방
14 – 학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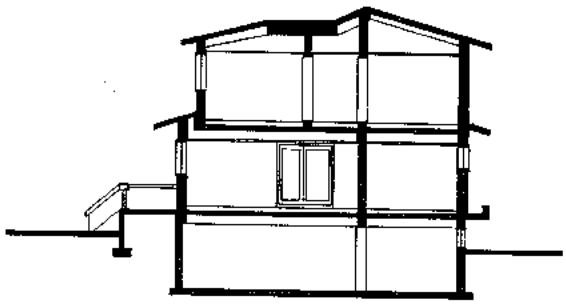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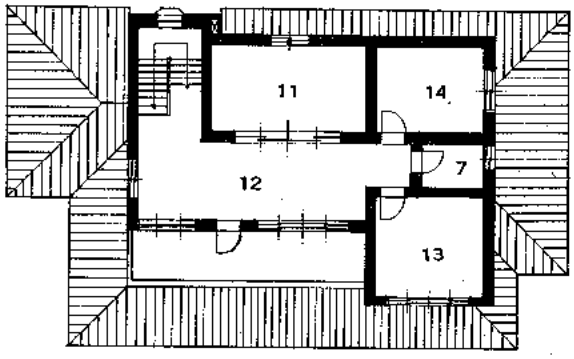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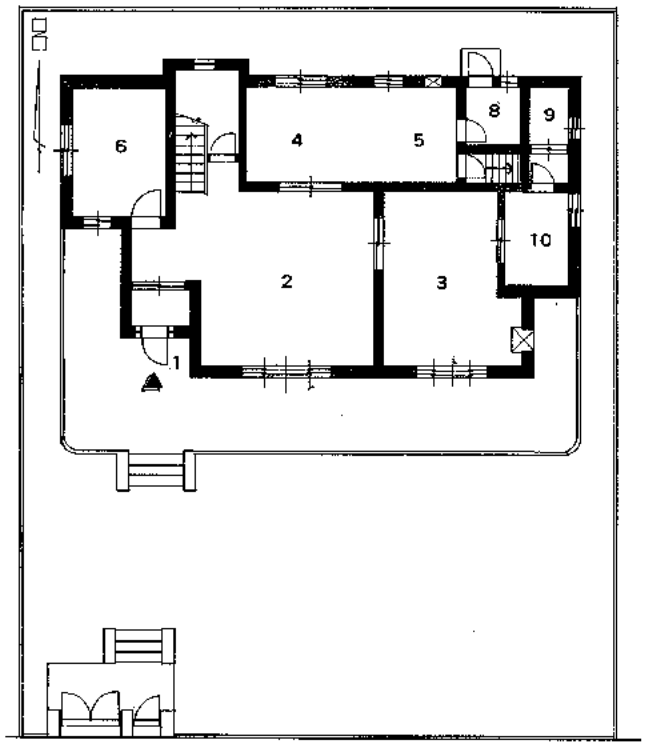

배치도및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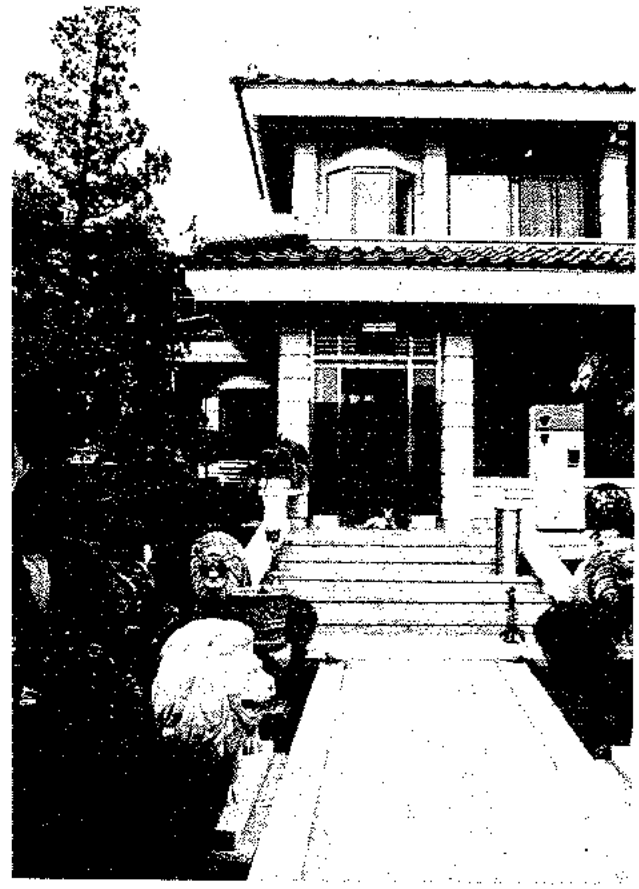

방배동 B씨주택

金 武 永 — 한국환경설계연구소 / 건축사

MR. B'S RESIDENCE

Kim, Moo Young — Environmental Professionals Group of Korea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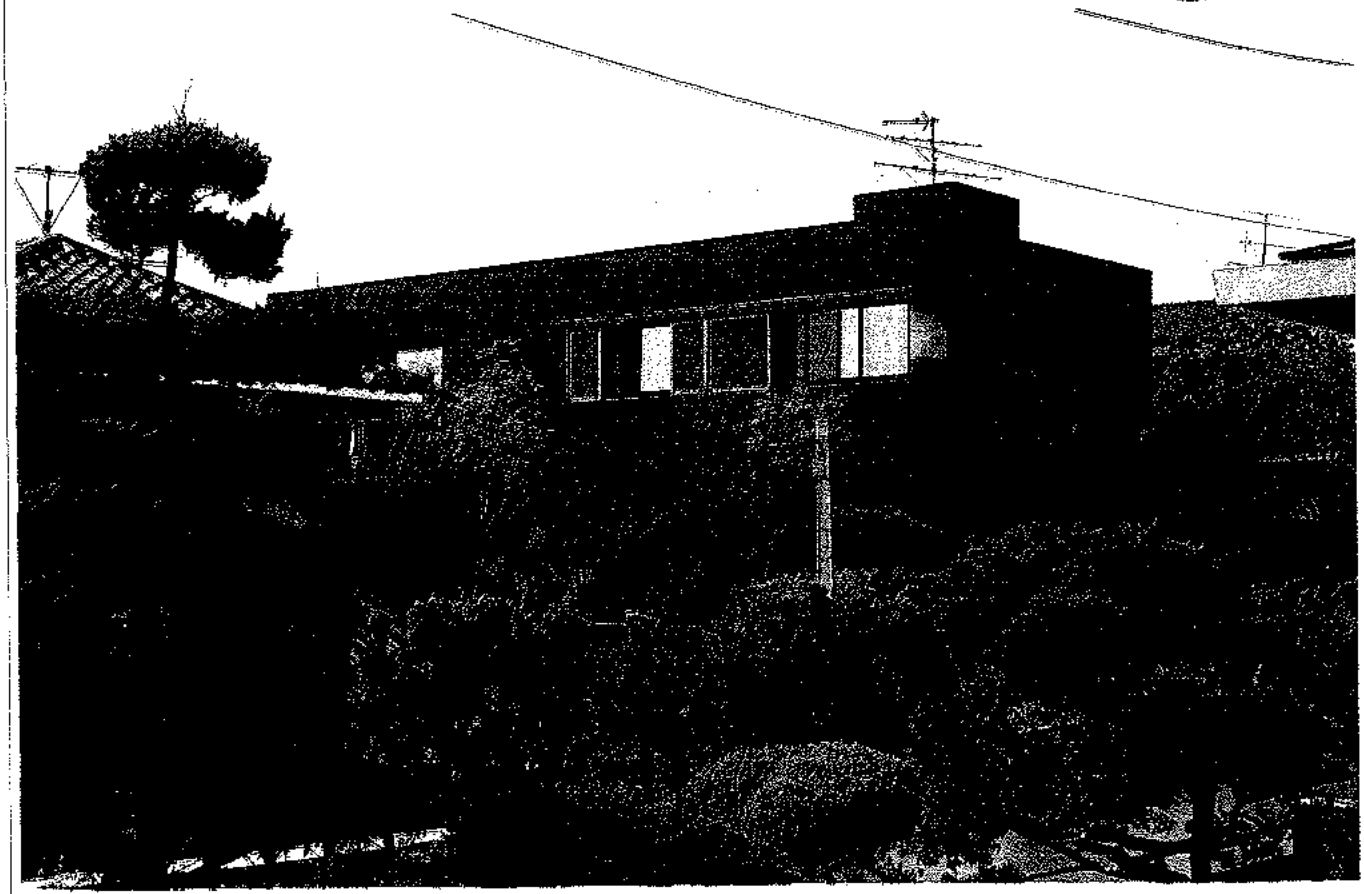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방배동
대지면적 : 572㎡
건축면적 : 149㎡
연 면 적 : 314㎡
구 조 : 조적조
주요외장재 : 붉은벽돌

◆設計概要

이 주택은 미국유학을 다녀온 40대 초반의 부부와 그들의 3자녀를 위한 집이다. 미국적 실용주의가 몸에 밴 건축주와 우리는 소탈하면서도 평범한 집을 지으려는 개념의 정립에서는 쉽게 합의를 보았으나 실용성만을 내세우는 건축주와 건물의 공간성·진입 시퀜스 등을 따지는 설계자와의 의견 대립이 몇달간 계속되었다.

서재는 가장 중요해야 하며, 침실에서는 밤에 깨어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주방에서는 현관이 보여야 한다는 등등의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대지의 고저차를 따라 차고는 지하실에, 거실은 경관이 제일 좋은 전면 모퉁이에, 아틀리에는 멀리 관악산을 바라볼 수 있게 2층 남측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모자라는 공간감은 디테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벽밑에 심은 담장이 덩굴이 자라나는 내년 봄쯤이면 집은 제모습을 찾아 활기에 넘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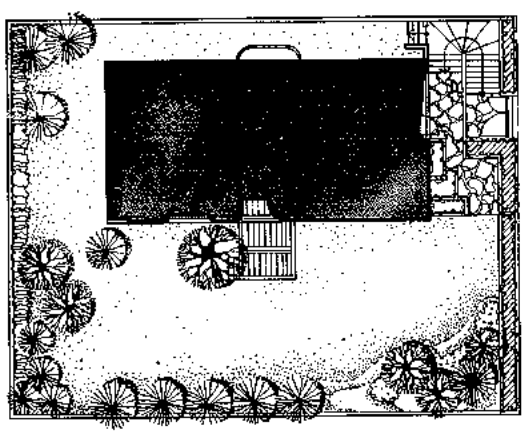

배치도

● 1층평면도
1 – 현관
2 – 홀
3 – 거실
4 – 식당
5 – 주방
6 – 안방
7 – 화장실
8 – 다용도실
9 – 가정부방
10 – 연탄보일러
11 – 발코니
12 – DECK
13 – FIRE PLACE

● 2층평면도
1 – 아동방
2 – 욕실
3 – 주인침실
4 – 아틀리에
5 – 서재
6 – 홀
7 – LINEN실
8 – WALK-IN CLOSET

● 주단면도
1 – 현관
2 – 홀
3 – 식당
4 – 주방
5 – 다용도실
6 – 욕실
7 – 주인침실
8 – 서재
9 – 홀
10 – 욕실
11 – 울텡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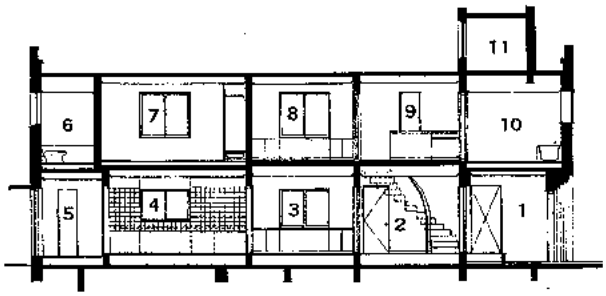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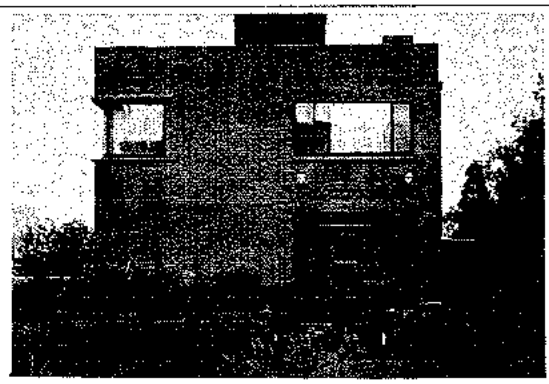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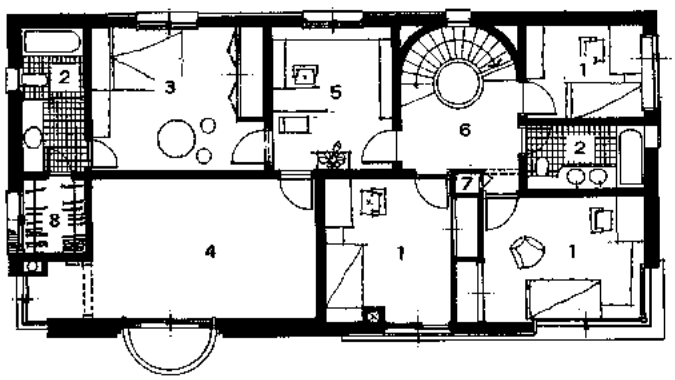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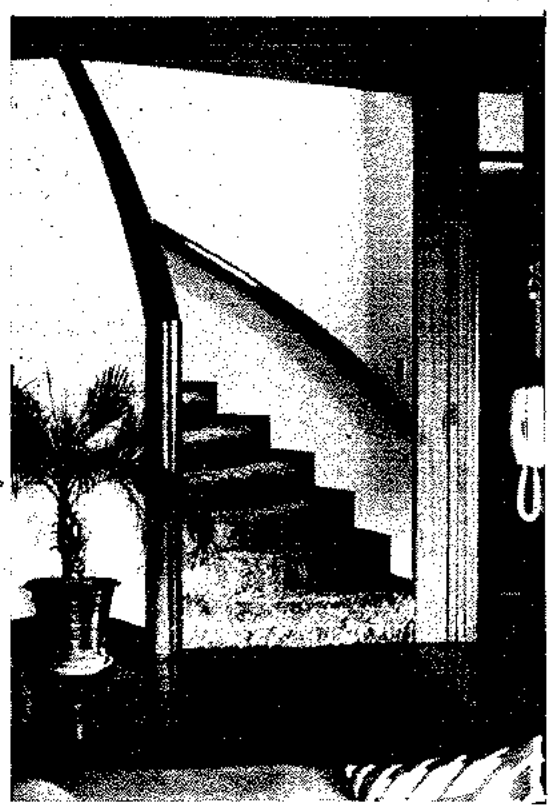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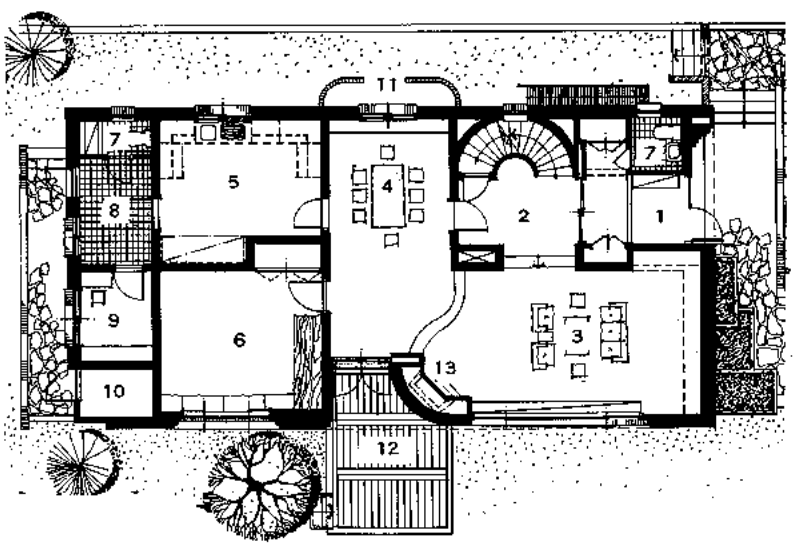

1층평면도

서교동 박씨집

金 錫 澈—건축설계사무소 아키반 / 건축사

MR. PARK'S RESIDENCE

Kim, Suk Chul—Archiban Group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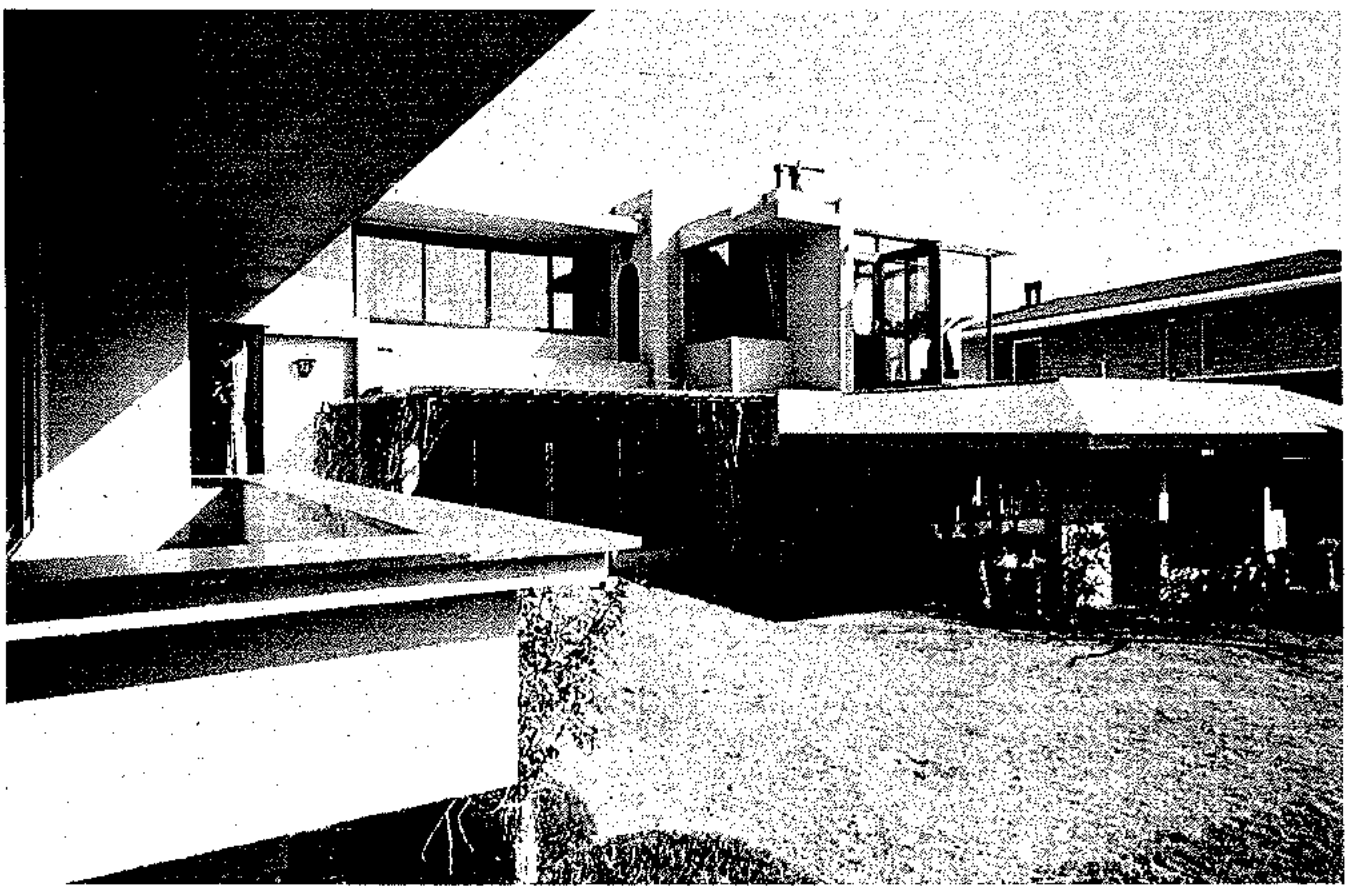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 363㎡
건축면적 : 138㎡
연 면 적 : 257㎡
구 조 : 조적조

◆ 設計概要

오랫동안 시도해 온 〈건축의 토지화〉와 〈중간구조〉의 발견을 통해 주택에서의 도시적 실재화를 추구해 본 것 중의 한 결과이다.

중정과 담과 집 사이의 사잇공간을 주택의 〈중간구조〉로 설정하여 길측 저층부분의 토지화와 연속시켜 외부공간의 내계화를 이룬 성취는 있었으나 일상적 사건 속에 여러 건축적 맥락을 연계시키는 스케일의 변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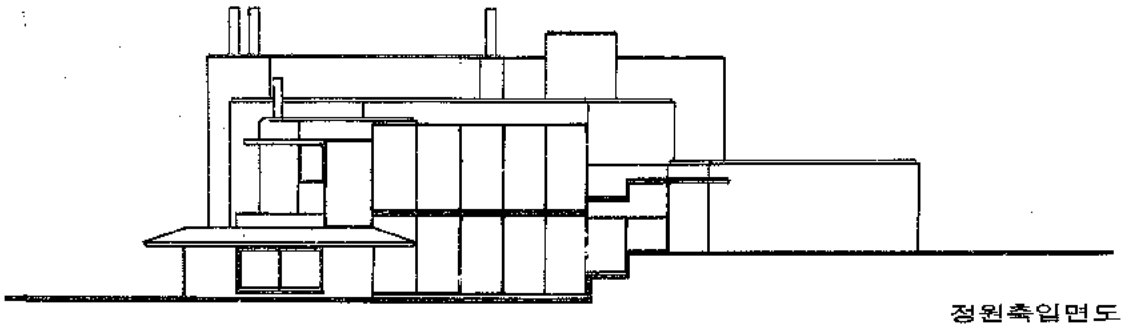

정원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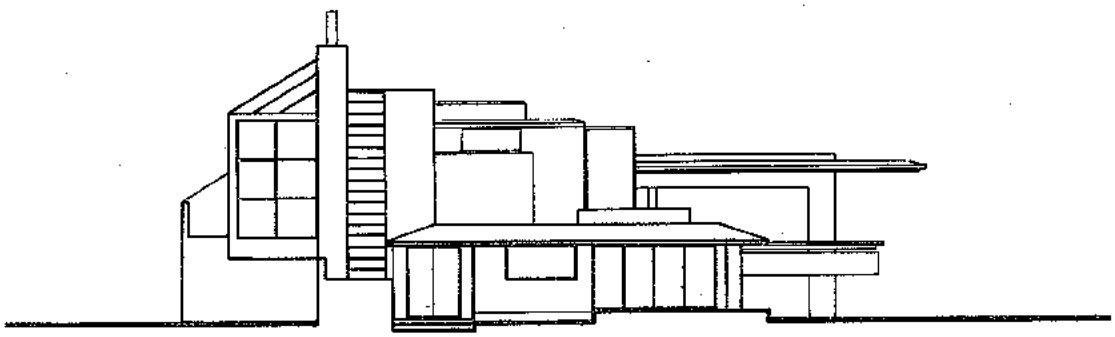

도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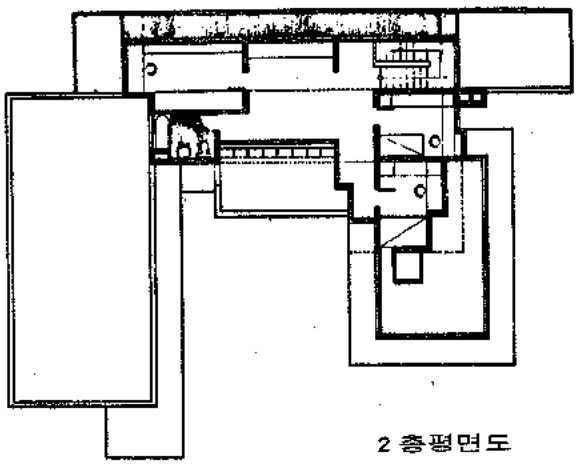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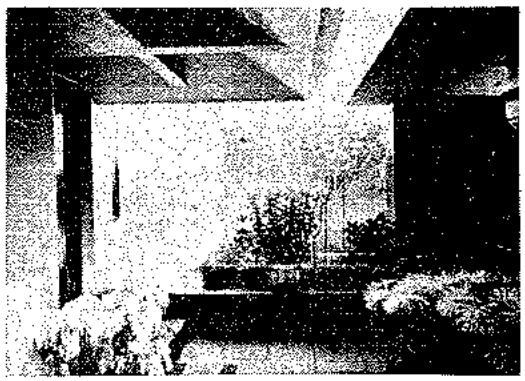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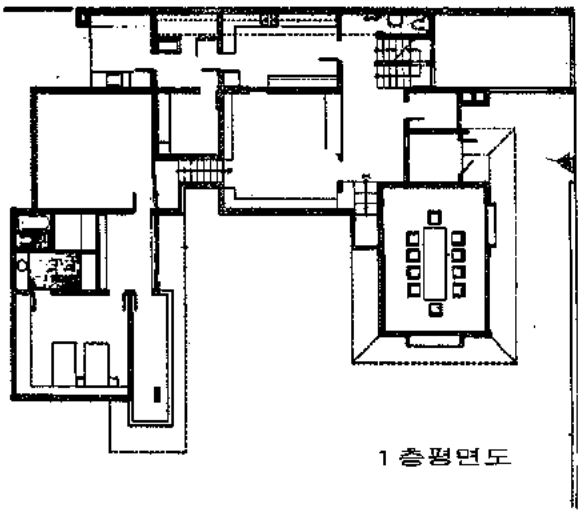

1 층평면도

S씨주택

金 榮 洙— 김영수건축연구소 / 건축사

PRESIDENT SHIN'S RESIDENCE

Kim, Young Soo— K.Y.S & Associates,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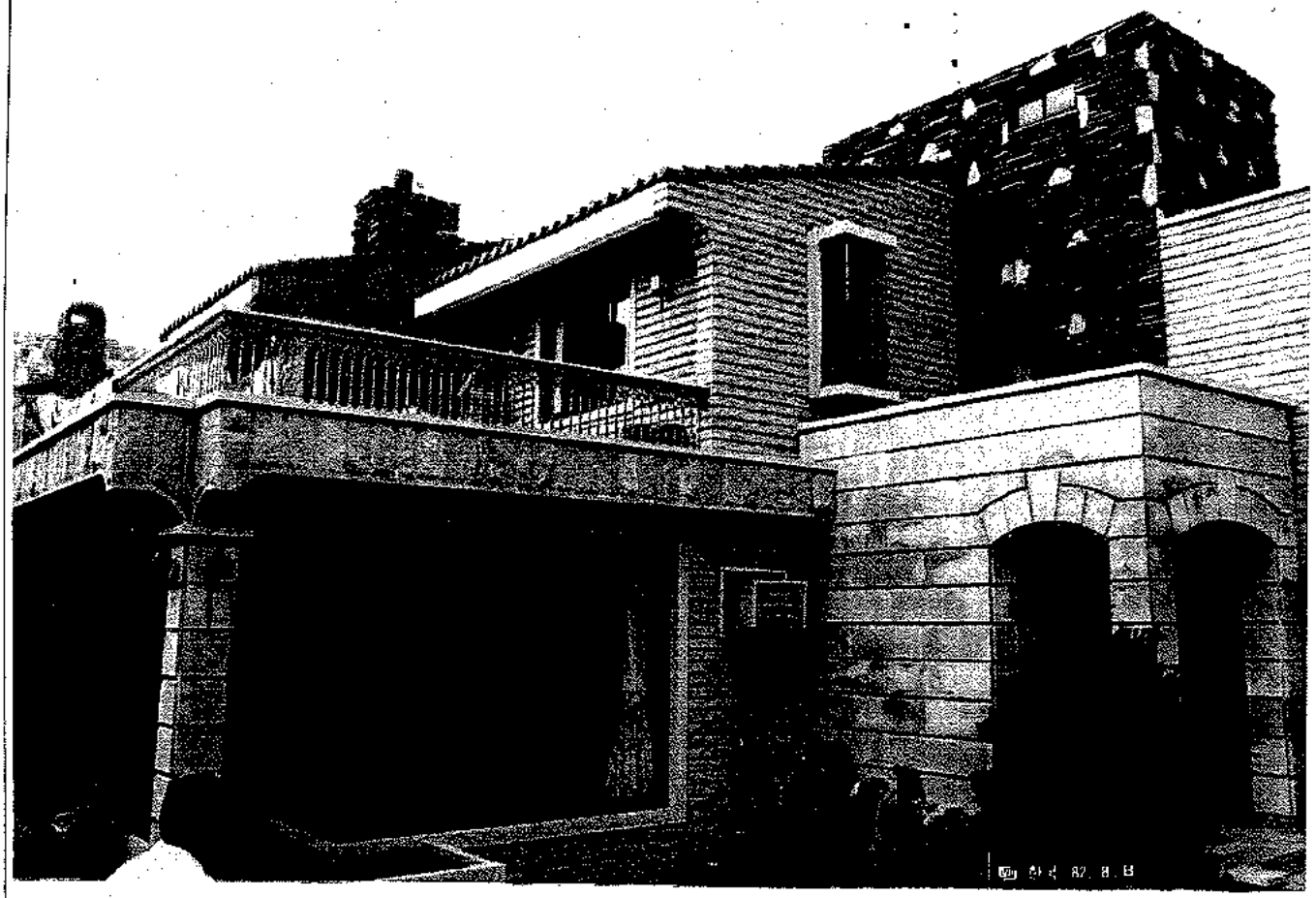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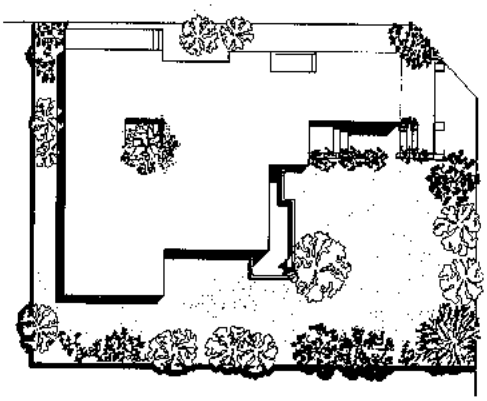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방배동
대지면적 : 409.59㎡
건축면적 : 150.96㎡
연 면 적 : 268.41㎡

◆設計概要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주거환경 속에서 그런대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곳을 찾아 하늘과 산 그리고 이웃의 자연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어 보다 잘 살려줄 수는 없을까.

것임이 자명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틀림없는 우리 것임을 자부하는 생활공간이 꼭 실현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자연에 누워 인간을 맞으면서 문화를 즐기는 주택이야말로 진정 내 나름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데까지 한치라도 더 가까이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이 솔직한 나의 마음이다.

불필요한 音과 熱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필요한 光線과 空氣는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의 妙로서 주택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이트〉의 〈로비 하우스〉나 〈꼬르뷔제〉의 〈사브와 저택〉은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기와집이나 초가집을 얘기할 수도 없지만 외부적인 색깔과 내부적인 때깔이 언제나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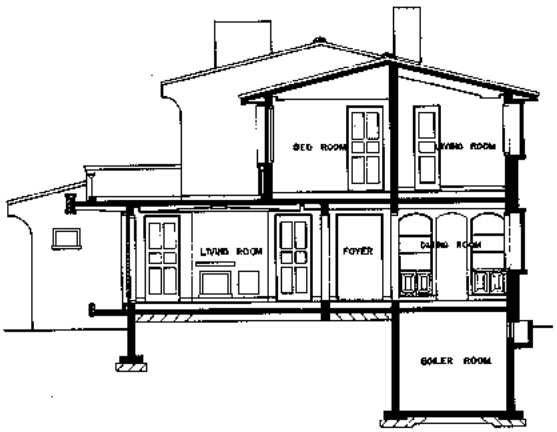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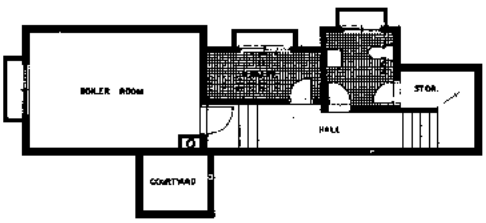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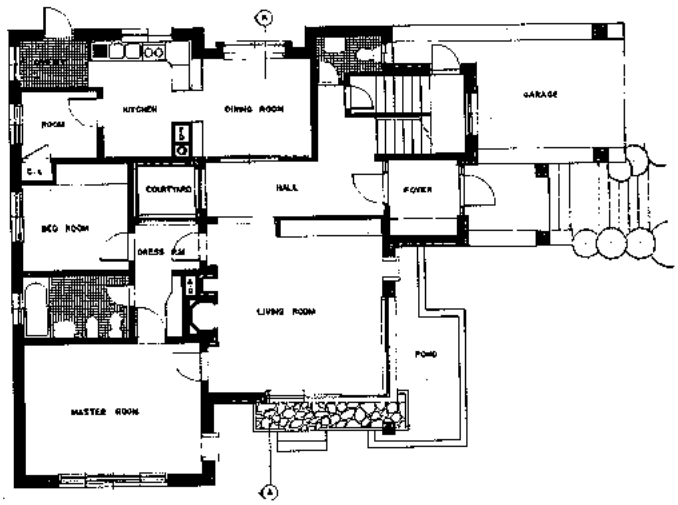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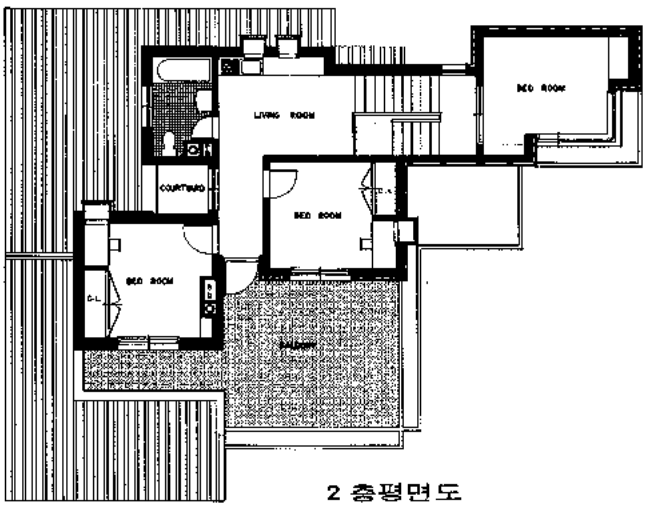

2 층평면도

역삼동 A씨댁

金 正 澈—주·정림건축/건축사

YEOKSAM—DONG A'S RESIDENCE

Kim, Jung Chul—Jung Lim Architects & Engineers/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 639㎡
건축면적 : 172㎡
연 면 적 : 286㎡
규 모 : 지하 1층·지상 2층
설계담당 : 송 교 섭

◆設計概要

주거의 참다운 가치는 건축가의 시도보다는 오히려 건축주의 생활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지나치게 의도적인 표현은 공간의 억측을 유발하고 생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므로 자연스러운 생활 속의 리듬의 특징을 포착하여 표현하는 것이 주거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와 생활을 영위시킬 수 있는 조건제시라 하겠다.

대지형상과 고저차를 이용하여 실의 성격상의 구분에 따라 중복되는 수평선의 흐름으로 부드러운 공간체험을 얻었으며 재료에서 보여지는 소박한 특징의 대비와 조화를 기본적인 요소로 삼아 건축주의 생활을 현실적인 가치기준 속에 담고자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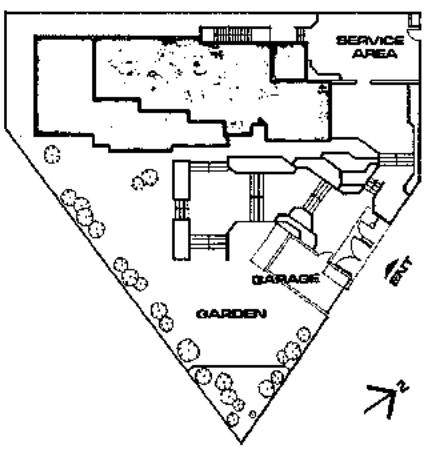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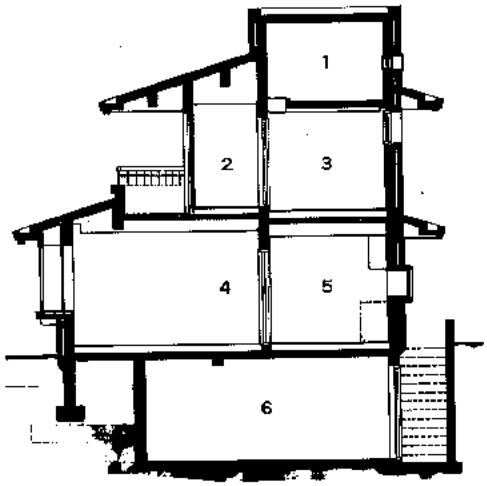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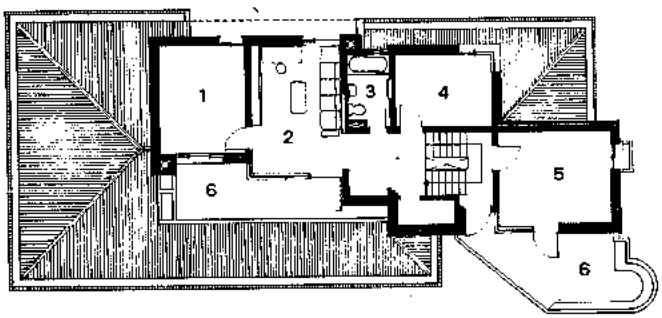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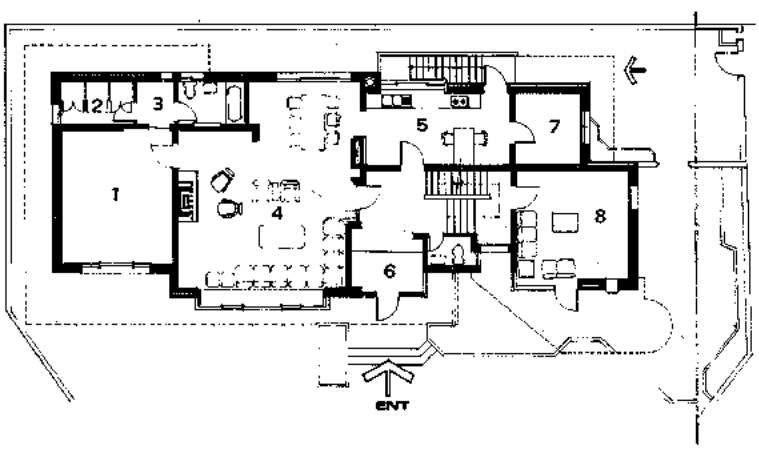

1 층평면도

● 1 층평면도
1 - 주인실
2 - 갱의실
3 - 전실
4 - 거실
5 - 부엌
6 - 현관
7 - 가정부방
8 - 서재
● 2 층평면도
1 - 아동방
2 - 가족실
3 - 욕실
4 - 아틀리에
5 - 아동방
6 - 베란다
● 주단면도
1 - 물탱크실
2 - 홀
3 - 욕실
4 - 거실
5 - 주방
6 - 작업실

구기동 K씨주택

朴 遠 泰 — 동남아종합기술공사 / 건축사

KUKI—DONG K'S RESIDENCE

Park, Won Tai—Dong Nam Ah Architects & Engineering Co.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구기동 214
대지면적 : 915㎡
건축면적 : 200.98㎡
연 면 적 : 322.45㎡
구 조 : 조적조

◆設計概要

주인부부와 아들부부 그리고 관리인까지 3세대가 한 지붕 밑에 기거하면서 각각 독립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의 住居単位空間으로 나누어 각 個室을 배치하였다.

정적인 주위환경과 조망 그리고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1층은 2面이 지하에 묻힌 半覆土式 주택으로 하였고 관리인 주택은 1층으로 하여 상하 1층과 2층 사이에 반계단식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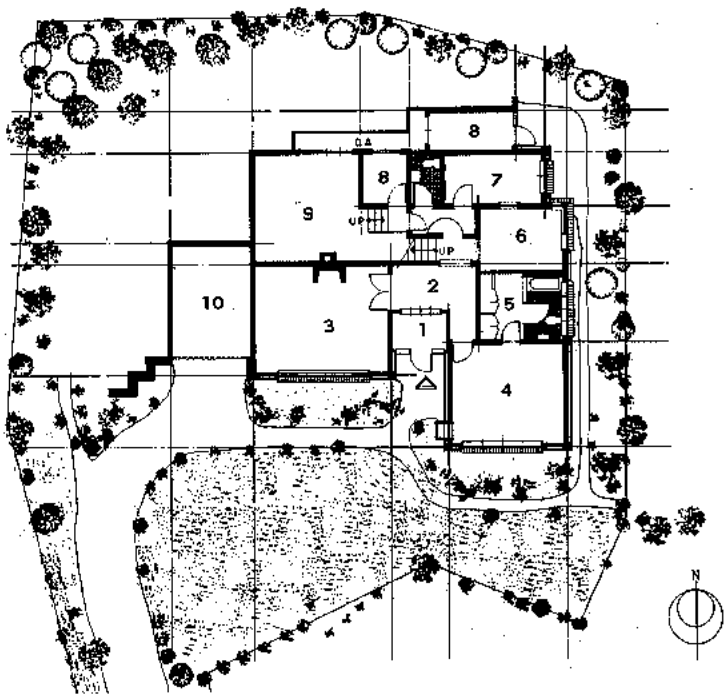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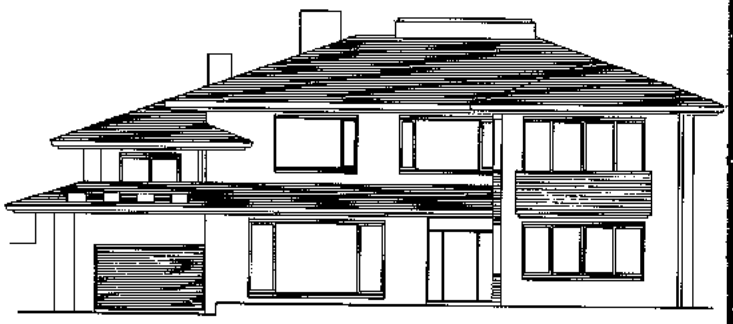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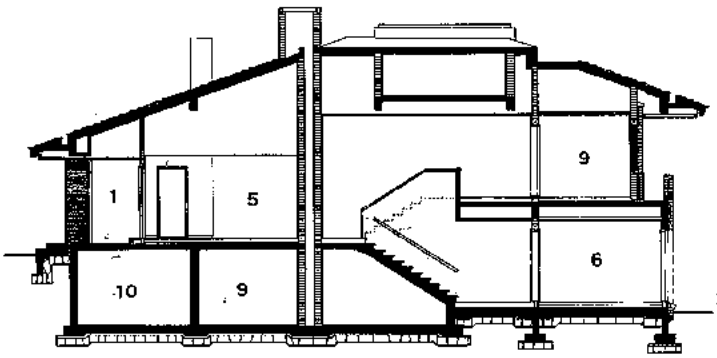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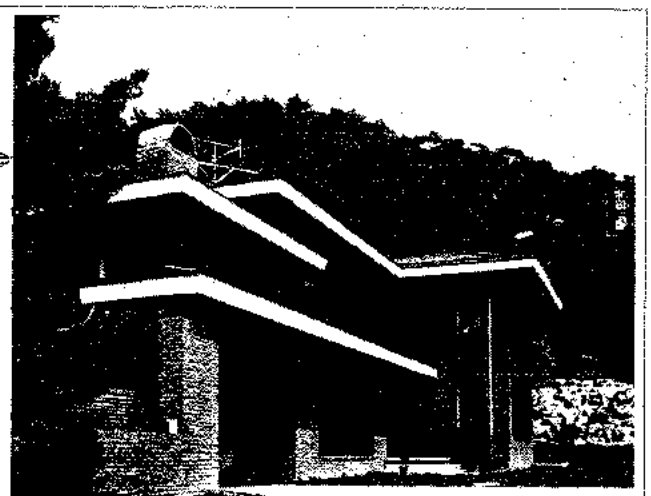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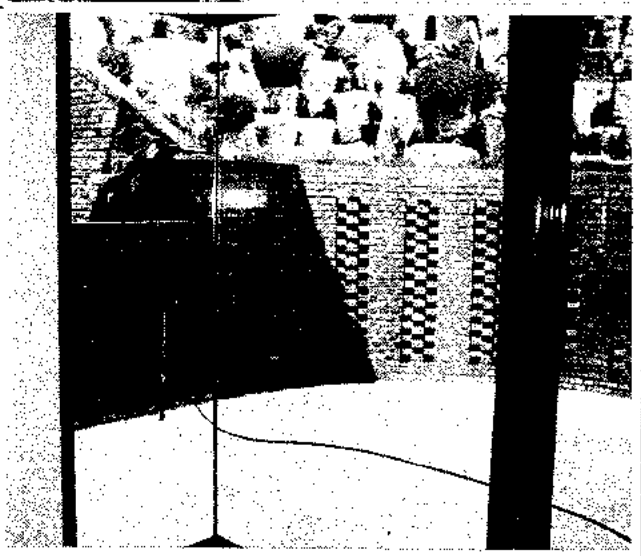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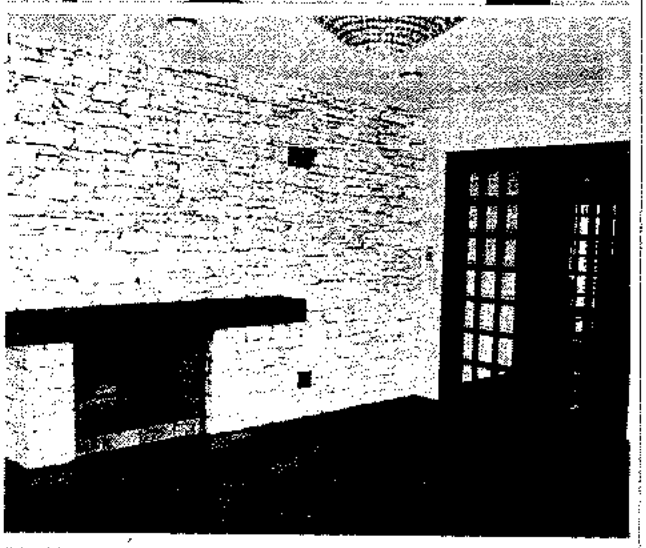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1 – 현관
2 – 홀
3 – 거실
4 – 주인침실
5 – 드레스실
6 – 식당
7 – 주방
8 – 창고
9 – 보일러실
10 – 차고

● 2 층평면도 · 단면도
1 – 고용인가족현관
2 – 고용인가족침실
3 – 〃 아동실
4 – 〃 주방및식당
5 – 〃 거실
6 – 아들가족아동실
7 – 〃 거실
8 – 〃 침실
9 – 〃 다용도실
10 – 〃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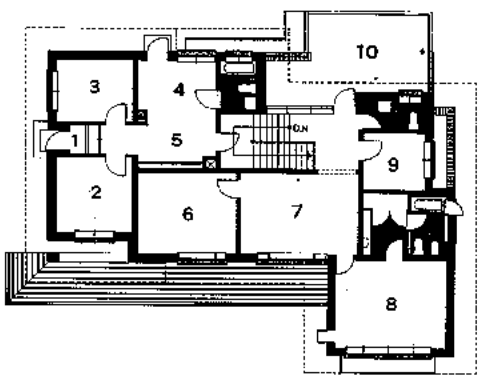

2 층평면도

사당동 서씨주택

宋 基 德—주·정일엔지니어링/건축사

MR. SEO'S RESIDENCE

Song, Ki Duk—Jung Il Engineering CO., LTD.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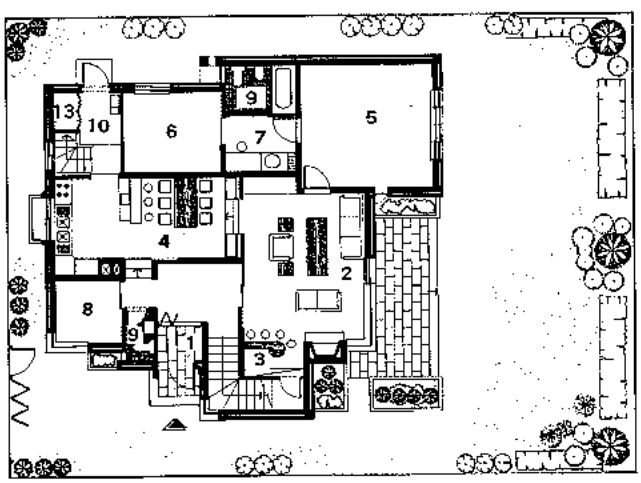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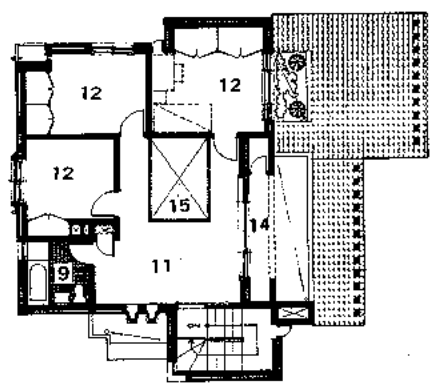

2층평면도

소 재 지 :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9
대지면적 : 331㎡
연 면 적 : 225.57㎡
구　　조 : 조적조
외 장 재 : 벽돌치장쌓기 위
백색본타일 스페니쉬 기와

◆設計概要

기존 1층 평슬래브 건물을 헐고 2층으로 다시 신축계획을 세운 건축주에게 새로운 이미지의 주거공간으로서 어필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그렇게 손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좁은 공간에서의 건축주의 요구는 북측 4미터 도로에서의 Parking을 겸한 Main Ent. 남측의 정원공간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었다. 평면에서의 형태는 식당과 2층 가족실의 Open Ceiling, 응접실의 계단 밑에 홈 바의 구성 등으로 공간 짜임새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입면에서의 특징은 조화된 재료와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 시각의 변화에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 – 현관
2 – 거실
3 – 홈바
4 – 주방및식당
5 – 안방
6 – 안방침실
7 – 드레스룸
8 – 가정부방
9 – 욕실
10 – 세탁실
11 – 가족실
12 – 침실
13 – 창고
14 – 발코니
15 – OPEN
16 –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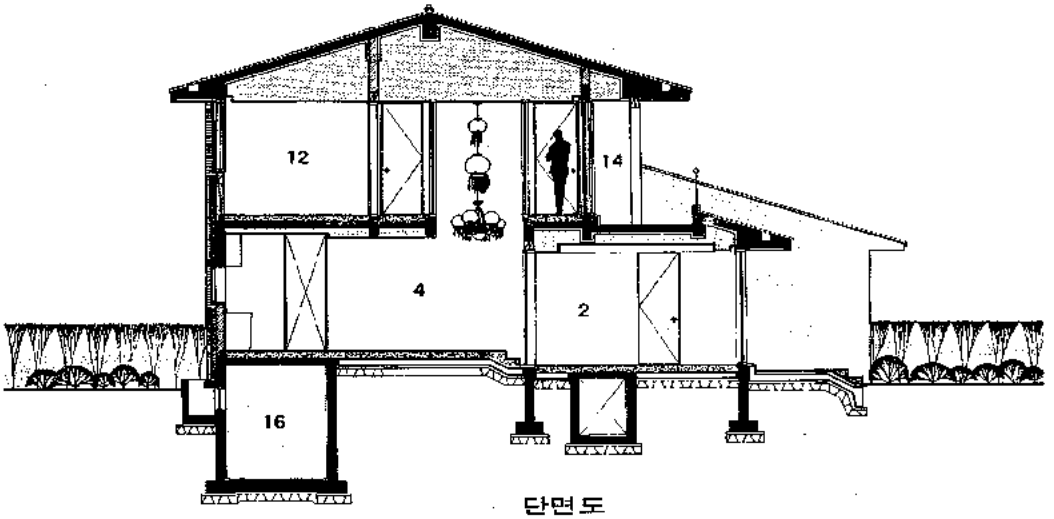

단면도

奇仙宣

吳 澤 吉—건축연구소 場/건축사

HAENG SUN DANG

Oh, TaiK Gil—Jang Architects - Planners/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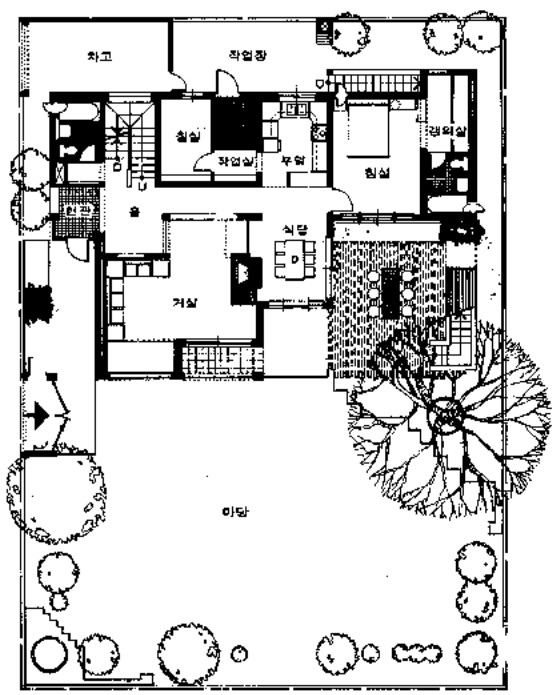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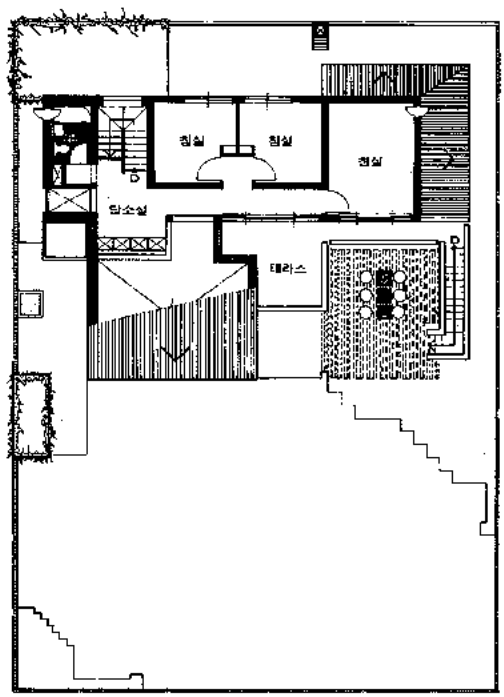

2 층평면도

소 재 지 : 서울 동선동
대지면적 : 529㎡
건축면적 : 116.05㎡
연 면 적 : 228㎡
구　　조 : 조적조
외 장 재 : 본타일 · 서반아 개와

◆設計概要

수령이 50년 이상된 풍성한 은행나무 주위에 펼쳐진 옥외식당 — 옥외계단 — 2층테라스 — 가족실 — 1층 거실 — 벽난로 — 식당 — 옥외식당들의 흐름과 하얀집(본타일)으로 하기 위해 방수 · 신축재료……크랙방지 · 인슈레이션 등에 관한 몇가지 제안은 행선당 설계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중요한 것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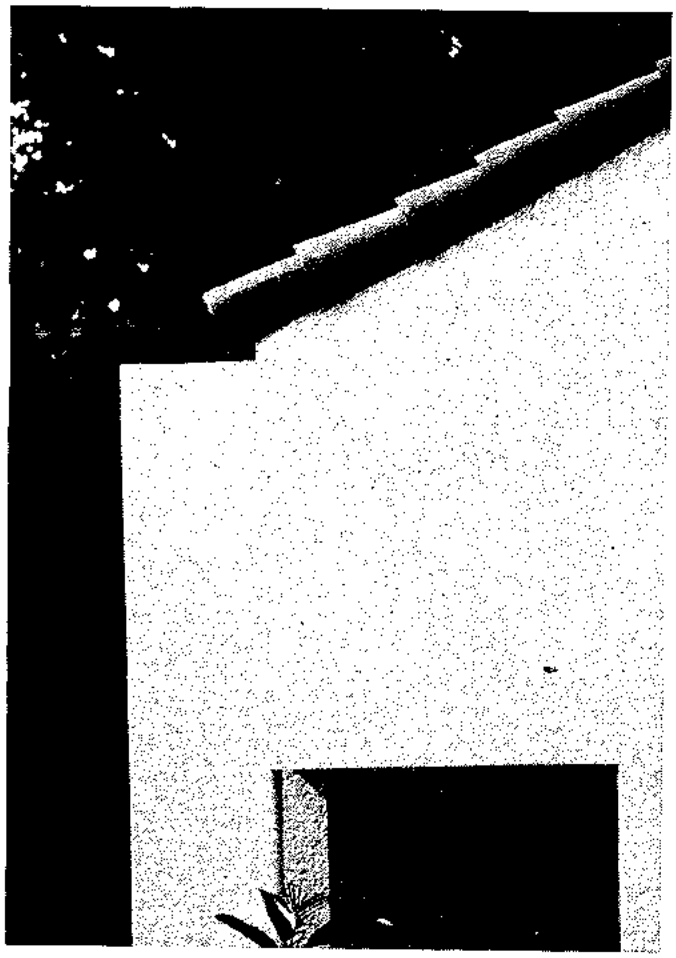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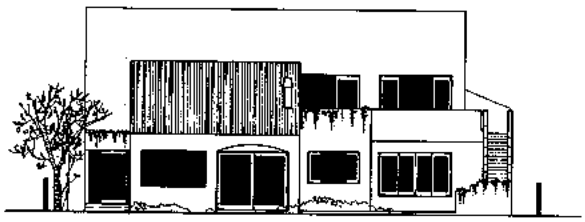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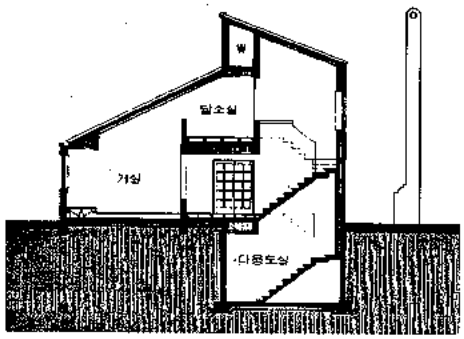

단면도

쌍문동 L씨댁

俞 景 哲 — 주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SSANGMUN — DONG L'S RESIDENCE

Yoo, Kyung Chul — Chong-Hap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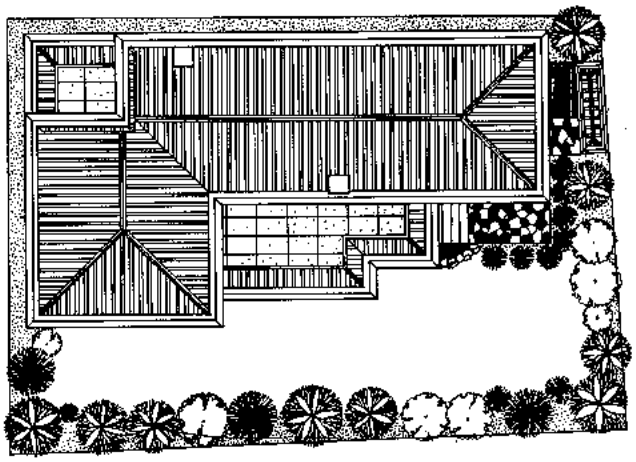

배치도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쌍문동
대지면적 : 278㎡
건축면적 : 97㎡
연 면 적 : 221㎡
구 조 : 조적조(외부 적연와 치장)

◆設計概要

본 부지는 동서로 길게 놓인 장방형의 대지로서 도로면과 고저차이가 있는 남향받이이며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주택은 각 방의 일조권에 대해 역점을 두어 내부동선을 원활하게 처리 하였으며 외관은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적연와 치장으로 벽을 마감했고 처마에서는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 미송 후로링으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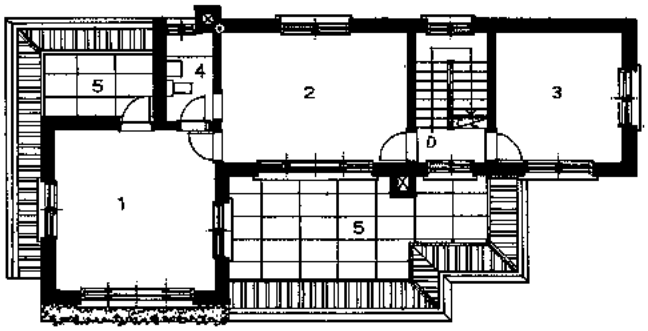

2 층평면도

● 1 층평면도
1 – 안방
2 – 거실
3 – 방
4 – 주방
5 – 식당
6 – 욕실
7 – 가정부방
8 – 현관
9 – 테리스

● 2 층평면도
1 – 방
2 – 서재
3 – 방
4 – 욕실
5 – 발코니

● 단면도
1 – 서재
2 – 거실
3 – 식당
4 – 오락실
5 –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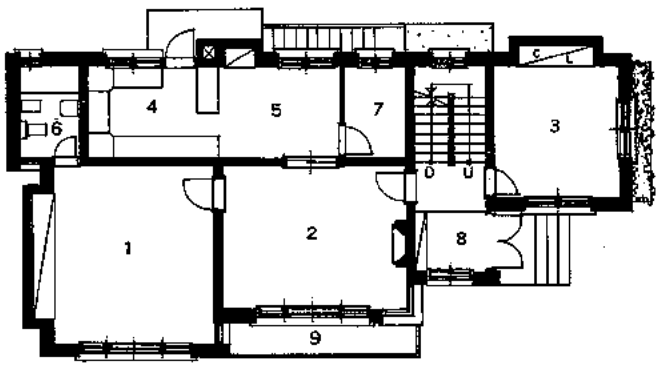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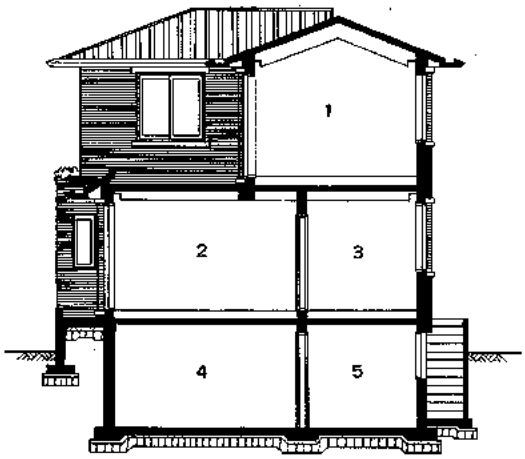

단면도

서초동 심씨댁

尹 泰 壽—남부합동건축설계공사/ 건축사

MR. SHIM'S RESIDENCE

Yoon, Tae Soo—Nam Boo Engineers & Associates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지면적 : 367.41㎡
건축면적 : 163.64㎡
연 면 적 : 288.15㎡
구 조 : 연와조

◆設計概要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공간구성은 위엄이나 권위가 아니라 너그러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주택에서는 그러한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평면계획에 임하였다. 다용도실을 부엌에 면하여 배치함으로써 안정감있는 거실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주부동선을 활동적이면서 원활하게 처리하였다.

식당부분의 면적을 할애하여 식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일종의 오락실 성격을 고려하였고, 식탁을 이용하여 게임과 독서를 즐기는 아동들을 작업 중인 주부가 돌볼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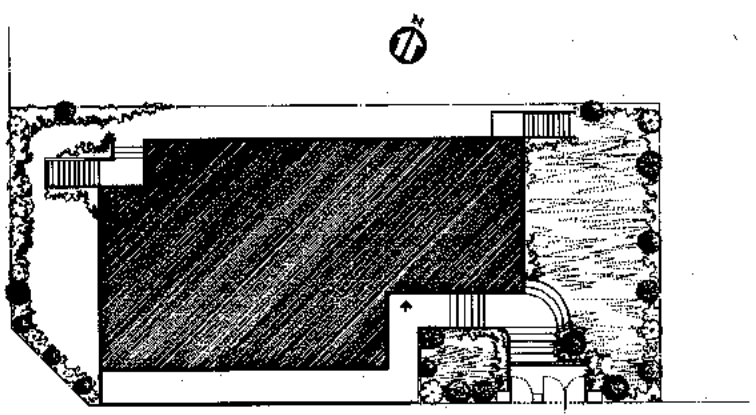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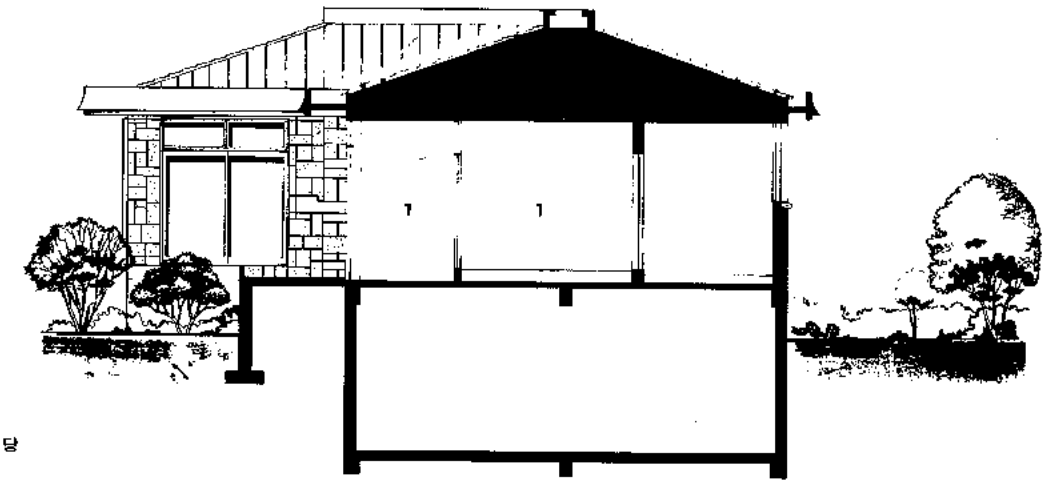

1 – 거실
2 – 부엌및식당
3 – 안방
4 – 방
5 – 학생방
6 – 학생방
7 – 노인방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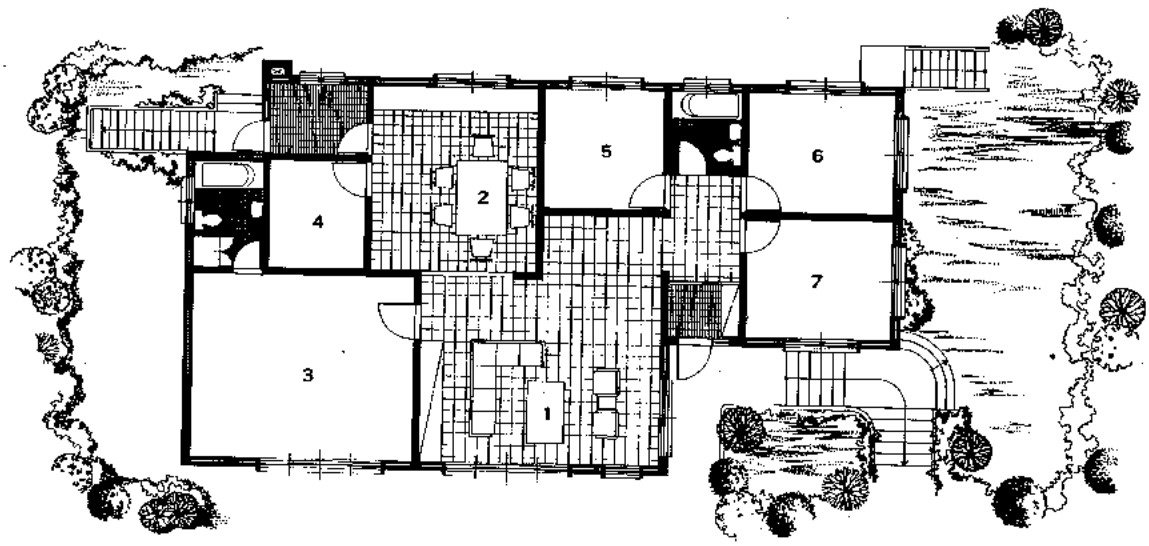

1 층평면도

이씨택

李 康 植—주·완종합건축 / 건축사

MR. LEE'S RESIDENCE

Lee, Kang Sik—Wan CO., LTD.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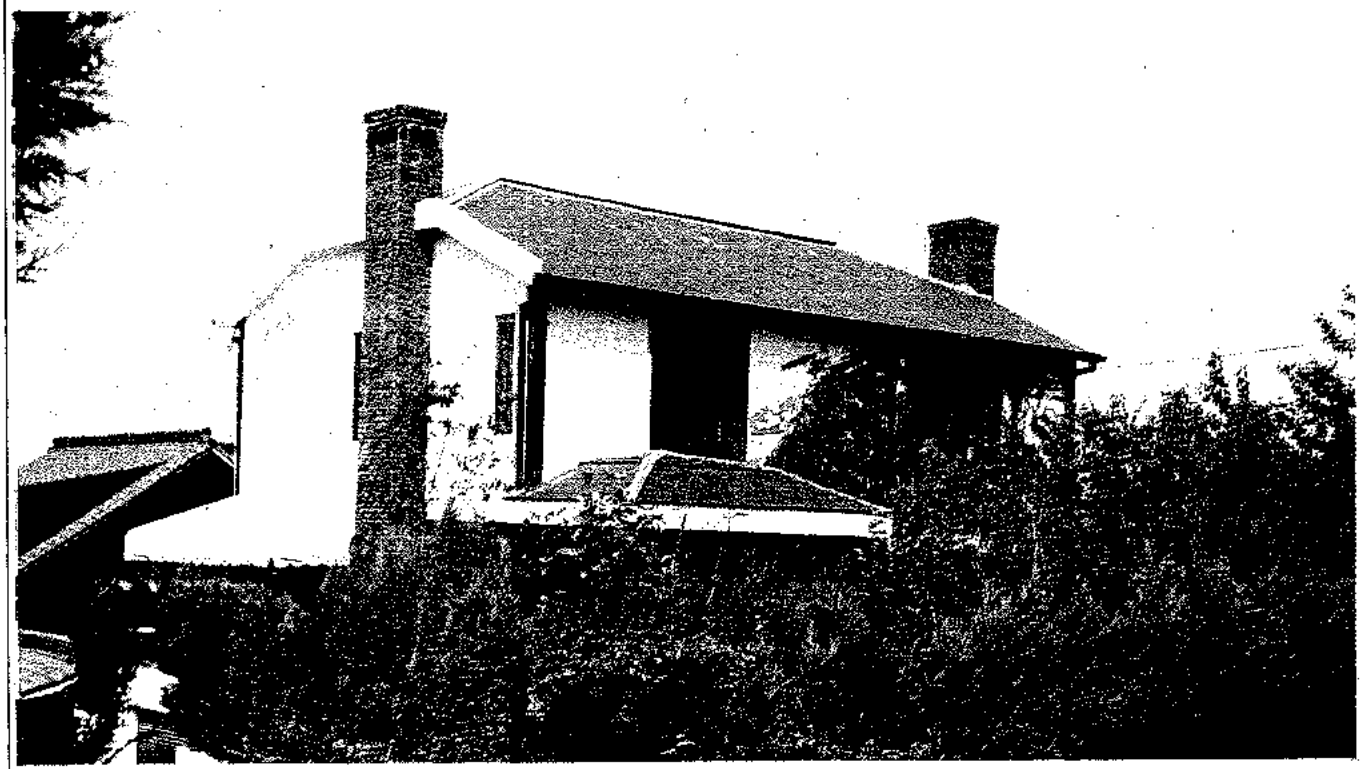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
대지면적 : 242.82㎡
건축면적 : 74.74㎡
연 면 적 : 212.93㎡
설 비 : 온수난방 · 파넬히팅

◆ 設計概要

북측도로에 면한 대지로서 공기 맑고 경치좋은 반포동에 위치해 있다.

공간구성은 사적 생활공간을 기능별로 분리시켜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Living Room에 Fire Place와 전면 정원, 후면의 Dining Room 등 밀접한 공간의 효율성으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단란한 생활공간 구성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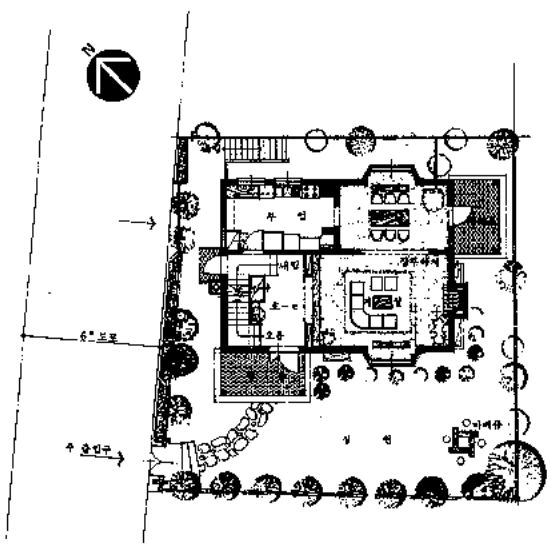

배치도및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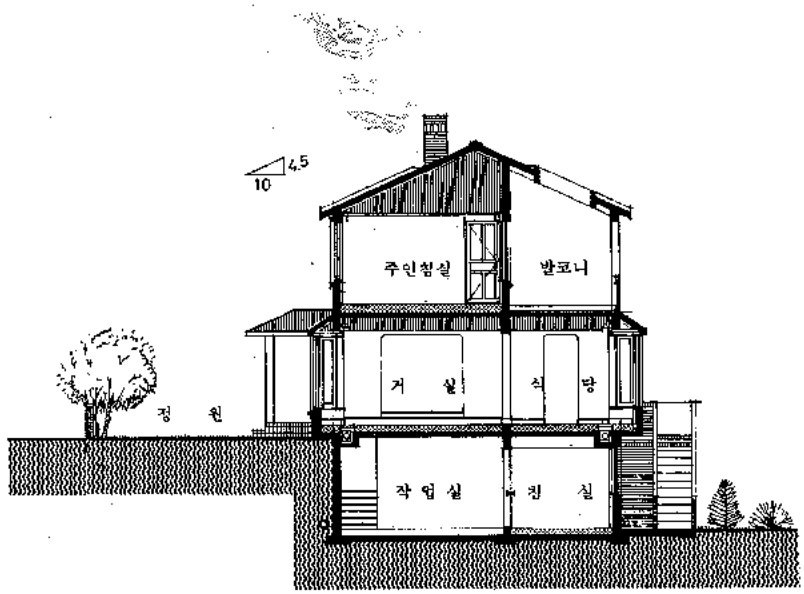

일반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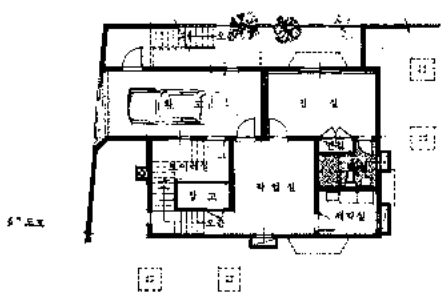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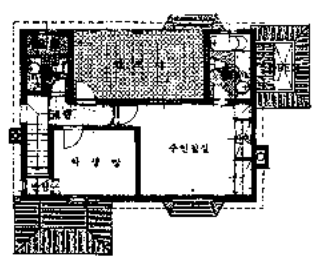

2층평면도

논현동 C씨댁

李 鍾 世—남경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NONHYUN—DONG C'S RESIDENCE

Lee, Jong Sei— Nam Kyung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지면적 : 446.28㎡
건축면적 : 146.61㎡
연 면 적 : 307.35㎡
구 조 : 조적조
설 비 : 중앙공급식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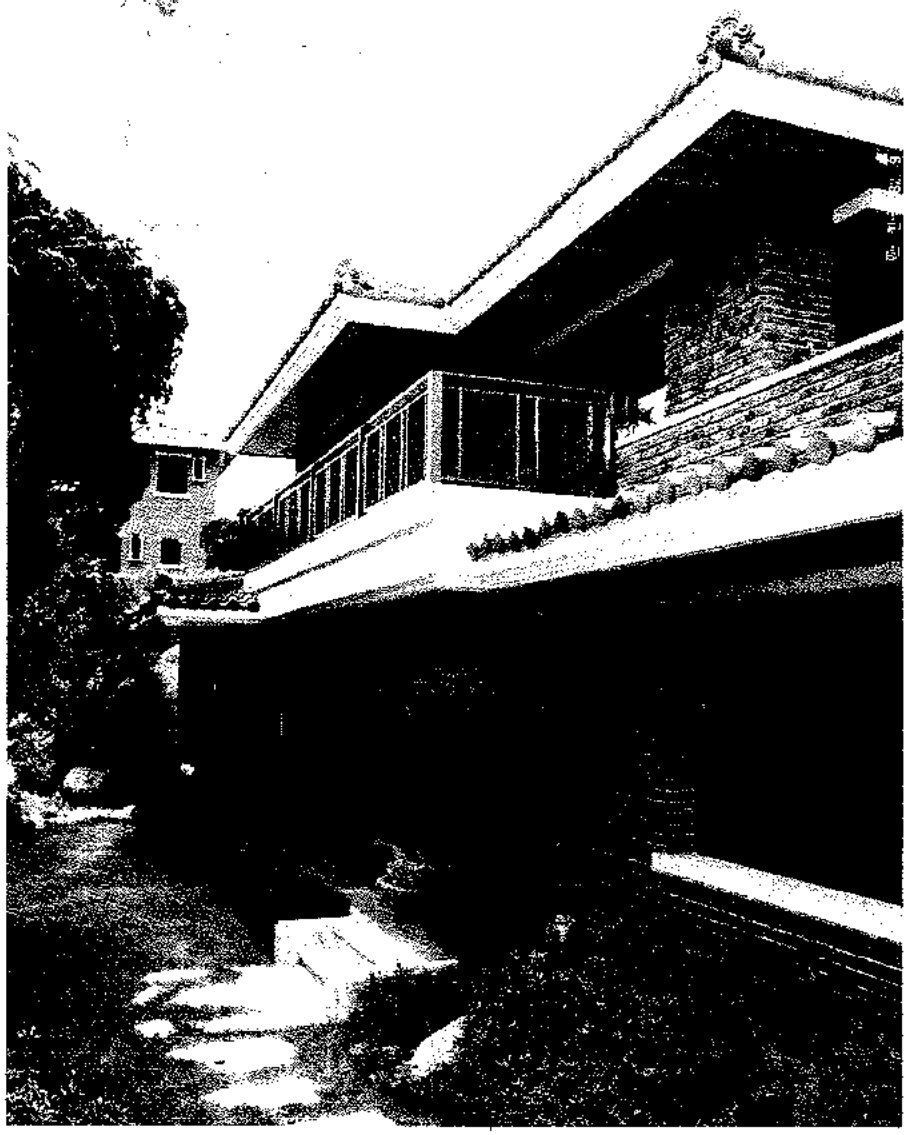

◆設計概要

이 주택의 대지형태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은 대지로서 정원계획상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앞으로 전면대지를 확장,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평면계획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의 공간을 상·하층으로 구분하여 상층은 자녀들이, 하층은 부모의 주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2층에 음악 연습실을 별도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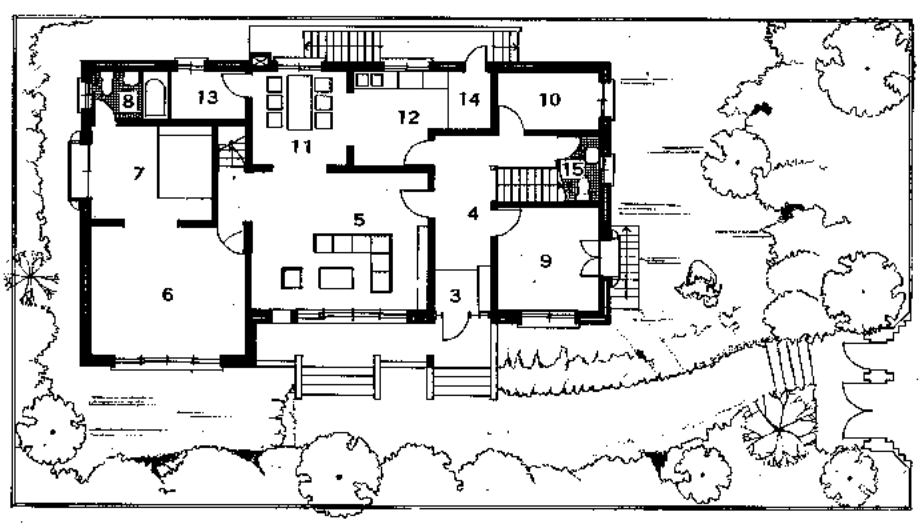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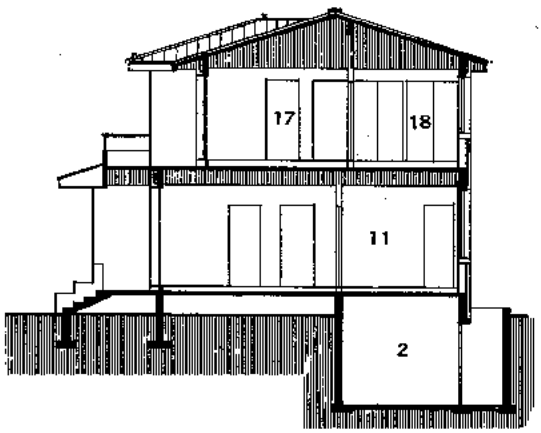

단면도

1 – 차고
2 – 보일러실
3 – 현관
4 – 홀
5 – 거실
6 – 안방
7 – 침실
8 – 욕실
9 – 침실
10 – 가정부실
11 – 식당
12 – 주방
13 – 창고
14 – 다용도실
15 – 욕실
16 – 지하계단실
17 – 가족실
18 – 학생방
19 – 음악연습실
20 – 욕실
21 –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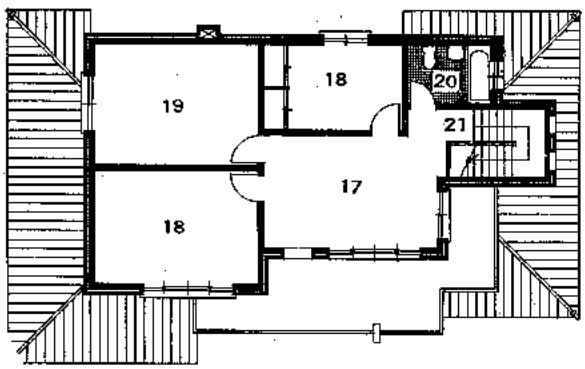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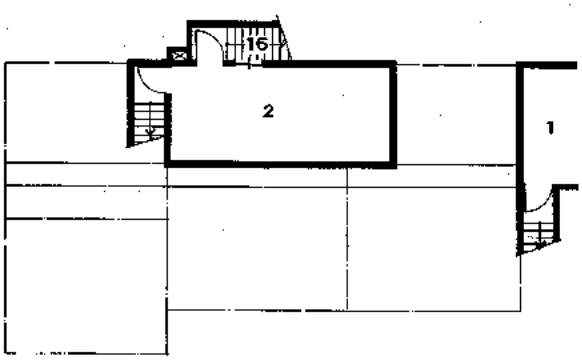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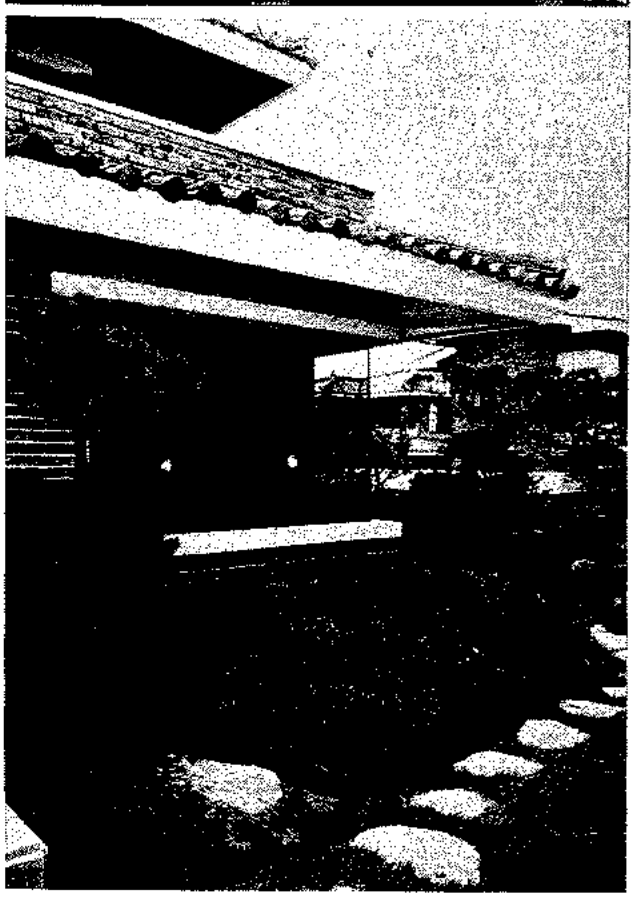

신림동 J씨주택

林 東 潤— 아진종합건축 / 건축사

SHINLIM—DONG J'S RESIDENCE

Lim, Dong Youn—Architects Group A—JIN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의 193

대지면적 : 270.95㎡

건축면적 : 115.28㎡ 연 면 적 : 214.23㎡

◆ 設計概要

본 대지는 약 13도의 경사도로변에 위치하여 0~3.6m의 도로와의 차이가 있으며 남측면은 3.6m의 낮은 축대, 북측은 3.0m의 높은 축대로 형성되어 전망조건이 남측과 동측이 좋와 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경사진 소도로변에 정감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본 대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오픈 차고에 몇개의 계단을 두어 1층과 연결하였으며 오픈 차고를 이용, 1층의 거실을 도로경계선과 가급적 거리를 두었고 동측면의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실에서 전망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건물에 요철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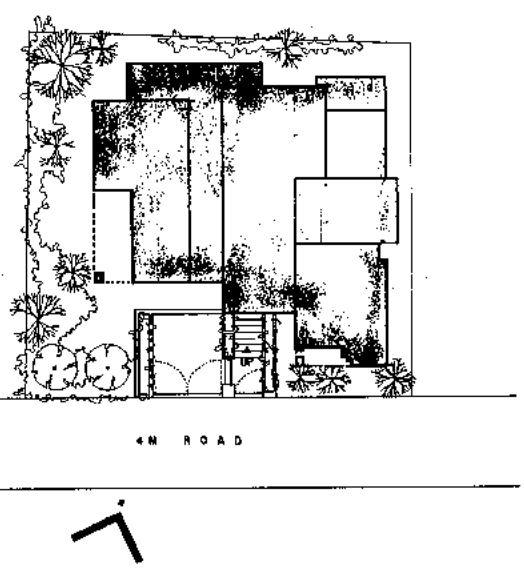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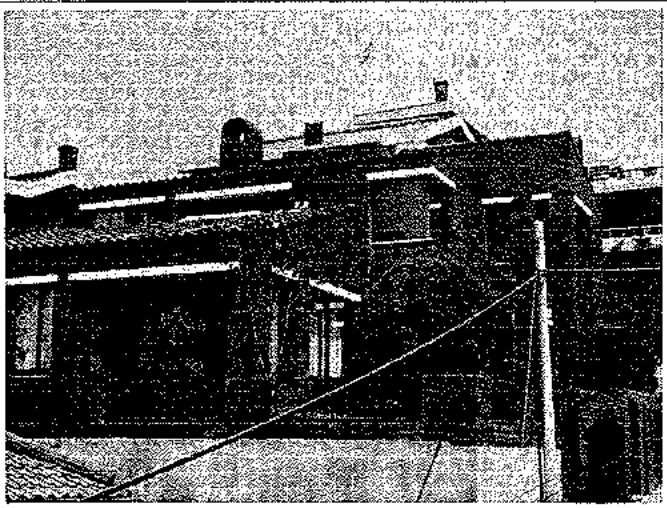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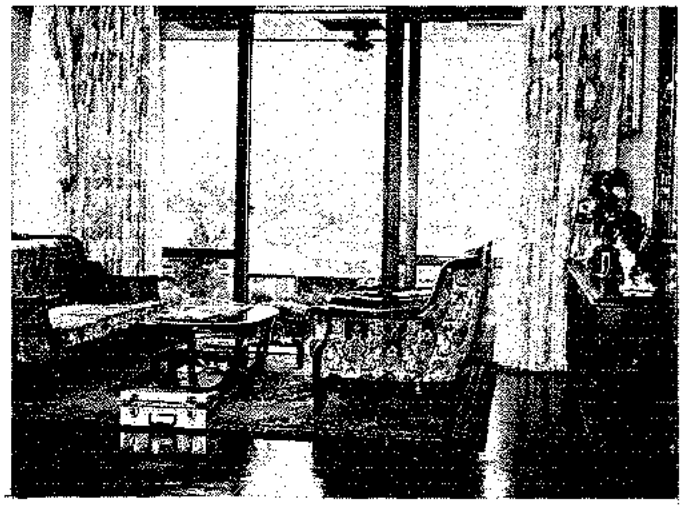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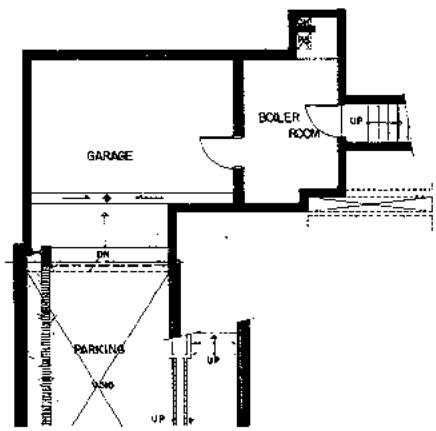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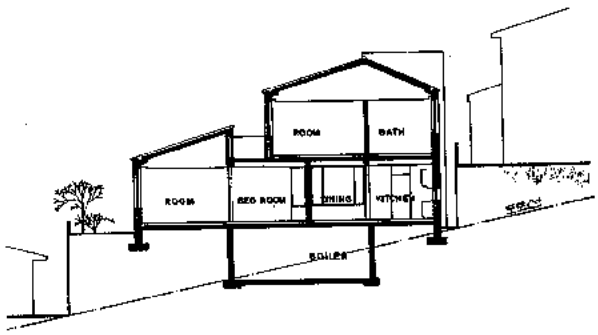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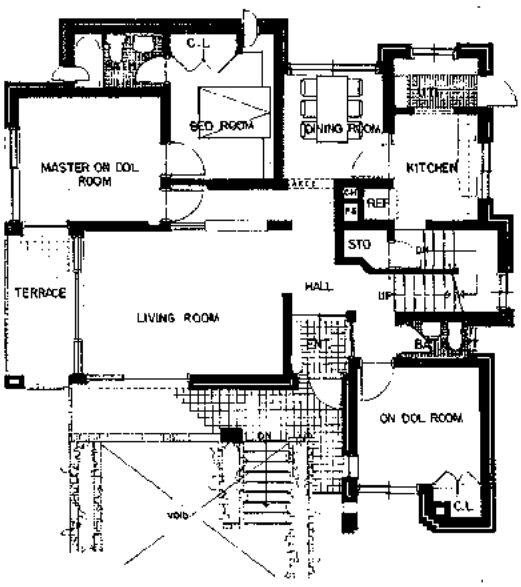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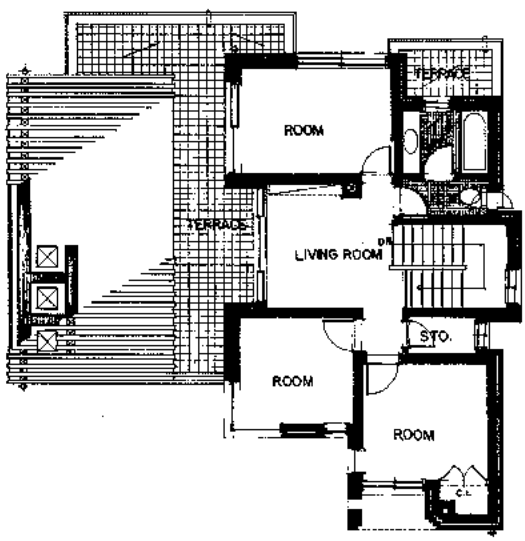

2 층평면도

삼성동 L씨댁

鄭 求 殷— 삼예종합건축 / 건축사

SAMSEONG – DONG L'S RESIDENCE

Choung, Koo Uen — 3 Architecture & Interior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산45
대지면적 : 626.25㎡
건축면적 : 162.17㎡
연 면 적 : 324.03㎡
주요외장재 : 충주백석

◆設計概要

동측도로와 서측대지 경계선과의 고저차가 4m Slope를 이루고 서측 끝에 2층의 주택이 우뚝 솟아 있어 처음 대지를 접한 인상으로는 콘타를 이용한 주택을 생각하였으나 남쪽으로 트여진 삼능공원의 조망을 위하여 옹벽으로 택지를 돋우고 계단으로 어프로우치를 잡았다.

주요 거실의 위치는 남쪽으로, 문화재구역 사선규제로 인한 스페니쉬 스타일의 외관구성과 함께 편안한 주생활을 설계의 주안점으로 삼고 계획에 임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북쪽 스페이스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몇그루의 수목을 심을 수 있는 여유를 보유치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지하층평면도
1 – 오락실
2 – 침실
3 – 보일러실
4 – 계단실
5 – 창고

●배치도 및 1층평면도
1 – 안방
2 – 갱의실
3 – 욕실
4 – 거실
5 – 화장실
6 – 계단실
7 – 현관
8 – 식당
9 – 주방
10 – 가정부방
11 – 차고
12 – 정원

● 2층평면도
1 – 침실
2 – 가족실
3 – 복도
4 – 갱의실
5 – 욕실
6 – 계단실
7 – 발코니

●주단면도
1 – 보일러실
2 – 안방
3 – 거실
4 – 침실
5 – 복도
6 – 갱의실
7 – 물탱크실
8 –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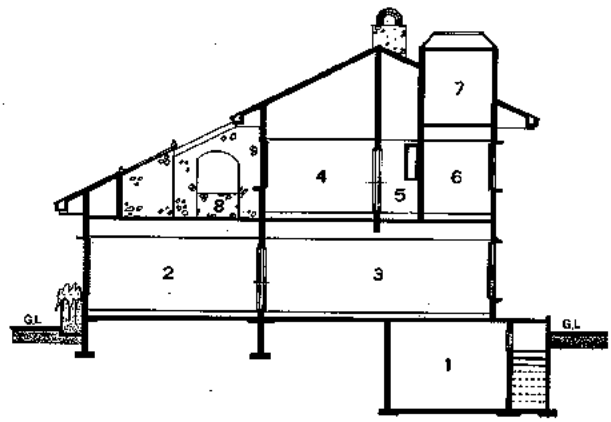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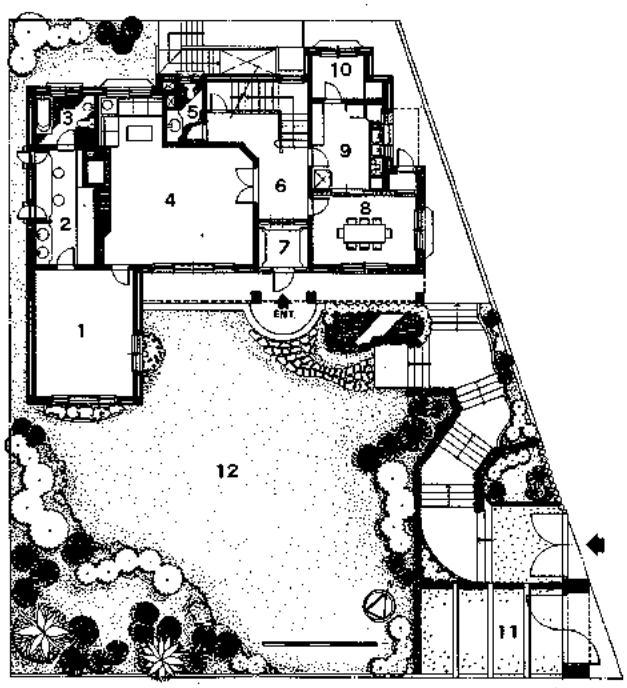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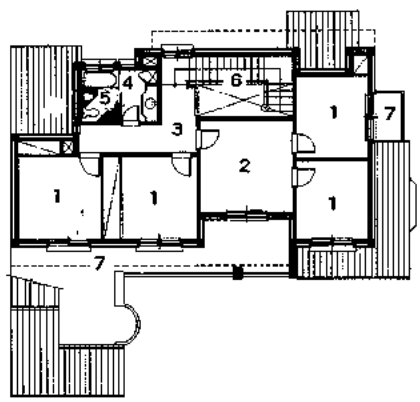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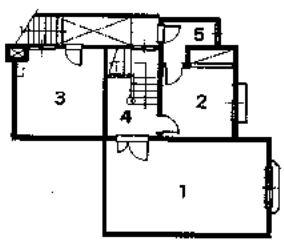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홍씨주택

黃 一 仁—종합환경연구소 일건 / 건축사

HONG'S HOUSE

Hwang, Irin—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IL KUN/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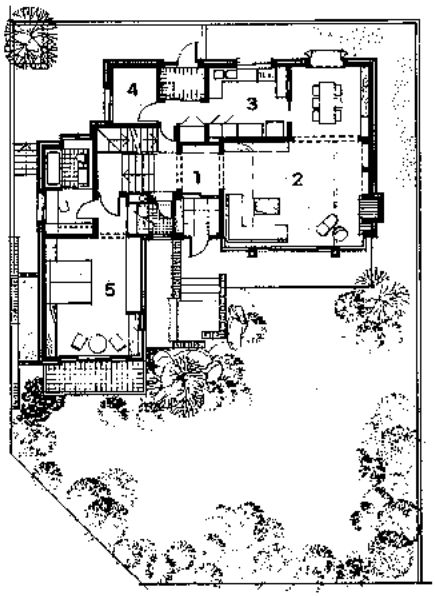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반포동
대지면적 : 430㎡
주　　층 : 125㎡
상 부 층 : 53㎡
하 부 층 : 38㎡

1 - 현관
2 - 거실
3 - 부엌
4 - 부엌방
5 - 침실
6 - 마루
7 - 사랑방
8 -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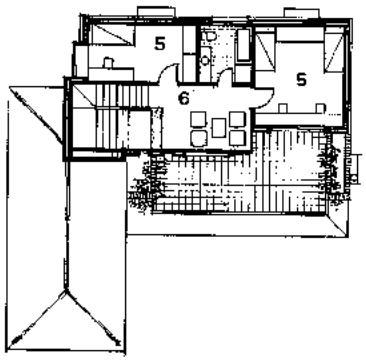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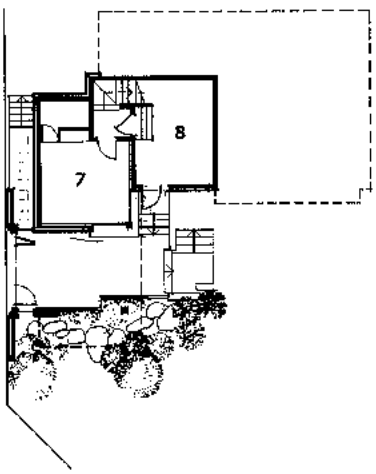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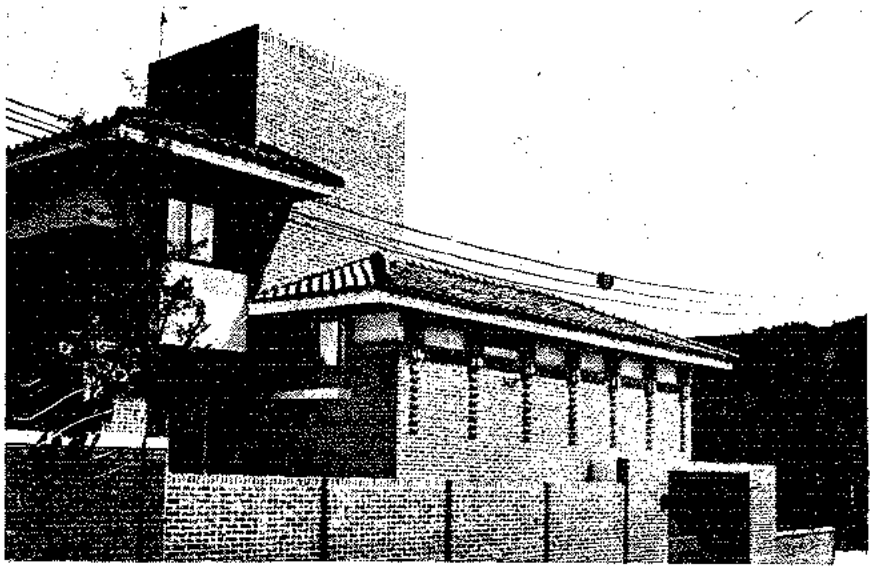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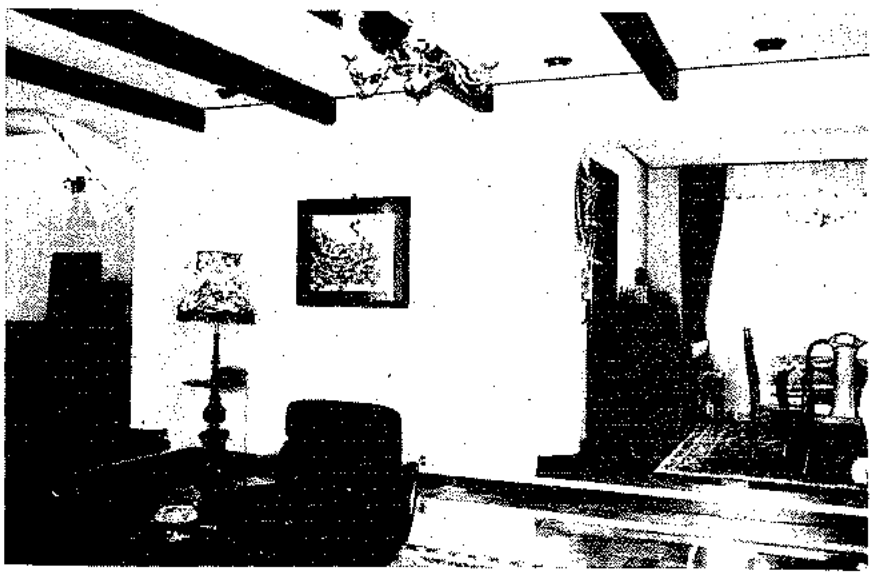

동빙고동 H씨댁

金 浩 — 주 · 부림종합설계 /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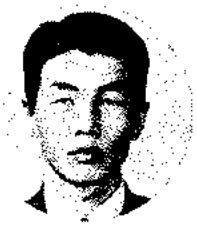

DONGBINGGO—DONG H'S RESIDENCE

Kim, Ho—Boo Lim Architects Planners & Engineers / Architect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대지면적 : 614.87㎡
연 면 적 : 262.98㎡

◆ 設計概要

자녀가 모두 출가한 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배치에 있어서 대지의 북측에 도로가 있는 관계로 건물의 후면에서 진입하게 된다.

설계의 주안점은 거실 뒷부분에 별도의 복도를 두어 주부동선을 분리시켰으며 2층에 내외부공간의 완충공간인 Sun Room을 두어 실내와 같이 아늑하면서도 외부공간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추후에 증축을 가능케 하였다.

조형적인 면에서는 Mass의 복합적인 조합에 의해 유도되는 스카이 라인의 변화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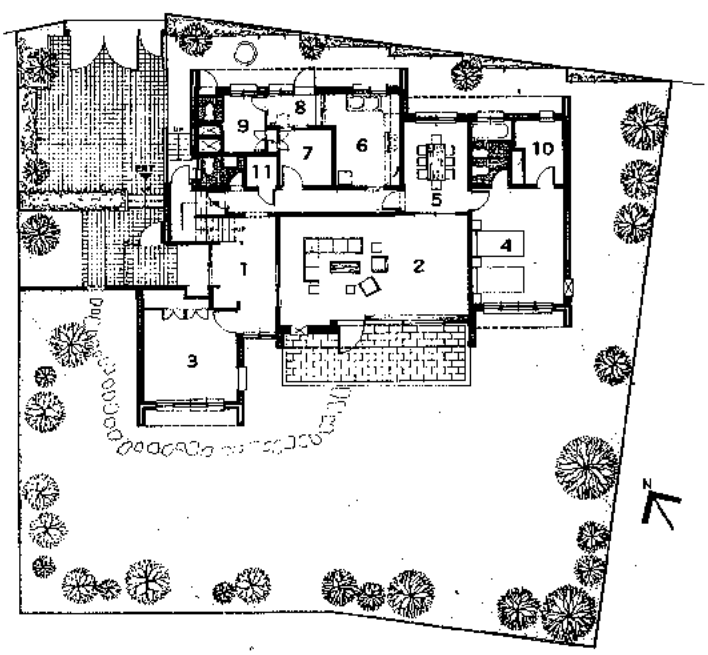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1 – 현관홀
2 – 거실
3 – 한실
4 – 침실
5 – 식당
6 – 주방
7 – 가정부방
8 – 세탁실
9 – 방
10 – 갱의실
11 – 창고

● 2층평면도
1 – 객실
2 – 서재

● 단면도
1 – 거실
2 – 주방
3 – 썬룸
4 –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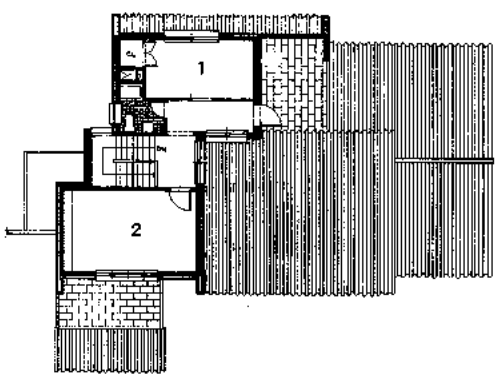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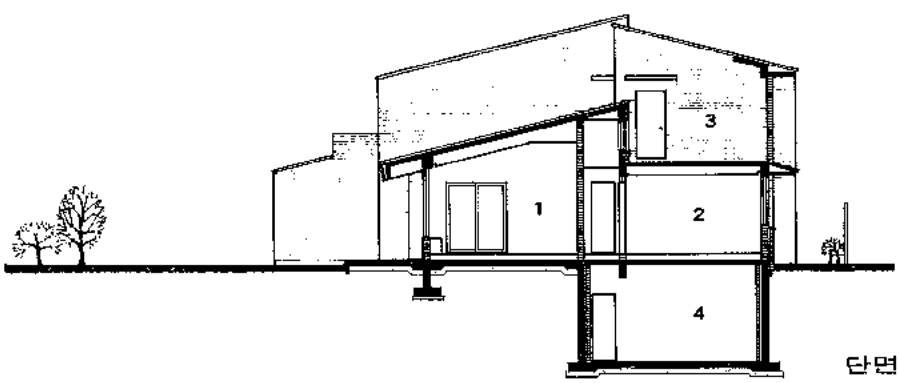

단면도

동선동 이씨댁

劉 圭 成 — 범양종합건축연구소 / 건축사

DONGSUN-DONG LEE'S RESIDENCE

Yoo, Kyu Sung — Bum Yang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 設計概要

대문과 현관의 레벨 차를 이용하여 진입동선을 우회시키고 외관상으로는 처마가 좁은 형태를 택해 백색의 본타일로 마감하여 붉은 치장벽돌과 콘트라스트를 이뤄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계획하였다.

평면상으로는 동·정적인 생활공간을 기능에 따라 수직 분리시키고 1층 거실은 가족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안락감을 갖게 배치하였으며 2층 오락실은 정신적인 여유를 갖도록 테라스와 연결시켜 배치하였다.

수석수집이 취미인 건축주의 취향에 맞도록 지하층에 수석을 전시·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였다.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동선동
대지면적 : 266.76㎡
건축면적 : 129.01㎡
연 면 적 : 312.58㎡
구 조 : 연와조 및 오지기와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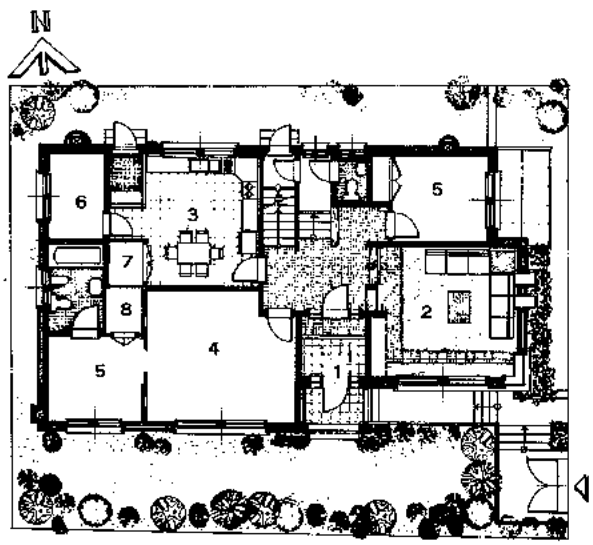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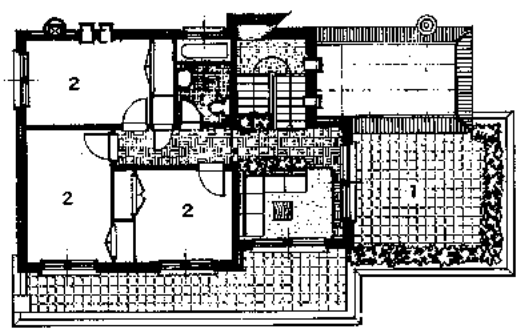

2층평면도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1 – 현관
2 – 거실
3 – 식당 및 주방
4 – 안방
5 – 침실
6 – 가정부실
7 – 식품창고
8 – 옷보관실
● 2층평면도
1 – 발코니
2 – 침실

連載：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関한 考察〔完〕

朴 彦 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學建築學科 副敎授
金 東 旭 — 京畿大學建築工學科 專任講師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Prof. / Hong Ik University
Kim, Dong Uk — Instructor / Kyung Ki University

6. 지 붕

1. 지붕의 개념

西洋建築과 비교하여 볼 때 東洋建築,특히 中国系 木造建築에서 지붕은 단순한 外部의 自然環境으로부터의 보호 이상의 의미를 지녀 왔다. 지붕은 超自然的인 災殃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呪術的 의미와 建物全体의 性格·地位를 규정하는 意匠과 造形도 갖추었다. 따라서 建築技術의 과제는 지붕構体를 結構하는데 귀결하였다.

이와 같이 지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왔지만 伝統的 建築観과 対比하여 볼 때 現代建築에서 갖는 지붕의 의미는 너무나 빈약하다. 伝統建築의 계승이 대두될 때 지붕형태가 쉽사리 부활되었던 것도 과거의 지붕중시사상이 우리의 건축관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데서 나타난 反作用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지붕을 重視하였던 建築観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中国系 木造建築에서 지붕은 어떠한 意匠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지붕의 造形이 같은 中国系 木造建築 속에서도 地域에 따라 서로 어떻게 달라 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서 地域的 차이 속에서 韓国建築은 지붕에 어떤 特性을 保有하였었는지를 考察하고자 한다.

2. 장식과 사상

中国系 木造建築의 지붕이 갖는 特性은 呪術的 의미와 독특한 意匠性으로 要約할 수 있다.

呪術的 의미란 建物内部를 超自然的인 힘, 즉 鬼神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지붕에는 치미(鴟尾)·鬼面·雜像 등이 장식되는 것을 말한다. 지붕에 어떠한 상징적인 형체를 놓음으로써 雜鬼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것은 폴리네시아 諸島의 原始住居에서도 발견되지마는 中国系 木造建築은 그것이 특별히 강조된 느낌이다.

鴟尾는 용마루의 양끝에 얹은 날짐승 꼬리모양의 장식기와이다. 鴟尾에 대하여는 그 起原이나 각종 形態에 대하여 定説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으나 鴟尾설치의 목적이 화재를 면하고자 하는 呪術的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그밖에 鬼神퇴치의 의미도 주장되고 있다. 鴟尾가 처음 나타난 시기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説이 있으나 漢代以後, 용마루를 曲線으로 처리하여 용마루 양끝을 높여 강조하는 경향이 발전하여 鴟尾를 만들어 냈다는 説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구려·백제·신라건축에서 鴟尾가 나타나는데 평양 安鶴宮跡, 신라 안압지유적, 백제의 扶蘇山廃寺 등에서 完形에 가까운 것들이 出土되었다.

鬼面은 기와의 내림마루 및 귀마루 끝이나 사래마구리에 붙인 獣形장식이다. 鬼面 역시 建物内에 雜鬼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三国時代, 특히 고구려 瓦当에서 좋은 例를 볼 수 있다.

雜像은 귀마루에 얹은 여러가지 神像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히 궁전건축에서 많이 보인다. 雜像은 건물에 따라 그 형상이 다양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雜像은 朝鮮時代末期까지도 官衙建物에서 重視되어 朝鮮時代의 工匠中에는 雜像만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雜像匠이 있었다.

이밖에도 中国系 木造建築의 지붕에는 용마루 가운데 놓이는 봉황장식, 처마의 합각상단에 붙이는 懸魚 등도 간혹 보이는데 이것도 지붕의 呪術性과 관련된 장식으로 생각된다.

中国系 木造建築의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외장적 특징은 처마의 솟음, 지붕면의 曲面처리 등이다.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中国·韓国·日本의 전위건축물들은 모두 처마

의 양끝을 치켜 올려 보통은 용마루도 처마에 맞추어 양끝을 치켜 올리는데 이러한 수법은 西洋이나 다른 지역의 건물에서 거의 보기 어려운 中国系 건축의 특징이다. 지붕 면을 안으로 들어간 曲面으로 하고 처마의 양끝을 치켜 올리는 수법이 언제부터 나타났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今世紀의 東西洋 学者間에 여러 가지 說이 나왔으나 아직 설득력 있는 定說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붕을 曲線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수평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 즉 지붕의 용마루나 처마의 양끝이 아래로 처져 있는듯이 보이는 것을 교정하여 주는 효과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中国系 建築에서 지붕은 특별히 중시되었는데 中国系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인 栱包의 구성은 지붕의 외장과 깊게 관련되어 발전되었던 것이다. 처마부분은 지붕 면을 안으로 휘게함으로써 치켜 올려지게 되었는데 이 처마는 첨차들을 길게 빼내어 支持하였다. 처마를 지지하는 첨차는 점점 복잡하고 섬세하게 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栱包는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었던 것이다.

3. 중국·한국·일본의 지붕

앞에서 본 지붕의 특성은 中国系 木造建築의 공통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동일한 木造建築에서도 地域的인 차이에 따라 지붕의 형태는 달라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自然條件, 즉 강우량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강우량의 多少에 따라 지붕의 구배는 서로 달라지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붕의 全体造形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은 地域에 따른 지붕구배 및 지붕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中部以北과 以南, 中国의 華北과 華南, 日本 등지의 대표적 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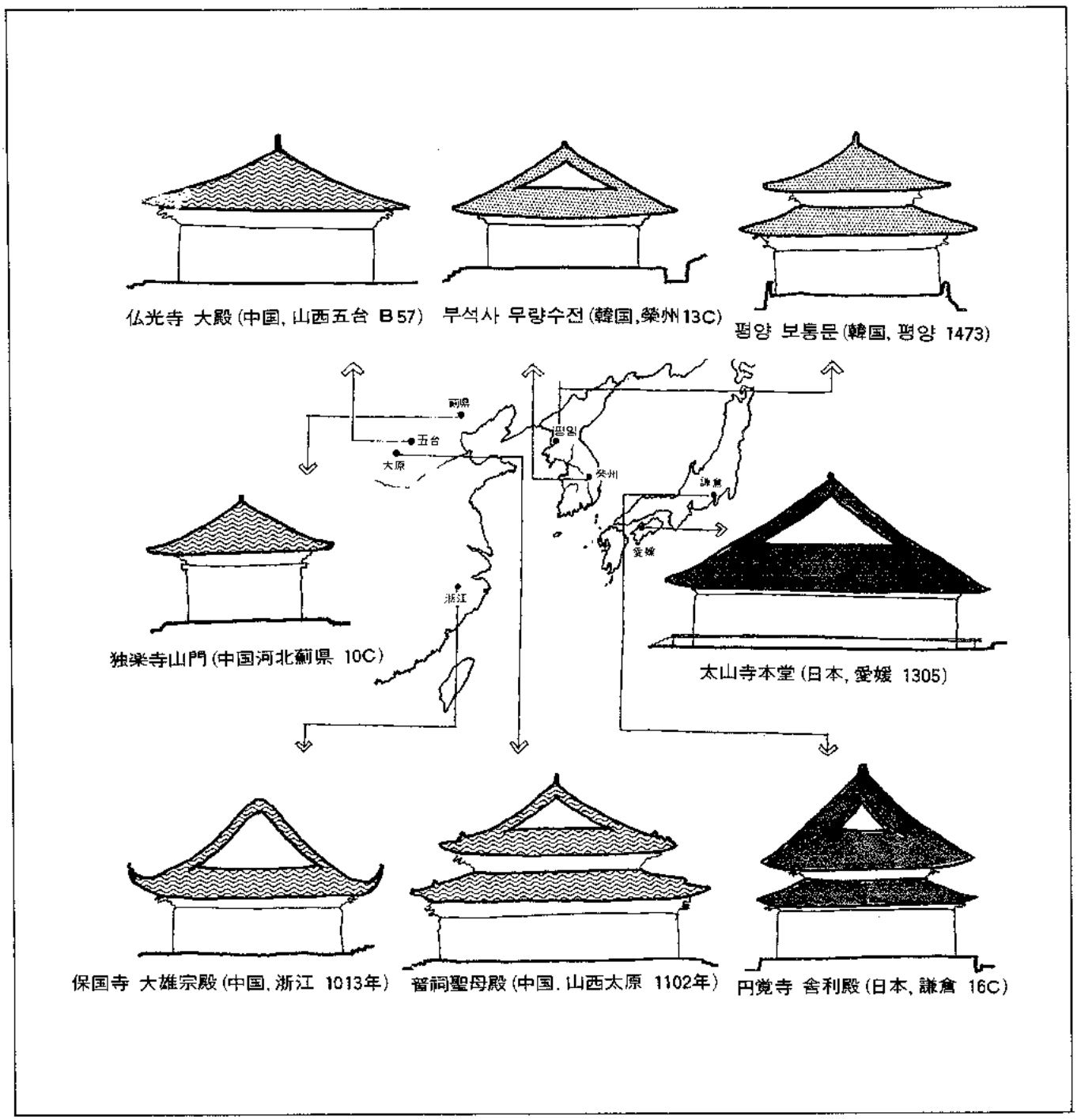

들의 立面을 스케치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柱心包式으로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안동소재·13세기), 다포식으로 평양 보통문(평남 평양소재·1473년)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두 건물이 柱心包와 多包式 건물 중에 비교적 建立年代가 빠른 편이며 하나는 한반도의 남쪽, 다른 하나는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国建築은 華北地方의 例 3棟과 華南地方의 1例를 들었다. 그 중 佛光寺 大殿은 唐末의 建築이며 独樂寺山門은 遼代의 대표적 建築으로 두 건물은 모두 우진각 지붕이다. 晋祠 聖母殿은 우리나라의 多包式 건물과 약간 유사한 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들 세 건물은 모두 北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華北地方의 대표적 建築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佛光寺 大殿은 建立年代가 837년으로 밝혀져 南禪寺와 함께 中国最古建物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華南地方의 建物들은 現存하는 遺構도 많지 않은데다가 実測図面도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한 형편이나 그 가운데 保国寺 大殿은 비교적 華南地方의 性格을 잘 나타낸 건물이며 일찌기 실측도면이 공표된 건물이다.

日本의 경우는 古代로부터 近世末까지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日本의 地理的 條件에 의해 日本的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건물 2棟을 골라 보았다. 日本 関東地方에 있는 日本式 多包系 건물의 代表作인 圓覚寺 舎利殿과 西南地方에 있는 日本式 柱心包(和様)系의 代表建物의 하나인 太山寺 本堂이다.

그림의 8棟의 건물들은 모두 동일한 中国系 木造建築이지만 그 지붕의 형상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뚜렷한 것은 華北地方이나 日本의 建築과 華北 및 우리나라 建築의 지붕구배이다. 前者는 급한 구배를 이루고 있고 後者는 매우 완만한 구배인데 이러한 구배의 차이는 지붕전체의 볼륨에도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立面上으로 보아 日本 西南部의 太山寺 本堂은 전체 建物 높이의 약 3분의 2를 지붕이 차지하는데 비해 華北地方의 独樂寺 山門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우리나라 建築의 지붕은 華南의 建築이나 日本建築과는 물론 다르지마는 華北建築과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특히 무량수전은 華北地方보다 지붕구배가 약간 급하며 처마의 깊이도 佛光寺 大殿이나 独樂寺 山門보다 깊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붕 형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강우량과 같은 自然條件에 의해 결정지워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4. 意匠性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韓国建築의 지붕은 西洋과는 달리 呪術的인 의미에서 중요시 되어 왔고 曲線과 曲面에 의한 특성있는 意匠으로 처리되어 왔으며 이것은 中国系 木造建築이 갖는 공통적 특성이었다. 또 韓国建築은 그처해 있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같은 中国系 建築 안에서도 서로 구별되는 지붕의 形状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韓国建築의 지붕이 같은 中国系 建築 사이에서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독특한 意匠性에서이며 그것은 지붕을 구성하는 細部의 表現手法에서 起因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처마의 曲線, 지붕의 장식, 지붕표면의 재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선 처마의 曲線을 예로 들어 볼 때 韓国建築의 그것은 中国이나 日本과 비교하여 技法的으로 매우 古式에 속한다고 하겠다. 즉 기와지붕의 처마곡선은 처마中央의 反曲点이 뚜렷하지 않은채 左端에서 右端으로 완만하게 굽은 것일수록 古式에 속하며 시대가 내려 갈수록 처마는 中央部가 平行을 이루다가 左右端 가까이에서 갑자기 치켜 올려지는 경향을 띤다. 木造建築의 架構技法은 대개 盛唐期인 9세기경에는 완전히 성숙되는데 이때의 中国建築의 처마 曲線은 反曲点이 뚜렷하지 않은 완만한 曲線을 나타낸다(예 : 南禪寺 大殿·佛光寺 大殿). 그러나 現存하는 元代(13세기—14세기)의 建築 가운데에는 이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처마곡선, 즉 中央은 水平이고 両端部만이 치켜 올려지는 例가 주로 나타나며 이러한 形態는 後代의 明·清時代의 건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日本建築의 경우는 처마曲線의 시대적 변천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대개 11, 12세기를 경계로 하여 그 以前에는 뚜렷한 反曲点이 없던 것이 13세기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처마曲線이 両端을 치켜 올리는 手法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韓国建築의 처마曲線은 高麗時代는 물론 朝鮮時代末期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反曲点이 뚜렷치 않은 완만한 曲線, 즉 古式手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처마曲線의 技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美的感覚의 변화 또는 生産技術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韓国建築이 끝까지 古式을 견지한 데에는 明白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만 韓国建築은 기둥의 굵기라든가 架構手法 등에서도 東洋三国中 가장 古風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음을 以前의 考察에서 몇차례 확인하였는데 처마曲線의 手法도 이러한 다른 部材들과의 관련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붕表面을 덮는 材料의 종류나 色感에 있어서 韓国建築은 비교적 人工이 적게 가하여진 自然스러운 모습을 重視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青瓷瓦나 琉璃瓦와 같은 특수한 기와를 사용한 일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특수한 예이고 대부분은 기와에 다른 색채를 입히는 일은 없었다. 이것은 中国과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다. 中国建築은 多様한 色彩와 文様에 의해 건물간의 질서감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지붕 역시 황색·청색 등 다양한 색채를 구사한다.

지붕材料에 있어서 韓国은 기와 한가지에 의존해 왔다고 생각되는데(民家는 예외로 함) 17세기의 日本의 佛教寺院의 지붕재료는 기와 외에 銅板, 나무껍질(주로 桧木이나 杉木) 등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中国에서는 기와를 여러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암키와만을 앞뒤를 바꾸어 가면서 덮는다든지 수키와를 암키와보다 넓적하게 하는 등이다. 日本에서는 대개 17세기 말부터 方形으로 中央을 안으로 휘게하여 波状을 만들게 한 소위 機瓦(상가와라)를 開発하여 住宅, 寺院建築 등에 널리 보급하였다. 이것은 기와의 제작과 시공을 간편히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와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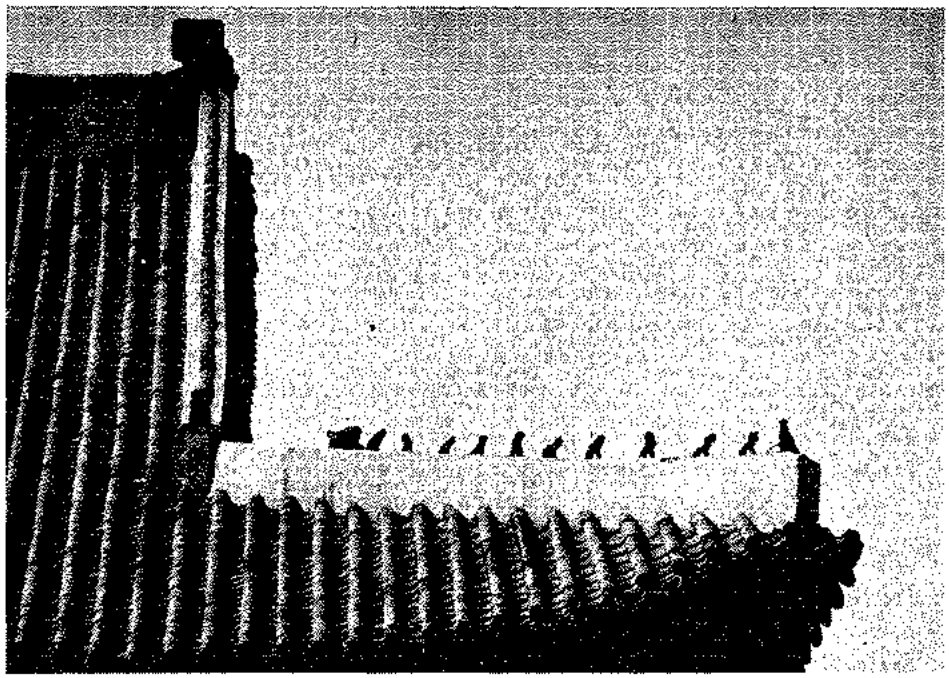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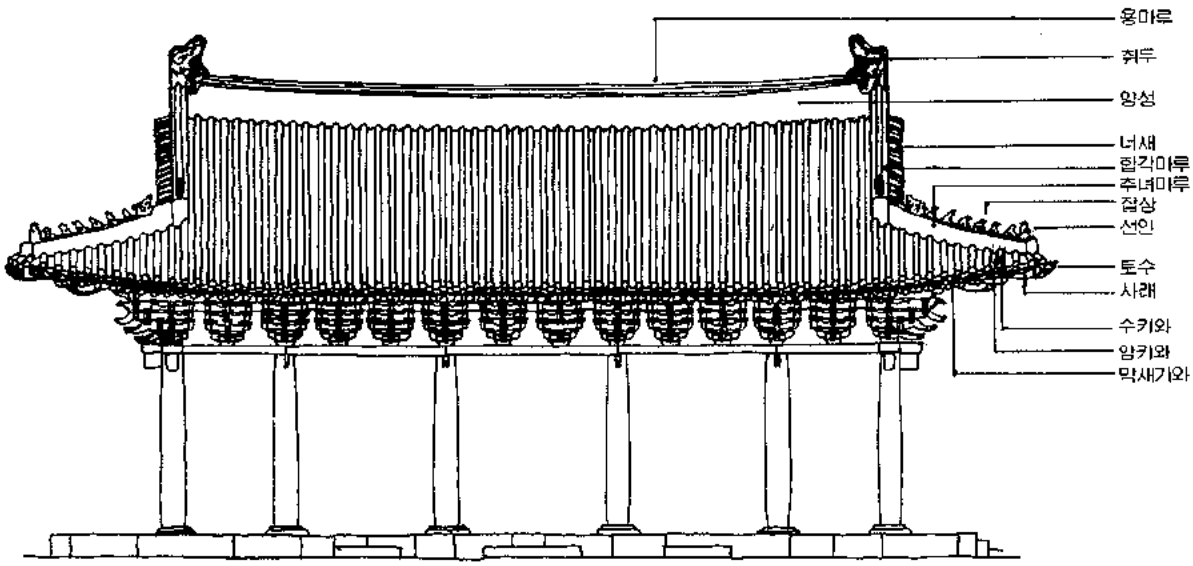

창경궁 명정전 지붕立面 各部명칭

습이다.

비바람과 日射를 막는 목적 외에 특별한 정신적 의미를 지붕에 부여하였던 中国系 木造建築에서는 당연히 지붕에 여러가지 장식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서도 韓国建築은 매우 담백한 성격으로 처리되었다. 中国建築의 지붕 용마루는 양끝의 鴟尾 외에도 중앙에 여러가지 복잡한 동물장식이나 文様을 첨가하며 처마 박공면에도 잡다한 장식을 가하였다. 韓国의 궁전건축에서 종마루나 박공마루는 흰 회칠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기와의 색깔과 서로 대조되어 지붕의 線을 강조하여 주며 흰 회칠의 종마루가 서로 重疊되어 이루는 지붕의 경관은 韓国建築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색있는 경관이다.

以上 처마의 曲線이나 지붕材料·色相·지붕장식 등에서 볼 때 韓国建築은 비교적 古風에 속하는 反曲点이 뚜렷치 않은 완만한 曲線을 갖고 있으며 한정된 材料와 色相으로 이룰 효과있게 꾸며나가는 手法, 즉 材料 본래의 形状과 色相을 살리면서 종마루와 박공마루 등을 희게 장식하여 지붕의 윤곽을 강조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던 것을 알아 보았다.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

經營의 基本問題

자료 : 田中 淸著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에서

1. 組織의 性格

建築設計事務所에 있어서 조직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所長의 意思決定〉에 의한다. 또 他律的 요소로서는 発注者의 方向性과 需要者에 대응하는 수단에 의한다.

그러나 그 사무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가는 가는 무엇보다도 所長다운 최상의 의지와 책임있는 결정에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建築家로서의 파트너쉽이라는 방법은 업무 運營上의 팀웍에 대해서 連帶 및 共同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經營의 범주까지 오버랩 시킬 수 있다면 조직의 中枢로서 이상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특히 中·小事務所의 경우는 이같은 양면성(專門能力+經營能力)을 가진 經營幹部가 아니면 실제로 사무소로서의 성립이 곤란하다.

건축가는 一般企業과 다른 理想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건축가를 지망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히 強烈한 개성의 소유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환경과의 만남에서 형성된 것이겠으나 일상생활의 손해와 이득은 별도로 하고 건축가로서는 하는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건축가란 예술가의 延長線에서 살고 있는 者이며 또 匠人의 延長線에 위치하는 者로서 더우기 職業上의 강한 信念과 情熱의 所有者가 되야 함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무소를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아무리 실행해 보아도 잘되지 않는 것 같다. 단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느냐 안나타내느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나 자신은 그와같은 건축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한다.

〈組織의 性格〉—일반적으로는 이것을 「社是」에 의해서 그 목표를 규정하고 노력의 集積에 의해서 〈社訓〉으로서 명확한 형성이 보여지는 것이다.

물론 그 〈社訓〉이란 것은 敬仰의 가치가 있는 것과 再考의 가치성 등 여러가지의 차이는 있겠으나 組織의 対外的 신용과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그래서 그 〈社訓〉을 만드는 데는 所長 이하 직원을 포함한 全員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달려 있고 또 그 완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自然発生的으로 放任해 두어서는 결코 바람직한 社訓이 될 수가 없고 지도자다운 최상의 신념과 〈事業에 건 理想〉을 〈意識的인 반면 長期的〉으로 완성시키는 이외로는 도달할 필요가 없다.

설계사무소가 組織을 끌고가는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2～3개의 예를 들어보자.

● N事務所의 예(大事務所)

1. 우리는 건축이라 불리우는 創造活動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봉사한다.

2. 우리는 構成員의 맡은 일에 따라 自主管理의 원칙에 의해서 물질과 정신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든다.

3. 우리는 사회적 공헌과 개인의 목적을 両立시키는 組織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 S事務所의 예(小事務所)

1. 建築家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한을 최우선으로 한다.

2. 建築家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專門分野의 추구와 결정에는 정확하게 할 것을 최대 목표로 한다.

3.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專門能力을 닦고 創作을 더하여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말하는 〈組織〉이란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순히 〈会社〉 또는 〈事務所〉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建築家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란 의미이다.

建築家 업무란 〈專門職〉이기 때문에 設計事務所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組織의 우두머리〉는 建築家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병원의 원장이 실업가였다든가, 법률사무소의 소장이 부동산회사 사장의 아르바이트였다든가 하면 사회 通念上 〈이상하다〉는 것과 같이 실업가나 기업가가 設計事務所의 長으로서 〈經營〉의 職分에 있음은 일의 성격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建築家 이외의 직업에서 유력한 인재를 設計事務所에서 받아들일 필요성이 그 〈組織〉에 있을 경우에 役員·

종 별	A	B	C	D	E
성 격 규 모 별	아틀리에적 작가형 소사무실	특정 종속형 소사무실	未組織 作家型 중사무실	조직화 기업형 중사무실	조직화 기업형 대사무실
특 징	소장의 역량과 개성에 의해 경영—조직에 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특정기업 패턴에 종속하여업무를 수행, 업무의 전문화에 따라 조직·운영도 종속 타율적	A형이 발전한 것. 작품업적의 질이 높은 것이 특징	대단한 보스가 아니라도 협력과 조직으로 지속성이 높은 경영유지	전국규모로 영업을 전개. 많은 대표적 기업과 결합
장 점	작품·운영에도 개성 발휘	조직운영이 간소화·합리화 용이· 경영안정 얻기 쉽다.	업적·명성에 의해 여유있는 경영 가능·우수인재 모임	행동력 왕성·안정경영 기대	백화점적 능력과 업적과시·영업력 소화력 발군
단 점	一代에서 끝날 우려·경제적인 문제 우려	기업패턴에 따라 존립 우려	비근대적 패턴 그룹에 빠질 위험 내재	개성적인 작품없고, 상업주의에 빠질 위험	사회변화에 따라 적응력 의문, 정치적 결합에 위험
장래지향	소원의 독립 지향성 강함. 전문가적인 능력 향상	안정적 장점을 취하면 좋은 작품 기대. 새로운 경지 개척필요	인재 육성 등용하여 조직화 유도· 작가형도 육성필요	기획력·연구개발을 무기로 우수인력 증대·독자노선 확보	국제경쟁력 강화·국내적으로는 맘모스화로 곤란에 빠짐

相談役·顧問 등이나 管理部門(人事·經理·企劃 등)의 專門人材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組織〉의 性格方向을 정하는 것은 設計事務所 경영의 長期的 목표, 理念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그럼으로써 그 設計事務所의 존재이유를 주장하고 사회가 그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存在価値의 사회적 평가는 業務実践의 축적의 결과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

즉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경영을 하며 적당한 규모를 형성하여 운영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精神構成의 分野를 갖게 된다.

앞에서 〈所長의 意志決定에 따라〉라고 썼으나 좀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所長의 성격과 능력에 달려 있고 또 〈組織〉의 構成, 人材水準에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이다.

設計事務所가 어떠한 성격과 규모를 가지고 경영되고 있는가는 표에 의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大小의 구별은 어디까지나 직원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무소의 질이나 유명도와는 무관하다.

小事務所란 所長 이하 3~10명, 中事務所란 20~30명, 大事務所란 50명 이상의 규모라고 보는 것은 「專門的通念」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중간에 속하는 事務所는 그 성격도 中間的 状況으로 볼 수 있겠다. 관련해서 美国의 설계사무소의 예를 들면 8~10명 정도의 직원으로 두서너명씩의 파트너쉽으로 구성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영형태이고 大事務所로 보이는 SOM도 150명에서 200명 내에서 구성하고 있다(田辺博司氏·레이몬드建築設計事務所 專務理事의 조사자료에 의함).

日本에서는 사무소 수가 수요측의 시장에 비해 많아서인지 혹은 사무소의 単位規模가 외국에 비하여 너무 큰 것인지, 하여간에 종합적으로 보건데 양적인 공급 과잉현상을 만든 원인이 있음은 확실하다. 양적인 공급과잉은 질적인 경쟁으로 직결하여 수요자인 建築主에게 알맞은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게됨은 商人과 다른 〈프로팻션〉의 특질이다.

오히려 〈悪貨가 良貨를 駆逐한다」는 현상을 만드는 격이 되어 사회로 보나 건축가로 보나 커다란 손실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各設計事務所가 (適者生存)에 입각하여 올바른 의미로서의 〈優勝劣敗〉의 갈림길에 서서 〈내일에 살아남을〉 자신을 体得하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꼭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專門的인 업무에 대한 社会·建築主의 요청이 있을 시 자신(事務所)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이 있을 것.

2. 建築主와 建築業界에 대해서 지도력있는 리더쉽을 구비할 것.

3. 同業他社와의 지나친 경쟁(人海戦術·판로경쟁·덤핑행위 등)이나 建設業者와의 〈힘으로의 경쟁〉을 피하고 建築家로서의 專門能力과 신뢰관계로서 경영을 성립시킬 것.

4. 主宰者로서의 建築家는 建築創造에 정열을 다하고 社会圧力이나 経済的不遇에 굴하지 않고 직원의 共感과 自覚을 확립할 것.

2. 経営의 基本的 條件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에서 말하면 事業経営의 목적은 첫째로 이윤의 추구와 기업의 확대이고, 그 수단으로서 여러가지의 기본 조건을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設計事務所의 경영과 조직의 문제를 해명하는 論議와 사업 경영의 일반론과는 사업적 관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経営의 기본 조건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方法論으로서 해명할려고 하는 의도인 경우에는 오히려 建築家는 종래보다 그 점에 관한 한 태만·무관심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 利益指向을 배제하면서 健全経営을 바라는 것은 利益至上主義의 실천보다는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닐까. 프로팻션으로서 建築家経営者가 짊어져야 할 숙명적 십자가이다. 경영이 성립되어야 될 필요 조건으로서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諸條件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일정한 水準以上의 사회적 신용과 專門家能力

2. 최고급의 經營者能力

3. 업무수준을 확보·향상시킬 수 있는 人材構成과 그 管理能力

4. 시기에 맞는 資金調達과 管理能力

5. 先見性과 營業能力

또 경영자로서 실천하여야 할 〈經營指針·5원칙〉을 다음에 표시하면

1. 組織과 人材의 育成向上에 노력하는 일

2.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일

3. 자금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계획성을 갖는일

4. 經營能力과 經營規模와의 균형에 주의하는 일

5. 시간의 가치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공통의 과제로 하는 일

— 社会的信用과 專門家能力 —

프로젝션의 업무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적 신용, 의뢰자와의 신뢰관계가 전제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격·역량을 인식하게끔 평소부터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적 신뢰가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능력의 수준의 여하에 따라서는 업무의 성립이 반드시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수〉를 넘어선 야망에는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어려운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정확히 평가하고 세상의 어떠한 분야에 立脚点을 얻을 수 있는가를 돌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人間社会에는 파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반드시 善惡을 초월한 엄연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直視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학벌·문벌·地域閥·企業閥·資本閥 등등 끝이 없을 정도로 多種多樣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經營組織이 사회로부터 孤立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 이상 파벌에 파묻히든가, 不即不離한 자세를 堅持하든가 자신이 파벌의 〈보스〉가 되든가 또는 자신에게 그럴만큼의 능력이 과연 갖추어져 있는가를 熟考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派閥이라는 표현에 저항이 있으면 人脈·金脈 또는 〈Group〉이라고 바꾸어도 좋다. 그것들은 구체적으로는 개인·기업·단체 또는 관료주의라는 형태의 상대이다. 상대로 부터의 신뢰와 자기의 역량이 있으면 拡大再生産에 의한 경영의 확립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에 열중하고 일을 통해서 훌륭한 組織을 확립하는 것이 경영의 확립·발전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어떠한 세계에 活路을 구하든지 간에 社会的信用과 專門家能力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人生観·職業観의 확립, 끊임없는 노력, 건축에 대한 정열, 봉사의 정신 등이 없어서는 아니되고 동시에 対応한 〈時間〉이 필요하다.

經營者에게는 그것에 対応하여 끊고나가는 知力과 気力, 体力이 필요하다.

— 最高의 經營者能力 —

經營의 神이라고 말하는 松下幸之助일지라도 〈事業은 運·不運이 8할, 努力이 2할〉이라고 한다. 大成功者로서 말할 수 있는 겸손한 말일 것이다. 失敗者의 입에서 나왔다면 같은 말이더라도 〈변명〉이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에 우연적인 요소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主観에도 따르지만 나는 世上事의 우연성과 필연성은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우연성과 필연성은 긴밀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정확하고 확실한 計劃力이나 노력이 幸運을 부르며 運이 억세게 좋은 때는 世上事가 萬事亨通되는 현상이 많다. 그 반대로 運이 나쁠 때는 어떤 일이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0%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노력하는 것도 쓸데없다」라는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經營者로서 失格이다. 조금이라도 確率을 높일 정열과 構想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절차에서는 經營者의 人格·個性·知力·気力 등이 어느 정도 赤裸裸하게 発揮되기 때문에 外見上으로 보아도 그 能力水準, 思考習慣, 行動習慣 등에 주의하면 많이 배울점이 있을 것이다.

確立된 信念의 所有者나 억센 운세를 타고난 經營者에게는 반드시 일종의 風格이라고 할까, 教祖的인 분위기의 소유자가 많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애정이 강한 반면 이론과 사리에 따라 냉철하게 일을 처리하는 면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総合的인 視野와 先見性과 決断力은 經營者의 필수 조건이나 자기의 支配下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指導方針을 이해시켜 다음 행동으로의 진전을 予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없을 경우 부하는 有機的인 戦力이 되지않고 다만 部分品으로 하락되어 임기응변적으로 일을 끝내고, 戦意를 상실하게 된다.

建築家는 본래 事業家가 아닌고로, 經營者로서의 책임을 맡을려고 해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윤을 올리는 데에 의무감을 갖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赤字經營으로서는 훌륭한 組織의 維持運営이 어려워 결국 곤경에 빠져 対外的인 신용의 유지도 곤란하게 된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짚불은 안 쬔다〉라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事業家·經營者와는 기본적으로 틀린 책임과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日本建築家協会나 日本建築設計監理協会連合会가 주장하고 추진하는 職能法人의 存在理由가 있다. 가끔 인용될 때 나오는 의사나 변호사의 직업상의 능력에 대해서 요구되는 社会性과 同質의 것이다.

社会構造의 변모에 따라 設計事務所도 건축가의 취미나 道樂의 범주 내에서 끝마칠 수는 없게 되었다. 새로운 機能, 새로운 能力을 〈時代〉가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거부하던가 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建築家는 〈職人〉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느낀다. 職人으로 만족하는 것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時代에도 職人은 필요하고 專門職의 基本型이고 各人의 솜씨에 도달되면 더욱 훌륭할 것이다.

그러나 職人의 길은 〈生業〉으로서 經營論의 범주 외의 것이므로 이 글의 論議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아두기 바란다.

— 人材構成과 管理能力 —

〈事業은 사람이나〉라는 先人의 名言이 있으나 設計事務所의 運營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한 느낌이 많다. 經濟社会에 있어서는 항상 需要와 供給의 原則이 作用하나 需要를 促進하는 內部的 원동력은 人材를 통해서의 対外的 信用力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組織에 対한 信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專門能力에 있다. 經營者는 조직의 総合能力을 십분 발휘하는 동시에 적절히 調節해서 持続性있는 業務活動의 指揮者이기를 要한다.

經營者가 어디까지 경영상의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가는, 能力程度에 따라서 人材構成이 필연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經營者가 能力的으로 自乙 処理가 不可能하든가 또는 不足한 分野에 經營幹部의 存在가 필요한 것이다.

그 적절하고 정확한 判断과 人材의 適正配置는 最高 經營者의 책임이고, 그 판단 능력은 경영자의 資質에 대한 수준을 評価하는 重要한 点이기도 하다.

個人의 特質이나 경영조직의 運營에 간여할 수 있는 多角的 能力을 갖춘 人材와 專門的 分野에 特性을 発揮하기에 適合한 幹部的 人材가 있다. 專門家로서의 指導力을 갖춘 동시에 総合的인 視野가 뚜렷한 指導能力을 갖춘 人材를 発掘하여 訓練하는 것이 필요하나 先天的 資質을 갖추지 못한 人材는 訓練의 成果를 期待하여도 우선은 소용없다.

그것은 가령 造形感覚이 缺如된 技術者나 色盲을 일류 建築家로 만들려고 하는 努力에 가까운 性質의 것인 것이다.

〈장래를 기약하는 사람〉은 오늘의 課長이 내일의 部長이요, 오늘의 部長이 내일의 經營者이다. 立場과 責任의 差異는 있으나 共通된 人格과 能力을 요구케 되는 것이다.

經營規模의 設定과 判断에 대해서는 經營能力을 웃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業務収入에서 判断하는 方法〉과 〈構成人員에서 確保하여야 할 業務量을 設定하는 方法〉의 두 길이 있으나 現実로는 이것을 両面에서 검색하여야 한다.

— 資金調達力과 管理能力 —

특권계급에 속하는 建築家는 어떨지 모르나 일반적인 經營者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設計事務所의 經營에도 때로는 資金不足을 가져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유가 있을때에 財務內容의 充実, 健全化를 도모하고 必要한 時期에 堅実한 借入을 쉽게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業務의 収益과 均衡을 이루지 않으면 안될 성격의 〈연결資金〉인 고로 短期의 借入金이어야 된다. 즉 〈經營救済資金〉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바꾸어서 〈設備投資〉에 속하는 資金의 調達은 〈長期資金〉, 즉 長期借入金 또는 增資에 의해서 조달되어야 된다. 물론 자기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借金에 대해서는 개인, 회사를 불문하고 〈堅実한 返済計劃〉 뒷받침의 有無가 건전경제와 불건전경제의 分岐点이다. 經營者는 이런 경우 借金을 얻는 能力, 信用力을 필요로 한다. 또한 건전한 목적과 건전한 방법에의한 借金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건전한 借入金이란 무엇인가. 金融機関의 株主, 顧客 등의 支援者, 자기일가 까지가 정상적인 범위일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保証責任, 利息, 期間 등에 대해서는 書面에 의해서 작성된 約定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信用保持를 重要視하기 때문이다.

収入報酬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運用을 도모하는 方法으로서 수시로 収支均衡을 검토함과 동시에 월별집계표의 검토와 합해서 年度初에 年間予算計劃書를 작성해서 年度의 目標設定을 하고 所內에 있어서의 資料로서 두는 것이 理想的이다. 작성의 실마리는 前年度 決算에 있어서의 〈年間収支一覧表〉이고 次年度 予測과 計劃을 加味한 目標設定이다.

— 営業能力 —

営業能力이라는 經營者 條件을 建築家의 立場에서 어떻게 対処하면 좋을 것이라는 点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建築家에게 〈営業行為〉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理想家的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建築家에게는 〈営業〉이라는 말을 心理的으로나 生理的 으로나 어울리지 않는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자.

오늘날 数많은 建築家가 存在하고, 設計事務所의 業務活動이 행해지고 또다른 면에 있어서는 国家, 社会, 企業이 제작기의 目的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행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建築計劃, 建築生産이 발생하는 이유지만 이 前者와 後者의 연결, 즉 〈依賴関係〉는 어느 곳에서 接点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大別하면 다음의 두가지이다.

1. 信賴関係에 의한 接点
2. 情報을 통한 接点

즉, 建築家가 행하는 〈営業〉이란, 이 두가지의 조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있다. 아마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建築家에 가까운 프로펫션 분야에서도 똑같은 対応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1. 利益誘導에 의한 営業을 하지 않는다.
2. 労動集約型의 営業을 하지 않는다.
3. 営業的 宣伝活動을 하지 않는다.

以上과 같은 職能의 조건 중에서 안정된 업무량(営利業, 製造業같이 注文이 쇄도해서 쉴 틈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을 확보하고, 업무실적의 蓄積에 의한 対外的 信用를 自社의 組織에 반영해서 충실하게 하는 効果가 즉 〈営業의 実績〉이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건축가로서의 〈営業能力〉이다.

일반적으로 〈經営〉이라고 하지만 設計事務所에 있어서의 그 범위는 대개 다음과 같다.

※經営

조직의 운영·연구·개선·관리·원가의 합리화·사회활동

※建築家의 業務

업무·운영·조사·연구·기획·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감리·정보수집·관리

※營業

영업정보의 수집·관리

業務量의 安定化— 지속적인 영업, 개발적인 영업, PR

※資金

경리·회계·단기자금계획·장기자금계획·통계·분석

※人事 및 庶務

인사관리·교육훈련·서무관리·원가개선

이상의 經營항목에 대해서 경영자는 지도목표(이념)와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指導目標—理念·指導

1. 경영자는 항상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달성에 솔선수범 노력하고 부하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에 힘쓸 것.

2. 경영자는 당면한 목표와 장기목표를 절충할 것. 또 그 달성수단의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말 것.

3. 항상 경영자로서의 자각과 건축가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조직의 질적 향상(업무레벨·인재레벨·객의레벨)에 노력할 것.

4. 사무소의 존속과 성쇄는 업무의 질과 그 사회적 평가에 의한 것임을 자각할것. 경영의 基本인 선문업적·영업·인사·자금의 現況을 항상 파악하고 일상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半期·年間·長期전망과 계획을 가질 것.

5. 상황의 변화를 先見하여 조직운영을 적응시켜 나가는 능력을 적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成果目標—計量·確認

1. 진행 중인 업무가 스케줄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를 항상 파악해둘 것. 또 그것이 질적으로도 충분히 목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둘 것.

2. 각부문에 있어서 업무분담과 처리狀況에 質과 量의 관계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판단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고 동시에 적당한 평가를 태만하지 말 것.

3. 業務動向과 收支動向과의 관계가 잘 進行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둘 것.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과 상황에 대처하여 철저한 대책으로 신속히 취할 것.

4. 対外的業務(建築主·協力事務所·감리담당현장·관계관청 등)와의 의사소통과 연락, 보고 등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항시 파악해 둘 것.

5. 業務와 관계하는 각자의 입장(건축주의 주문·협조사무소·시공업자등)이 그 업무의 현황과 成果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만일 문제점이 생기면 그 原因을 규명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業務方向性의 設定

建築家로서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일을 하는 자체가 죽도록 좋다고 할 정도로 되어야 함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으나 建築家가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다.

사회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建築家를 발굴해서 活用하고자 하는 안목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무엇보다도 〈実績主義〉에 의해서 선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建築家의 우열적부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建築家가 과거에 어떤 종류의 건축을 많이 다뤘는가, 有名度는 어떤가, 또는 〈紹介者〉의 비중 등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쁜 것은 〈設計料를 얼마나 싸게 해 받을 수 있을까?〉가 수준척도로 사용될 때가 있다.

규모가 큰 사무소 조직이라면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으나 실제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 요즘도 덤핑행위로서 建築界를 문란시키는 것은 큰 사무소 쪽이 많고 다음으로 중간규모의 사무소이다. 작은 사무소가 자주 그와같은 흉내를 내다가는 그대로 도산에 직면케 됨은 당연한 일이다.

建築家로서 設計事務所의 〈업무의 方向性을 설정〉하는 意義는 무엇일까.

*建築家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의 일에 중점적으로 에네르기를 쏟음으로써 높은 레벨에 도달한다.

*자기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를 선택·개척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고 他社의 추종을 불허하게 한다. 또한 의미없는 경쟁을 피한다.

*일반사회에서의 〈実績主義〉를 활용하여 업무활동을 자기 것으로 유리하게 전개한다.

*좋은 발주자를 선별하여 업무활동을 할 때 자연적으로 발주자의 사업방향과 성격에 따르도록 한다.

*신인 건축가나 경력이 적은 설계사무실이 他社에 압도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신있는 분야부터 공격해야 한다. 속담에도 〈자신있는 손으로 뚫을 올려라〉라는 말이 있듯이.

*건축가의 과거 발자취, 업무경력, 인간관계 등에 의해서 고객의 방향성은 어려움을 갖게된다. 그 선택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 관공서건축·기업건축·상업건축·주택건축 등이 있다.

*설계사무소의 조직규모에 적합한 업무방향성의 선택을 專門化할 것. 한계성에서 높은 작품레벨을 확립하고 충이 두꺼운 실적을 축적함으로써 고도의 対外的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예—交通建築設計事務所 : 驛舍·터미널 건물 등

観光企劃設計社 : 호텔·관광시설 건축 등

和設計事務所 : 사회교육시설·아동시설 등

또 観点을 바꾼 다른 측면에서의 方向設定이 있다. 그것은 건축의 용도·목적과 업무의 보편성·특수성, 그리고 전문능력에 있어서의 難易度와 適応力에 따른 선택결정의 방향이다.

*과거에 대한 연구, 경험의 축적에 의해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고 확고한 분야를 확립해 갈 것.

예—佐藤武夫設計事務所 : 시청사·시민회관 종류

前川国男建築設計事務所 : 미술관·박물관 종류

日本設計事務所 : 초고층 사무소건물

전문적인 직업분야에 한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自身있는 분야〉와 〈自身없는 분야〉가 있다. 건축이라는 專門世界에서도 고도화·복잡화되어진 오늘의 상황에서는 전문업무에서도 다시 전문적으로 分化된 업무가 있어도 별로 이상해 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되어진 분야도 있다.

商店建築이라는 한정된 분야를 놓고 생각해도 쇼핑 센터와 일반 소매점, 레스토랑·식당·다방·클럽·캬바레 등을 비교할 경우 모두 近似한 분야로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로서의 영업, 설계상의 어려움, 장사로서의 기능적인 수요, 요구되는 분위기와 정보 등, 각 포인트에서 비교해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는 별도 분야의 영업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의 것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고 명백히 공통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1. 물품을 판매한다는 목적. 그것이 購買者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점포의 존재가 어필하도록 보다 나은 표현을 구하는 것.

2. 음식물을 일상생활의 週期에서 서비스하는 레스토랑·식당과 알콜類와 여성의 서비스에 의한 분위기를 중요시하여 상품화하는 클럽, 이 모든 것은 넓은 의미로 보아 음식영업이다.

3. 品種의 다소, 영업규모의 대소에 따라 법적 규제의 차등은 있으나 상품의 종류에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대형점포나 일반 소매점.

4. 洋式과 日式의 차이는 있으나 레스토랑·클럽과 생선전문집·요정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공통점·유사점이 있다.

이상은, 다시 말하면 건축주의 측면에서 경영형태적으로 본 상위점과 공통점의 비유이며 건축가 측면에서 본 업무의 방향성에 있어서의 〈상위점과 공통점〉을 찾아보자.

상위점에 대해서는

1. 관공서의 企劃에 의한 건축과 기업의 營利를 목적으로 한 건축의 경우. 전자의 〈지역 복지시설로서의 집회장·결혼식장〉과 〈영업으로서의 임대 홀이나 결혼식장〉과는 이용목적은 같으나 存在目的이나 경영자세에 있어서는 전연 다른 것이다. 업무로서 어푸로우치하는 人脈이라든가 설계의 발상부터 디자인方法까지에 많은 차이를 가져 온다.

2. 공단 분양아파트와 민간 분양아파트의 경우 모두 〈中高層集合住宅〉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건축목적·설계방법·原価構成方法·이윤목적 등은 이질적이다.

3. 공공미술관과 사설미술관, 화랑의 3가지의 경영실태

經営財源에 대해서 근본적인 相違·존재목적·전시작품의 취급·상품성의 해석 등에 많은 상위점이 있다.

前項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용목적 또는 사용목적〉이 동일한 것.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기능의 추구〉가 질적으로 동일하고 혹은 근사하다는 것 등이 있다. 비상업성과 상업성의 차이에 의해 크고 작은 細部構成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건축의 종류나 방향에서는 건축가로서의 近似한 발상과 〈경험의 가치〉란 것을 자각하게 됨은 틀림이 없다.

大型事務所가 어느 정도는 기업적, 백화점적인 체질로 변해가는 경향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되지만 中型·小型事務所들까지 그것을 지향하거나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대형사무소의 수를 보면 日本은 세계에서 1위이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설계사무소의 총수 자체가 〈과잉〉이다. 이 과잉현상에 대해 한마디로 〈社会的인 不必要〉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1. 建築士法의 不備로 인한 설계와 시공의 합리화 문제. 설계와 시공을 완전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책임과 권한을 분리·명확히 하여 사회의 자세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을 강조하고픈 것이다.

2. 설계사무소의 수를 운운함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업무의 질과 프로펫션으로서의 자세에서 內部的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하여 오늘까지도 아직 미해결인 상태로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바른 비판, 바른 척도에 준하여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悪貨〉가 도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도 전문가의 자제와 사회 일반의 자각의 상호작용이 함께하지 않는 한 단시일 내에 기대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들은 적어도 오늘의 상황보다는 사회상황에 비추어 바람직한 숫자에 가까워 지려는 과정에서 중·소사무소가 건전하고 견실하게 경영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러가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즉 対象으로서의 〈中·小事務所의 作戦要務令〉이라면 우스꽝스럽겠으나 이것에 대한 힌트라고 볼 수 있겠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중·소사무소는 專門店的인 방향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건축의 용도·기능에 의해 선택되어 짐으로써 더욱 고도의 專門能力과 독자성을 체택하여 他社와의 무조건 경쟁에서 피하는 것을 마음에 둘 것. 즉 比較條件이 약해서 가격(보수) 경쟁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単位專門店方式을 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사회의 순환이 가속화된 현대에서는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그 보완책으로 배려가 필요하다. 전문화의 방향을 複数化함으로써 조직의 성장·발전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도화를 위해서는 상호 연관성있는 방향선택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주택+맨션+점포병용주택,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의 類이다.

3. 安定化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両極方式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前者보다는 어푸로우치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하드(Hard)건축+소프트(Soft)건축, 생산적건물·경제적건축 등의 2가지 개발방식이다. 이상은 건축의 용도·기능면에서의 관점이고 다른 측면으로는 관공서건축+민간건축, 또 어디까지나 建築種別의 대상을 좁히는 것 등이 있겠다.

4. 사무소의 조직규모에 맞추어 독자성을 확보할 것. 대형사무소가 꼭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은 아니다. 정보전달이나 対応能力의 민첩함, 그리고 기업화로 인한 약점, 転換能力의 문제 등을 체질적으로 안고 있을 위험도 큰 것이다.

업무의 性格上으로 보아 단순하게 말하자면 10인에서 40인의 범위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해 볼 때 가장 조직효율에서 우위성이 있다.

건축계 뉴스 / 정보

건축허가 서류 일괄처리
불편줄여 편리하게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때 이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등 14개 인·허가를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해주지 않고 건축허가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신청 때 모든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받아 일괄처리하게 된다.

건설부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절차를 이처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을 국무총리훈령으로 공포했다.

이에따라 건축허가 때 일괄처리되는 14개 인·허가 사항은 ▲도로점용 ▲배수시설의 설치 ▲보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시설의 설치 ▲상수도시설의 설치 ▲遊技場시설의 설치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설치 ▲시장시설의 설치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설치가능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설치가능여부 ▲지하철 및 철도시설과의 저촉여부 ▲항공장애 사항에의 저촉여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설치가능여부 ▲항만구역 내에서의 규제에 관한 저촉여부 등이다.

이같은 인·허가 사항은 앞으로는 해당부서를 따로 따로 경유하지 않고 市와 区의 경우 건축과에서, 郡은 건설과에서 일괄하여 건축허가와 함께 취급된다.

또 배수시설설치, 주택자재사용 등 일정한 조건이행을 전제로 건축이 허가됐을 경우 조건이행 여부의 확인도 건축허가부서가 준공검사 때 일괄처리하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이같은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의 일괄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리담당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백한 심의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곧 마련, 일정기간동안 공시할 계획이다.

設計심사 10억 이상으로
심의기준 上向조정키로

국무회의는 지난달 31일 10억원이상 규모의 정부설계공사에 대해 中央設計審査委員会에 審議를 받도록 審議対象基準을 上向調整하고 設計審査委員会의 기능을 강화하도록한 「設計審査委員会規程改正案」을 의결했다.

건설부가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設計審査委員会規程改正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発注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타당성과 적합한 시공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中央設計審査委員会의 政府工事審議対象을 현재 공사금액 5억원以上 規模에서 10억원以上規模工事로 大幅 上向調整하고, 건축공사의 경우는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현재 4억원以上 規模工事를 審議対象으로 하던것을 延面積基準으로 하여, 5천m²以上規模建築工事를 審議対象에 포함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관계장관으로부터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시설공사와 10억원미만공사일지라도 구조 및 공법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발주처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改正案은 施工業体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등을 적용하여 工費를 절감하거나 工期短縮 등에 현저한 효과를 가져온 工事 역시 中央設計審査委員会의 審査를 받아 設計変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特히 設計審査委員会의 設計審査는 전체공사에 대한 基本設計図를 작성한 후 요청하게 되며 基本設計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実施設計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직할시·도단위에 설치한 地方設計審査委員会의 業務도 調整하여 서울市의 경우에는 現行과 같이 공사금액이 5억원以上規模工事를 審査対象으로 하는 한편 建築工事에 있어서는 4억원以上工事로 하던 것을 延面積이 3천m² 以上規模工事를 審査하도록 했고 기타시도는 1억원에서 2억원以上工事로 上向調整했다.

이改正案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도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因해 設計審査가 必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中央設計審査委員会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改正案은 중앙 및 지방위원회의 심사위원을 대폭 증원했는데 中央委員会에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것을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명을 포함한 80명 以内의 委員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地方委員会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1명을 包含하여 20명으로 구성하던것을 30명 以内로 構成토록 하였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中央委員会와 같이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술용역법 시행령 공포
기술부문 업무범위 조정

정부는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기술용역을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기술용역의 종류를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산업설비용역업에 대한 기술부문의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또한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을 강화, 기술사 10人 이상 건축사 1人을 포함한 고급기술자 30人 이상과 기술자 90人 이상으로 하는 대신 개인기술용역업은 해당분야기술사 1人으로 보다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용역업등록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 수시로 접수하면 것을 과학기술처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공고할 때에만 등록을 받도록 했다.

또 외국용역발주승인 신청을 지금까지 용역대가의 구분없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케 했으나 앞으로는 용역대가가 5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내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 국내에서 발주되는 용역 중 국내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수행해야 할 경우와 사업관리대행자로 하여 수행해야 할 경우를 규정, 국내용역업으로는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주계약자로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와 사업관리대행자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내용역업자를 사업관리대행자로 하여 수행하고 나머지 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용역은 국내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기로했다.

耐震설계 의무화 하도록
빈번한 지진에 대비토록

서울시는 앞으로 짓는 각종 토목구조물과 건축물 설계 때 지진에 대비한 내진(耐震)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장기대책으로 서울지역의 세부구역에 따른 지진피해 예상지도를 작성하고 중앙기상대와 협의, 연구 기초조사를 벌이는 한편, 반상회 때 지진대피 계몽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8월29일 새벽의 지진으로 미루어 서울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간 지진이 빈번해진데다 78년 홍성 지진으로 보아 진도 5(벽에 금이가고 비석이 넘어짐) 이상의 강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일정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구조물의 안전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조물의 강도와 함께 내장공사 때의 접착부분 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20층 이상 대형건물의 건축허가 때나 도로교량, 터널, 옹벽 등을 건설할 때 강도 3~5의 지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 구조기술사의 역할을 강화, 설계토록하는 한편 微震으로 흔들리거나 파손될 위험성이 많은 건물의 내장공사도 시공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같은 내진설계문제는 지난 78년 홍성지방의 강진 이후 학계와 국립건설연구소 등에서 한때 논의됐다가 당시의 지진은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 채택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들어 두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오는 83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데다 서울의 경우 ▲고층건물의 지진대책 미약 ▲전기통신 및 지하철 등의 각종 지하매설물이 많고 축대와 매립지로 구성된 구릉도시라는 등 취약점이 있어 도괴와 화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중에도 지진대책을 세운 바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자투리 땅 건축완화
미달대지 기준완화

서울시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건축기준 미달 대지(자투리 땅)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건축조례를 고쳐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이 현행 건축법상 기준의 1/3 이상만 되면 건축을 허가해 주기로 하고 건폐율은 기준보다 10%, 용적율은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1-5종 미관지구 내에 적용하던 건축물의 앞면길이(15~18m) 및 옆면길이(6~9m)에 대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영동, 잠실 등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대지 중 제자리환지나 감보율적용 등으로 건축기준에 미달되고 환지된 땅의 활용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최소 1백평 이상의 대지라야 건축이 가능했던 2~3종 미관지구에서는 기준면적의 1/3인 34평이상이면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1종 미관지구에서는 67평, 4종 미관지구의 경우엔 20평 이상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 비율인 건폐율도 상업지역은 60%에서 70%, 주거지역은 50%에서 60%로 높아졌고 용적율도 상업지역에서는 2천%까지, 주거지역에서는 6백%까지로 늘어났다.

서울시 건축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현행 건축기준을 감안하지 않은채 땅을 분할한데서 빚어지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환지처분할 때 증감평을 통해 건축법상기준에 맞도록 대지를 분할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량주택재개발 84년에
86년까지 모두 끝내기로

서울시는 철도연변에 자리한 효창지구 등 5개 지구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오는 84년 착수, 86년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철도연변 종합정비계획의 하나로 추진될 5개 철도 연변 재개발지구는 용산선의 효창, 경원선의 답십리 6, 용산선의 신계, 도화, 신공덕지구 등이다.

시는 이들 5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사업비 5억5천200만원, 재개발사업융자금 49억2천만원 등 모두 54억7천2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5개 지구는 모두 2만4천400坪의 대상면적에 무허가 건물 732동, 유허가건물 232동 등 984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시가 이들 철도연변 5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무허가 건물과 불량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철도가시권 내에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친절하기 운동 전개키로
本会서도 생활화 유도

건설부는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 등 고질적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 철저히 책임지는 공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생활 친절하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9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이번 운동은 모든 건설공직자가 대민관계는 물론 공직자 상호간에도 "친절하기"를 생활화해서 봉사자세 완전확립과 함께 완전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전화 친절히 걸고 받기, 친절안내 및 상담하기 등으로 정하고 월 1회 이상의 교육 및 지도단속과 여론조사 실시, 점검평가키로 했다.

이 운동은 9월부터 실시에 들어가서 10월 이후부터는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본회에서도 동 운동에 따라 "친절하기"를 생활화 할 계획이다.

소형아파트 신축규제
잠실운동장 부근에

서울시는 잠실대운동장 및 둔촌동 국립경기장부근을 짜임새있게 조성키 위해 이 일대에 소형아파트 및 소형 연립주택의 신축을 규제키로 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경기장 및 선수촌 등이 들어서는 잠실 및 가락지역을 균형있는 신시가지로 조성키로 하고 소형주택의 밀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기 위해 소형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 및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소형아파트와 전용면적 20평 미만의 연립주택의 신축을 규제키로 했다.

특히 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아니더라도 연립주택의 신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구 둔촌동·성내동 등 국립경기장부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20평 미만의 소형 연립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규제내용을 공식적인 건축조례 등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시 거치게 되는 미관심의 과정에서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건축승인이 나간 한양, 송죽아파트 등은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미 잠실 대운동장에서 국립경기장에 이르는 38만평을 환경정비 대상지구로 지정,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축소면적을 주거지역 50평, 상업지역 100평으로 법정기준보다 넓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건축허가 34% 증가
1～7월중 비주거는 답보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1～7월중 건축허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은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천6백46동으로 지난해 3천4백54동의 87%수준으로 경기불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동안의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9천3백12동(4백42만3천4백65m^2)으로 지난해 7천4백50동(3백28만7천6백36m^2)의 1백34.5%에 이르렀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민부담 크게 줄여

내무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주고 건축자재를 염가로 조달, 공급해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민부담경감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새로 집을 지을 때 지방세 및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건축비 이외의 지출을 줄이고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며 재산세는 5년동안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도 50%를 감면해 주고 설계비를 30% 이상 감면해 주며 담보설정을 위한 농협감정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값 층별 차등제
분양승인서 강력지시

서울시는 아파트값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하도록 사업 및 분양승인 과정에서 강력히 지시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난 7월중 전층에 걸쳐 차등분양가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강남동인 기지역에서는 업자들이 이를 기피,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앞으로 1층에 대해서만 다른층의 5%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고 이의 성과를 보아 확대실시키로 했다.

시가 차등분양가제를 도입한 것은 투기를 예방하고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아 업자들이 자금난을 겪는 현상을 풀이기 위한 것이다.

주택건설 완만한 회복
실수요 다소 증가세

주택건설 경기가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주택분양가격도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은행이 전국 2백20개 중요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조치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투자와 실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이나 워낙 주택수요자의 구매력이 감퇴되고 건설업체들의 기존주택의 분양이 저조,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어 주택건설 경기는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분양가격은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로 점차 상승할 것이나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은 분양대금 회수부진 등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상 애로를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은 판매부진(37.9%) 자금부족(31.8%) 宅地부족(23.0%) 등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업체들은 특히 대도시의 택지구득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질의응답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의 질의에 대한 건설부의 회신 내용

• 問 ① 특정 건축물의 대지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상대농지 또는 절대 농지에 불구) 및 임야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농지 전용 및 산림훼손 등(이 경우 당해법 이전의 건축물 포함) 허가 절차없이 사실상 대지 현상에 의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② 특정 건축물로서 당해 토지면적이 과다할 경우 대지면적은 특정 건축물(대지안의 전체 건축물)의 건폐율에 적합하게 가분할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答 특정 건축물의 대지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 또는 임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본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로서 제7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면 준공검사필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問 ① 특정 건축물의 대지가 법 제7조 제1호 규정중 국·공유지로서 관리청과 점사용 수익, 임대차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 또는 대지 사용 승낙서 등이 가능할 것이나, 미계약 대지로서 관리청 미지정 당해년도 관리(처분)계획 미수립된 잡종 재산과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 및 범위를 증명하는 절차 및 처리 방안의 여부

② 특정 건축물이 점 사용한 국·공유지를 처분함에 있어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答 국·공유지상에 있는 대상건축물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하가 가능한 토지(잡종 재산)상에 있는 대상건축물만이 구제대상이 되며 국·공유지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 問 ① 특정 건축물 과태료는 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위반부분 면적 매 평방미터당 30만원 이하 및 당해 건축물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 실정과 건축의 감가 가용 잔여수당등 위반정도에 따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하"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별표에 게기한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허가당시 연면적 90평방미터이고, 완공 후 연면적 100평방미터 일때, 별표에서 적출한 가중치 6종류를 순차적으로 곱하여 얻은 값이 0.0936[0.80(별표 1)×0.40(별표 2)×0.65(별표 3.가)×1.00(별표 3.나)×0.75(별표4.가)×0.60(별표 4.나)=0.0936]일 때 과태료는 10(평방미터)×30(만원)×0.0936=280,800원이 되는지의 여부

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는 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지방 실정, 건축의 감가가용, 잔여수당등 위반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이외의 방법을 따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②의 계산방법이 옳은 것임.

• 問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같을 경우 과태료는 현 소유자가 부담 의무자가 되나, 건축주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과태료 부담 의무자 결정 및 이 건축물과 취득년수에 따른 시효 완화적용 여부

答 과태료 납부 의무주체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시의 건축주가 되나, 시장·군수가 신고 및 과태료 납부의 의무주체를 건축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의무주체가 되는 것임.

• 問 특정 건축물 및 준공미필 건축물로서 준공필증을 교부받아 가옥대장(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을 경우 위 건축물은 면허세, 채권, 공채 등 매입이 면제된 것인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때 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주택 채권 기초면적 산입(사실상 건축일자에 따라) 또는 매입대상 여부

答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준공검사필증 교부시점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중 제8항의 건축허가 시점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의 면허세, 채권, 공채 등의 매입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 問 특정 건축물의 위반면적 산정에 있어 허가당시 면적과 완공후 면적이 같거나 감평일 경우 완공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사 업무보수 산출 및 과태료 결정을 하는지 여부

答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 위법시공 건축물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부분의 면적이 위반면적이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위반면적이 되며, 면적에 관계되지 않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 또한 건축사 업무 보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면적 위반의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 보수 기준 제3호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면적위반이 아닌 기타 위반(허가 사항보다 감평된 경우를 포함)의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 보수 기준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問 특정 건축물 중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아니고 단순한 적기 준공신고해태(무지, 실기등)로 인한 것일 경우 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 위반 면적은 허가 당시(완공후 동일) 면적으로 하거나 특법 제9조 제2항 제2호 위반 사항 대상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일반준공신고(해태 사유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건축법에는 적합하게 시공된 건축물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축물도 본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태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문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주 건축물에 붙여 짓거나 부속건축물 등) 일부 개축된 건축물은 물론 대수선 용도변경한 것도 특정건축물의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가옥대장(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발급은 되나 대지안의 연면적, 구조, 용도 등이 대장상과 불일치한 실정의 시정방안)

답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주 건축물에 붙여 짓거나 부속건축물 등) 또는 일부 개축된 건축물 및 대수선한 건축물도 본법의 대상이 되나, 적법한 건축물로서 위법 사항이 단지 무단용도 변경인 경우에는 본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문 그림과 같이 A동은 60년대 이전 건축물로서 이미 양성화 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B동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철거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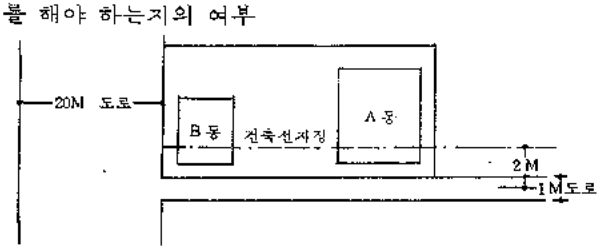

답 질의의 경우는 기준폭 미달도로에 접한 건축물 (B동)로서 그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건축선으로 지정 하였을 경우가 아니므로 현행 규정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수도 있읍니다.

• 문 합법건축물에 무단 증·개축한 부분 및 합법건축물에 무단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적용대상 여부

답 ① 무단 증·개축한 부분의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본법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②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이하 "합법건축물"이라 함)로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단, 합법건축물로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문 합법건물이라도 공부내용과 상이되는 건물(면적, 구조, 용도 등)의 경우 판별곤란, 전매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건축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선택적 신고의 규정으로 보아 신고한 자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실제 건축물이 공부상의 내용과 상이한 건축물도 그 상이한 부분을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 문 타인대지 사용승낙과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 위반 건물은 타인과의 관련이 있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것이므로 선택적 의무규정으로 보아 신고나 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시정불능의 건물에 있어서는 심의기각으로 정리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 ① 타인소유대지상에있는무허가 건축물로서 대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함.

②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도록 함.

• 문 건축물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내에 저촉된 경우 대상건물로 보아 신고를 받아 시정명령을 하여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내에 저촉되어 있는 건축물은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저촉된 부분을 사전에 시정한다면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문 1필지 내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 사실상 현재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대지경계선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적용하는 경우 건물간의 거리(통로)도 심의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지 또는 택지내는 관계치 말고 필지경계에만 심의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 하나의 대지상에 2동 이상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동 단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사실상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대지경계선의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위법시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허가단위구역내의 건물간의 통로는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 도로로 보지 않읍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집단으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간의 통로를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된 집단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 문 법 제3조 제3호에서 위법시공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의 규정에는 적합하나 동 건축

물의 부대시설등이 타법령(주차장법 및 소방법등)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축물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시행(79.7.13)전에 건축법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건축물은 신고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답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차장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축물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전에 건축법에 의거 주차장을 설시토록 건축허가된 건축물이 주차장을 주차장설치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건축물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 문 공동주택의 경우 신고나 과태료 등 처리방법 모호(허가단위별, 전물단위별, 개인가구별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 공동주택의 경우 신고나 과태료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등에 대한 본법의 권리의무주체는 건축주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주 소재불명 등 건축주가 권리의무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의 대표도 가능)가 됨.

- 문 법 제7조 제1호의 심의기준중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상건축물에 국·공유지상에 건립된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는 바, 국유지인 경우 국유재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계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지면적으로 보고 준공검사필증교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토지관리청의 사용승낙 및 동의등을 받아야 할 경우 토지관리청에서 재산관리의 목적상 불하 또는 대부가 불가하여 사용승낙을 못하는 국·공유지상의 건축물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 ①국·공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하가 가능한 대지상에 있는 대상건축물만이 구제대상이 됨.

②불하가 불가능한 대지상에 있는 대상건축물은 신고 및 시정명령대상에서 제외함.

- 문 법 제7조 제2호 및 영 제7조의 심의기준중 건축법 제27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 적용을 건축허가 또는 무허가 건축물의 완공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답 법 제7조의 심의기준은 현행 건축법을 적용함.

- 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 건축물을 개축코자 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한 절차와 범위안에서 개축한다면 허가가 가능할 것임.

- 문 과태료 산정에 필요한 위반 면적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면적인지 또는 현행법 위반면적인지 여부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의 과태료부과기준중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은 85m²를 초과한 면적을 위반면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8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무허가건축물이 대지안의 건축물 제한선을 침범하는 등 건축법상 위반 면적이 있을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방법?

(예 : 90m²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상 이격 거리등의 위반면적이 10m² 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면적을 5m²로 적용할 것인지? 위반면적 및 초과면적중 많은것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그 두가지 종류를 합산한 면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또한 동 건축물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주거용만이 법 제9조 제2항제1호와 제2호 기준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 위법시공건축물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부분의 면적이 위반면적이 되고(다만, 면적에 관계되지 않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함) 무허가 건축물은 당해건축물의 전체면적이 위반면적이 됨.

- 문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및 개량한 지역이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대지 및 건축물의 상태가 시정이 불가한 건축물이 많은데 이 지역의 건축물도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

답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도록 함.

- 문 무허가 및 국가시책사업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현장조사서를 작성할 경우 현장조사서에 설계도서 첨부여부와 첨부한다면 간이설계(평면도)로 갈음 가능여부

(설계도서 없이 현장조사서만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시 건축물의 위반사항 확인곤란)

답 시장·군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할 때 사후 관리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설계도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설계(평면도등)로 갈음할 수 있음.

- 문 신고된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이 동법의 심의기준에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상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을 하지 않는한 시정이 불가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드시 시정명령을 선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만약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등은 시정명령을 근거로 사실상의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려고 할것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없음)

답 ①개축을 하지않는한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물도 시정명령의 대상이됨.

②시정명령의 내용은 본법 제7조의 심의기준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③시정명령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건축법의 절차에 따라 시정하여야 함.

- 문 동일대지내에 주거전용인 무허가 건축물과 주거이외인 무허가 부속건축물이 2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산정방법 여부

답 ①주거전용으로 쓰이는 무허가 건축물은 85m²를 공제

한 잔여면적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산정(연면적 85m²이하인 경우는 면제)함.

② 무허가 부속건축물은 부속건축물 전체를 위반면적으로 하여 산정함.

• 문 ① 동일대지내에 주거전용과 주거이외의 용도가 1동내에 복합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서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1동전체 면적의 1/2이상인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과태료 산정방법여부

②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1동전체 면적의 1/2미만인 무허가 건축물의 과태료 산정방법여부

답 ① 주거전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이 1동전체 면적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1동의 전체면적이 85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에서 주거전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을 먼저 공제하고 잔여부분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산정하되, 잔여부분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인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산정방법에 따름.

② 주거전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이 1동 전체면적의 1/2미만인 경우에는 본법시행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대상건축물이 아니므로 1동 전체면적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산정하되,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인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산정방법에 따름.

• 문 적법한 기존건축물에 허가를 받지않고 연이어 무단증축한 경우 과태료 산정방법여부

답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한 부분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과태료를 산정하고, 규모별가중치는 1동 전체면적(적법한 부분에 무단증축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함.

• 문 동일대지내에 2이상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예 : 70m²와 30m²) 과태료 산정방법은?

답 ① 각동별로 과태료를 산정함.

② 주거용 대상건축물인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85m²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과태료는 면제됨.

• 문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산정방법여부

답 1동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용도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용도별가중평균치를 구하여 적용함.

용도별가중평균치=(A용도면적×A용도에 해당하는 가중치)+(B용도면적×B용도에 해당하는 가중치)+……÷전체연면적

• 문 본법에 의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답 무허가 건축물이 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경우 준공검사필증교부시점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중 제8항의 건축허가시점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및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회관등)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건물(재향군인회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 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협의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②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협의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문 본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상수도지방채의 소화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답 상수도지방채에 대해서는 당해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 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시행계획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적용대상 가능 여부

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 공고된 지구라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본법"이라 함)에 의한 대상건축물이 되는 것임.

• 문 대상건축물중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입면도 및 주단면도를 사진으로 갈음여부.

갈음할 수 없다면 건물의 현황 사진을 추가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대상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하는 것인바, 이를 사진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본법시행령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문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구제여부

답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었다 하더라도 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로서 제7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문 복개된 구거상에 건축물의 일부가 저촉되어 있을 경우와 지목상 구거인 국·공유지상에 용도폐지절차 및 불하조치 없이도 구제가능여부

답 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로서 제7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공유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하가 가능한 대지상에 있는 대상건축물만이 구제대상이 됨.

• 문 자기소유 대지상의 무허가 건물이 민법 제242조에 위배될 때 구제여부

답 자기소유 대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이 민법 제242조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로서 제7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문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정된 국·도립공원지역이 구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로서 제7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국·도립공원은 본법 제3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과는 구분되는 것임.

• 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각종 관광휴양지구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각종 관광휴양지구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로서 제7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면 구제대상이 되는 것임.

• 문 심의기준중 건축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30조에 의한 건축선을 확보하여야 심의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도로경계선만 침범하지 않으면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

답 건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은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말함.

• 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승인된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신고대상 여부

○주택건설승인 사항의 건축물만 신고대상으로 하여 개별 준공처리 하는지?

○대지조성사업,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등을 포함 사업승인전체를 신고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이라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대상전체를 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 문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볼 것인지 위법시공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

답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문 대상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동법 제30조 규정을 적용 당해 건축물 및 담장만 건축선 후퇴 시정후 준공처리 가능 여부

답 대상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7조에 적합토록 하고, 당해 대상건축물 및 담장을 건축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후퇴하여 시정한다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문 국가시책사업 건축물의 과태료 산정에 있어 가중치 각각에 10분의 9를 곱하는지 또는 전체가중치에 10분의 9를 곱하는지 여부

답 각각의 가중치에 10분의 9를 곱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임.

• 문 ① 지하1층 및 지상2층을 허가받아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고 지상3층으로 건축한 경우와 지상3층만 건축하여 감평된 경우의 위반면적은? 또한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실 설치의무대상이 되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과 지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히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적용방법 여부

② 위법시공 건축물이 일부 무단증감평되고 일부분의 용도 및 구조등이 허가사항과 다를때의 위반면적은?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법하게 확보치 않고 건축된 건축물의 위반면적은?

가. 당해 건축물에 부설하는 소유주차장이 부족한 면적을 위반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족한 주차장 면적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위반면적으로 보는지?

나. 건축허가시 건축물외에 설치키로된 주차장을 미확보한 경우와 건축물내에 부설키로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 및 구조변경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축물의 위반면적 산정은?

다. 또한 주차장을 확보치 않는 건축물은 위반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기타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④ 건축법에 의한 설계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단순한 감평의 경우 감평된 부분을 허가사항 위반으로 보아 위반면적으로 보는지의 여부와 최저 고도지구등에서 당초 허가된 층수보다 적게 건축함으로써 감평자체가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감평의 경우에만 위반면적으로 보는지의 여부

답 ① 지하층(건축법상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지상2층을 허가받았으나,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고 지상3층으로 건축한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기타 위반으로 하여 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 또한 지상2층 부분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건폐율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층부분만이 됨)을 위반면적으로 하며, 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본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많은 과태료만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② 위법시공건축물이 무단증평된 경우는 증평시공한 부분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무단감평된 경우와 용도 또는 구조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위법시공건축물인 경우로서 본법 제7조제2항 및 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에 적합하고 또한 위반부분이 면적에 관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위반으로 하여 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③ 주차장을 설치토록 건축허가를 받아 주차장부분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부족되게 확보한 경우와 주차장부분을 확보하였으나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본법 제7조제2항 및 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타 위반으로 하여 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④ 건축허가사항과 다르게 면적을 감평한 위법시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기타 위반으로 하여 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LIBYA GARIUNIS 의과대학 신축공사

자료제공—주 · 대우 해외건축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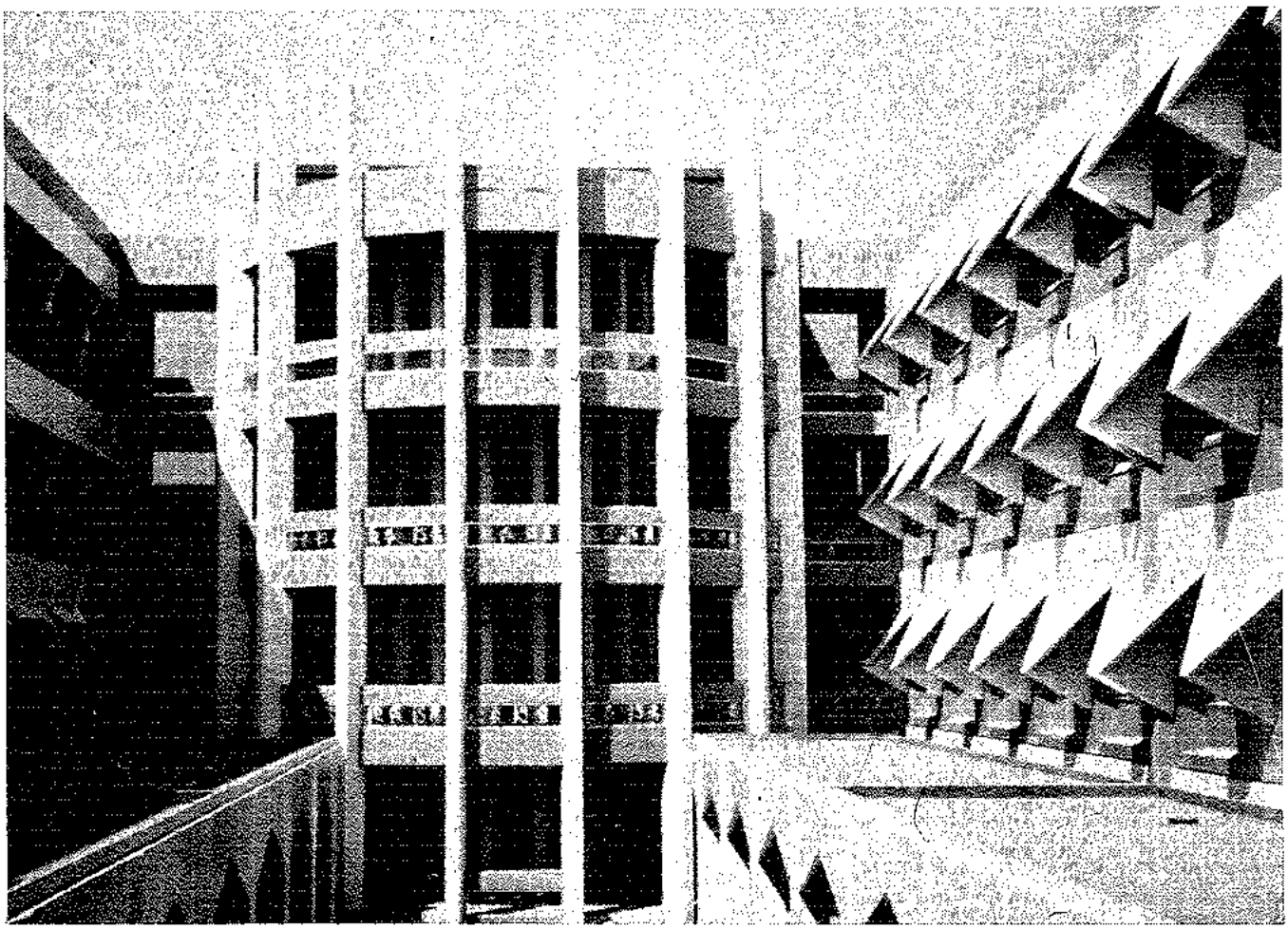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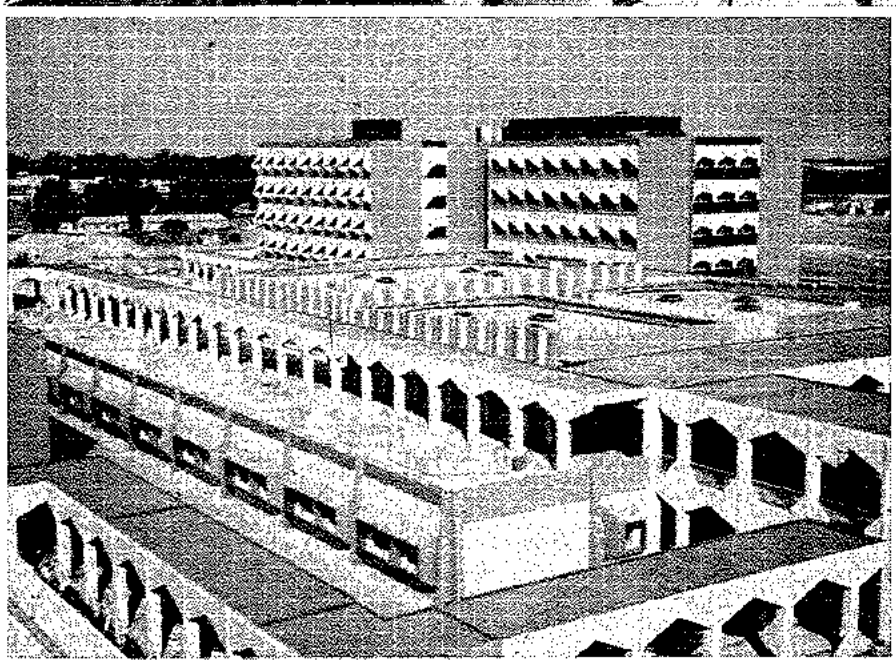

북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이집트(EGYPT)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광활한 SAHARA 사막 속의 나라 리비아(LIBYA).

대우가 리비아에 첫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77년 말 경이었다. 한국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이란 · 이라크 등 중동의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있을 무렵, 대우에서는 한국업체끼리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 업체의 불모지인 리비아 · 수단(SUDAN), 남미의 에콰돌(ECUA - DOR) 등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리비아의 옛 수도이며 제2의 도시인 BENGHAZI 시내의 남서쪽에 위치한 "GARIUNIS UNIVERSITY"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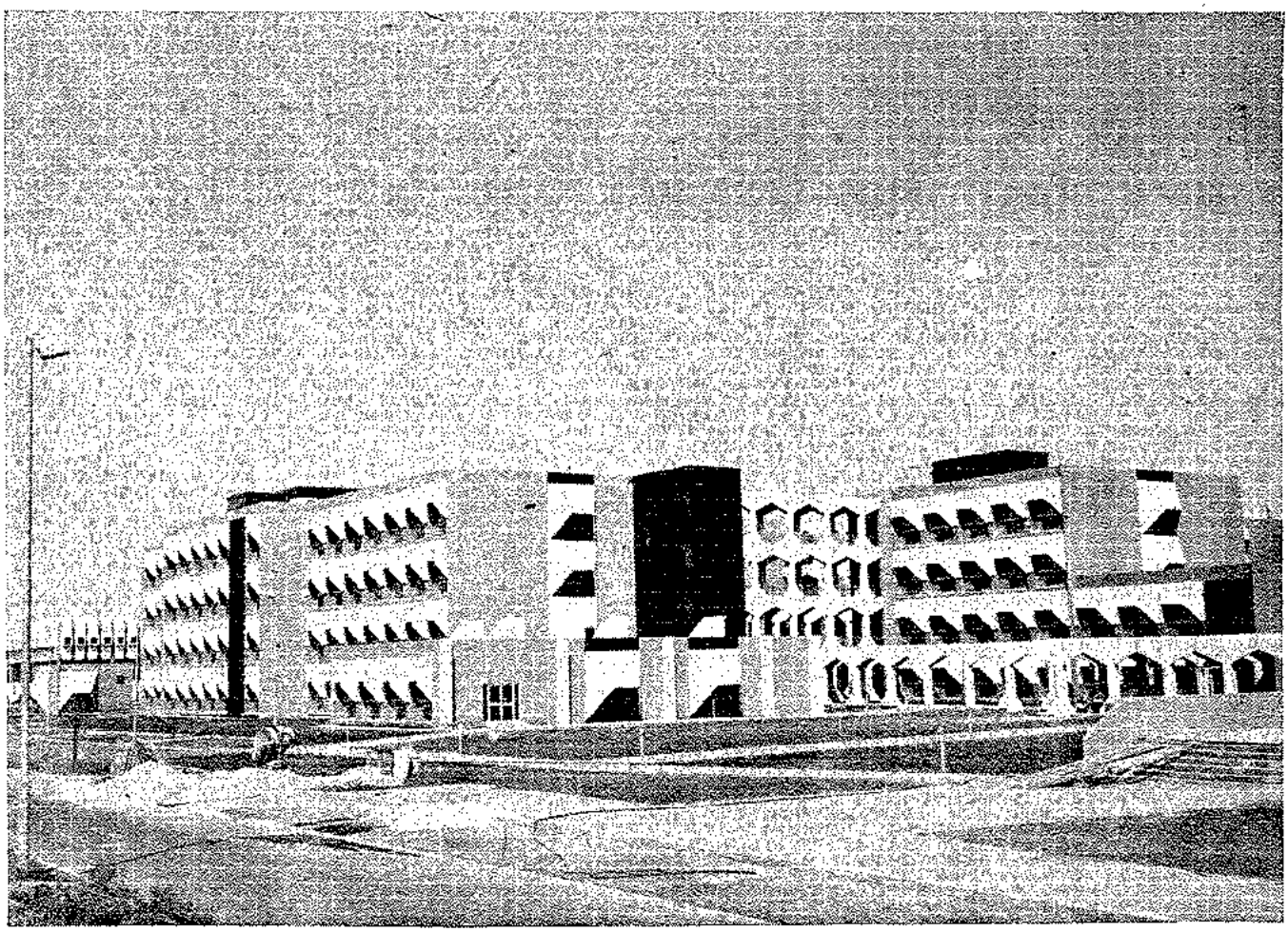

서 발주한 의과대학(FACULTY OF MEDICINE) 신축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회교국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리비아는 우리나라와 전혀 외교관계가 없었던 반면, 북한과는 대사급 외교관계가 있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대우는 민간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며 이 공사를 착수하였다.

기능공 송출상의 문제에서부터 당시 대우에게는 익숙치 못하였던 공법 등,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었으나 그동안 리비아 내에 10여개의 다른 공사들을 준공하면서 마침내 첫 계약이었던 이 공사를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금은 30억불이 넘는 각종 공사들이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지중해 연안에 걸쳐 리비아 전역에 퍼져 있는 30여개 현장에서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가리우니스 의과대학"(FACULTY OF MEDICINE)은 총 21개동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건축면적 87,550m²,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제외한 모든 구조체(VERTICAL, FACADE, SLAB, ETC.)를 비롯하여 선브레이커(SUN BREAKER)까지 모두 PRECAST CONCRETE로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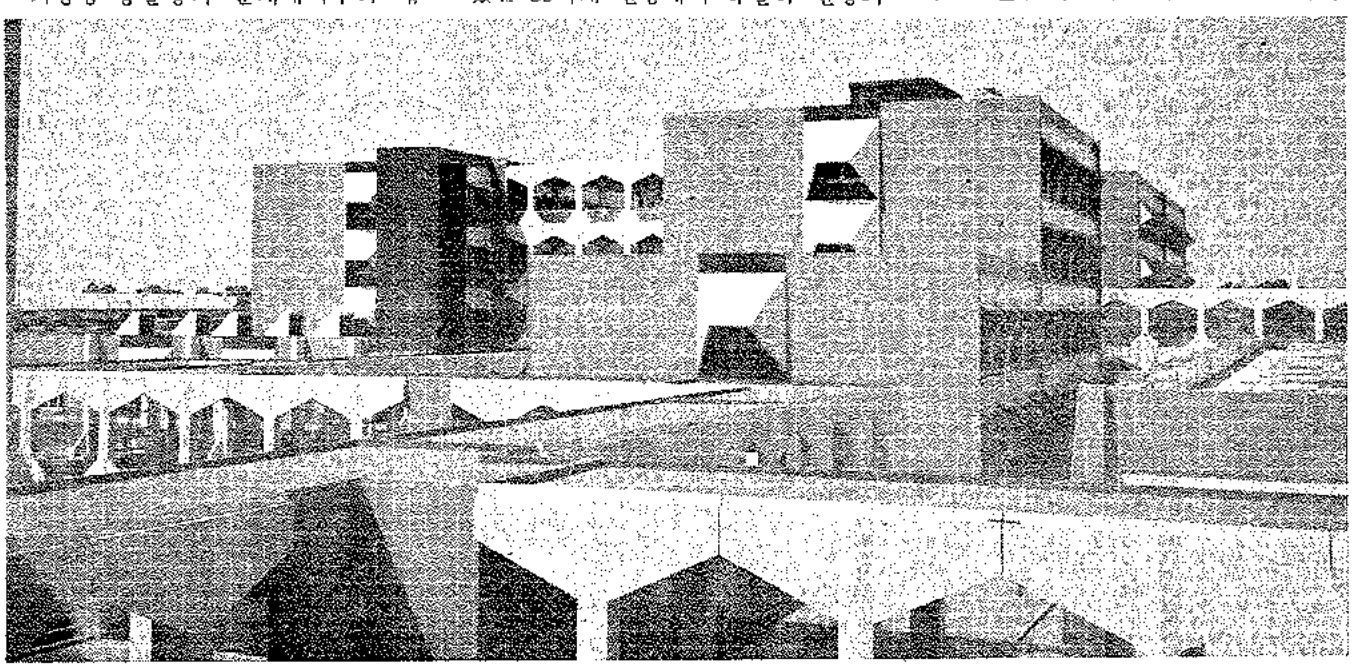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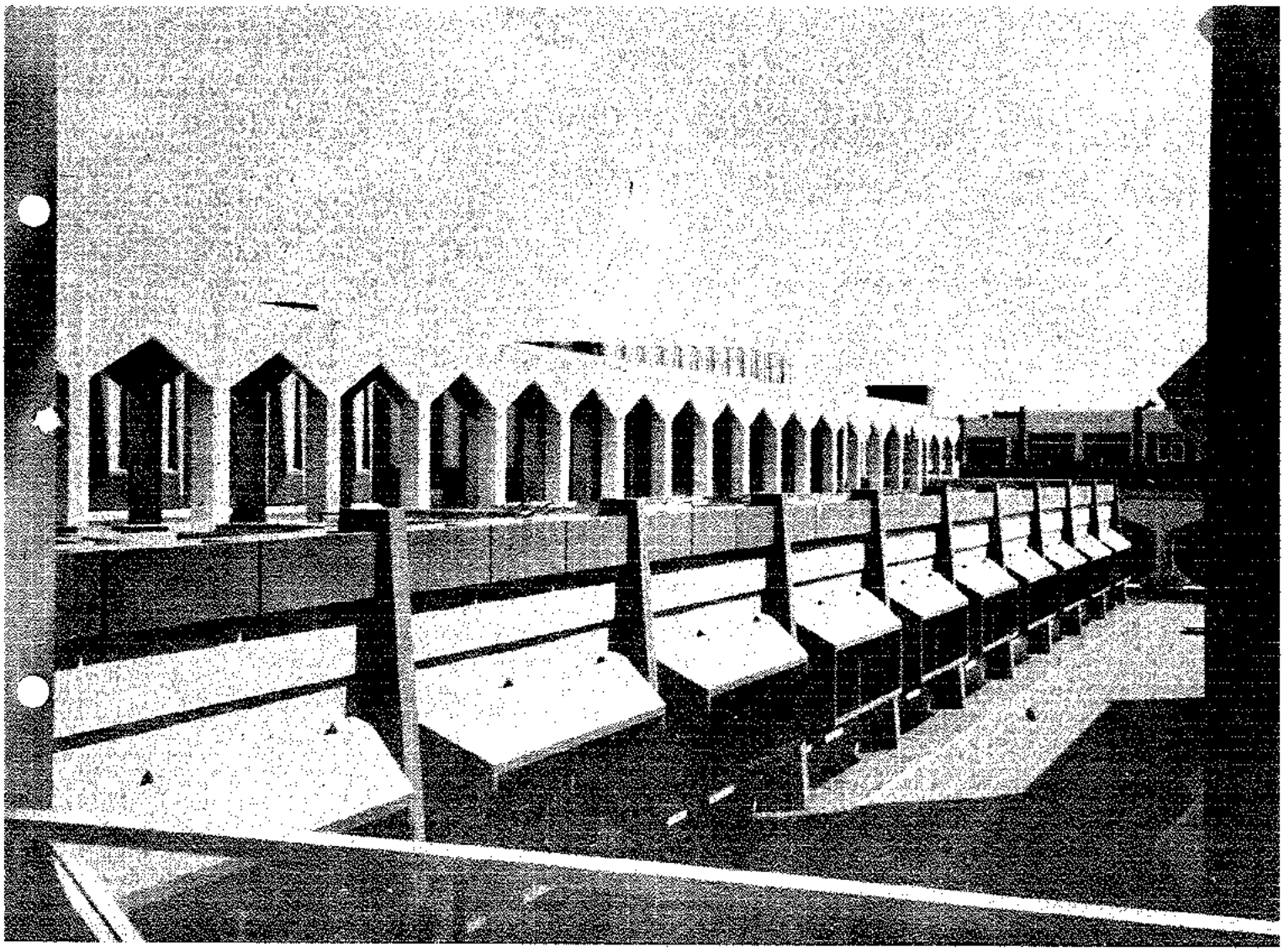

있고, 각 부재의 JOINT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연결시켜 각각의 건물들은 일체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건물배치에 따른 햇빛조절을 하기 위한 복잡다양한 선 브레이커(SUN BREAKER)는 P.C 공법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공사이다.

P.C 공장을 건설하여 처음 부재를 생산할 때만 하여도 복잡한 형태의 P.C의 탈형, DELIVERY, ERECTION 등에서의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 사소한 잡자재 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지사정의 협소함과, 벵가지 외항에 배가 들어와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서야 외자재가 현장에 도착될 수 있는 통관의 어려움 등의 많은 문제들을 대우가족은 개척정신과 인내로써 극복하여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 공사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 현장은 리비아 인사들뿐만 아니라 외국 고위관리들의 리비아 방문이 있을 때마다 빼어놓을 수 없는 주요 시찰 COURSE로 되었고, 현장을 돌아본 그들은 한국인의 공사수준을 보고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81년말 공사진행 상황을 둘러보러 왔던 현지 문교장관은 친필로 감사장을 써서 대우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대우의 공사수행 능력을 리비아 당국에 새로이 인식시킴으로 대우는 이제 벵가지에 7,000세대 아파트 단지, 트리폴리에 5,000세대 아파트 단지와 2,500교실(SCHOOL PROJECT) 등의 공사금액 15억불이 넘는 P.C공법에 의한 공사를 TURN KEY BASE로 계약하여 설계에서부터 생산·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순수한 대우의 기술로 수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대우의 끊임없는 노력은 한국인의 지혜와 근면을 리비아 속에 심어 우리와의 대사급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업체의 리비아 진출의 길을 열은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도 대우가족은 세계 속에 건설한국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오대양 육대주에서 번영의 꽃을 피워가고 있다.

공 사 명 : FACULTY OF MEDICINE
발 주 처 GARIUNIS UNIVERSITY
감 리 업 체 : O.T.H (FRANCE)
공 사 금 액 : 102,375,000 USD
공 사 기 간 : 50개월(1978. 6. 23 – 1982. 8. 10)
대 지 면 적 : 115,000m²
건축연면적 : 87,550m² (21개동)
구 조 : P.C 및 R.C조

建築分野 · 國家技術資格 檢定에 関한 綜合檢討

金 聖 培 — 大韓建築士協会 技術課長

다음은 건축설계사무소 및 관련분야 실무자들의 요청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취득에 관한 최근 개정된 자격법령을 토대로 해서 엮은 것임.

序 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科学技術人力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技術 및 技能 수준의 평가제도를 확립하여 技術者 또는 技能者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그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国家技術資格제도가 1973년 12월31일 법률 제2672호로 제정 공포되어 범 국가적 차원에서 間断없이 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国家에서 시행하는 建築에 관한 試験을 살펴보면 建築士法에 의한 建築士 자격시험을 비롯하여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 · 技師 · 技能士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타 技術分野에 비교하여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国家技術資格法에 나타난 建築分野의 資格検定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내용 등을 정리하여 試験에 관련된 참고용 활용자료로 엮어 보고자 한다.

1. 技術資格 検定 業務

国家技術資格検定은 技術資格 종목별로 해당 주무부장관이 検定을 주관—建築分野의 기술자 시험은 建設業法에 의하여 1974년 12월 31일 까지 建設技術者(建築)甲 · 乙 · 丙으로 구분하여 建設部에서 시행하였고 技能士의 일부종목도 職業訓練法에 의하여 노동청에서 시행—하였으나 国家技術資格法의 위탁규정(시행령 제38조 제2항 대통령령 제8357호 1976. 12. 31)에 의하여 검정의 시행, 시험문제 출제관리 및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에 이르기까지 韓国技術検定公団이 모든 検定業務를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그후 1981년 12월31일 법률 제3510호로 공포된 国家技術資格法中 改正法律에 따라 国家技術資格制度의 운영관리에 관한 총괄부처 장관이 科学技術処 장관에서 労動部 장관으로 検定業務機能이 옮겨지면서 韓国職業訓練管理公団(公団法 · 법률 제3506호 1981. 12. 31 공포)이 설립되어 韓国技術検定公団의 기존 업무를 승계하게 되었음은 물론 職業訓練의 실시와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2. 建築分野 検定内容

(1) 検定의 種類

현재 国家技術資格法의 규정에 의한 建築分野의 検定종류는 技術系의 資格等級은 技術士 · 技師1級 및 技師2級으로 구분하고 技能系는 技能長 · 技能士1級 · 技能士2級 및 技能士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① 技術系

〈표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기 술 사	기사 1급	기사 2급
건축 기술사 (건축 구조) 건축 기술사 (건축 설비) *건축 기술사 (건축 시공)	*건 축	*건 축

註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124호 1980.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구조기사 1급, 건축설비기사 1급 건축시공기사 1급은 건축기사 1급으로 통합조정되고, 건축시공기사 2급은 건축기사 2급의 기술자격으로 조정됨과 동시에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됨 (표16참조)

2. *표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설부장관의 건설기술자 면허 종목임.

② 技能系

〈표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2〕

기 능 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 보
건축제도	건축제도	건축제도	
조 적	조 적	조 적	조 적
철 근	철 근	철 근	철 근
철 골	철 골	철 골	철 골
창호제작	창호제작	창호제작	창호제작
	미 장	미 장	미 장
	비 계	비 계	비 계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가 구	가구제작	가구제작	가구제작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도장
	가구도장	가구도장	가구도장
온 돌	온 돌	온 돌	온 돌
	거푸집	거푸집	거푸집
	도 배	도 배	도 배
	기 와	기 와	기 와
	합 석	합 석	합 석
	타 일	타 일	타 일

(2) 検定의 基準

① 検定의 方法

検定試験問題의 형태·출제문제수·시험시간 및 방법은 資格等級별로 〈표 3〉과 같다.

〈표 3〉

구분 / 등급		검정방법	출제형태	출제문제수	시험시간
기술계	기술사	○필기시험 ○경력심사 ○면접시험	주관식논문형 — —		기초 : 160분 전문 : 240분
	기사1급·2급	○필기시험	4지 택1형	과목당25문제	과목당 50분
기능계	기능장	○경력심사 ○면접시험	— —	— —	— —
	기능사1급·2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4지 택1형 실기작업	전과목60문제	전과목 60분
	기능사 보	○실기시험	실기작업		

註 1. 검정은 필기시험·실기시험·경력심사 및 면접시험의 순으로 하며 앞 순위 시험(경력심사 포함)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순위의 시험에 응할 수 없음.

2. 기능사 1·2급 및 기능사 보에 대하여는 기능경기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거나 필기시험만을 과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음 〈표 13참조〉

② 応試 資格 基準

(가) 기술계 기술자격의 등급별 기준

〈표 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4〕

등급	자격기준
기술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1.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사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1.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4년제 대학졸업자와 그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문대학(구제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이수자와 그 이수 예정자.
기사2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1. 기능사1급의 자격이 있는 자. 2. 전문대학(구제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의 졸업자와 그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2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이수자와 그 이수 예정자. 4. 기능사2급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기능계 기술자격의 등급별 기준

〈표 5〉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6〕

등급	자격기준
기능장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1. 기능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기능대학의 교육기간을 포함한다)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기능대학의 교육기간을 포함한다)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1. 기능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전문대학(구제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의 졸업자와 그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4. 기술자격종목별로 기능사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이수자와 그 이수에

	성자. 5.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준하는 삼종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2급기능사보	주무부장관이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주무부장관이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과 시험과목에 따라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

(3) 試驗科目

① 技術系 試驗科目

- 技術士는 건축기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설계·지도·감리 등에 관한 능력 유무의 검정
- 技師1級은 건축분야의 공학적 기초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검정
- 技師2級은 건축분야의 기술적 기초지식과 그 적용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고 있다.

〈표 6〉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3〕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건축기술사(건축구조)	필기시험및 면접시험	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계산 및 감리 기타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건축설비)	필기시험및 면접시험	건축설비의 계획과 설계·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건축시공)	필기시험및 면접시험	건축시공·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건축기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건축기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② 技能系 試驗科目

- 技能長은 해당종목에 관한 최상급 熟練技能을 가지고 작업관리·기능감독등의 지도업무에 관한 능력 유무의 검정
- 技能士1級은 상급 숙련기능에 의한 지도적 技能業務 수행능력을,
- 技能士2級은 중급 숙련기능에 의한 기능업무 수행 능력을,
- 技能士補는 하급 숙련기능에 의한 상위 기능업무를 보조하거나 그 지휘하에 제반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고 있다.

〈표 7〉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4〕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건축제도기능장	면접시험	건축제도·계획·재료·시공·구조·건축관계법규·설비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제도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계획 6. 건축관계법규
	실기시험	건축제도
건축제도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계획 6. 건축관계법규
	실기시험	건축제도
조적기능장	면접시험	건축시공·재료·구조·제도·건축관계법규·시방 및 견적에 관한 사항
조적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조적구조 6. 안전관리
	실기시험	조적작업
조적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시방 및 적산 6. 안전관리
	실기시험	조적작업
조적기능사보	실기시험	조적작업
철근기능장	면접시험	건축제도·시공·재료·구조 및 기공구·건축관계법규·견적 및 시방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철근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철근콘크리이트 6. 시방 및 적산
	실기시험	철근조립공사
철근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철근콘크리이트 6. 안전관리
	실기시험	철근조립공사
철근기능사보	실기시험	철근조립공사
철골기능장	면접시험	건축제도·시공·재료·기계 및 기공구·구조·시방·적산 및 건축관계법규 등 철골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철골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철골구조 6. 시방 및 적산
	실기시험	철골공작
철골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실기시험	5. 철골구조 6. 안전관리 철골공작
철골기능사보	실기시험	철골공작
창호제작 기능장	면접시험	건축재료·건축시공 및 창호제작에 관한 사항
창호제작 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의장도안
	실기시험	창호제작
창호제작 기능사2급	필기시험	1. 창호제작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의장도안
	실기시험	창호제작
창호제작 기능사보	실기시험	창호제작
미장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시방 및 적산 7. 안전관리
	실기시험	미장작업
미장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안전관리
	실기시험	미장작업
미장기능사보	실기시험	미장작업
비계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안전관리
	실기시험	비계작업
비계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안전관리
	실기시험	비계작업
비계기능사보	실기시험	비계작업
건축목공 기능장	면접시험	건축구조·시공·재료·제도·건축관계법규·목공·시방 및 적산에 관한 사항
건축목공 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목구조
	실기시험	건축목공작업
건축목공 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관계법규 6. 목구조
	실기시험	건축목공작업
건축목공 기능사보	실기시험	건축목공작업
가구기능장	면접시험	가구의 설계·제도·제작·재료·기공기계 및 공구에 관한 사항
가구제작 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가구제도 2. 가구공작법 3. 시방 및 적산 4. 의장도안 5. 목공재료 6. 목공기기
	실기시험	가구제작
가구제작 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가구제도 2. 가구공작법 3. 시방 및 적산 4. 의장도안 5. 목공재료 6. 목공기기
	실기시험	가구제작
가구제작 기능사보	실기시험	가구제작
건축도장 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도장법 6. 색채학
	실기시험	도장작업
건축도장 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도장법 6. 안전관리
	실기시험	도장작업
건축도장 기능사보	실기시험	도장작업
가구도장 기능사1급	필기시험	1. 도장법 2. 재료 3. 기계 및 설비 4. 시방 및 적산 5. 안전위생
	실기시험	가구도장작업
가구도장 기능사2급	필기시험	1. 도장법 2. 재료 3. 기계 및 설비 4. 안전위생
	실기시험	가구도장작업
가구도장 기능사보	실기시험	가구도장작업
온돌기능장	면접시험	연료·연소·재료·보온·방수시공·온돌구조·온돌시공 및 시방 견적등에 관한 사항
온돌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보온 및 방수 6. 온돌구조
	실기시험	온돌시공작업
온돌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보온 및 방수
	실기시험	온돌시공작업
온돌기능사보	실기시험	온돌시공작업
거푸집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목공술 6. 목구조

	실기시험	거푸집작업
거푸집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목공술
	실기시험	거푸집작업
거푸집기능사보	실기시험	거푸집작업
도배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시방 및 적산
	실기시험	도배작업
도배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시방 및 적산
	실기시험	도배작업
도배기능사보	실기시험	도배작업
기와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시방 및 적산 6. 안전관리
	실기시험	기와잇기 및 지붕 널판작업
기와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시방 및 적산 6. 안전관리
	실기시험	기와잇기 작업
기와기능보	실기시험	기와잇기 작업
함석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시방 및 적산 6. 안전관리
	실기시험	함석가공작업
함석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시방 및 적산 6. 안전관리
	실기시험	함석가공 작업
함석기능사보	실기시험	함석가공 작업
타일기능사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외장도안
	실기시험	타일시공작업
타일기능사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외장도안
	실기시험	타일시공작업
타일기능사보	실기시험	타일시공작업

(4) 出題基準

① 技術士 출제의 형태는 主觀式 論文型이며 종목별로 고도의 專門知識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별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출제방침에 의하여 基礎부문과 專門부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다.

(가) 基礎부문

1) 해당자격종목이 요구하는 대학과정 이수 정도의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학력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응시자의 전공사항에 관계없이 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 전반에 걸쳐 출제한다.

3) 교시당 문제의 수준과 양을 적정하게 분할하여 배점이 각 교시별로 100점씩 200점 만점이 되도록 출제한다.

(나) 專門부문

1)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응용능력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현장 실무 능력의 평가에 중점을 둔다.

3) 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 범위 내에서 전공사항을 감안하여 응시자가 자기 전공문제를 선택하여 해답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시당 문제의 수준과 양을 적정하게 분할하여 배점이 각 교시별로 150점씩 300점 만점이 되도록 출제한다.

5) 기초, 전문 공히 시험시간에 계산기 및 계산척 이외의 참고 서적 등을 지참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수검생에게 이미 제시할 공식 및 자료 등은 시험문제에 첨부하여 제출케 한다.

② 技 師

응시자격기준에 의하여 大学졸업자(4학년 재학 중인자 포함)는 技師1級에, 專門大学 졸업자(大学2학년 수료자 및 專門大学 2학년 재학중인자 포함)는 技師2級에 응시할 수 있는바 建築전공자로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할 자격인 것이며, 중견 技術人으로 가장 권장되어야 할 기술종목이다.

각 과목별로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현행 出題基準을 다음에 소개한다.

(가) 技師1級

※( ) 내의 수치는 출제기준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한 것임.

※출제기준시행일 : 1981. 8. 1

〈표 8〉

계열	기술계	출 제 기 준	검정종목
분야	건 축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건 축
구분	필 기	1. 기초구조(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골 및 철근콘크리이트구조계산) (2)	소방설비(건축분야)
시험과목		2. 벽체(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골 및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2)	
건축구조		3. 기둥 및 보(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골 및 철근콘크리이트구조계산) (2)	
		4. 바닥(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골 및 철근 콘크리이트구조계산) (2)	
		5. 지붕(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골 및 철근 콘크리이트구조계산) (1.5)	
		6. 계단(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골 및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1.5)	
		7. 반자구조에 관한 사항 (1)	
		8. 창호구조에 관한 사항 (1)	

21-10-001	9. 수장 및 미장구조에 관한 사항 (1)	기사 1급
건 축 계 획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건축계획원론 (1) 2. 건 축 사 (1) 3.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3) 4. 사무소 및 은행의 건축계획 (1) 5. 학교 및 도서관의 건축계획 (1) 6. 구매시설의 건축계획 (1) 7. 병원의 건축계획 (1) 8. 극장, 미술관 및 교회의 건축계획 (1) 9. 숙박시설의 건축계획 (1)	건 축
21-10-013	10. 공장의 건축계획 (1)	기사 1급
건 축 시 공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건축공사 시방서에 관한 사항 (1) 2. 건축시공 계약방식 (1) 3. 기본적인 공사계획 (1) 4. 공정 관리 (1.5) 5. 건축물 각부분의 시공방법 (2.5) 5-1 지반공사 5-2 가설공사 5-3 기초공사 5-4 철근 콘크리이트 공사 5-5 철골공사 5-6 조적공사 5-7 목공사 5-8 방수공사 5-9 지붕 및 금속공사 5-10 창호 및 유리공사 5-11 미장공사 5-12 타일, 테라코타 공사 5-13 도장공사 6. 기본적 수량 산출방법 (1) 7. 통례적 개산 견적방법 (1)	건 축
21-10-007	8. 건축재료 (2.5)	기사 1급
건축관계법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건축법 (2.5) 2. 건축법 시행령 (2.5) 3. 건축법 시행규칙 (1.5) 4. 도시계획법 (1) 5. 도시계획법 시행령 (1) 6.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1) 7. 주차장법 (1) 8. 주차장법 시행령 (1.5)	건 축
21-10-003	9. 주차장법 시행규칙 (1)	기사, 1급
건 축 설 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전기설비의 방식과 특성 (1) 2. 위생설비의 방식과 특성 (1) 3. 난방설비의 방식과 특성 (1) 4. 공기조화설비의 방식과 특성 (1) 5. 승강설비의 방식과 특성 (1)	건 축
21-10-012	6. 가스설비의 방식과 특성 (1)	기사 1급

(나) 技師 2 級

※( ) 내의 수치는 출제기준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한 것임.

〈표 9〉 ※ 출제기준시행일 : 1981. 8. 1

계열	기술계	출 제 기 준	검정종목
분야	건 축	○일반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건 축

구분	필 기	
시 험 과 목	1. 기초구조(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2)	
건 축 구 조	2. 벽체(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2) 3. 가둥 및 보(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2) 4. 바닥(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2) 5. 지붕(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1.5) 6. 계단(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계산) (1.5) 7. 반자구조에 관한 사항 (1) 8. 창호구조에 관한 사항 (1)	
31-10-001	9. 수장 및 미장구조에 관한 사항 (1)	기사 2급
건 축 계 획	○일반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건축계획원론 (1) 2. 건 축 사 (1) 3. 일반주택의 건축계획 (2) 4. 아파아트의 건축계획 (2) 5. 사무소의 건축계획 (1) 6. 상점의 건축계획 (1) 7. 학교의 건축계획 (1)	건 축
31-10-013	8. 소규모공장의 건축계획 (1)	기사 2급
건 축 시 공	○일반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건축공사 계약방식 (1) 2. 공정관리 (1.5) 3. 건축물 각부분의 시공방법 (2.5) 3-1 지반공사 3-2 가설공사 3-3 기초공사 3-4 철근 콘크리이트 공사 3-5 조적공사 3-6 목공사 3-7 방수공사 3-8 지붕 및 금속공사 3-9 창호 및 유리공사 3-10 미장공사 3-11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3-12 도장공사 4. 기본적인 수량 산출방법(철골구조물은 제외) (1) 5. 통례적인 개산 견적방법(철골구조물은 제외) (1)	건 축
31-10-007	6. 건축재료 (2.5)	기사 2급
건축관계법규	○일반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건 축 법 (2.5) 2. 건축법 시행령 (2.5) 3. 건축법 시행규칙 (1.5) 4. 주차장법 (1) 5. 주차장법 시행령 (1.5)	건 축
31-10-003	6. 주차장법 시행규칙 (1)	기사 2급
건 축 설 비	○일반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 1. 전기설비의 방식 (1) 2. 전기설비의 특성 (1) 3. 위생설비의 방식 (1) 4. 위생설비의 특성 (1) 5. 난방설비의 방식 (1)	건 축
31-10-012	6. 난방설비의 특성 (1)	기사 2급

③ 技能士

(가) 技能長은 技能大学法의 규정에 의하여 技能大学 소정의 학과를 이수하고(수업연한 2년) 졸업한 자에 한하여 경력 심사와 면접으로 検定한다.

(技能大学 입학자격은 技能士1級의 자격소지자로 산업현장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技能大学에는 建築에 관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技能士1級 및 2級의 出題 기본방침은 筆記試験의 경우 특수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해당학과에서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하되 生産現場의 실무에 널리 보급되어 理解되고 있는 것으로서 1개 問題해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1분 내외로 하고, 実技試験의 경우 技能士1級은 8시간, 2級은 5시간 그리고 技能士補는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出題토록 규정하고 있다.

(5) 出題問題(筆記)의 構成

建築分野의 技師 및 技能士 筆記試験은 技師에 있어서는 1개과목을 단위로 問題를 구성하며, 技能士에 있어서는 全科目 60問題를 구성단위로 하고 있다.

① 類型別 構成

出題類型은 1·2·3類型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第1類型은 基礎問題, 第2類型은 応用問題, 第3類型은 計算問題로서 각 과목의 特性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두고 있다. (技師과목 중 建築構造·建築計劃 等은 第3類型이 비교적 많은 과목과 적은 과목으로 分類되므로 出題類型別 비중은 전체적으로 적절히 調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② 難易度別 構成

과목별 難易度 구성은 A·B·C型으로 구분되며 A型은 어려운 問題, B型은 보통적인 問題, C型은 비교적 쉬운 問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목별·유형별·난이도별 出題問題의 구성은 〈표 10〉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0〉 유형별 및 난이도별 구성

유형별 구분			난이도별 구분		
1	2	3	A	B	C
25~45%	25~40%	25~40%	25~40%	30~40%	25~40%

③ 合格基準

(가) 技師 : 1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25문제중 10문제) 이상, 全科目 평균60점(125문제중 75문제)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 技能士 : 全科目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60문제중 36문제) 이상을 合格으로 처리하고 있다.

3. 検定에의 應試

(1) 經歴審査

① 經歴審査 合格決定 基準

〈표 1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7〕

등급	경력심사	환산율	합격결정기준
1등급	검정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검정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이 표의 환산율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기간
2등급	검정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검정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80%	이 응시자격에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한다.
3등급	검정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50%	

註 1. 이 표는 경력심사가 필요한 종목(기술사·기능장)에 한하여 적용함.

2. 경력기간 계산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② 經歴認定 細部基準(技術士)

(가) 교직경력 : 교직경력은 〈표 12〉에 준한다.

〈표 12〉

구분 \ 경력내용	해당종목(과목)의 경력	해당분야(학과)의 경력
대학이상	1등급	2등급
전문대학	1등급	2등급
실업고교	2등급	3등급

* 전문대학이상의 교직경력은 전임강사이상만 인정하되, 대학이상에서의 조교경력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상기표에 준하여 인정한다.

(나) 대학원이수경력 : 해당종목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이수자는 1등급, 연수과정은 3등급으로 인정한다.

(다) 군경력 : ○ 기술장교(준위포함)의 경력은 실군두 경력을 확인하여 인정한다.

○ 사병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공무원경력 : 기술직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해외연수경력 : 해외연수 경력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바) 사업체임원경력 : 각종 사업체의 해당기술분야 임원경력은 2등급, 기타 기술분야 임원경력은 3등급으로 인정한다.

(사) 개인업으로서의 경력 : 해당관청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업으로서의 경력은 사업신고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확인하여 인정한다.

(아) 설계담당경력 : 설계담당경력은 토목시공 및 건축시공에 한해서는 2등급으로 인정한다.

(2) 試験免除

国家技術資格法에는 検定의 일부合格을 인정하고 応試者의 원에 의하여 筆記試験 또는 実技試験을 免除하고 있으며, 教育·訓練기관의 졸업 예정자 및 수료 예정자(技能士2級検定해당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筆記試験의 免除를 시행하고 있다.

① 筆記試験 免除 : 필기시험에 合格하고 面接試験(実技試験)에 불합격한 경우는 당해시험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検定科目 免除 : 시험과목과 出題水準이 같은 중복과목의 면제는 그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면제한다. (建築技師1級을 소지한 자가 소방설비 기사1급의 検定에 있어서는 建築構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技能競技大会 입상자에 대한 免除 〈표 13〉

기능경기대회종목	면 제 대 상 자 격 종 목
연 와 적 공	조적기능사 1급·2급 및 보
미 술 도 장	건축도장 기능사1급·급 및 보
미 장	미장 기능사 1급·2급 및 보
가 구	가구제작 기능사 1급·2급 및 보
창 호	창호제작 기능사 1급·2급 및 보
목 공	건축목공 기능사 1급·2급 및 보

註 1.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1·2·3위) : 기능사 1급 시험면제

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1·2·3위) : 기능사2급 시험면제

3. 지방기능경기대회 1위 입상자 : 기능사2급의 실기 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사보의 시험면제

4. 지방기능경기대회 2·3위 입상자 : 기능사보의 시험을 면제

(3) 種目 및 等級番号

技術資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검용 원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시용 수검원서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기가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종목 및 등급에 있어서는 特殊番号를 부여하여 효율적 업무처리를 기하고 있으므로 建築分野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資格種目別 코드 번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① 技術系 코드번호 〈표 14〉

기 술 사	종목코드	기 사	종 목 코 드	
			1 급	2 급
건 축 구 조	0490	건 축	1630	2530
건 축 설 비	0500	소 방 설 비 (건축분야)	1941 ~ 5	2941 ~ 7
건 축 시 공	0510			

註 1. 소방설비기사 1급 : 1류·1941, 2류·1942, 3류·1943, 4류·1944, 5류·1945

2. 소방설비기사 2급 : 1류·2941, 2류·2942, 3류·2943, 4류·2944, 5류·2945, 6류·2946, 7류·2947

② 技能系 코드번호 〈표 15〉

종 목	1급	2급	보
건 축 석 조	5000	7060	----
조 적	5010	7070	8830
철 근	5020	7080	8840
철 골	5030	7090	8850
창 호 제 작	5040	7100	8860
미 장	5050	7110	8870
미 장	5060	7120	8880
건 축 목 공	5070	7130	8890
가 구 제 작	5080	7140	8900
가 구 도 장	5770	7887	9434
건 축 도 장	5090	7150	8910
유 리	5100	7160	8920
거 푸 집	5110	7170	8930
도 배	5120	7180	8940
기 와	5130	7190	8950
합 석	5140	7200	8960
타 일	5150	7210	8970

4. 登録과 免許

(1) 合格者 登録

技術資格検定에 최종 合格한 者(技術資格 取得者)는 検定의 合格者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韓国職業訓練管理公団의 응시 해당지역(지방 사무소)에 登録申請을 하면 당일로 技術資格 수첩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登録申請書를 제출하지 못한 技術資格取得者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지연 사유서와 소정양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検定에 응시한 해당지역(원서 접수지역)에 申請하면 수첩을 교부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2) 技術免許

① 免許의 申請

建築技術士(建築施工) 및 建築技師 1級·2級 자격소지자는 (표 1)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技術免許를 取得할 수 있다.

免許취득요건을 살펴보면

(가) 建築技術士(建築施工)는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 検定에 합격한자 이며,

(나) 建築技師 1級 및 2級은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師1級 및 2級에 각각 합격한 자로서 그 資格을 취득한 후 建築分野에 관한 실무에 1年이상 종사한 자이다.

免許申請방법은 해당분야의 실무경력등 관계 입증서류를 갖추어 建設部長官(건설행정과에서 업무 취급)에게 申請하면 확인절차를 거친후 자격 소지자에게 免許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② 建設技術者

이와같이 免許를 득하게 되면 建設技術者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도급액별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技術管理人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행 建設業法에는 공사 도급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에는 建築施工 技術士를,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에는 技師1級을, 10억원까지는 技師2級을 상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建設技術者는 2 이상의 사업체에 소속될 수 있고 現場管理人으로 배치되었을 때 그 기술가 소잡하여 疎고되었거나 타인에게 免許手帖을 대여한 때에는 免許가 취소된다. 또한 建設技術者는 본적·주소·성명의 변경 및 근무처의 이동등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어 建設技術者는 국가에서 그 免許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3) 資格(免許)의 活用

① 資格 취득자 수

建築分野 기술자격 취득자는 날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해외 建設市場등 신

업현장의 기술수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각 종목 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81년 12월 31일 현재 집계된 建築分野 자격(면허) 취득자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技術系 취득현황

〈표 16〉 (1981. 12. 31 현재)

기술사		기사	
자격종목	취득자수	자격종목	취득자수
건축기술사 (건축구조)	32	*건축구조기사 1급	1268
건축기술사 (건축설비)	35	*건축설비기사 1급	234
건축기술사 (건축시공)	770 (835)	*건축시공기사 1급	7805
		*건축시공기사 2급	7501
건축기사 1급	1617 (6229)	건축기사 2급	1904 (9868)

註 1. 이 표는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 이후의 자격 취득자 수이며 *표는 1980. 12. 31 까지의 자격 취득자 수임.

2. ( )안의 숫자는 면허 취득자 수이며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이전의 면허 취득자 수가 포함된 총 면허 취득자 수임.

3. 건축시공기사 1급 및 건축시공기사 2급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건설업법 시행령 부칙제5조 1982. 7. 14)

(나) 技能系 취득현황

〈표 17〉 (1981. 12. 31 현재)

자격종목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
건축제도	191	8647	—
조적	—	569	1492
철근	—	29	517
철골	—	—	65
창호제작	—	112	302
미장	—	154	6011
비계	—	—	99
건축목공	12	2427	4279
가구제작	—	214	1306
건축도장	2	1066	1214
온돌	—	—	917
거푸집	—	—	270
도배	—	—	50
타일	205	248	493
계	410	13,446	17,015

註 1. 기능계 17개 자격종목중 가구도장, 기와, 함석 기능사등 3개 종목은 검정을 시행하지 않은 종목임.

2. 기능계 전 자격종목은 별도 면허사항이 없고 자격수점만으로 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② 技術人力의 活用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해외 建設市場의 확대로 建築分野의 技術人力은 그 수급상 많은 인원이 요청되고 있다. 建築士法, 建設業法, 技術用役育成法 등 각종의 사업법령에서 技術개발의 촉진과 수준향상 및 資源의 절약 등 다양한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技術자격 취득자에게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함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資格 취득자에 대한 優待조치를 살펴보면 建設技術者는 前述한 바와 같고, 技術用役育成法에서는 용역업의 종류에 따라 資格취득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 공무원 특별채용 등 建築技師에 대한 제도적 優待조치가 폭넓게 취해지고 있다.

技能系의 경우는 建設業(專門工事業) 免許 기준에서 관련 종목 기능계 技術資格 취득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음은 특기할만 하고——, 예를 들면 木工事業은 건축목공 기능사 2인 이상, 도장공사업은 건축도장 기능사 2인 이상 등——資格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고용)하게하고 優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해 두고 있다.

③ 建築士法에의 活用(建築士補)

建築士法에 나타난 建築士補의 資格은 建築技師 1·2級 소지자면 가능토록 되어 있고, 教育法에 의한 大学 및 專門大学 졸업자로서 2년 내지 4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게도 그 資格을 부여하고 있어 建築士補의 자격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建築士協会에서 調査한 建築士補 현황에 의하면 技術資格을 가진 建築分野 建築士補가 미 취득자에 비교하면 불과 (52)%에 그치고 있어 (〈표 18〉참조) 자격취득을 적극 장려하였으면 싶고 여기에서 筆者의 견해를 밝히고 싶은 사항은 建築分野 建築士補의 자격인정에 있어서는 技能系의 技術資格 소지자에게도 建築士法에 의한 建築士補로 活用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技能系의 자격이라함은 建築製図技能士(현재 기능사 1·2급 소지자는 대부분 工高 建築科 출신임)를 뜻하며 建築設計製図에 있어서는 中級 이상의 熟練 技能 수준을 갖춘 유능한 技能人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게한후 建築士補의 資格을 부여하게 함은 建築技師의 活用과 병행하여 유자격 建築士補의 확보 문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할 뿐더러 資格취득자에 있어서는 보다 바람직한 進路의 開放이라 할 수 있어 技術資格의 活用的 側面에서도 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建築士補 현황 〈표 18〉 (1982. 8. 31 현재)

기술자격 취득자		미취득자	계
건축분야	기타분야		
1,461	271	1,328	3,060

註 1. 기술자격 취득자는 건축사보 (건축·토목·전기·기계·에너지·국토개발·안전관리 분야)의 자격 중 건축분야의 자격은 건축기사 1급 및 2급임.

結 言

国家技術資格制度는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산업技術人 및 技能人의 양성에 기여하고 그 活用을 극대화 하므로써 국가의 산업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建築技術분야는 해마다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많은 役軍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곧 産業現場의 젊은 旗手가 되어 국가건설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技術的 수준의 提高 내지는 蓄積을 위한 國家技術資格 취득은 당연한 것으로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建築分野 자격종목 出題에 있어서는 筆者의 分析에 의할때 出題의 基準이 과목별로 건축전반에 걸쳐 망라되고 있으며, 최근 각 산업현장의 직무분석 내용이 出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점은 퍽 다행한 일로 생각되나 技能系에 있어 試驗科目 설정은 種目의 特性에 맞게 시급히 改正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建築技術者의 입장에 있어서는 技術資格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有能한 技術者가 못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나 가급적 일정資格을 갖춘 많은 技術者를 산업사회는 要求하고 있으므로 資格取得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 들였으면 한다.

앞으로 有能한 建築技術人力에 의해서 우리의 經濟建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글을 맺고자 한다.

〈여기에 인용된 資料는 筆者가 관여한 技術資格檢定研究会編·國家技術資格便覽(도서출판 世進社 刊)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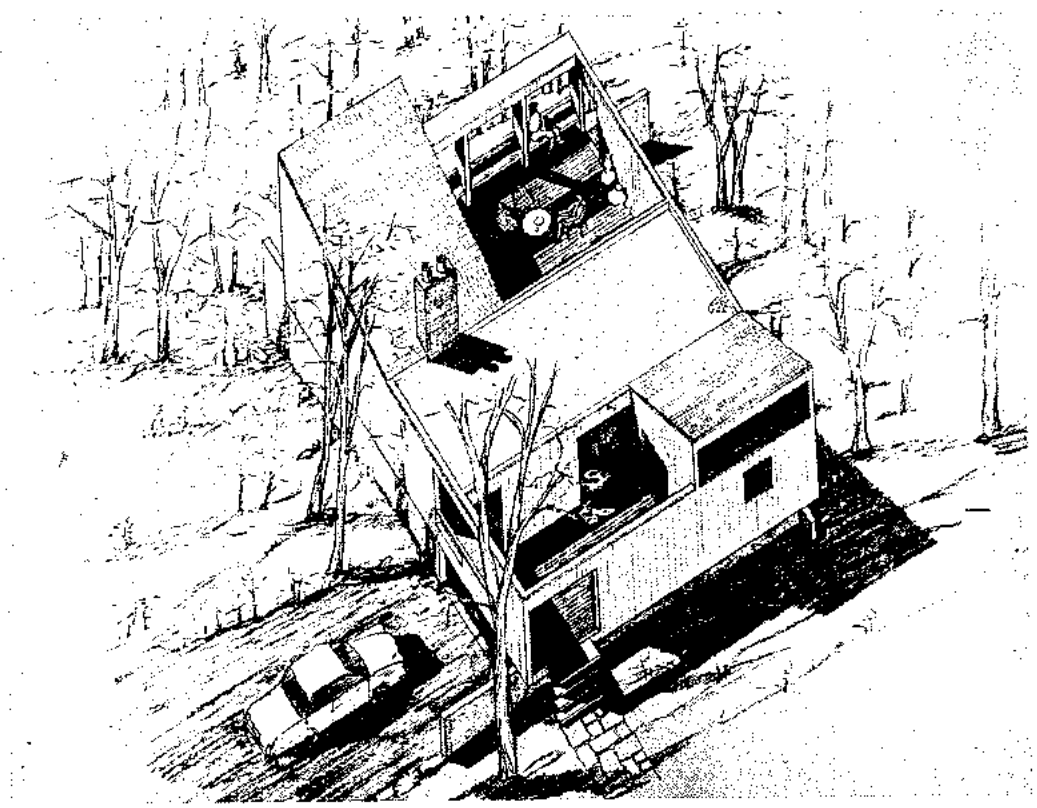

□ 金泰修 作(在美건축가)

公正去來 遵守하여 建築文化 꽃피우자

82.9.

建築士를 위한 設備講座〔I〕

建築과 空氣調和의 計劃

孫 章 烈 — 漢陽大学校 教授 (설비분과위원회 위원)

다음은 본회 建築研究委員会 設備研究分科에서 제공한 建築設備研究내용을 옮긴 것이다.

"建築士를 위한 設備講座"로 묶어 그 첫번째로 建築物의 空氣調和 計劃과 개정 消防法解說을 소개하고 이어서 다음호에는 搬送設備에 관한 연구내용을 차례로 게재할 계획이다. 회원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設備研究分科委員会 提供)

1. 建築과 空氣調和

건축사의 역할은 건축을 설계·창조하는 것이며 건축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物理的 요소와 美的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사는 意匠·構造·設備·材料·施工 등의 각 분야에 걸쳐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읽혀야 할 것이다.

공기조화설비는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요소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單位空間의 熱과 空氣에 관한 物理的 요소를 취급하여 環境工学的 입장에서 실내를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공기조화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지 않으나 현대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의 인구집중과 환경오염, 건축의 密集·高層化로 쾌적한 人工환경의 創出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시대의 건축기술에서 공기조화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건축에서 소극적으로 취급되었던 쾌적환경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사회적인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당연한 추세라 하겠다.

2. 空氣調和設備 시스템의 概要

공기조화설비의 목적은 실내의 열과 공기 환경을 실내의 사람 또는 器機나 物品에 대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달성하여야 할 실내환경은 건축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조절의 대상이 되는 것은 溫度·湿度·氣流·空氣淸淨의 요소이다. 공기조화설비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정해진 실내조건, 즉 在室者(사람의 쾌적환경이 목적일 경우)에게 알맞는 조건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내로부터 損失되는 열에 해당하는 열을 외부로부터 공급(난방)하는 장치 또는 실내에서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取得한 열을 除去(냉방)하는 장치와 실내에서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침입한 먼지나 탄산가스 등의 공기오염물질을 제거(환기)하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기조화란 냉방·난방·환기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여름·겨울뿐만 아니라 中間期 계절(봄·가을)에도 外界條件에 대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설비이다.

그러한 공기조화 설비 시스템의 장치는 그 역할에 따라 熱源裝置(보일러·냉동기·열교환기·히터펌프 및 부속器機)·熱運搬裝置(송풍기·덕트·취출구·펌프·배관 등)·공기조화기·自動制御裝置(실내의 조건을 쾌적하게 또한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조절)·計測監視裝置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 스페이스 및 배치계획

공기조화설비 설계가 건축설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조 스페이스(Space)와 배치에 관한 사항이며 이것을 위하여 설계초기부터 건축과 설비가 有機的인 관계를 가지고 兩側 설계자가 밀접히 화합하여 알맞는 장소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태만히 하면 다음에 공조설비 스페이스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설계의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조설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설사 설계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도면상에서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의 시공과정에서 작은 誤差에도 공조설비를 受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덕트 스페이스(Duct Space)와 파이프 스페이스(Pipe Space)는 건축계획이나 공조설비계획에서 매우 중요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 면적을 확보하고 受納의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본설계 또는 시공 때에 많은 비합리성이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공조조닝(Zoning)을 고려하여 덕트나 파이프의 경로에 무리가 없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기계실내 또는 外氣·排氣의 경로 등 덕트의 크기가 커지는 장소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뿐만 아니라 外氣도입구·배기구의 위치는 건축입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덕트 및 공조용 배관설계에서 건축과 설비 사이에 취급되어야 할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샤프트(Shaft)의 위치·면적·모양

②천정 속의 유효면적

③보·벽 등 구조체를 관통하는 장소와 관통 구멍의 크기

④防水層의 관통장소와 방수대책

⑤점검구의 위치·크기와 점검 스페이스

⑥防火구획의 관통장소와 방화대책

⑦防音·防振대책

또한 공조 덕트 샤프트, 파이프 샤프트는 물탱, 급배수 샤프트, 전기설비 샤프트와 함께 엘리베이터·계단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과 설비 사이에서 취급되어야 할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샤프트 스페이스의 위치

②샤프트의 유효면적과 모양

③샤프트 내부에 시공·관리를 위한 공간은 충분한가의 여부

④ 샤프트에서 덕트·배관이 밖으로 나가서 방화구역을 관통하는가의 여부

4. 空調負荷 및 器機의 容量

실내의 공기를 설계설정 조건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내의 취득열을 제거하거나 손실열을 보충하여야 하는데 이 열을 공조의 냉난방 부하라고 하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냉난방 부하계산이라고 하며, 이 부하의 크기에 따라 공조기기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부하계산은 어느 정도 설계가 완성되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공조 설비비의 概算 및 설비 스페이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하 및 주요기기 용량의 概算을 할 필요가 있다. 표 1에 주요기기 용량의 概算値(사무소건물의 경우)를 보여 준다.

공조부하는 다음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실내부하 : 외벽·유리창·지붕·바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열

② 내부발생열 : 조명·기기에 의한 발생열 및 人体로부터의 放散熱

③ 間歇공조로 인한 蓄熱부하 : 건물 구조체 등에 축열되는 열

④ 裝置부하 : 덕트·송풍기·펌프·배관 등에 의한 열

⑤ 외기도입에 의한 부하 : 외기를 실내온습도로 만들기 위한 열

냉난방부하는 결국 건물의 外界條件과 실내조건의 熱量差이며, 일반적인 건물에서 외계조건(日射·온습도·바람 등) 및 실내조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므로 부하도 변화하여 熱的인 不定常狀態가 된다. 이러한 부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最大負荷 계산법과 動的負荷 계산법의 2가지가 있다.

최대부하 계산법은 주로 手計算에 의하며 외기온도를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구한 TAC 온도 (외기온도 초과확율 2.5% 등)와 相当外気温度(Sol-Air Temperature), 蓄熱係数 등의 不正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간단한 定常계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적부하 계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유일한 부하계산 방법이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든 부하계산을 이 방법에 의하고 있다.

동적부하 계산법은 변화하는 모든 데이터(과거 수년간의 데이터를 시간별로 정지)를 컴퓨터에 入力하여 不定常狀態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선진제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5. 공기조화의 방식

건축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를 알고 건물전체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조방식과 공조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조방식은 지금까지 사용한 경험이 있는 방식 중에서 선택하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하여 창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조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単一덕트방식(Single Duct System)

공기조화기에서 하나의 덕트로 각 실에 冷風 또는 温風을 송풍하는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오래 전부터 채용되어 왔다. 실내에 송풍량을 많이 보낼수 있어 외기도입이나 中間期의 환기에는 알맞다. 송풍속도에 따라 高速덕트와 低速덕트로 구별한다. 특히 각층마다 공조기를 두어 단일덕트방식으로 그 층을 공조하는 것을 각층 유니트방식이라 하여 각층마다 공조의 운전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채용하여 부하의 변동에 대응한다.

(2) 二重덕트방식(Dual Duct System)

冷風과 温風의 2개의 덕트를 설치하고 각 존 또는 각실마다 혼합상자(Mixing Box)를 두어 실내의 서모스타트의 지령에 의하여 냉온풍의 혼합비를 적절히 변화시켜 소정의 온도로 실내에 송풍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실의 개별 제어 또는 존 제어가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설비비 및 운전비가 높아지기 쉬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채용되지 않는다.

主덕트만 이중으로 하고 존별로 혼합유니트를 두어, 그 유니트로부터 末端까지는 단일덕트방식으로 하면 설비비 및 유지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3) 터미널 히트방식(Terminal Heat System)

단일덕트의 존별로 나누어진 덕트 속에 再熱器(Reheater)를 설치하여 적당한 吹出온도로 개별제어하는 방식이다. 냉방시에는 공조기에서 일단 냉각된 공기를 다시 재열하게 되므로 그 열량만큼 에너지 면에서 불경제적이다. 재열기의 熱源으로는 電熱·蒸気·温水가 사용된다.

(4) 可変風量방식 또는 VAV(Variable Air Volumn) 방식

단일덕트방식에서 덕트의 末端부근에 VAV 터미널 유니트를 설치하여 공기의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송풍량을 실내부하에 대응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다. 必要外気量 확보의 문제, 송풍량을 변화시키기 위한 機構的인 문제와 騒音発生의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는 몇년 전부터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채용의 例가 드물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조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5) 멀티 존 유니트방식(Multi-Zone Unit System)

멀티 존 유니트라는 공조기 1대로 몇개의 존에 대하여 알맞는 온습도로 制御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풍·온풍은 공조기의 出口에서 댐퍼(Damper)에 의하여 혼합비가 조절된다. 나누어져 있는 존의 전부가 언제나 운전되는 때에 채용된다.

(6) 팬 코일 유니트방식(Fan Coil Unit System) + 외기 덕트방식(Out Air Duct System)

송풍기·냉온수 코일 및 에어 필터(Air Filter)를 内蔵한 팬 코일 유니트를 실내에 설치하여 여기에 냉온수를 공급하여 냉난방을 하고 동시에 덕트로 외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기는 공조기를 통한 調和공기를 일반적으로 보낸다. 각실의 제어가 쉬우므로 호텔의 客室, 병원의 병실 또는 대규모 건물의 外周部 존(Perimeter Zone)에 많이 사용된다.

(7) 인덕션 유니트방식(Induction Unit System)

인덕션 유니트라는 소형 공조기를 실내에 설치하고 공동의 1차공조기에서 1차공기를 세게 뿜어 그 吸引力에 의하여 실내공기(2차공기)를 冷却 또는 加熱시켜 吹出하는 방식이다. 팬 코일 유니트방식과 마찬가지로 호텔·

그림 1 공기조화설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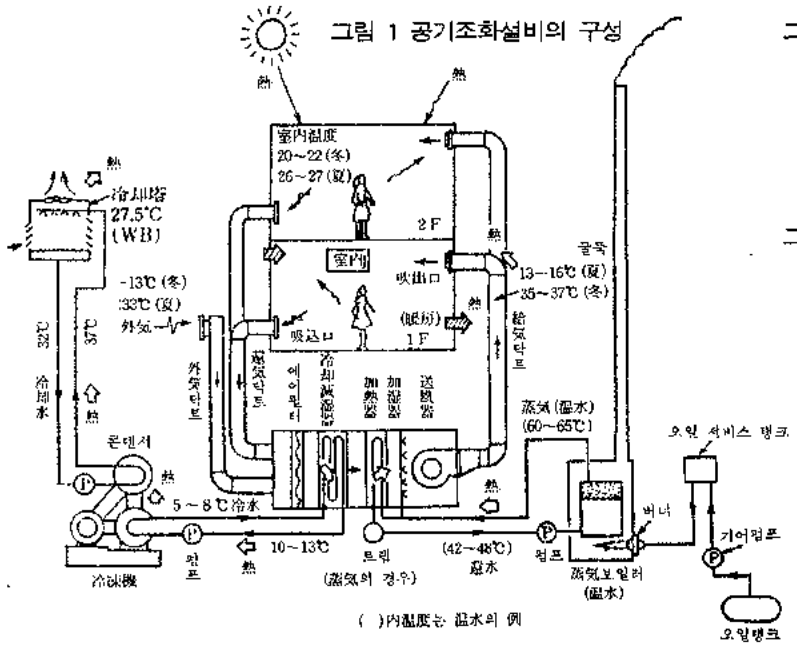

그림 2 단일덕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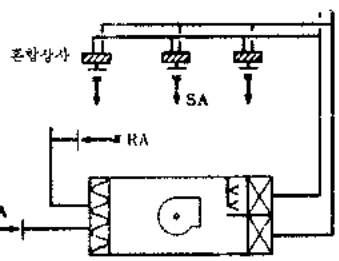

그림 3 2중덕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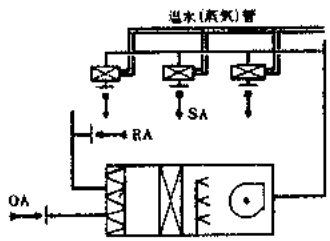

그림 4 터미널 히트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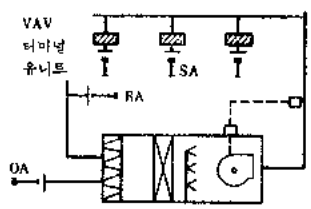

그림 5 VAV 방식

그림 6 멀티존 유니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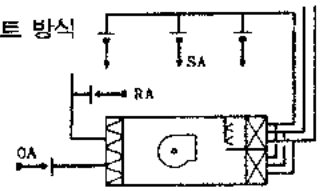

그림 7 팬 코일 유니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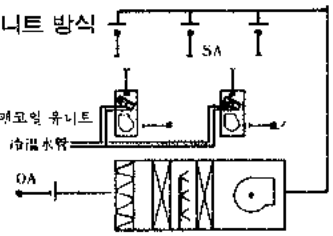

그림 8 인덕션 유니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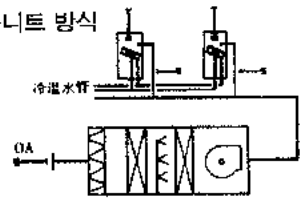

그림 9 복사 냉난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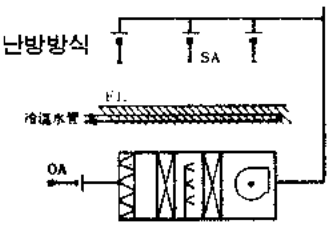

그림 10 팩키지 유니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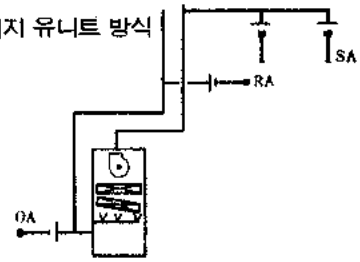

병원이나 대규모 건물의 外周部 존에 사용되나 팬 코일 유니트방식보다 설비비가 비싸다.

(8) 輻射冷暖房방식(Panel-Air System)

건물의 천정·벽·바닥 등에 가는 管(파넬—Panel)을 묻어 온수 또는 냉수를 통하게 하는 방식이다. 넓은 면에서 복사에 의하여 냉난방하는 것이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나 따로 외기도입을 위하여 덕트방식을 併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사난방으로 겨울에 온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파넬에 의한 냉방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9) 팩키지 유니트방식(Package Unit System)

냉동기를 內蔵한 팩키지 공조기를 실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小型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룸 쿨러(Room Cooler)에서 大型은 덕트의 접속이 가능한 것도 있다. 中大型은 冷却塔과 결합시킬 수 있으며 전기히터 또는 온수(또는 蒸気) 코일을 內蔵, 보일러와 결합시켜 난방에도 이용할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코스트의 공조가 가능하다. 대규모 건물에서도 부분적으로 특별한 공조(電算室·식당 등)가 필요할 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 1 주요기기의 容量概算

(사무소 건물의 경우)

	연면적당	공조면적당
냉동기	0.03 일본RT/㎡	0.05 일본RT/㎡
보일러	0.20~0.30kg/㎡	0.30~0.45kg/㎡
팩키지형 공조		0.06~0.08 일본RT/㎡
풍량 내주부 (Interior)	20~30 CMH/㎡	15~20 CMH/㎡
풍량 외주부 (Perimeter)		40~50 CMH/㎡

6. 맺는말

건축계획에 필요한 공조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공조설계는 건축설계의 일부를 생각하여 건축계획 과정에서부터 배치·스페이스 방식 등을 고려하여 건물용도에 적합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조기술은 아직 많은 발전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今後에는 냉난방 부하계산의 재검토, 쾌적범위와 환경문제의 재검토, 열원 및 공조시스템의 多様化, 각종기기의 성능향상,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등의 여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쌓아 나아가 공기기술발전에 도모하여야 하겠다.

建築士를 위한 設備講座〔Ⅱ〕

建築과 空氣調和의 計劃

朴 容 漢— 星亞技術社 代表 (본회 설비분과위원회 위원)

1. 序 論

건축과 설비계획이 완전하게 융합되어야만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단독으로 계획을 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空氣調和設備에 있어서는 그 소비 에너지量이 크기 때문에 덕트 기계실의 스페이스를 넓게 필요로 하며 또한 건물 내의 각 곳에 분산된 스페이스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建築計劃만을 중시하여 계획을 행하면 대단히 不經濟的인 건물이 건축된다. 따라서 건축계획의 초기단계에서 空氣調和의 계획을 이끌어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2. 機械室의 計劃

(가) 熱源機械室

보일러·냉동기의 설치위치는 図 1과 같이 분류된다. (A)는 일반적인 예인데 器機의 진동·소음, 器機의 반입 혹은 구조계획에는 유리하나 고층일 경우 器機의 水圧이 증가하고 또 각층의 굴뚝·배관의 스페이스의 합계도 많아진다.

(B)는 冷却水配管이 짧아지고 냉동기의 水圧도 감소되지만 器機가 분산되어 관리가 약간 복잡하게 되며 냉동기의 진동 및 소음이 문제가 된다. 단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C)는 각층의 배관·굴뚝 스페이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고층건물에서는 유리하나 액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방재상의 배려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構造計劃上에도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고층건물인 경우라도 보일러실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기계실은 열운반 거리를 적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負荷에서 가까이 하고 건물의 모든 動力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되도록이면 전기실과도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그리고 법규상 보일러실에는 2개 이상의 여닫이 출입구가 필요하며 기계실의 천정은 가급적 150㎜ 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단열관계로 천정에 흡음재를 내장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닥에는 배관·배선 및 배수를 위해 150~200㎜의 신더 콘크리트가 필요하며 또한 중간 혹은 최상층 기계실에 있어서는 防振을 위해 신더 콘크리트 밑에 炭化 콜크를 깔아준다. 그리고 大型器機의 반입을 위해 머신 해치(Machine Hatch)를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계실의 면적은 표 1을 참고하면 좋겠다.

(나) 空調機械室

空氣調和機의 설치는 중앙식과 각층 유니트方式으로 나누어 진다.

중앙식은 空調機 설치 기계실은 적어지나 수직 덕트의 면적이 증가되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設備費가 적어지는 장점도 있다.

각층 유니트方式은 사용시간·残業(Overtime Work) 혹은 각층의 負荷特性이 다른 경우에 채택되는 방식이며 図 2에서 그 配置例를 표시한다.

外氣冷房을 할 경우 (B)와 같이 최상층에 설치하는 것은 外氣의 給排氣는 용이하지만 熱源이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하는 편이 유리하다. 고층건축인 경우에는 기계실을 분산하여 하나의 기계실에서 대체로 10층 정도의 층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것은 덕트 스페이스가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해 주며 동시에 1대의 空調機의 風量이 너무 크면 風量의 조절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공조실의 바닥·천정·벽 등은 흡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을 적게한다.

空調機械室의 예를 図 3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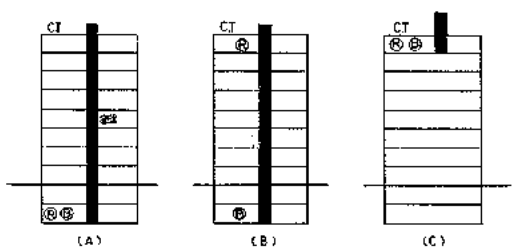

Ⓑ : 보일러 Ⓡ : 冷凍機 C.T : 冷却塔

図 1 熱源動器機의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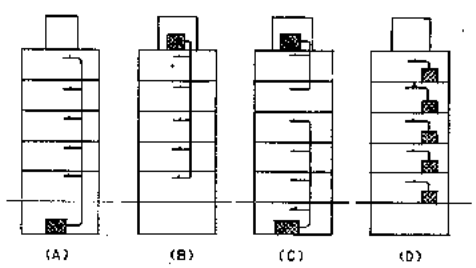

図 2 空氣調和器機의 配置

表 1 空調機械室(A.C室)의 바닥面積(㎡) 및 延面積에 대한 %

延 面 積 (㎡)	1,000	3,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A.C室+B.R (系統이 複雜할 때)		200(6.7)	290(5.9)	470(4.7)	590(3.9)	700(3.5)	790(3.2)
A.C室+B.R (系統이 簡單할 때)	50(5.0)	130(4.3)	220(4.0)	350(3.5)	460(3.1)	550(2.8)	6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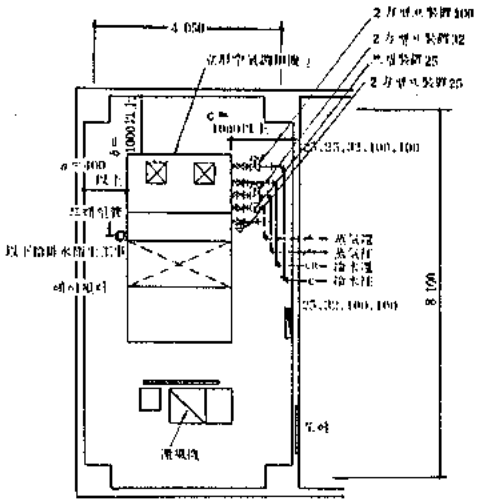

図 3 空気調和機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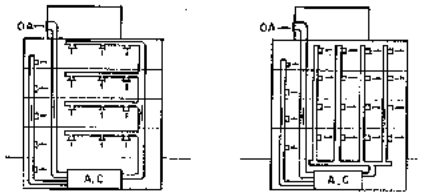

(A) 水平式　　(B) 垂直式　　A.C : 空気調和機　O.A : 給気

図 4 덕트의 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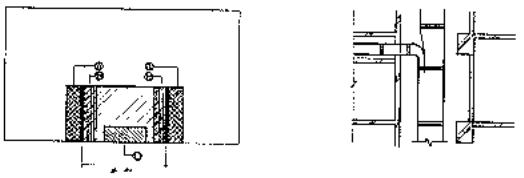

(A) 平　面　　(B) 덕트 베이스 Ⓐ의 断面

図 5 垂直 덕트 스페이스의 位置

3. 굴뚝(CHIMNEY)

굴뚝은 가급적 보일러와 가까운 데에 설치하고 보통 콘크리트로 만든다. 내부는 내화벽돌을 굴뚝 상부까지 단열하고 하부에는 철판제의 掃除口를 장치한다.

일반적으로 굴뚝의 크기는 표 2와 같다.

4. 덕트計劃

(가) 덕트方式은 수평식과 수직식으로 나눈다. 図 4의 (A)는 수평식으로 기계실에서 수직으로 主덕트를 통하고 각층에서 分岐하여 복도 혹은 거실의 천정 속에 부설하는 방법이며 가장 일반적이다.

그림 (B)는 수직식으로 地層 또는 최상층에서 主덕트를 수평으로 하여 이것에서 다수의 수직덕트를 분기하는 방법이다. 인덕션 유니트(Induction Unit)의 1차 空気 혹은 호텔 등과 같이 각각의 室마다 피트(Pit)가 있을 때 사용한다.

(나) 수직덕트의 배치와 스페이스

空調用의 덕트는 大型이 되므로 그 위치·수용에 대해 건축초기에서 정성을 들여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図 5에 나타냄과 같이 건물에 있어서 덕트 스페이스가 수직덕트에서 수평으로 분기하는 덕트는 상당히 크게 되고 (B)와 같이 덕트 출구에 보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를 넘은 Ⓐ의 위치에 덕트를 가지고 간다. ⓒ의 위치로 잡았을 경우에는 分岐덕트가 잘 들어갔다 하더라도 負荷에서 멀어지고 덕트가 길어져 不経済的이다.

수직덕트는 피트의 1면 이상을 브럭(Block)으로 쌓고 덕트 시공 후에 마무리한다.

최종적으로 덕트 스페이스는 덕트 자체의 면적의 2배 정도가 된다. 표 3에 수직덕트 스페이스의 기준층 바닥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다.

(다) 수평덕트 스페이스

보통 많이 문제가 되며 보편적으로 400~500mm 정도는 필요하다. 근래의 고층건물은 철골조이며 일반적으로 보(Beam)의 관통법을 사용한다. 이때 덕트는 보통 圓型덕트를 사용하고 관통구는 빔 높이의 3분의 1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配管計劃

배관방식은 덕트와 같이 수평식과 수직식으로 분류한다.

배관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1면의 폭이 최소한 700mm 이상 되어야 보수가 가능하다.

공기조화 계획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며 짧은 시간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되어 다른 기회에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表 2 煙突의 概略 치수

建築延面積 (m²)	暖房負荷 (KCAL/HR)	燃料消費量 (KG/HR)	굴뚝 높이(m)에 対한 煙突径(cm)			
			25 (h=23m)	30 (h=33)	35 (h=38)	35 (h=45)
1,000	90,000	~30	50			
3,000	240,000	40~55	60			
5,000	350,000	60~70		75	75	
10,000	700,000	75~100		90	90	
15,000	1,050,000	125~150		110	105	100
20,000	1,300,000	160~200		125	120	110
40,000	1,950,000	~300			130	120

表 3 공조방식에 대한 덕트 및 파이프 면적

공조방식	기준 바닥 면적에 대한 비율 (%)	적용할 수 있는 건물
단일 덕트 방식 (계통 간단)	1.5 ~ 2.5	소 규 모
단일 덕트 방식 (계통 복잡)	2.0 ~ 3.5	중 규 모
각층 유니트 방식	2.0 ~ 4.0	중·대 규 모
FCU — 단일 덕트 방식	2.0 ~ 4.0	중·대 규 모
FCU — 각층 유니트 방식	2.0 ~ 4.0	중·대 규 모

建築士를 위한 設備講座

改正 消防法 解說

李 承 九 — 중앙소방설비(주) 대표(본회설비분과위원회위원)

現代 經濟의 急成長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기계공학, 화공학, 전기공학 등의 눈부신 변화를 가져 왔으며 보다 넓어지고 빨라진 인간들의 행동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건축공학의 발전은 건물의 대형화와 더불어 기능적인 면과 안전에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

構造的(Building construction)인 욕구에 의하여 現代 建物의 대부분이 耐火構造로 建築되며,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의 설정이나 비상 계단의 설치 등은 화재의 위험을 감소 시키게 되고 또한 발전된 消防工学(Fire protection engineering)은 화재진압(Fire fighting)에서 예방(Fire prevention)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날로 새로워지는 消防技術은 消防法의 改正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관계당국에서 수개월을 연구 검토한 결과 법률 제3413호(81. 4. 4) 소방법의 개정 대통령령 제10619호(81. 11. 6)로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무부령 제374호(82. 6. 5)로 소방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一次的인 完成을 보게 되었다.

本 改正된 消防法에 대하여 適正 여부나 技術的인 검토를 論하기 보다는 建築人으로서의 理解와 필요한 점만을 記述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업무상 불필요한 사항과 구법조문을 생략하기로 한다)

1. 特 徵

ㄱ. 消防施設의 緩和

消防施設은 人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항시 건물주에게 이익을 초래하게 하지 않으면 화재의 발생이 없을 때에는 사용치 않을뿐만 아니라 매년 수리비가 요구되는 실정임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가 내화구조로 됨에 따라 화재 발생 요인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2배내지 3배 완화 실시하고 있다.

ㄴ. 罰則의 強化

소방법위반 사항에 대한 벌과금 규정을 종래의 10만원을 100만원으로, 5만원을 50만원으로, 3만원을 30만원으로 하는 등 강화 하였다.

ㄷ. 소방 대상물의 구분

소방 대상물의 구분을 별표1의 1항에서 20항으로 세분 하던것을 1종장소, 2종장소, 3종장소 및 지정문화재·지하가·복합 건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것은 화재하중(火災荷重)을 고려하여 제반소방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 또한 학교·여관 등의 호칭으로 하여 일반인들의 이해가 쉽게 한 것이다.

ㄹ. 구법과 동시 사용하여야 한다.

現 消防法 施行令이나 施行規則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물만을 정하였으며, 제반 기술적인 규정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은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별도 제정되어 시행할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함으로 구법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방법 개정사항중 주요내용

제 9 조 (建築許可 등의 同意) ① 建築物의 新築·增築·改築·移転·대수선 및 構造 또는 用途変更의 許可(建築法 第8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確認의 權限을 가진 行政庁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者는 그 許可 또는 確認에 있어서 미리 당해 建築物의 工事施工地 또는 所在地를 管轄하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許可 또는 確認을 할 수 없다. 〈改正 81. 4. 4 法3413〉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는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함으로써 同意에 갈음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完工検査畢證을 確認하여야 한다. 〈新設 81. 4. 4 法3413〉

① ( ) 부분이 삽입됨으로 건축허가시의 동의 범위가 추가되었으며
④ 구법에는 소방시설의 완공 검사규정이 없었으나 신법에는 추가함으로 법적근거가 확립됨.

제11조 (共同防火管理) ① 高層建築物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消防対象物로서 그 管理의 権原이 分離되어 있는 것. 또는 地下街(地下의 工作物안에 設置된 店鋪·事務室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로서 連續하여 地下道에 面하여 設置된 것과 당해 地下道를 合한 것을 말한다.)로써 그 管理의 権原이 分離된 것 중에서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指定하는 것에 대한 管理의 権原이 있는 者는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計劃의 作成 기타 防火管理上 必要한 事項을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改正 81. 4. 4 法3413〉

① 구법에는 15미터이었으나 31미터로 공동방화관리의 의무 건축물을 대폭 완화

제12조 (特殊場所의 防炎) ① 高層建築物 (共同住宅을 제외한다) 劇場·카바레·호텔·病院 等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정하는 消防対象物에서 使用하는 카텐·실내장식물·전시용合板 기타 이와 類似한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은 防炎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크라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設置된 消防対象物에서 使用하는 物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但書新設 81. 4. 4 法3413〉

① 방염 대상물중 학교·공동주택·시장·공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가 제외되었으며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소방 대상물도 제외함으로 대폭 완화됨.

제29조 (特殊場所 등의 消防施設) ① 特殊場所의 関係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火設備·警報設備·避難設備·消火用水設備 기타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内務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81. 4. 4 法3413〉

① 소방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이 용이하게 됨.

제29조의 2 (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第29條 第1項의 消防施設의 基準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内務部令의 変更으로 그 基準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特殊場所 (建築物의 新築·增築·改築·移転·大修繕등의 工事중인 特殊場所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基準을 적용한다. 〈本條신설 81. 4. 4 法3413〉

소방법 개정에 따른 빈번한 시설 변경을 방지하기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하기를 득하여 공사중인 건물도 해당된다.

제32조 (消防施設의 施工申告등) ①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消防施設의 種類·施工場所 기타 必要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者는 内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検査結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적합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81. 4. 4 法3413〉

① 소방시설의 시공을 할 때는 10일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또 완공시에도 검사후 필증을 교부 받아 건축 준공검사에 임하게 된다. 소방업자의 임무지만 감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78조 (罰 則) 第10條 第3項·第15條 第3項·第18條第5項 또는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하거나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完工検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5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拘留에 処한다. 〈改正 81. 4. 4 法3413〉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의 벌칙이다.

3. 소방법 시행령 중 주요내용

제2조 (定 義) 이 令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바닥面積"이라 함은 建築法施行令 第3條 第1項 第3号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面積을 말한다.
2. "延面積"이라 함은 建築法 施行令 第3條 第1項 第4号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面積을 말한다.
3. "地下層"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5号의 規定에 의한 地下層을 말한다.
4. "無窓層"이라 함은 地上層中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避難 또는 消火活動을 함에 있어 有効한 開口部가 없는 層을 말한다.
5. "避難層"이라 함은 直接 地上에 통하는 出入口가 있는 層을 말한다.
6. "主要構造部"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7号의 規定에 依한 主要構造部를 말한다.
7. "耐火構造"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9号의 規定에 依한 耐火構造를 말한다.
8. "防火構造"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10号의 規定에 依한 防火構造를 말한다.
9. "不燃材料"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11号의 規定에 依한 不燃材料를 말한다.
10. "準不燃材料"라 함은 建築法 施行令 第2條 第9号의 規定에 의한 準不燃材料를 말한다.
11. "難燃材料"라 함은 建築法 施行令 第2條 第10号의 規定에 의한 難燃材料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를 건축법에 위임함으로 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해석상의 통일을 기한 것이다.

제4조 (建築許可等의 同意対象物의 範囲) ① 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等의 同意対象物의 範囲는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建築物中 다음 各号에 掲記하는 것으로 한다.

1. 別表1의 特殊場所中 다음의 場所
   가. 公演場·競技場·集会場·飲食場·유기장·旅館 호텔·旅人宿·寄宿舎·醫療院·老人福祉施設·児童福祉施設·心神障碍者 福祉施設·유치원 및 地下街로서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인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層의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市場·4層以上 共同住宅·停車場·待合室·学校学芸展示館·公衆沐浴場·工場·映画 및 텔리비젼 촬영소·倉庫·車庫 및 駐車場으로서 延面積 1천平方미터 以上인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 層의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것.
   다. 教会·寺刹 및 事業場으로서 延面積 1천 8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層의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것.
   라. 비행기 格納庫

① 同意 대상물이 대폭 완화 되었다.

3층이하의 공동주택이 제외되었으며 가 항의 경우 2배, 나 항의 경우 5배 정도 완화되었다.

제14조 (消防対象物의 完全区劃区分) 耐火構造의 消防対象物로서 開口部가 없는 耐火構造의 바닥 또는 壁으로 区劃되어 있는 部分은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各各 別個의 消防対象物로 본다.

※ 구법참조

제13조 (消防対象物의 完全区劃区分) 耐火構造의 消防対象物로서 開口部가 없는 바닥 또는 壁으로 区劃되어 있고 그 区劃된 以外의 場所로 延燒할 우려가 없는 部分은 이 節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各各 別個의 消防対象物로 본다.

구법에는 완전 구획되었으며 인접된 장소로 延燒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하면 별동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구법에서는 1개의 건물이나 신법에서는 (A)(B) 건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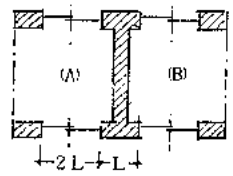

제15조 (消防対象物의 用途別区分) 別表 1 의 複合 建築物은 이 章 (第21條 및 第22條를 除外한다) 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用途別로 各各 1個의 消防対象物로 본다. 다만, 다음 各号의 消防対象物은 除外한다.

1. 延面積 1천 평방미터 以上인 建築物
2.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의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

대형건물은 주요용도로 큰한다고 사료되나 소방기술상으로는 적용이 곤란한 항목이다.

제16조 (地下街의 擬制) 別表 1 의 第 1 種場所 (老人福祉施設·児童福祉施設·心神障碍者福祉施設·유치원 및 공중목욕장을 除外한다) 의 地下層이 地下街와 連結되어 있는 경우 当該 地下層의 부분은 이 章의 消防施設 (消火器具를 除外한다) 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를 地下街로 본다.

지하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적용이 강화되어 있다.

第 2 節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제17조 (第 1 種 場所) 別表 1 의 第 1 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機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 以上 (飲食店의 경우에는 33平方미터 以上) 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2 에서 定하는 数量의 5分의 1 以上의 危険物, 別表 3 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準危険物, 別表 4 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가스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가스중 40킬로그램以上의 可燃性가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上인 것.

1 종장소 :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시장·여관·호텔·여인숙·기숙사·의료원·노인복리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 복지시설·유치원·공중목욕탕

1. 소화 기구의 경우 구법에는 건축물의 내화성과 타 소방설비와의조건등을 참조하여 설치개수를 감면하였으나 신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다.

2.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2천 100平方미터 以上 (公演場·競技場·集会場의 경우에는 1천 500平方미터以上) 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 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第 1 류·제 2 류 또는 제 5 류의 準危険物이나 別表 4 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 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以上 (公演場·競技場·集会場의 경우에는 300平方미터以上) 인 것.

2. 옥내 소화전의 설치 대상물이 내화구조인 경우 3배의 면적을 적용하던 것을 신법에서는 조건없이 함으로 비내화 건물은 완화이나 내화구조건물은 종전과 동일한 적용이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公演場 또는 集会場으로서 舞臺部 (舞臺에 附設된 装置物室 및 소품실을 包含한다. 이하같다) 의 바닥面積이 当該 舞臺部가 地下層·無窓層 또는 4 層以上의 層에 있는 境遇에는 300平方미터以上, 其他의 層에 있는 境遇에는 500平方미터 以上인것.
   나. 市場으로서 販賣場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4 層以下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9 천平方미터 以上, 5 層以上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6 천平方미터以上인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 에서 定하는 数量의 1 천倍以上의 第 1 類·第 2 類 또는 第 5 類의 準危険物이나 別表 4 에서 定하는 数量의 1 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라. 가目 내지 다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 (公演場·競技場·集会場 및 寄宿舎를 除外한다) 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 層以上 10層以下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1 천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마. 가目 내지 다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 (旅館·호텔 또는 旅人宿에 한한다) 의 11層以上의 部分
   바. 가目 내지 다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 (旅館·호텔 및 旅人宿을 除外한다) 의 11層 以上의 部分으로서 建築法 施行令 第96條 第 1 項 第 3 号의 規定에 의하여 防火区劃된 以外의 部分의 바닥面積 合計가 100平方미터以上 (그 層의 壁 및 반자의 室内에 面하는 部分의 마감을 準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200平方미터以上, 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500平方미터以上) 인 것.

3라. 항의 경우 구법에는 시장으로 면적 1000㎡이면 해당되었으나 삭제되었으며 여관·호텔·음식점·병원·등의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본 신법에서는 폭넓게 강화 되었다.

마. 마항의 여관·호텔의 경우 11층 건물이면 스프링클라 설비 해당

5. 물噴霧等 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別表 3 에서 定하는 数量의 1 천倍以上의 第 1 類·第 2 類·第 4 類 또는 第 5 類의 準危険物이나 別表 4 에서 定하는 数量의 1 천배 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나. 消防対象物에 設置된 発電室 및 変電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4. 나항의 경우 보어라실이 배제되고 면적이 200㎡에서 300㎡로 됨. 해당되는 설비의 종류는 물분무 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하로겐 화물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등이다.

5. 屋外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바닥面積(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1層인 경우에는 1層의 바닥面積을,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2層以上인 경우에는 1層 및 2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한다)이 9천平方미터이상인 建築物. 이 경우 同一대지안에 耐火構造建築物·防火構造建築物 以外의 建築物이 2以上이 있는 경우에 当該 建築物의 外壁 相互間의 中心線으로부터 水平距離가 1層에 있어서는 3미터以下, 2層에 있어서는 5미터 以下인 것은 이를 1個의 建築物로 본다.

6.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第2号 各目의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5号의 建築物

7.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市場 및 公衆沐浴場의 경우에는 1천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 以上의 準危険物 또는 別表4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以上(市場 및 公衆沐浴場의 경우에는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라. 消防対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7. 공연장이나 식당인 경우 구법에서는 500㎡이나 내화구조인경우 1000㎡이므로 강화되었고 시장이나 공중 목욕탕의 경우에도 내화구조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8. 電気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다음 各目의 消防対象物(耐火構造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반자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材料에 철망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가. 延面積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契約電流容量(同一建築物에 契約種別이 다른 電気가 供給되는 경우에는 그 중 最大契約電流容量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암페어를 超過하는 것.

8. 전기 화재경보기의 설치대상은 비내화구조의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9. 自動火災速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市場·旅館·호텔·여인숙 및 醫療院으로서 바닥面積 1천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10.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数가 3層以上 또는 収容人員이 800人以上(旅館·호텔·旅人宿·醫療院·老人福祉施設·児童福祉施設·心神障碍者福祉施設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300人以上)인 것.

나. 비상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収容人員이 100인 以上(旅館·호텔·旅人宿·醫療院의 경우와 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以上)인 것.

10. 나항의 경우 50인을 100인으로 20인을 40인으로 완화

11. 避難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避難層 및 11層 以上의 層을 除外한 層 (主要構造部를 耐火化構造로 한 建築物에 있어서는 2層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 으로서 다음 各目의 것.

가. 醫療院·老人福祉施設·児童福祉施設·心神障碍者福祉施設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20人以上인 것.

나. 旅館·호텔·旅人宿 및 寄宿舎의 경우에는 収容人이 30人 以上인 것.

다. 公演場·競技場·集会場·飲食店·유기장 및 市場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50人以上인 것.

11. 제외되는 층이 18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시설화 하였으며 수용 인원 산정도 그 배수로 하였다.

12. 人命救助装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7層以上 観光호텔로서 収容人員이 200人 以上인 것.

나.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5層以上인 病院으로서 収容人員이 200인 以上인 것.

13. 避難口誘導燈·通路誘導燈·客席誘導燈 및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구 분 용 도 별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이상의 층	기타의 층
기숙사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유 도 표 시
공연장·경기장·집회장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음식점·유기장·시장·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공중목욕장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14. 消火用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敷地面積이 2萬平方미터以上인 建築物로서, 그 바닥面積(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1層인 경우에는 1層의 바닥面積을,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2層以上인 경우에는 1층 및 2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한다)이 1萬5千平方미터以上인 建築物. 이 경우 同一 敷地안에 2以上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 当該 建築物의 外壁 相互間의 中心線으로 부터 水平距離가 1層에 있어서는 3미터 以下, 2層에

있어서는 5미터以下인 것은 이를 1個의 建築物로 본다.

나. 높이가 31미터以上인 建築物로서 延面積(地下層을 除外한다)이 2萬5千平方미터 以上인 것.

14. 내화 건축물의 경우 1500㎡ 준내화 1000㎡ 비내화 500㎡이던 것을 통일하여 1500㎡로 함.

15. 排煙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公演場 또는 集会場으로서 舞臺部의 바닥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飲食店·유기장·市場·旅館·호텔 또는 旅人宿으로서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바닥面積이 1천平方미터以上인 것.

15. 나항중 카바레·비어홀을 배제하여 주었다.

16. 連結送水管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7層 以上인 것. 다만, 屋内消火栓設備가 設置되고 바닥面積이 150平方미터以下로서 10層以下인 建築物은 除外한다.

나.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5層以上인 것으로서 延面積 6千平方미터以上인 것.

16. 아케이트나 지하가 등이 삭제되었다.

17.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地下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700平方미터以上인 것. 다만,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경우에는 다음 각目의 部分의 바닥面積은 이를 当該 基準面積에서 除外한다.

가. 耐火構造의 壁·바닥 또는 自動閉鎖裝置를 한 甲種防火門 또는 乙種 防火門으로 区劃된 部分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下인 部分

나. 浴室·변소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

다. 耐火構造의 壁·바닥 또는 自動閉鎖裝置를 한 甲種防火門으로 区劃된 部分에 位置하는 昇降機 및 換気設備의 機械室·通信機器室·電子計算機器室·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로 使用되는 部分

라. 発電室·変圧室 其他 이와 類似한 電気設備가 설치되어 있는 部分

마. 昇降機의 昇降路·린넨슈우트·파이프닥트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

바. 보일러室 其他 이와 類似한 設備가 設置된 部分

17. 연결살수헤드의 설치가 면제 되는 장소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으로 사실상 완화 되었다.

18.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11層以上인 것.

第18조(第2種場所) 別表1의 第2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300平方미터以上(4層以上의 共同住宅·工場·映画 및 텔리비젼 촬영소의 경우에는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2에서 定하는 数量의 5分의 1以上의 危険物,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準危険物, 別表4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가스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가스중 40킬로그램 以上의 可燃가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이상인 것.

2 종장소 : 청거장·대합실·교회·사찰·아파트·학교·학예전시관·사업장(관공서·회사·은행·이발소·화장장·오물처리장) 공장·촬영소

1. 구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2.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2천100平方미터以上(教会·寺刹의 경우에는 3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険物이나 別表4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 以上(教会·寺刹의 경우에는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2. 모든 건물을 내화 건물로 간주하여 면적을 정한 것으로 구법과 동일하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険物이나 別表4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事業場에 한한다)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 10層以下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1千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 가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事業場, 映画 및 텔리비전촬영소에 한한다) 11層以上의 部分으로서 建築法施行令 第96條 第1項 第3号의 規定에 의하여 防火区劃된 以外의 部分의 바닥面積合計가 100平方미터以上(그 層의 壁 및 반자의 室内에 면하는 部分의 마감을 準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200平方미터 以上, 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3. 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장구성을 알기쉽게 작성 되었다.

4.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第2号 各目에 掲記하는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17條 第5号의 基準에 該当하는 建築物

5.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教会·寺刹 및 事業場의 경우에는 2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険物 또는 別表4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 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라. 消防対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5. 이 경우에도 내화구조의 수치를 적용 하였으니 통신 기기실의 바닥면적 500㎡는 그대로 둔 것은 위험율을 고려한 것 같다.

6. 電気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다음 各目에 掲記하는 消防対象物(耐火構造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材料에 鉄網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가. 延面積 500平方미터以上(事業場의 경우에는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契約電流用量이 100암페어를 超過하는 것(4層以上의 共同住宅 및 事業場에 한한다)

7. 自動火災速報設備를 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工場, 映画 및 텔리비젼촬영소로서 바닥面積이 1천500平方 미터 以上인 것.

8.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1)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数가 3層以上인 것.

(2) 学校·学芸展示館으로서 収容人員이 800人以上인 것.

나.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収容人員이 100인 以上(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以上)인 것.

8. 가항의 경우에는 방송설비와 함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나항의 경우에는 3개설비중 1개를 설치하면 된다.

9. 避難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避難層 및 11層以上의 層을 除外한 層으로서 다음 各目에 掲記하는 것.

가. 4層以上의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30人 以上인 것.

나. 정거장, 待合室, 教会, 寺刹 및 学芸展示館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50人 以上인 것.

다. 学校, 工場, 映画 및 텔리비젼촬영소 및 事業場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150人 以上(地下層·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100人以上)인 것.

10. 避難口誘導燈·通路誘導燈 및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구 분 용 도 별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층	기타 층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정거장, 대합실, 공장, 영화 및 텔리비젼촬영소, 사업장	피난구유도등·통로 유도표지 유도등	

11. 排煙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정거장·待合室로서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바닥面積이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12. 물噴霧等消火設備, 屋外消火栓設備, 消火用水設備, 連結送水管設備, 連結撒水設備 및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4号, 第5号, 第14号, 第16号 내지 第18号의 規定을 各各準用한다.

3종장소 : 창고, 차고, 비행기 격납고

제19조(第3種場所) 別表1의 第3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機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2에서 定하는 数量의 5分의 1 以上의 危険物,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準危険物,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가스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가스 중 40킬로그램以上의 可燃性가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무창층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上인 것.

2.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倉庫로서 延面積 2千1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 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険物이나 別表4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倉庫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以上인 것.

2. 창고의 경우에는 철골트러스 건물인 경우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3배의 완화효과를 보게 되었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屋内에 面하는 部分)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락크식倉庫(선반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을 設置하고, 昇降機에 의하여 수납물을 運搬하는 装置를 갖춘 倉庫를 말한다)로서 延面積 2천1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3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険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3. 락크식 창고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규정을 2100㎡로 완화하였다.

4. 물噴霧等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車庫 또는 駐車場의 層(駐車한 諸車가 同時에 나올 수 있는 構造의 層을 除外한다)으로서 駐車의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의 바닥面積이, 地下層 또는 2層以上의 層에 있어서는 200平方미터以上, 1層에 있어서는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倉庫로서 別表 3 에서 定하는 數量의 1千倍以上의 第1類·第2類·第4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 에서 定하는 數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飛行機格納庫 (泡消火設備에 한한다)

4. 구법과 동일하나 비행기 격납고에 소화설비로 포소화설비로 제한한 것이 특색이다.

5. 動力消防펌프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第2号 各目의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17條 第5号의 基準에 該当하는 建築物

6.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 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 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라. 消防対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6. 내화, 비내화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1000㎡로 고정시켰다.

7. 電気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의 倉庫 (耐火構造 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鉄網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8. 自動火災速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倉庫로서 그 바닥面積이 1千500平方미터以上인 것.

9.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地下層을 除外한 層数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数가 3層以上인 것.

나.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収容人員이 100人 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이상인 것.

10. 避難口誘導燈·通路 誘導燈은 地下層·無窓層 또는 11層以上의 層에, 誘導標識는 其他의 層에 設置하여야 한다.

11. 屋外消火栓設備·消火用水設備·連結送水管設備·連結撒水設備 및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5号·第14号· 第16号 내지 第18号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제20조 (指定文化財) 別表 1 의 指定文化財에는 消火器具를 設置하고, 延面積이 1千平方미터 以上인 것에는 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구법에는 중요문화재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방지 설비가 해당 되었으나 삭제됨.

제21조 (地下街) 別表 1 의 地下街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2 에서 定하는 數量의 5分의 1 以上의 危險物, 別表 3 에서 定하는 數量 以上의 準危險物, 別表 4 에서 定하는 數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가스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가스 중 40킬로그램以上의 可燃性가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2.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 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 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 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取扱하는 것.

2. 구법에서는 500㎡로 내화인 경우 1000㎡까지 해당되나 신법에서는 600㎡로 고정시킨것은 오히려 강화된 느낌이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 에서 定하는 數量의 1千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 에서 定하는 數量의 1千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4.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 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 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4. 대통령제9849(80. 4. 15)로 시행령 개정때 「귀하가」가 소방대상물로 규정되었으나 자동화재 방지설비의 대상에서는 누락 되었었으며 본 신법에 600㎡로 정하게 되었다.

5.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層数가 3層以上이거나 収容人員이 800人 以上인 것.

나.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目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収容人員이 40인以上인 것.

6. 避難口誘導燈 및 通路誘導燈은 모든 地下街에 設置하여야 한다.

7. 排煙設備·連結送水管設備·非常콘센트設備 및 無線通信補助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8.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延面積 700平方미터以上인 것.

9. 물噴霧等 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4号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2조 (複合建築物) 別表 1 의 複合建築物 (第15條 但書에 該当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은 各用途別 該当数値를 第17條 내지 第19條

에 規定된 用途別 基準數値로 나누어 얻은 수의 合計가 1以上인 것으로 한다. 다만, 誘導燈과 誘導標識의 競合하는 層에 있어서는 誘導燈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3節 消防施設의 免除등

제23조(消防施設의 免除) ①屋內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에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等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에 있어서는 1層 및 2層의 部分에 한한다)에는 屋內消火栓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비중 대치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1, 2층에 한함) 동력소방펌프·스프링클러·물분무

②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에 물噴霧等 消火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스프링클러 : 물분무

③물噴霧等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車庫·駐車場이나 別表3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4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消防対象物에 스프링클러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물噴霧等消火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차고나 주차장 : 스프링클러(포말소화설비)

④屋外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等 消火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屋外消火栓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동력소방펌프

⑤動力消防펌프 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에 屋內消火栓設備·屋外消火栓設備·스프링클러設備 또는 물噴霧等 消火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內務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한다)에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消火設備 (表示溫度가 섭씨 75度以下이고 作動時間이 60초이내의 閉鎖型헤드를 設置한 것에 한한다)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설비

⑦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自動火災探知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그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非常벨 또는 自動式싸이렌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고,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自動火災探知設備나, 非常벨 또는 自動式싸이렌과 同等以上의 音響을 발하는 裝置를 附設한 放送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그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非常벨이나 自動式싸이렌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비상벨·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⑧避難器具 또는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있어서 그 位置·構造 또는 設備의 狀況에 따라 避難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避難器具 또는 誘導標識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아직 내무부령으로 정한바 없으므로 구법에 배제규정을 적용한다.

⑨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에 送水口를 附設한 스프링클러設備나 물噴霧等 消火設備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연결살수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⑩排煙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의 部分에 排煙上 有効한 窓 其他의 開口部가 있을 경우에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排煙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배연상 유효한 개구부의 경우에도 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消防設備適用의 特例) ①別表1의 第2種場所중 內務部令이 定하는 工場에 대하여는 第18條 (消火設備에 한한다)에 대한 特例를 內務部令으로 定할 수 있다.

②消防署長은 消防対象物의 位置·構造 및 設備의 狀況을 判斷하여 消防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더라도 火災의 発生 및 燐燒의 우려가 顯著하게 적거나 火災로 인한 被害를 最小限度로 沮止할 수 있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第3章 第2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방법 시행규칙중 주요내용

제1조(消防対象物의 検査等) ①消防法(以下 "法"이라한다)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消防検査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建築物検査

消防法施行令(以下 "令"이라 한다) 別表1에 規定된 特殊場所의 構造·用途·消防施設·防炎処理物 其他 火災予防 및 鎭圧 対策에 必要한 事項의 検査

건축물 검사시에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제2조(消防検査等의 回数) ①第1條의 規定에 依한 消防検査 또는 調査의 回数는 다음과 같다. 다만, 內務部長官이 따로 定하는 消防対象物에 対하여는 第1号의 建築物 検査를 実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建築物検査는 年1回

2. 危険物検査는 年 1回

3. 水利調査는 月 1回

4. 地理調査는 年 2回 以上

② 同一構内에 2以上의 消防対象物이 있는 境遇와 하나의 建築物이 2以上의 用途로 使用되는 境遇에는 各 消防対象物에 대한 建築物 検査는 이를 同時에 実施하여야 한다.

③ 建築物検査와 危険物検査의 対象이 되는 消防対象物에 있어서는 建築物 検査와 危険物検査를 同時에 実施하여야 한다.

④ 消防署長은 異常気象時 또는 火災予防 및 鎮圧対策上 必要한 때에는 検査의 対象을 指定하여 第1項의 検査回数에 불구하고 수시로 消防検査를 実施할 수 있다.

건축물 조사는 년 2회에서 1회로 변경 되었고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었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조항을 삭제 하였다.

제 3 조 (建築許可等의 同意) ① 令 第4條 第1項 第3号에 "危険物製造所等의 用途"라 함은 危険物製造所·一般取扱所(危険物을 使用하여 製品을 生産·加工하기 為하여 危険物을 取扱하는 取扱所에 한한다), 屋内貯蔵所 및 注油取扱所의 用途를 말한다.

② 法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庁이 消防署長에게 建築許可등의 同意를 要請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建築主의 姓名·住所(法人인 境遇에는 名稱·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그 代表者의 姓名)
2. 施工地
3. 工事의 種別 및 建築物의 用途
4. 許可年月日(確認에 대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5. 着工予定日 및 竣工予定日(許可에 対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6. 消防施設의 示方書 및 設計図書(許可에 対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구법의 조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5조 (建築許可等의 同意要請) 法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庁이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建築許可等의 同意를 要請할 때에는 다음 各号의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建築主의 住所·姓名(法人인 경우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名稱 및 그 代表者의 姓名)
2. 施工地
3. 工事 種別 및 建築物의 用途
4. 許可年月日(竣工 同意인 경우에 限한다.)
5. 着工予定日 및 竣工予定日
6. 消防施設의 시방서 및 設計図書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도로 소방본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消防施設의 施工申告) ① 法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申告는 別紙 第11号 書式에 依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書에는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에 関한 示方書 및 設計図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③ 令 第27條 各号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에 있어서는 施工申告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는 소방설비업자의 의무사항 1차적으로 건축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제23조 (消防施設의 完工検査) ① 法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의 完工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12号 書式에 依한 完工 検査申請書를 消防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確認에 対한 同意에 갈음하는 完工検査의 申請은 建築主가 할 수 있다.

② 消防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完工検査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当該 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適合한지의 与否를 検査하여야 한다.

③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検査를 한 結果 当該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適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別紙 第13号書式에 依한 完工 検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 第9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確認에 対한 同意에 갈음하는 完工検査에 있어서 하나의 建築物에 数個의 消防施設을 하여 施工者가 2人以上인 境遇에는 各 施工者에게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하는 外에 建築主에게 各 消防施設에 対한 完工検査事項을 記載한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④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検査結果 当該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補完 指示를 할 수 있다.

⑤ 令 第27條 各号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에 있어서는 完工検査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대부 금번 소방법 개정에는 대체적으로 설비적용만을 규정 하였을 뿐임으로 기술수준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까지는 신·구 소방법을 병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방법 적용에 애로가 많을줄 안다.

〈자료〉

개정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82. 8. 20개정)

(건설부령 제336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을 "국가기술자격증사본(영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시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에 의한다.

제8조중 "영 제8조제2항을 "영 제8조제3항"으로, "별표1과"를 "별표1 및 별표1의2와"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사무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내용은 별지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21조 제4항"을 "영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플랜트엔지니어링 용역 업체와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를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조사 및 검사대상건축물등) ① 영 제25조 제3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당해 용도외의 용도와 병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영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조서는 별지 제27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설계수급대장에 기재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설계도서의 비치·보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명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을 "건축사자격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중 "영 제26조"를 "영 제25조"로, "확인서"를 "조사 및 검사조서"로 하고, 제6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비고
6.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수교육을 거부·기피한 경우	1월 이내의 폐쇄명령	
7. 기타 제1란 내지 제6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및 건축법에 위반한 경우	제1란 내지 제6란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함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사법 제2조 제2항"을 "건축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중 "동법시행령 제5조"를 "동법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중 " "□제14조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주의사항란의 2중 "15일내"를 "30일이내"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중 "건축법 제8조제3항"을 "건축사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및 〔별지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중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을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건설부 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중 "건설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중 "건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을 "건축사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중 "플랜트엔지니어링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를 "용역업체"로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의사항란의 2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설 계 도 서 신 고 서					처리기간 2일
① 건 축 주				② 지 역 지 구	지구
③ 대 지 위 치				④ 용 도	
⑤ 대 지 면 적	M²	⑥ 건 축 면 적	M²	⑦ 건 폐 율	%
⑧ 공 사 규 모	천원	⑨ 건 축 연 면 적	M²	⑩ 용 적 율	%
⑪ 구 조	조	⑫ 규 모	지하층 지상층	⑬ 공 사 종 별	
⑭ 설 계 자		⑮ 면 허 번 호		⑯ 설계년월일	년 월 일
⑰ 기 타					

건축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제 호

설계건축사 (인)

(면허번호)

건 축 사 (인)

(면허번호)

건 축 사 (인)

(면허번호)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장 귀 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설계도서 사본 1부 2. 설계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조 사 및 검 사 조 서			
건 축 주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M²)		지 역 지 구	
건 축 면 적 (M²)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M²)		용 도	
구 조		설 계 년 월 일	19 . . .
공 사 종 별		조 사 및 검 사 년 월 일	19 . . .

상기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사법 제2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현장조사 및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 저촉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인함.

19 . . .

첨부 : 1.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서 1부

조사 및 검사자 :

건축사면허번호 : 제 호

건축사사무소등록번호 : 제 호

사 무 소 명 :

건 축 사 성 명 : (인)

(시 장 · 군 수) 귀 하

현 장 조 사 서

	구 분	조 사 내 용
대지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대지의 안전여부	
	대지내 배수지장 유무	
	토지의 형질변경 필요유무	
	대지내 지상, 지하의 지장물 유무	
	대지내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 유무	
	인접대지와의 고저차	
도로	대지에 접하는 도로폭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폭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 지장 유무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	
기타	기존 건축물 여부 및 적법 여부	
	대지경계선과 인접건물과의 거리	
	대지부근의 고압선과 신청 건물과의 최단거리 및 높이	
종합의견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1. 건축개요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목	
	지 구	지 구		전면도로폭	M
	면 적	M²		도로에접한 길 이	M
용 도	주 용 도			기타용도	

규모	구 분	신 축	비 신 축			공 사 부 분
			기 존	신 청 부 분	계	
	건축면적 (M²)					
	연 면 적 (M²)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공사종별			
착공예정일	19 . . .		준공예정일	19 . . .		
타 법 령 과 관 계						

2. 층별면적

층별 / 구분											계
신축											
비신축	기 존										
	신청부분										
계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가. 대 지

(1) □ 지목은 ____로서 지목변경 불필요함.

(2) 토지의 소유 및 권리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이 가능한 내용

내 용

(3) □ 대지면적은 ____M²로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 M²에 적합함.

(4) 대지의 조성

가) □ 굴착부분이 없음.

나) □ 대지조성의 필요가 있으며, 건축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함.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지임.

가) □폭____M도로에____M접한 대지임.

나) □폭 4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____M후퇴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였음.

다) □폭____M길이____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이므로 도로중심선에서____M후퇴하여 건축토록 설계되었음.

나. 배치계획

(1) □건축선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설계되었음.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표와 같음.

(단위 : cm)

구 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3)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4)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및 기타사항은 지구내의 건축조례에 적합함.

다. 용도제한

□대지의 입지가____지역____지구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 제____조 및 지구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라. 규모제한

(1) 건폐율

□건폐율은____%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건폐율은____%로서 강화지정된 기준____%에 적합함.

(2) 용적율

□용적율은____%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용적율은____%로서 강화지정된 기준____%에 적합함.

□용적율은____%로서____조례의 기준____%에 적합함.

(3)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는____M로서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M이므로 법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함.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이하 8M이하로서 주거전용지역의 절대고 제한에 적합함.

□건축물의 높이는____M로서____지구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건축물의 높이는____M로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____M띄우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영 제90조의 규정에 적합함.

마. 구조 및 안전

□거실의 바닥높이는 지표면으로 부터____M로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함.

□____층____구조의 건축물로서 대지, 건축물, 옹벽 등은 구조상 안전함.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____조치를 취함. 계단의 구조 및 치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____조의 규정에 적합함.

□온돌과 온돌용 굴뚝의 구조 및 재료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었음.

□건축물의 구조는 규칙 제____조 내지 제____조의 규정에 적합함.

□변소설치는 규칙 제____조의 규정에 적합함.

바. 채광 및 환기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한 유효 채광면적의 비율은 %로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채광면적 비율 1/10이상임.

□환기면적은 규칙 제____조의 규정에 적합함.

사. 지하층 설치

□지하층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님.

□지하층 설치 대상 건축물로서 지상을 연면적____M^2로서 1/10이상인____M^2를 설치함.

□영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 설계가 면제됨.

산출근거

지하층의 구조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함.

아. 대지내의 조경

□대지의 면적이____이므로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____M^2가 확보됨.

산출근거

자. 열손실 방지

□열손실방지 의무대상이 아님.

□열손실방지 대상으로서____재료를 두께____cm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며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함.

차. 기타사항

(1)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법 제47조 및 영 제98조의 규정에 적합함.

(2)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함.

(3) 배수시설은 하수도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4) 오수 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 및 용량 배수관의 규정등은 오물 청소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5) 정화조의 방류구와 하수도의 연결상태는 양호하게 설계되었음.

(6)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하게 설계되

어 안전함.

(7) 공작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

(8) 증축인 경우 (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증축된 후에도 조사내용과 같이 건축법령등에 위배사항이 없음.

(9) 개축인 경우 (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면 개축하는 부분이 건축법등에 위배사항 없음.

(10) 대수선인 경우 (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대수선하는 부분이 건축법등에 위배사항 없음.

상기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 도시 계획법 등 건축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7호의 2서식]

건축물준공조사 및 검사조서			
건 축 주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M²)		지 역 · 지 구	
건 축 면 적 ((M²)		층 수	
연 면 적 (M²)		용 도	
구 조		설 계 년 월 일	19 . .
공 사 종 별		조 사 및 검 사 년 월 일	19 . .

상기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및 검사한 결과 별첨과 같이 적법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인함.

19 . . .

조사 및 검사자 : 건축사면허번호 : 제 호

건축사사무소등록번호 : 제 호

사 무 소 명 :

건 축 사 성 명 : (인)

(시 장 · 군 수) 귀 하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

1. 건축개요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목	
	지 구		전면도로폭	
	면 적	M²	도로에접한 길 이	
	주 용 도		기 타 용 도	

규모	구 분	신 축	비 신 축			공 사 부 분
			기 존	신 청 부 분	계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율					

구 조		공 사 종 별	
착공예정일	19 . . .	준공예정일	19 . . .
타 법 령 과 관 계			

2. 층별면적

구 분									
신 축									
비신축	기 존								
	신청부분								
계									

3. 관계 법령에의 저촉여부 (이면)

가. 대지의 안전 또는 토지굴착부분의 정리, 조경 등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나.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다.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라.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등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마.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바. 건축물의 방화, 소방 또는 피난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사. 건축물의 채광, 환기, 위생등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아.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자.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차. 지하층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상기조사 및 검사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준공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설 계 수 급 대 장

①연번	②수급 년월일	③대지 위치	④ 건축주	⑤ 대지면적 (㎡)	⑥ 건축 면적(㎡) / ⑦연면적 (㎡)	⑧용도	⑨구조	⑩설계자 / ⑪감리자	⑫설계 완성일	⑬도서 신고일	⑭ 허가일자 / ⑮번 호	⑯ 착공일	⑰ 준공일	⑱비고

〔별표 1의 2〕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구조	필기시험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계획	계획원론 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기시험

건축허가(도서신고) 면적 변동추세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2. 7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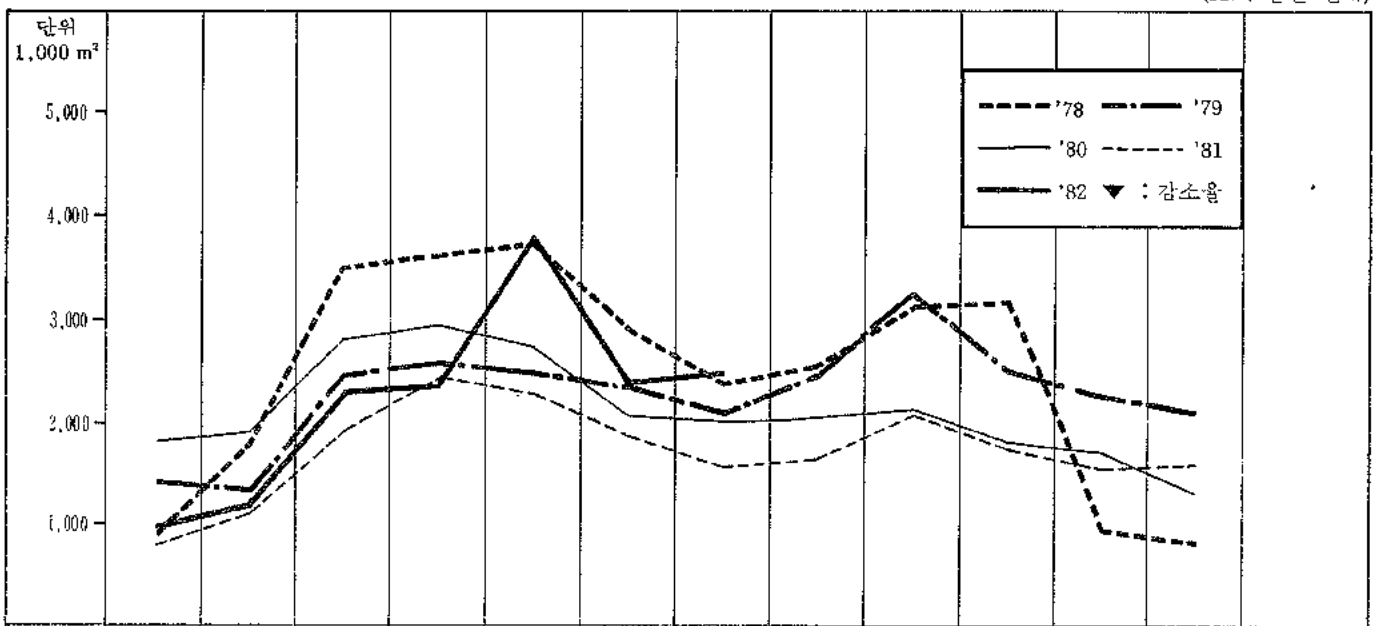

월별 /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78	889,646	1,750,362	3,416,055	3,526,338	3,575,145	2,929,335	2,344,242	2,674,854	3,072,004	3,074,119	911,275	811,369	28,977,684
'79	1,385,271	1,361,431	2,379,491	2,661,990	2,510,059	2,335,545	2,194,207	2,492,677	3,188,465	2,339,717	2,287,865	2,068,671	27,505,389
'80	1,846,698	1,851,785	2,883,090	2,906,362	2,803,050	2,094,130	2,055,584	2,066,876	2,178,032	1,887,590	1,765,707	1,388,320	25,727,233
'81	843,447	1,040,968	1,931,949	2,481,179	2,370,273	1,923,246	1,634,202	1,699,811	2,047,516	1,837,442	1,491,485	1,514,362	20,845,880
'82	983,925	1,070,383	2,256,601	2,427,541	3,620,476	2,355,757	2,461,878						
전년대비 % / 전월대비 %	17 / 0	3 / 9	17 / 111	▼2 / 8	53 / 49	22 / ▼35	51 / 5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2. 7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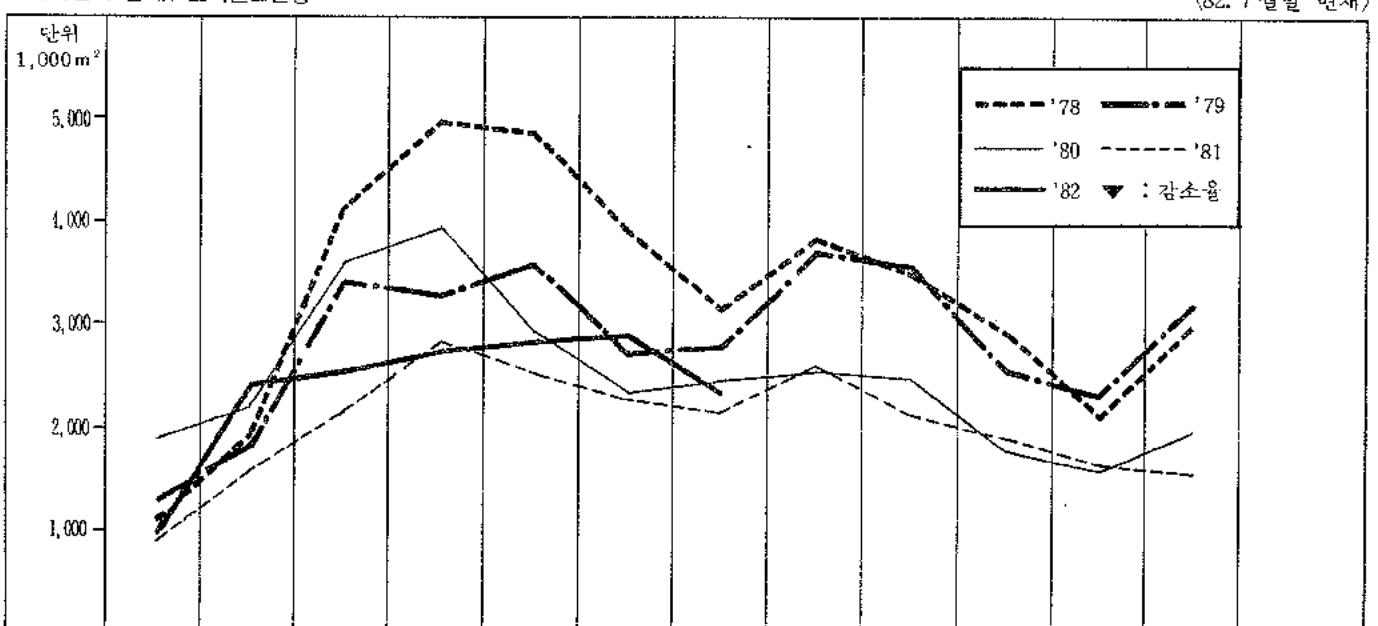

월별 /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78	1,407,335	1,972,533	4,177,377	4,983,858	4,893,644	3,959,856	3,131,947	3,819,539	3,476,173	2,981,183	2,074,674	2,996,670	39,574,789
'79	1,266,689	1,914,207	3,331,209	3,286,270	3,687,381	2,702,228	2,715,528	3,761,940	3,538,063	2,639,160	2,219,994	3,159,807	34,224,476
'80	1,903,761	2,124,465	3,544,904	3,956,774	2,954,695	2,334,356	2,433,402	2,490,825	2,469,755	1,880,537	1,559,102	1,996,516	29,649,092
'81	888,005	1,632,724	2,105,445	2,892,064	2,638,891	2,321,439	2,108,109	2,518,279	2,038,653	1,906,504	1,634,919	1,544,874	24,229,906
'82	947,131	2,282,755	2,463,391	2,877,177	2,927,031	2,981,380	2,335,943						
전년대비 % / 전월대비 %	7 / 0	39 / 141	17 / 8	▼0.5 / 17	11 / 2	28 / 2	11 / ▼22						

新 入 会 員

□羅永根 / 경북 / 38. 5. 23일생 / 한양대공대건축과 / 서광건축기술공사 / 서울종로구숭인동1256 / 95－1853

□金鏞軾 / 서울 / 38. 6. 5일생 / 한양대공대건축과 / 원당건축설계사무소 / 경기도고양군원당읍주교리127－14 / 6－5103

□薛晋燮 / 충남 / 39. 12. 26일생 / 동아대공대건축과 / 삼부종합건축계획 / 서울강남구청담동 338－1 / 566－2548

□金洸郁 / 서울 / 43. 10. 19일생 / 서울대공대건축과 / (주) 동양종합건축 / 서울종로구연지동 136－5 / 763－9929

□洪文裕 / 서울 / 43. 12. 2일생 / 연세대공대건축과 / (주) 건진건축설계 / 서울강남구반포동35－23 / 566－4676

□李永昊 / 전남 / 45. 1. 31일생 / 한양대공대건축과 / 환경사건축연구소 / 서울종로구청운동 108－5 / 722－8531

□柳在城 / 충북 / 47. 3. 1일생 / 충남대공대건축과 / 유성건축연구소 / 충남대덕군유성읍장대리 11－52 / 822－2347

□尹鍾七 / 경남 / 49. 1. 1일생 / 부산대공대건축과 / 아라공간건축설계사무소 / 경남창원시중심업무상가29 B 4 L / 82－4567

□宋二浩 / 부산 / 52. 2. 11일생 / 동아대공대건축과 / 건축연구소내외 / 서울강남구서초2동27－3 / 568－0123

□朴在郁 / 경남 / 52. 9. 3일생 / 울산공업고등학교 / 성림건축설계사 / 경남울산시옥교동 231 / 2－6289

□朴商基 / 서울 / 53. 2. 17일생 / 경기공업전문대학 / 범한건축 / 서울중구예관동70－7 / 269－8151

□金成容 / 전북 / 54. 6. 7일생 / 전주공업고등학교 / 대형건축설계사무소 / 전북전주시중앙동4가36－9 / 6－2051

会員動静

변경 □ 부산지부 △ 박성길 · 이종헌회원 / 동래설계사 / 동래구 수안동 593 / TEL 52－2077 · 52－0978 / 소재지 변경 △ 박영두 회원 / 오양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진구범일동 848－22 / TEL 642－2952 / 업종 변경 △ 백운수 회원 / 백운건축설계사 / 남구 광안동 50－7 / TEL 72－4370 / 업종변경 △ 이태호 회원 / 남영건축설계사무소 / 남구 광안동 50－7 / TEL 72－2419 / 업종변경 △ 장상진 회원 / 동신 건축설계사 / 부산진구 부전동 395－4 / TEL 89－5117 / 업종변경 △ 김동희 회원 / 예원 건축설계사무소 / 중구 중앙동 4가 77－3 / TEL 45－1651 / 업종변경 △ 엄태우 회원 / 엄태우건축설계사무소 / 중구 대청동1가31－2 / TEL 462－2615 / 업종변경 △ 김원주 회원 / 미건축설계 사무소 / 동구 초량 1동 587－1 / TEL 462－1781 / 소재지 변경 △ 김철재 회원 / 미조건축설계 사무소 / 부산진구 부전 1동

266－3 / TEL 88－8822 / 업종변경 △ 윤동수 회원 / 금성종합 설계사 / 부산 진구 부전동 401－13 / TEL 22－9713 /이전 및 업종변경

□ 경기지부 △ 강석준 회원 / 경인건축 연구소 / 부천시 원미동 74의 6 /TEL 62－3361 △ 윤 전 회원 / 대성건축 연구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199－7 / TEL 2－2184 △ 정환철 회원/ 문화건축 / 부천시 심곡동 87－6/TEL 63－1881 / △ 황재성 회원 / 현대건축 설계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 74－2 / TEL 62－8033 △ 김복경 회원/ 정원 건축설계사무소 /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75 / 2－2701 △ 윤광영 회원 / 윤광영 건축설계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180－8 / TEL 2－2945 △ 백인기 회원 / 백건축 연구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225－24 / TEL 2－2826

제입 □ 서울지부 △ 김장균 회원 /(주)건진건축설계 / 강남구 반포동 35－23 / 8 · 10일

□ 경북지부 △ 박장율 회원 / 극동건축 설계사무소 / 포항시 중앙동 111번지 / TEL 2－6887 / 7 · 31일

전입 □ 서울지부 △ 김영길 회원 /도시건축설계 /강동구 송파동 15－2 / 8. 12일 △ 임병석 회원 / 정금건축 / 동작구 노량진 240－25 / 7 · 26일

□ 경기지부 △ 사윤창 회원 / 동양건축설계공사 / 가평군가평읍 읍내리496－1 / 7. 22일

□ 경남지부 △ 김정관 회원 / 미조건축설계사무소 / 거재군 신현읍 고현리 209－4 / 7. 29일

휴업 □ 서울지부 △ 김정치 회원 / 예건사건축 / 영등포구 당산동 3 가 243 / 82. 7. 1일부터83. 6. 30일 △ 이강혁 회원/ 한성건축 기술공사 / 영등포구 당산동 3 가 386－5 / 82. 7. 20일부터 83. 2. 30일 △ 이태휘 회원 / 제일종합건축 / 강남구 청담동 325－18 / 82. 8. 1일부터 83. 7. 31일

□ 경기지부 △ 남상각 회원 / 김포건축설계사무소 / 82. 7. 30일부터 83. 1. 30일

폐업 □ 서울지부△ 이근창 회원 /완종합건축 / 강남구 방배동 105－10 / 7. 22일 △ 황인무 회원/중앙합동건축 / 관악구 신림동 1433－5 /7. 23일 △ 강권순 회원/삼명합동건축 / 강서구 목동 410－8 / 7. 23일 △ 최영도 회원 / 산업개발기술공단/중구 무교동 25 / 7. 27일 △ 박호창 회원/ 중구 저동 2 가7－2 / 8. 2일

□ 경기지부 △ 한경순 회원 / 기흥종합건축설계사무소 /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37의 4 / 8. 10일

별세 □ 전남지부 △ 박종대 회원 /대동설계사무소 / 8. 25일별세

□경북지부△조성현 회원 / 모친별세 / 9. 1 일 / 자택

□서울지부 △홍순인회원 / 대우건축 연구소 / 9 월 8 일 / 별세

◆編 輯 後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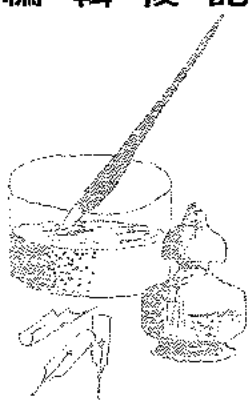

□ 작년 이맘때 어렵사리 꾸몄던 주택특집을 일년 후인 이번호에도 모아 보았다. 하나같이 공들인 작품들이 고운 색깔로 그대로 펼쳐 보여지니 한결 본새가 있어 보인다. 그 색깔처럼 약동하는 생명이 있어 풍요로운 가을이었으면…. 〈用〉

□ H형, 신음하면서 탐구하는 사람만을 시인할 수 있다던 파스칼의 말이 생각나시우? 우리 주위에는 쉽고도 좋은 일을 얻기 위해 영혼마저 팔아 해치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소.

쉽고 좋은 일, 물론 신나는 일이오. 그렇지만 쉽게 갖을 수 있는 좋은 일이란 일종의 매춘행위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밖에 또 어디 있겠오.

H형,

나는 알아.

내가 왜 자꾸 술을 마시는지, 그리고 왜 자꾸 H형을 좋아하는지를…. 〈京〉

□ 극일 운동과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운동이 한창인데도 꽃잎의 부서짐을 보며 아픔을 금할 수 없다.

행복이란 손 닿는 곳에 있는 꽃들로 꽃다발을 만드는 솜씨——. 길거리에 버려진 태극기, 참으로 아픔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솜씨로 언제 조국의 꽃다발을 완성할 수 있으랴! 내가 숨쉬고 있는 생활의 터전만이라도 아름다운 꽃들로 엮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 속에 이 계절을 생각한다. 가을!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절, 그리고 우리의 회지는 물론 신문 보도의 내용도 가을과 함께 더욱 신선해 질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基〉

□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노력과 또 고통이 필요한가 보다.

이제 이 가을의 길목에 서서 가을이 가져다 주는 풍성한 결실과 그 결실에 필요했던 노력과 인내를 맑고 높고 파아란 가을하늘을 보며 생각해 본다. 〈宙〉